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25. 9.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25.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2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이 영

요 약

1. 연구개요

-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조세 특례제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거주자로부터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소득공제금액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이며 간접 투자금액은 10%를, 직접 투자금액은 30~100% 차등 적용하여 공제함
 -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 3년 이상 투자 유지

<표 1> § 16조의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13	22	66	134	185	296	593	891	1,075	1,785	1,905	1,895	2,027

주: 2024년과 2025년도 자료는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확대 유도
 - 출자금의 5% 법인세 세액공제

<표 2> § 13조의2의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법인세	135	172	260	335	676	652	557	584

주: 2024년과 2025년도 자료는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지속적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차익 및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면제

<표 3> § 13조의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법인세	16	4	16	27	16	15	64	24	41	120	205	64	67

주: 2024년과 2025년도 자료는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분석 내용 및 결과

- 벤처투자 시장 현황
 - 2024년 신규 벤처투자는 6조 6,3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 증가하며 반등했으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보면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비중은 10.2%에 그쳐 민간 금융기관 대출(28.8%) 및 정책금융 지원(24.1%)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경향이 있음
 - 업력별 투자 비중은 초기기업(3년 이하)이 2023년 24.6%에서 2024년 19.0%로 감소한 반면, 후기기업(7년 초과)은 37.8%에서 46.1%로 증가하여 투자가 성숙 단계의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
 - 벤처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77.6%)로 파악됨

- 주요국들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며, 특히 기업별 투자 유치 한도 설정과 적격투자 업종 제한을 통해 정책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공통점을 보임
 -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적격소기업주식(QSBS) 양도차익의 최대 100%를 비과세하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조합에는 도관이론을 적용해 법인세를 면제
 - 대부분 주별로 적격기업에 대하여 디지털 및 기술 관련 업종 제한이 있음
 -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벤처투자가 활발한 주의 경우 벤처투자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폐쇄형 투자기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분산투자 요건을 따라야 함(단일 기업 투자 총 자산의 5% 이내)
 - 캐나다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세금감면 혜택이 존재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보다 주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이 큰 편임
 - 일반법인에 주별 적격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
 - 투자조합 등의 경우 도관이론에 따라 취급하여 과세되지 않음
 - 캐나다 연방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의 주식지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제공
 - 벤처투자 적격대상기업의 산업 제한, 개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감면 한도 및 주정부별 감면 한도가 있음
 - 캐나다에서 벤처투자가 가장 활발한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다른 주와 달리 직접적인 세금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기업 생애주기별·규모별로 세분화한 세금혜택이 존재함
 - 법인투자자의 경우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은 없으나 벤처캐피털 신탁(VCT)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함
 - 개인투자자의 경우 세액공제 및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존재함
 -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 개인별 투자금의 연간 한도와 더불어 각 벤처기업이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최대금액 한도가 존재함
 - 일본은 개인투자자에게 세금혜택 방식을 선택할 자율권이 있음

- 개인투자자는 “엔젤세제”하에서 출자 시 세금혜택과 양도소득세 감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투자자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하에서 출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적격투자 대상에는 규모 및 산업 제한이 존재함

□ 타당성 분석 결과, 벤처투자 시장은 높은 위험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민간 자본의 과소투자라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므로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며, 조세지원 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 수단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현행 제도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투자 쏠림 현상: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 소수의 유망 기업에 자금과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특수관계인 규제의 한계: 제13조의2에서 준용하는 현행 특수관계인 정의는 지분을 중심의 형식적 요건에 그쳐,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나 형식적 자금 이동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
- 업종 제한 부재: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해 이미 시장이 성숙했거나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산업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재정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동 과세특례제도들은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에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투자자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통계적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반 법인투자자의 유인 효과는 통계적 분석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설문조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들로부터의 벤처투자자금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개인 투자자, 특히 근로소득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절세 및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됨
 - 강력한 절세 효과: 제도를 활용한 투자자는 유사한 소득 수준의 비투자자에 비해 과세표준이 연간 최소 769만원에서 최대 1,558만원까지 낮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추정됨
 - 총 소득공제액의 순증가: 제도를 통해 총 소득공제액은 연간 897만원에서 1,734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다른 소득공제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26만~87만원)는 있었으나, 전체 증가분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
 -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 분석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오히려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제도를 단순 절세가 아닌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기회비용 감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
 - 설문조사 결과: 엔젤투자자 과반수(94.4%)가 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제도가 신규 투자 기업 수를 평균 0.6개 증가시키고 투자 기간을 평균 4.4개월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법인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통계적으로 명확한 투자 유인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수혜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역설적인 세 부담 증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연도(2019, 2020, 2023년)에는 오히려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총부담세액이 약 1.8억원에서 2.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혜기업들이 절세 목적보다는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한 결과로 해석
 - 설문조사 결과: 수혜 법인의 과반수(75%)는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했으나, 투자의 규모나 기간 자체를 늘리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이는 제도가 투자의 본질적인 경제성을 따진 후 최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한계적인(marginal)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벤처투자회사 등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통제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로 ATET 등을 추정할 수 없어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등록된 모든 벤처투자조합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제도 효과성 인식: 전체 응답자의 92.0%가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함
 - 투자 대상의 수 및 기간에 대한 영향: 제도가 투자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거나 투자 기간을 연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응답자의 13.5%만이 제도가 ‘투자 대상의 개수를 증가시켰다’라고 답변
 - 응답자의 12.5%만이 제도가 ‘투자기간을 증가시켰다’라고 답변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조세특례제도(개인 소득공제, 법인 세액공제, 양도차익 비과세)가 민간자본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도의 일몰을 단기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하나, 다음과 같은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함
 - 벤처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들과의 대상 일치
 - 조세감면제도들의 적격투자 대상의 불일치는 벤처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들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벤처기업별 세제혜택 한도 설정
 - 개별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총 한도가 없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수의 유망 기업에만 투자가 쏠리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에 자금이 분배되도록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금액에 총 한도를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기업 생애주기별 평생 한도), 캐나다(주별 평생·연간 한도) 등 주요국은 이러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임
-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 현행 특수관계인 규정은 친족 및 지분율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혼이나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13의2)에 형식적인 친족 관계를 넘어 ‘경제적 종속 관계’를 포함하도록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고려
 - 다만 관련 규정이 없는 개인 소득공제제도(§16)에는 벤처투자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3년 미만의 극초기 기업의 경우 시장 실패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 자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모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기업의 생애주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적격투자 대상 업종 관련 개선방안
 - 유흥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미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시장 실패 가능성이 낮은 산업에도 세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 정책목적에 맞게 적격투자 대상의 산업 및 업종 제한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며, 주요국 사례처럼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혁신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제혜택의 벤처투자 효과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 현재 국세청 과세자료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등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정보가 제한적임
 -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투자 유형(직접·간접) 및 실제 투자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자료 구축이 시급

목 차

I. 서론	15
II. 제도 개요 및 현황	19
1. 제도 개요	21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1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8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1
2. 제도 현황	38
가. 벤처투자 시장 동향	38
나. 벤처 및 엔젤투자 현황	46
다. 벤처투자회사 현황	49
라. 벤처기업 현황	50
III.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61
1. 선행연구	63
가. 국내 연구	63
나. 해외 연구	66
2. 국제 비교	67
가. 미국	67
나. 캐나다	81
다. 영국	87
라. 일본	95
마. 이스라엘	104
바. 법인투자자 세제지원 해외 사례	106

IV. 타당성 분석	113
1. 개요	115
2. 정부 역할의 적절성	117
가. 정부 개입의 적절성	117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119
3.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123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123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125
다. 제도운영의 적절성	127
라.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129
4. 소결	131
V. 효과성 분석	133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35
가. 원천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135
나.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145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52
VI. 설문조사 분석	159
1. 설문조사 개요	161
2. 설문조사 결과	163
3. 소결	180
VII. 결론 및 개선방안	183
참고문헌	196
부 록	201

표 목 차

<표 II-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대상자	22
<표 II-2>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조특법」 제16조)	25
<표 II-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율·공제한도·일몰 기한의 변화	26
<표 II-4> 투자 방식에 따른 적격투자 대상 변경	27
<표 II-5>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조특법」 제13조의2)	30
<표 II-6>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주요 연혁	31
<표 II-7>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건	33
<표 II-8>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조특법」 제13조)	35
<표 II-9>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주요 연혁	35
<표 II-10>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현황	38
<표 II-11>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43
<표 II-12>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43
<표 II-13>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	45
<표 II-14> 벤처투자 현황	46
<표 II-15> 신기술금융사 현황	47
<표 II-16> 개인 엔젤투자 규모(소득공제 기준)	48
<표 II-17> 개인투자조합 신규 결성 현황	48
<표 II-18>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실적 현황	49
<표 II-19>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51
<표 II-20> 벤처기업 재무 현황	52
<표 II-21> 업종별 벤처기업 분포 현황	54
<표 II-22> 업력별 벤처기업 분포	55
<표 II-23> 벤처기업 성장단계 분포	56
<표 II-24> 역량별 경쟁력 및 경쟁 전략 초점 비교 현황(2023년 기준)	57
<표 II-25> 연도별 투자유치 경험	58
<표 II-26> 벤처캐피탈 도움 정도	59

<표 III-1> 미국의 엔젤투자 세액공제제도 주별 프로그램 명칭	74
<표 III-2> 매니토바주 중소기업 벤처캐피탈 자본 세액공제(SBVCTC)	85
<표 III-3> 영국의 벤처지원제도	88
<표 III-4> 영국의 EIS와 SEIS 비교	89
<표 III-5>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3
<표 III-6>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94
<표 III-7>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M&A형) 요건	97
<표 III-8> 일본의 엔젤세제 대상 중소기업 요건	100
<표 III-9> 일본의 엔젤투자 우대조치(투자 시점)	101
<표 III-10> 일본 엔젤세제의 우대조치 A 요건	102
<표 III-11> 일본 엔젤세제의 우대조치 B 요건	103
<표 III-12> 일본 엔젤세제의 프리시드·시드 특례 요건	104
<표 IV-1>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간의 선택 기준	120
<표 V-1>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요약 통계(제16조, 원천세)	136
<표 V-2>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 1(제16조, 원천세, 실수혜자 더미)	138
<표 V-3>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 2(제16조, 원천세, 실수혜자 더미)	139
<표 V-4>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 3(제16조, 원천세, 수혜자군 더미)	139
<표 V-5>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 4(제16조, 원천세, 수혜자군 더미)	140
<표 V-6> 귀속연도 2016~2023년간 연도별 매칭을 이용한 ATET 추정 결과	144
<표 V-7>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표본의 요약 통계(제16조, 종합소득세)	146
<표 V-8> 귀속연도 2016~2023년간 ATET 추정 결과(제16조, 종합소득세)	149
<표 V-9> 종합소득을 이용한 연도별 매칭 결과	151
<표 V-10> 2018~2023년 세액공제감면 빈도 및 비중	153
<표 V-11> 2018~2023년 세액공제감면 금액 및 비중	154
<표 V-12>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요약 통계(제13조의2, 법인세)	155
<표 V-13> ATET 추정 결과(제13조의2, 법인세)	156
<표 VI-1> 설문조사 대상 납세자의 구성	162

<표 VI-2>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세부적 구성	162
<표 VI-3>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여부(비수혜자 대상)	163
<표 VI-4>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시기(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 대상)	165
<표 VI-5>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경로(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 대상)	166
<표 VI-6>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방식	167
<표 VI-7>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은 사유	168
<표 VI-8>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은 사유	170
<표 VI-9>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출자·투자의 방식	171
<표 VI-10>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증가에 대한 개별 조세특례의 효과성 인식 여부	172
<표 VI-11> 개별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인식하지 않은 사유	173
<표 VI-12>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174
<표 VI-13>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 ..	175
<표 VI-14>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출자·투자의 방식 ..	176
<표 VI-15> 개별 조세특례의 조세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178
<표 VI-16>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적 지원의 유형	179
<표 VII-1> 개인 벤처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한 특수관계인 고려 여부	190
<표 VII-2> 각 나라별 벤처기업 범위	192

그림 목 차

[그림 II-1] 유형별 회수 비중	39
[그림 II-2] 신규조합 조합원 비중	40
[그림 II-3] 2023년 신규자금조달 방법	41
[그림 II-4] 신규투자 현황	41
[그림 II-5]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42
[그림 II-6]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44
[그림 II-7] 유형별 신규투자 비중	45
[그림 II-8] 벤처투자회사 신규등록 현황	50
[그림 II-9] 기업 유형별 경영성과 비교(2023년)	52
[그림 II-10] 기업 유형별 재무 현황 비교(2023년)	53
[그림 II-11] 지분 현황(2023년)	54
[그림 II-12] 장기적 성장 전망(매출 및 고용)(2023년 기준)	57
[그림 II-13] 벤처캐피탈 도움 분야	59
[그림 II-14] 경영 애로사항	60
[그림 IV-1]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벤처투자 수준	119
[그림 V-1] 중소기업 신고유형 분포: 처치집단 vs 통제집단	147

I. 서론



I. 서론

- 본 보고서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주요 조세 특례제도의 운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 대상이 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음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에 대한 거주자로부터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하여 도입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시에 자본금 취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투자자의 지속적인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함

- 본 연구는 동 제도들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캐나다·영국 등 주요국의 유사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부 개입 및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정책 목표, 대상, 운영 방식 등 제도 설계의 타당성을 문헌연구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
 - 효과성 분석을 통해 각 제도가 개인 및 법인 투자자의 벤처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켰는지 검증
 -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 미시자료를 활용한 계량 분석을 실시하고, 비교 대조군 설정이 어려운 특정 제도의 효과와 과세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각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과 함께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됨
 - 개인투자자로부터 벤처기업창업투자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받기 위하여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함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거주자로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2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을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①항)
 -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 출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3호)
 -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4호)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5호)
 -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지분증권에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6호)

- 각각의 정책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1호부터 6호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각 호는 투자대상과 방식에 따라 간접투자과 직접투자로 분류할 수 있음
 - 간접투자: 제1호, 제2호, 제5호
 - 직접투자: 제3호, 제4호, 제6호

<표 II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대상자

구분	정책대상자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를 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합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 전문투자조합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함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만족하는 신탁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투자신탁을 의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임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라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해당 법률의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함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 관련 투자금액 혹은 연구개발비가 일정 이상 만족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적격하다고 평가를 받은 기업을 의미함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표 II -1>의 계속

구분	정책대상자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은 증권 모집의 특례에 대한 조항으로 본 조항에서 규정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9호),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20716호), 「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19014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062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83호),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03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31호), 검색일자: 2025. 7.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3호의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③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벤처기업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 관련 투자금액 혹은 연구개발비가 일정 이상 만족하는 기업을 말함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500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사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이 기술등급 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3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말함
 - 이때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대체하여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에서 규정한 정책대상자인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への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가 가능함
 - (간접투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직접투자) 제16조 ①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해당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 제16조 ①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그 시점으로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③항)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②항에는 동법 제16조 ①항 총칙에 근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함

- ①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①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 환매를 포함)하는 경우
- ①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한편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의 추징에서 제외함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표 II-2>와 같음

- 최근 3년 평균(2021~2023년) 실적은 연간 1588.3억원임
- 2024년과 2025년의 조세지출 규모는 이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 -2>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조특법」 제16조)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소득세	134	185	296	593	891	1,075	1,785	1,905	1,895	2,027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과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2020년 8월 12일부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제목이 개정됨

□ 본 제도의 최초 일몰 기한은 2000년 12월 31일이었으며 이후 총 열 번의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연장됨

-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 31일에 일부개정으로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이전의 일몰 기한에 3년을 더 연장하였음

- 소득공제율은 2011년 12월 개정으로 투자방식에 따라 처음 분리되었음
 - 간접투자자는 투자방식에 따라 공제율을 분리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공제율을 10%로 유지함
 - 직접투자자는 2014년부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 구간을 만들어 공제율에 차등을 두기 시작했으며 2017년 개정 이후 구간 체계와 공제율은 현재까지 변경 없이 이어짐

- 본 제도의 공제한도는 2014년 1월 1일 개정으로 종합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후 현재까지 이어짐

<표 II -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율·공제한도·일몰 기한의 변화

개정 일자	투자 방식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일몰 기한
	간접투자	직접투자		
1997. 8. 30.		20%	-	-
1998. 12. 31.			70%	2000. 12. 31.
1999. 8. 31.		30%		
2000. 12. 29.			50%	2003. 12. 31.
2001. 12. 29.		15%		
2003. 12. 30.				
2006. 12. 30.			30%	2010. 12. 31.
2008. 12. 26.		10%		
2010. 12. 27.			40%	2012. 12. 31.
2011. 12. 31.		20%		
2013. 1. 1.		30%	50%	2014. 12. 31.
2014. 1. 1.		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		
2014. 12. 23.	10%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	50%	2017. 12. 31.
2017. 12. 19.		3,000만원 이하: 100%		
2020. 12. 29.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0%		
2022. 12. 31.		5,000만원 초과: 30%		

주: 투자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의 호들을 분류한 것으로 간접투자자는 동법의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투자이며, 직접투자자는 동법 3호, 4호, 6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투자 방식에 따라 적격투자 대상 변경 사항은 <표 II-4>와 같음

- 동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조정·확장하여 지금의 대상 범위를 구성하고 있음

<표 II -4> 투자 방식에 따른 적격투자 대상 변경

개정 연도	투자 방식	
	간접투자	직접투자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법」 제13조의3 신설(1997. 8. 3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신탁수익증권 	(추가, 1997. 12. 13.) 벤처기업
1998	「조특법」 제16조로 이관 (1998. 12. 28.)	(추가) 벤처기업투자조합
1999	(추가) 기업구조조정조합	
2001	(추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2005	(추가) 한국벤처투자조합	
2007	(삭제) 기업구조조정조합	
2014		(추가)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2016	(추가) 창업 벤처전문 PEF	(추가) 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천만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기업
2017	(시행령 개정, 201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 요건 조정 • 신주투자 50 → 15% • 구주투자 35% 신설 • 1인당 투자한도 3천만원 	(추가)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3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2023	(추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주: 투자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의 호들을 분류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동법의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투자이며, 직접투자는 동법 3호, 4호, 6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로 규정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시에 자본금 취득이나 유상증자 참여를 유도하여 벤처기업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입됨
 -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일부분을 세액공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내국법인으로 투자 또는 출자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함
 - (창업기업 등에 출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①항 1호)
 - (창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①항 2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②항)

- 정책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③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함
 -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①항에 따라 정책대상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격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정책대상자가 적격투자 대상에 투자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함)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함)
 -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 법인의 임원·직원,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또는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법인,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이상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¹⁾
 -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②항에 따라 동법 ①항에 따른 정책대상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출자로 적격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 다음 항목(㉠, ㉡)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1) 이상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과 해당 특수관계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함(「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5호).

초과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④항은 앞선 방법의 투자 또는 출자한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여되었다면 이 세액을 환수할 것을 명시함
 - 동법 ①항과 ②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함
 -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고려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표 II-5>와 같이 파악됨
 - 최근 3년 평균(2021~2023년)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554.3억원임
 - 2022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600억원대 규모를 유지함
 - 2024년 이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표 II -5>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조특법」 제13조의2)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법인세	135	172	260	335	676	652	557	58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본 제도는 2016년 12월에 신설되어 최초 일몰기한은 2019년까지였으며 이후 2022년, 2025년으로 일몰기한을 두 차례 연장함
 - 2022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②항은 2023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통해 출자대상 범위를 확대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적용이 가능해짐
- 동 제도가 신설된 이후의 주요 연혁은 <표 II-6>과 같음

<표 II -6>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주요 연혁

개정 일자	주요 변경 사항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 통한 간접출자 - (지원내용) 출자금의 5%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
201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1.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칭 변경 - “창업자” → “창업기업”으로 명칭 변경
202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대상 범위 확대(「조특법」 제13조의2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24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적용)
2024.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조합등” → “벤처투자조합등”으로 명칭 변경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기관투자자의 지속적인 조합출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함께 벤처자본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좋은 기술을 가졌음에도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됨

- 1984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게 신기술사업 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조세지출 항목과 수혜대상을 갖추
- 본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투자조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 유형별로 열거되어 있음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지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²⁾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 1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지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 2호)
 - (간접 투자지분)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³⁾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 3호)
 -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⁴⁾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기금운용법인 등의 투자지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 4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함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를 말함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2조 제11호에 따른 투자조합

- (코넥스시장 투자지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⁵⁾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 5호)
 - (간접 코넥스시장 투자지분)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 6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⁶⁾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 7호)
- 각 정책대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과 ④항의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13조 ②항과 ③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 제13조 ②항은 동법 ①항 1호부터 4호까지 및 7호를 적용할 때의 적격투자 요건에 대한 것임
 - 제13조 ③항은 동법 ①항 5호 또는 6호를 적용할 때의 적격투자 요건에 대한 것임

<표 II -7>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건

구분	정책대상자	
제13조 제2항 ¹⁾	제1호	•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제2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제3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제4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제5호	•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을 말함.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함.

<표 II -7>의 계속

구분		정책대상자
제13조 제3항 ²⁾	제1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제2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제3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제4호	•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주: 1)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제1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검색일자: 2025. 7.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에 의거하여 정책대상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격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함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와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인 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④항에 따라 정책대상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격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통해 창업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표 II-8>과 같이 파악됨
 - 3년 평균(2021~2023년) 실적은 연간 122억원임
 - 최근 실적과 향후 전망치는 2023년(실적) 205억원, 2024년(전망) 64억원, 2025년(전망) 64억원으로 보임
 -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주가 상황에 따라 다름
 - 비과세 혜택으로 통계 산출이 정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움

<표 II -8>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조특법」 제13조)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법인세	27	16	15	64	24	41	120	205	64	67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같은 명칭의 조세지출 항목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984년 4월 9일에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의 수혜내용과 수혜대상이 서로 비슷함
 - 현재의 법 조항 제목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2023년 6월 20일 개정을 통해 정해짐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주요 연혁은 <표 II-9>와 같음

<표 II -9>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주요 연혁

시행 일자	주요 변경 사항
1984.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감법」 제18조의2) - 수혜내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대상: 신기술사업투자회사
198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수혜대상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99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감법」 제12조) • 수혜내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하지 않음

<표 II -9>의 계속

시행 일자	주요 변경 사항
199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내용 확대 -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추가
199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99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조항 변경 - 『조특법』 제13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에 일몰 기한 적용 (2003년)
200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요건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당해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
200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요건 완화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추가
200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 기한 연장 -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2003 → 2006년)
2005.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요건 완화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추가
200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 추가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추가
200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 -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2006 → 2009년) - 일몰기한 적용: 해당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일몰 기한 2009년)
200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 추가 - 기금운용법인 등 추가
20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 기한 연장(2009 → 2012년)
201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요건 확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수혜대상에 포함 • 수혜요건 완화 - 창투조합 확대(농식품투자조합 추가)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 기한 연장(2012 → 2014년)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요건 확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직접 출자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는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수혜대상에 포함

<표 II -9>의 계속

시행 일자	주요 변경 사항
2015. 1. 1.	• 일몰 기한 연장(2014 → 2017년)
2017. 1. 1.	• 수혜대상 확대 - 창업기획자 추가
2018. 1. 1.	• 일몰 기한 연장(2017 → 2020년)
2019. 1. 1.	• 수혜요건 완화 - 창투조합 확대(개인투자조합 추가)
2020. 1. 1.	• 수혜요건 완화 - 거주자가 유상증자 받은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3년 지난 것을 매입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납입한 증자대금의 10% 한도)
2020. 4. 1.	• 창투조합 일부 변경 - 타법개정으로 인해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변경
2021. 1. 1.	• 일몰기한 연장(2020 → 2022년)
2023. 1. 1.	• 수혜요건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10% 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로 확대 • 일몰기한 연장(2022 → 2025년)
2023. 12. 21.	• 명칭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개정
2024. 1. 1.	• 수혜요건 확대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로 출자하는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수혜대상에 포함
2025. 4. 1.	• 명칭 변경 - “창투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변경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제도 현황

가. 벤처투자 시장 동향⁷⁾

- 2024년 투자조합 결성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나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실적은 증가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 등록한 벤처투자회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249개로 최고치를 경신함
 - 2024년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 수는 286개로 전년 대비 1.4%(4개) 감소하였고, 결성금액⁸⁾은 5조 7,571억원으로 15.4%(1조 460억원) 감소함
 - 2024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전체 투자조합의 수는 2,159개이며 이들의 결성금액은 60조 7,929억원임⁹⁾
 - 반면 같은 해 신규투자금액¹⁰⁾은 2023년보다 22.9%(1조 2,338억원) 증가한 6조 6,315억원, 투자를 받는 업체 수는 9.3%(213개) 증가한 2,494개임
 - 연 기준으로 2024년에는 매각이 54.4%로 회수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II -10>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벤처투자회사		246	(6.5%)	249	(1.2%)
벤처투자조합	조합 수	290	(△23.7%)	286	(△1.4%)
	결성금액	68,031	(△38.5%)	57,571	(△15.4%)
투자	신규투자금액	53,977	(△20.2%)	66,315	(22.9%)
	업체 수	2,281	(△7.8%)	2,494	(9.3%)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조합에 관한 수치는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대상으로 산출하며, 산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196, 검색일자: 2025. 6. 17.

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4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5. 30.

8) 결성금액이란 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원들이 납입을 약정한 출자금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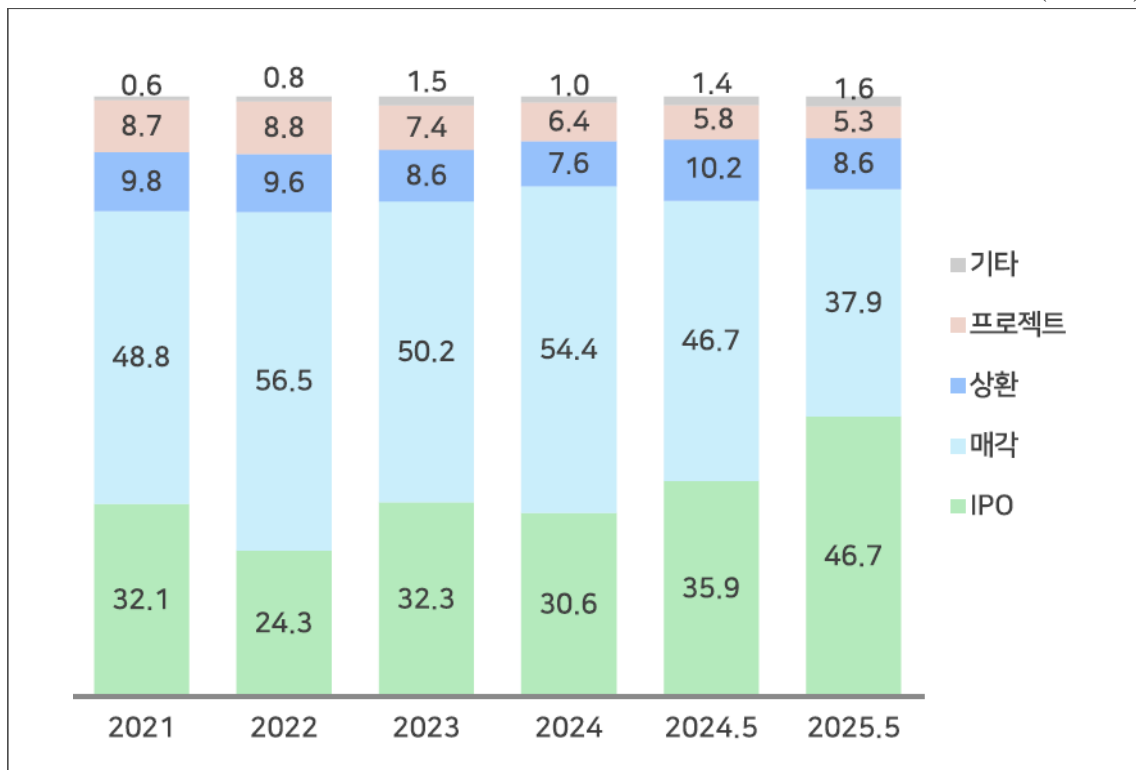
9)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4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5. 30.

10) 신규투자금액은 당해 기간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실적을 의미함.

- 2025년 5월 한 달 동안 90개 조합이 2조 2,406억원 규모로 신규 결성되었고, 854개의 기업에 대해 2조 1,805억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전년 동기(2024년 5월)에는 1,095개 기업에 대해서 2조 3,10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유형별 회수 방법으로는 IPO(46.7%)가 활용되고 있음
 - 나머지 회수 방법은 매각(37.9%), 상환(8.6%), 프로젝트(5.3%), 기타(1.6%) 순임

[그림 II -1] 유형별 회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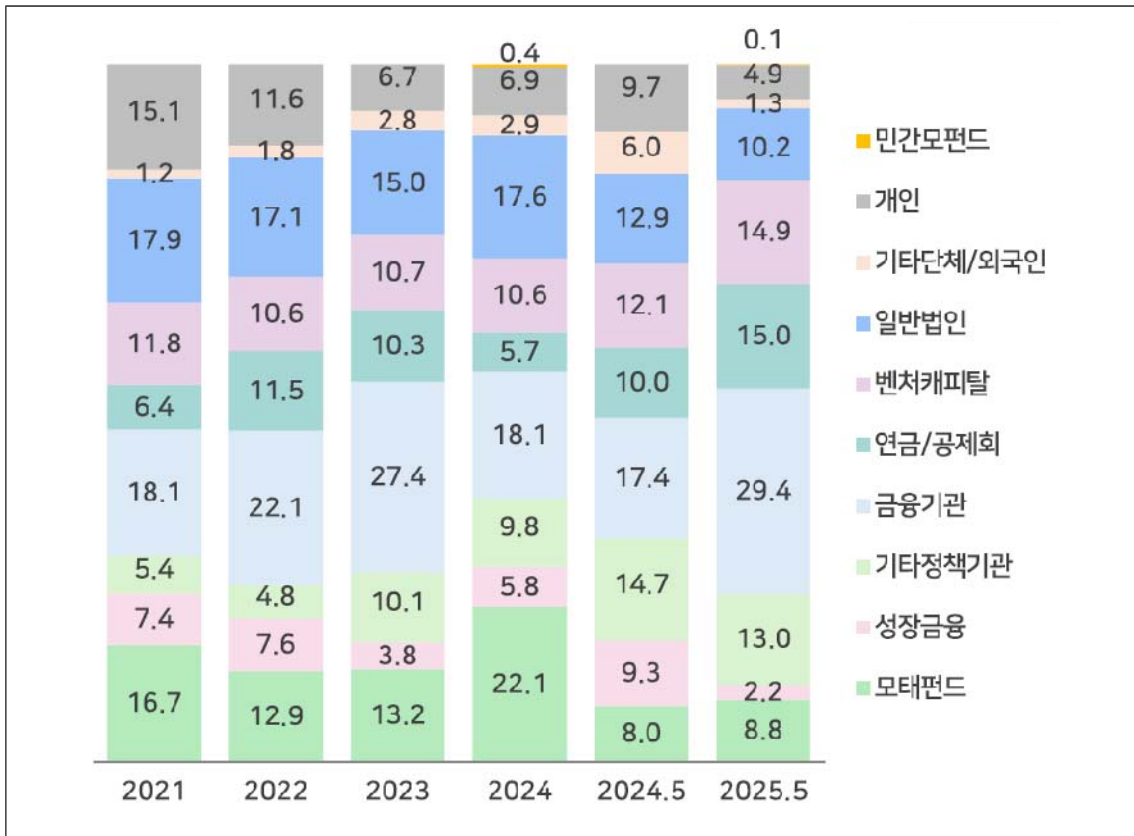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 2024년 전체 신규조합의 조합원은 모태펀드(22.3%), 금융기관(18.1%), 일반법인(17.9%), 벤처캐피탈(10.6%), 기타정책기관(9.8%), 개인(7.0%), 성장금융(5.8%), 연금/공제회(5.1%), 기타단체/외국인(2.9%), 민간모펀드(0.4%)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모태펀드는 2023년(14.5%) 대비 7.8%p, 일반법인은 전년(15.0%) 대비 2.9%p 증가했으며, 이와 반대로 금융기관은 전년(27.4%) 대비 9.3%p, 연금/공제회는 전년(10.3%) 대비 5.2%p 감소함

-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 기준으로는 신규조합 조합원의 29.4%가 금융기관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을 15.0%인 연금/공제회, 14.9%인 벤처캐피탈이 뒤따름

[그림 II -2] 신규조합 조합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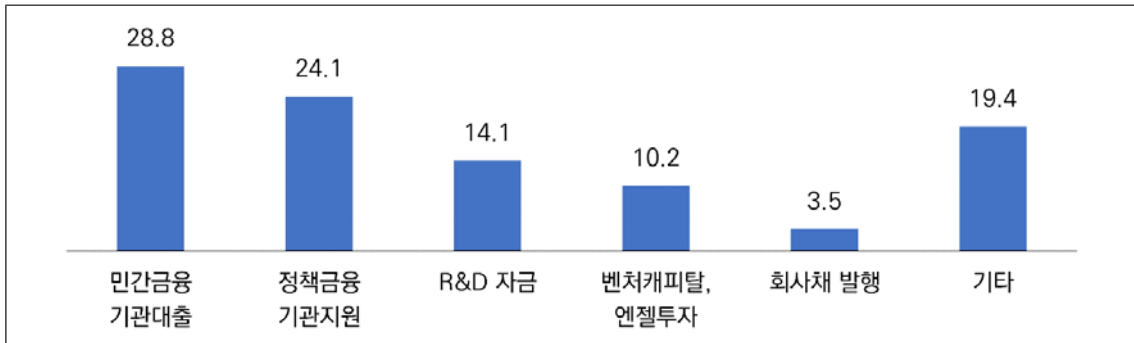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 중소기업부의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벤처기업의 51.0%가 새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평균 조달 규모는 17억 2천만원 수준임
- 전체 신규자금조달 방법의 29.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이용된 방법은 민간금융기관대출임
- 10.2%의 신규자금조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방식으로 이행되었으며 민간금융기관대출(28.8%), 정책금융기관지원(24.1%), R&D 자금(14.1%)보다 적게 활용됨

[그림 II -3] 2023년 신규자금조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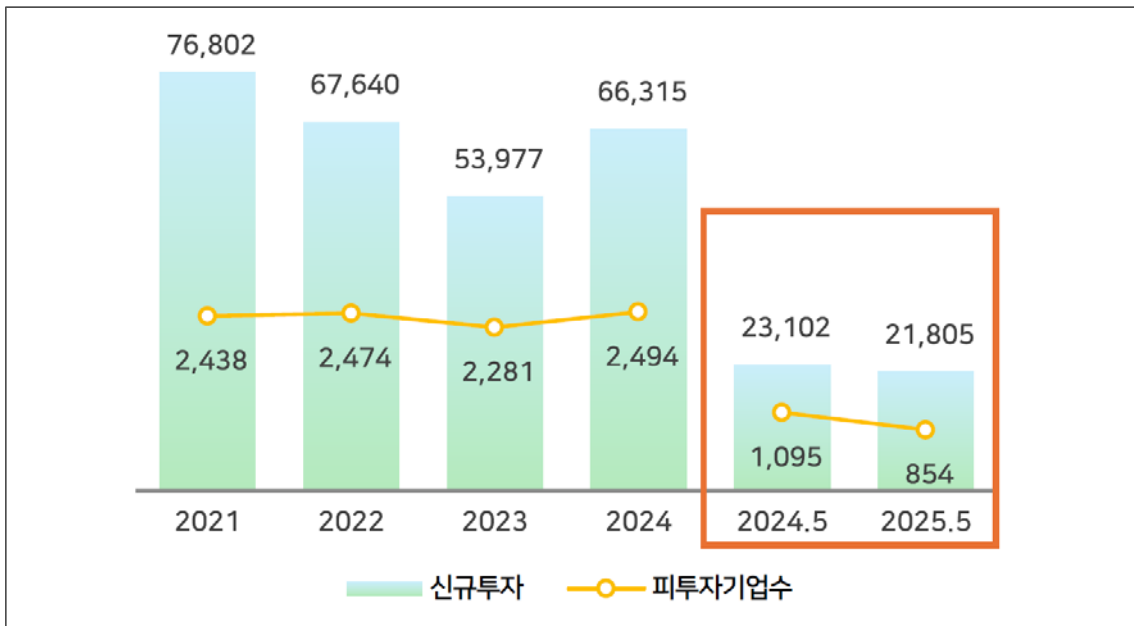


주: 기타 방법에는 개인투자자, 대표자/가족 자금 투자 등이 포함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 2024년 전체 신규투자 금액은 6조 6,315억원으로 2023년 5조 3,977조원에 비해 22.9% 증가하였고, 피투자업체 수는 2,494개로 전년(2,281개) 대비 9.3% 증가했음
- 2025년 5월 기준으로 한 달 내의 신규투자는 854개의 기업에 2조 1,805억원 규모로 이루어짐
 - 전년 동기보다 피투자기업 수는 241개(22.0%), 투자금액은 1,297억원(5.6%) 감소하였음

[그림 II -4] 신규투자 현황

(단위: 개,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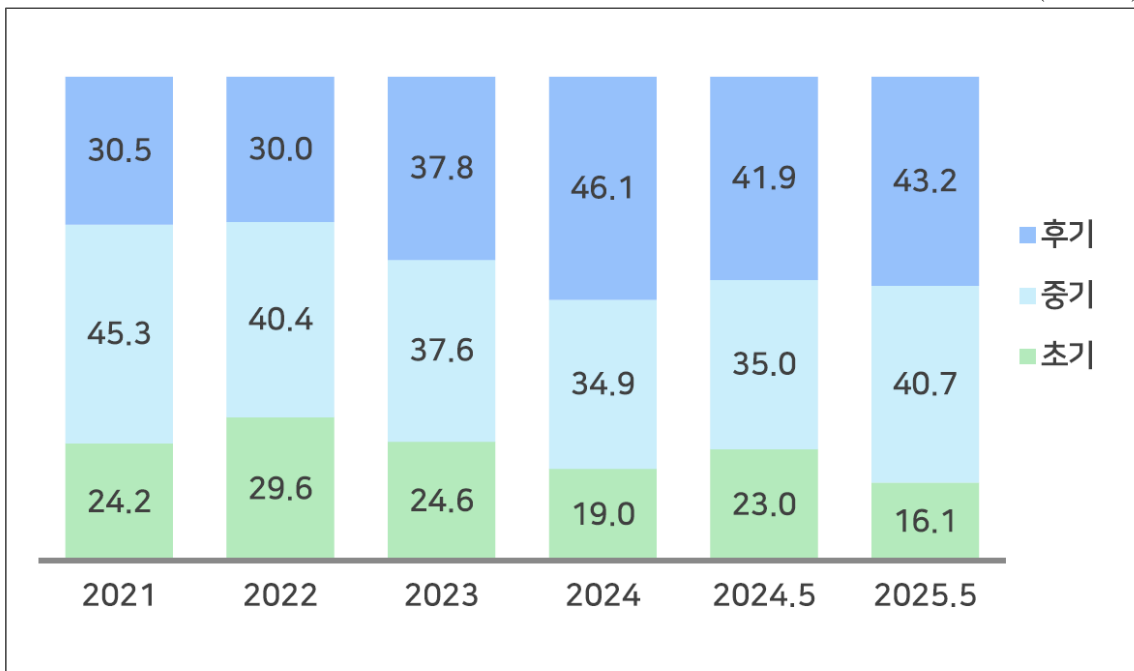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업력별 투자 비중은 초기기업(3년 이하)은 5.6%p 감소, 중기기업(3년 초과 7년 이하)은 2.7%p 감소, 후기기업(7년 초과)은 8.3%p 증가하였음
 - 2023년에는 초기, 중기, 후기기업이 각각 24.6%(1조 3,270억원), 37.6%(2조 320억원), 37.8%(2조 387억원)의 비중을 차지함
 - 2024년에는 초기, 중기, 후기기업이 각각 19.0%(1조 2,633억원), 34.9%(2조 3,119억원), 46.1%(3조 564억원)의 비중을 차지함
 - 2022년 이후로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는 추세임

- 2025년 5월 신규투자금액 기준으로 업력별 투자 비중은 초기기업이 16.1%(3,517억원), 중기기업이 40.7%(8,871억원), 후기기업이 43.2%(9,417억원)로 이루어짐

[그림 II -5]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표 II -11>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5월	2025년 5월
초기(3년 이하)	18,598	20,050	13,270	12,633	5,324	3,517
중기(3년 ~ 7년)	34,814	27,305	20,320	23,119	8,096	8,871
후기(7년 초과)	23,390	20,285	20,387	30,564	9,681	9,417
합계	76,802	67,640	53,977	66,315	23,102	21,805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 2024년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은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ICT서비스, 전기/기계/장비, ICT제조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영상/공연/음반과 유통/서비스, 게임은 소폭 감소하였음
 - 2024년 신규투자 금액에 대해서 전년 대비 ICT서비스 부문은 42.1%(6,146억원), 전기/기계/장비 부문은 41.5%(2,590억원), ICT제조 부문은 31.3%(1,257억원)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의 변화는 ICT서비스, 전기/기계/장비 부문에서 각각 4.3%p, 1.7%p 증가로, 영상/공연/음반과 유통/서비스 부문에서는 각각 2.6%p, 0.9%p 감소로 나타남

- 연 기준으로 2024년의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은 ICT서비스(31.3%), 바이오/의료(16.1%), 전기/기계/장비(13.3%) 순임
 - 2025년 5월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은 ICT서비스가 28.1%로 가장 크며, 바이오/의료 17.5%, 전기/기계/장비 13.3% 등이 뒤따름

<표 II -12>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4월	2025년 4월
ICT제조	3,523	2,987	4,012	5,269	1,776	1,073
ICT서비스	24,283	23,518	14,595	20,741	7,125	6,122
전기/기계/장비	5,172	4,108	6,239	8,829	3,176	2,891
화학/소재	2,297	2,871	3,375	4,330	1,207	1,339
바이오/의료	16,770	11,058	8,844	10,695	3,890	3,809
영상/공연/음반	4,161	4,604	4,098	3,313	1,013	1,444

<표 II -1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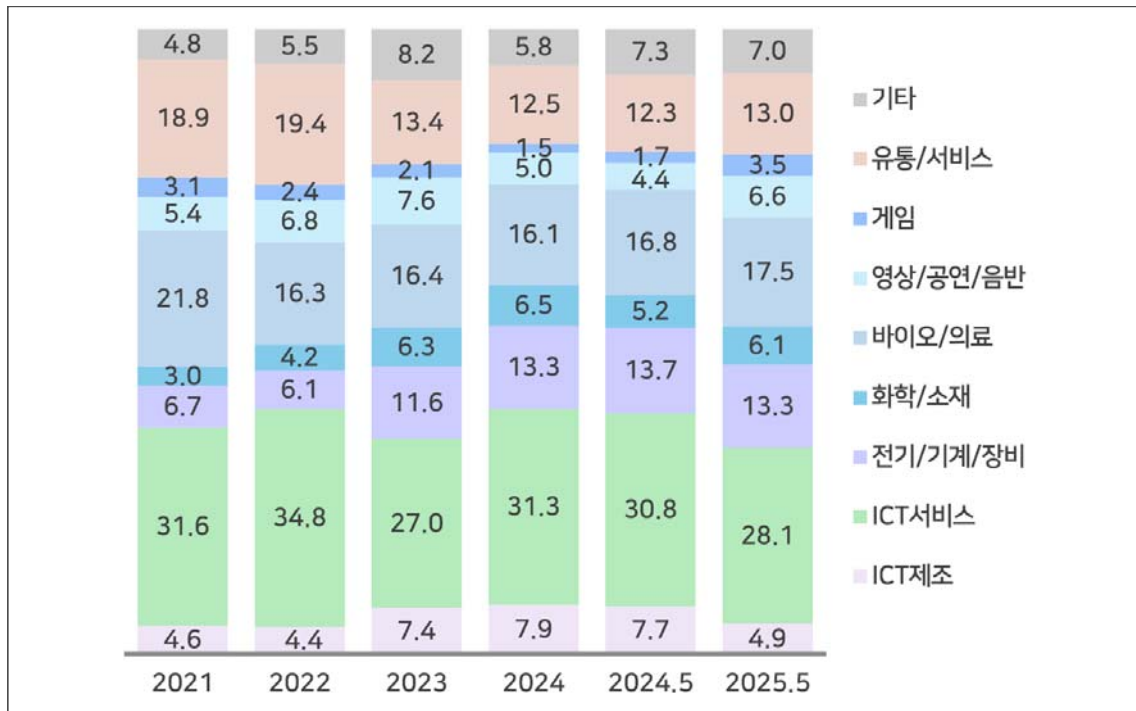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4월	2025년 4월
게임	2,355	1,615	1,154	999	392	765
유통/서비스	14,548	13,126	7,254	8,274	2,840	2,828
기타	3,693	3,753	4,407	3,866	1,682	1,535
합계	76,802	67,640	53,977	66,315	23,102	21,805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그림 II -6]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 2024년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은 총 6조 6,315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선주의 투자액은 4조 4,436억원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다음은 보통주(1조 2,193억원), 투자사채(4,817억원), 프로젝트(2,442억원), 기타(2,427억원) 순임
 - 2024년 신규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우선주 부문에서 7,164억원, 보통주 부문에서 2,985억원, 투자사채 부문에서 753억원, 프로젝트 부문에서 370억원, 기타 부문에서 295억원 증가함

- 2024년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에서 다른 유형들이 감소할 때 보통주는 18.4%, 기타 부문은 3.6%로 2023년과 비교하여 각각 1.3%p, 1.1%p 늘어남
- 우선주는 전체 신규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2023년보다 2.1%p 감소한 67.0%임
- 최근 월 기준으로, 2025년 5월 유형별 신규투자 비중은 우선주가 71.3%로 가장 높으며, 보통주 15.6%, 투자사채 6.8%, 프로젝트 3.7%, 기타 2.7%의 순임

[그림 II -7] 유형별 신규투자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표 II -13>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5월	2025년 5월
보통주	13,678	12,133	9,208	12,193	4,314	3,397
우선주	56,373	48,606	37,272	44,436	15,301	15,544
투자사채	4,575	3,695	4,064	4,817	1,403	1,476
프로젝트	1,702	2,237	2,072	2,442	1,031	814
기타	473	969	1,361	2,427	1,053	575
합계	76,802	67,640	53,977	66,315	23,102	21,805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나. 벤처 및 엔젤투자 현황

1) 벤처투자 현황¹¹⁾

- 최근 5년 동안 벤처투자 실적은 2021년에 7조 6,802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5억 3,977억원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24년에 6조 6,315억원으로 반등하였음
- 2024년의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22.9%나 상승하였으며 다른 실적 부문에서도 직전 연도보다 상승하여 2022년의 실적 수준과 비슷해짐

<표 II -14> 벤처투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투자금액(억원)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22.9%
투자건수(건)	4,230	5,559	5,286	4,807	5,425	12.9%
건당 투자금액(억원)	10.2	13.8	12.8	11.2	12.2	8.9%
피투자기업 수(개)	2,130	2,438	2,474	2,281	2,494	9.3%
기업당 투자금액(억원)	20.2	31.5	27.3	23.7	26.6	1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펀드결성 10.6조원」, 보도자료, 2025. 2. 12.

2) 신기술사업투자 현황¹²⁾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¹³⁾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포괄하여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매 분기 발표하고 있음¹⁴⁾
- 국내 벤처투자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 과거 벤처투자 통계 범위를 신기술금융사까지 확대하여 벤처투자 통계에 포함함

11) 중소벤처기업부,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보도자료, 2022. 1. 27.

12)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펀드결성 10.6조원」, 보도자료, 2025. 2. 12.

13)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보도자료, 2023. 4. 20.

14) 중소벤처기업부, 「'23년 상반기 '벤처투자' 4.4조원·'펀드결성' 4.6조원」, 보도자료, 2023. 8. 10.

-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 등의 투자총액은 전체 시장 규모의 92~94%, 펀드
결성총액은 전체의 98~99% 수준임
- 2024년 신기술금융사 투자의 경우 2023년보다 투자건수와 피투자기업 수는 증가
했으나 총투자금액은 줄어 투자건당 및 피투자기업당 투자금액의 크기는 감소함
 - 2024년 신기술금융사 등의 투자금액은 5조 3,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4억원
(3.7%) 감소하였음
 - 이와 달리, 같은 기간 투자건수는 전년 대비 29.4% 증가한 2,988건, 피투자기업
수는 26.2% 증가한 2,203개로 나타남
 - 투자건수와 피투자기업 수의 증가 및 투자금액의 감소로 투자건당 투자금액은
25.5% 하락한 17.8억원, 피투자기업당 투자금액은 23.7% 하락한 24.1억원임

〈표 II -15〉 신기술금융사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투자금액	37,917	82,569	57,066	55,156	53,142	△3.7%
투자건수	1,924	2,504	2,184	2,309	2,988	29.4%
건당 투자금액	19.7	33.0	26.1	23.9	17.8	△25.5%
피투자기업 수	1,652	2,151	1,528	1,745	2,203	26.2%
기업당 투자금액	23.0	38.4	37.3	31.6	24.1	△23.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펀드결성 10.6조원」, 보도자료, 2025. 2. 12.

3) 엔젤투자 현황

- 2023년 국내 엔젤투자는 규모가 전년도에 이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투
자액, 투자자, 투자건수, 피투자기업 수에서 모두 나타남
 - 2023년 투자액은 5,783억원, 투자자는 1만 1,684명, 투자건수는 1만 3,918건, 피
투자기업 수는 1,336개로 추정됨¹⁵⁾

15) 본문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뉴스레터에 수록한 통계자료임. 엔젤투자는 벤처
캐피탈과 달리 개인 투자실적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없어 공식 통계는 소득공제 신청자를
토대로 엔젤투자 규모를 산정하였음.

- 엔젤투자액과 투자건수 및 피투자기업 수는 2021년에 가장 컸으며, 투자자는 2020년에 가장 많았음

<표 II -16> 개인 엔젤투자 규모(소득공제 기준)

(단위: 억원, 명, 건, 개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투자액	4,653	6,234	9,671	5,987	5,783
투자자	12,172	14,371	14,248	12,004	11,684
투자건수	15,861	17,554	16,676	14,518	13,918
피투자기업 수	1,113	1,353	1,642	1,510	1,336

주: 해당 통계는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엔젤투자는 개인 투자실적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의무가 없어 국내 엔젤투자의 통계는 소득공제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연도 이후 3개 과세연도 중 하나의 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연도의 통계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 <https://narangdesign.com/mail/kban/202501/b1.php>, 검색일자: 2025. 3. 18.

- 2023년 개인투자조합 신규 결성액은 최대치였던 2022년에 비해 20.4% 감소한 5,494억원이며, 결성조합 수는 70개 감소한 926개임
 - 2022년까지 신규 결성액과 결성조합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감소하였음
 - 특히 2021년에 결성과 관련된 실적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크게 늘었으며, 이때의 증가율은 각각 88.7%, 87.8%로 2019년 이후 기간 중 가장 큼

<표 II -17> 개인투자조합 신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결성금액	2,846	3,334	6,292	6,898	5,494	
전년 대비	증감	816	488	2,958	606	△1,404
	증감률	40.2	17.1	88.7	9.6	△20.4
결성조합 수	336	485	911	996	926	
조합당 평균 결성액	8.47	6.87	6.91	6.93	5.93	

주: 해당 통계는 2025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 <https://narangdesign.com/mail/kban/202504/b1.php>, 검색일자: 2025. 6. 26.

- 2023년에 운용 중인 개인투자조합은 4,044개로 전년 대비 815개가 증가하였고 결성액도 5,012억원이 증가한 2조 7,495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투자건과 투자기업 및 투자금액의 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조합 수와 결성액은 2019년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투자건, 투자기업, 및 투자금액의 규모는 2022년에 가장 높았으나 2023년에 감소하였으며 이 중 투자금액은 직전 연도 대비 12.7% 이상(약 776억원) 감소함

〈표 II -18〉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실적 현황

(단위: 억원, 건,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합수(운용)	979	1,437	2,292	3,229	4,044
결성액	6,581	9,761	15,871	22,483	27,495
투자건	930	1,299	2,011	2,281	2,101
투자기업	597	867	1,258	1,490	1,401
투자금액	1,902	2,605	5,367	6,097	5,321

주: 해당 통계는 2025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 <https://narangdesign.com/mail/kban/202504/b1.php>, 검색일자: 2025. 6. 26.

다. 벤처투자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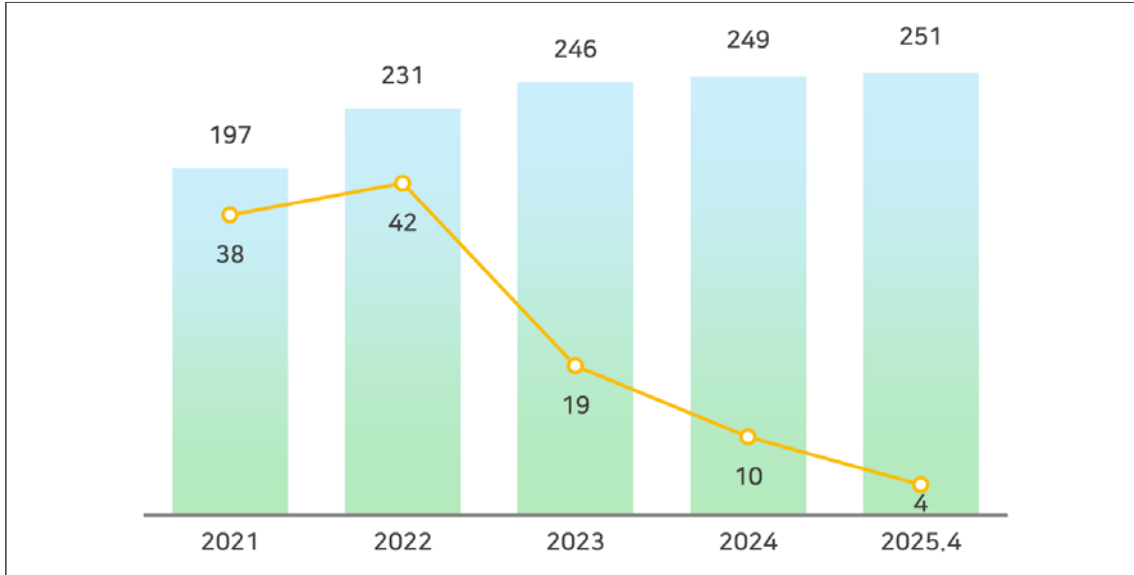
-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에 의거하여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동법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의미함
 - 과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불렸으나 2023년 6월 동법의 개정으로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함¹⁶⁾
- 2024년 기준 운영 중인 벤처투자회사 수는 249개로 직전 연도와 동일하여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증가세가 멈추었으며, 매년 새로 등록하는 벤처투자회사 수는 2022년부터 감소하여 2024년에 10개로 줄어듦
 - 2017년 10월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벤처투자회사의 수는 증가세는 2022년까지 유지했었음

1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보도자료, 2023. 6. 13.

- 2025년 4월에는 벤처투자회사 신규등록이 4건이 발생함

[그림 II -8] 벤처투자회사 신규등록 현황

(단위: 개사)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4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5. 30.

라. 벤처기업 현황¹⁷⁾

1) 경영성과 및 재무 현황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2023년을 기준으로 3만 6,959개가 운영 중임
 - 이는 2022년 3만 2,224개에서 4,735개 증가한 것으로 14.7%의 증가율을 보임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매출총액은 241조 7,865억원이며 영업이익은 4,220억원의 적자, 순이익은 5조 1,995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2023년 벤처기업의 매출총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으나 늘어난 벤처기업의 수로 인해 평균 매출액은 65.4억원으로 전년도와 다르지 않음
 -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0.1억원, 평균 순이익은 -1.4억원으로 추정됨
 - 금융비용(이자비용)은 5조 2,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021억원(39.9%), 평균 금융비용은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0.2억원(22.2%) 증가함

17)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표 II -19>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매출액	총액	2,158,344	2,077,094	2,417,865	14.7
	평균	62.9	65.4	65.4	0.0
영업이익	총액	92,498	11,520	-4,220	△136.6
	평균	2.7	0.4	-0.1	△130.6
금융비용 (이자비용)	총액	34,080	37,687	52,708	39.9
	평균	1.0	1.2	1.4	22.2
순이익	총액	58,361	-26,976	-51,995	△92.7
	평균	1.7	-0.8	-1.4	△67.9
매출액영업이익률		4.3	0.5	-0.2	-
매출액순이익률		2.7	-1.3	-2.2	-
개수		34,308	32,224	36,959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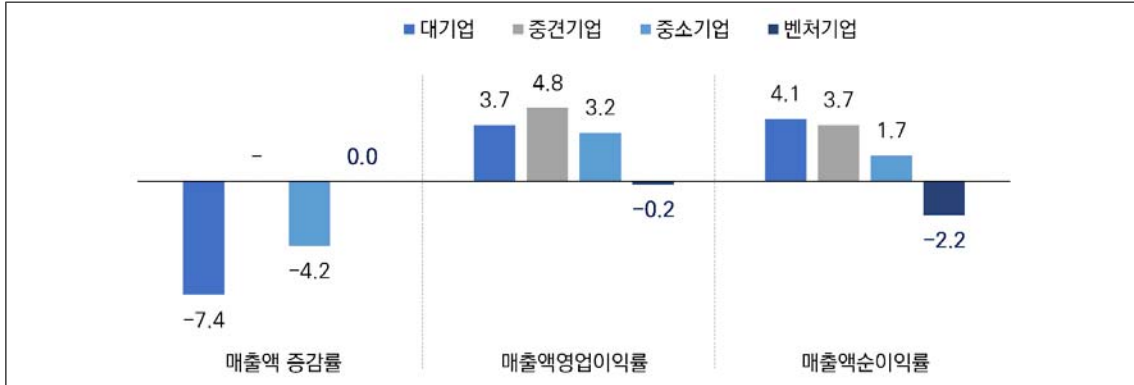
주: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산출한 결과값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 다른 기업 유형의 이익률이 양(+)의 값을 갖는 것과 달리 2023년 벤처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2%, 매출액순이익률은 -2.2%를 보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매출액과 비교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양(+)의 값을 가짐
 - 대기업은 매출액증감률은 -7.4%이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7%, 매출액순이익률은 4.1%임
 - 중견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8%, 매출액순이익률은 3.7%임¹⁸⁾
 - 중소기업은 매출액증감률이 -4.2%이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2%, 매출액순이익률이 1.7%임

18) 원자료인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지표는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2024. 10.)』의 자료를 기초하여 계산하였는데, 중견기업은 대상기업의 수를 공개하지 않아 매출액증감률을 산출하지 못함.

[그림 II -9] 기업 유형별 경영성과 비교(2023년)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 벤처기업의 2023년 기준 자산총계는 299조 7,274억원, 부채총계는 165조 6,995억원, 자본총계는 134조 279억원임

○ 기업별로 평균 자산은 81.1억원, 평균 부채는 44.8억원, 평균 자본은 36.3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 전체 벤처기업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전년보다 15.7%, 21.8%, 9.0% 증가함
- 기업 평균으로 보았을 때 자산과 부채는 각각 전년 대비 0.9%, 6.2%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4.9%가 감소함

<표 II -20> 벤처기업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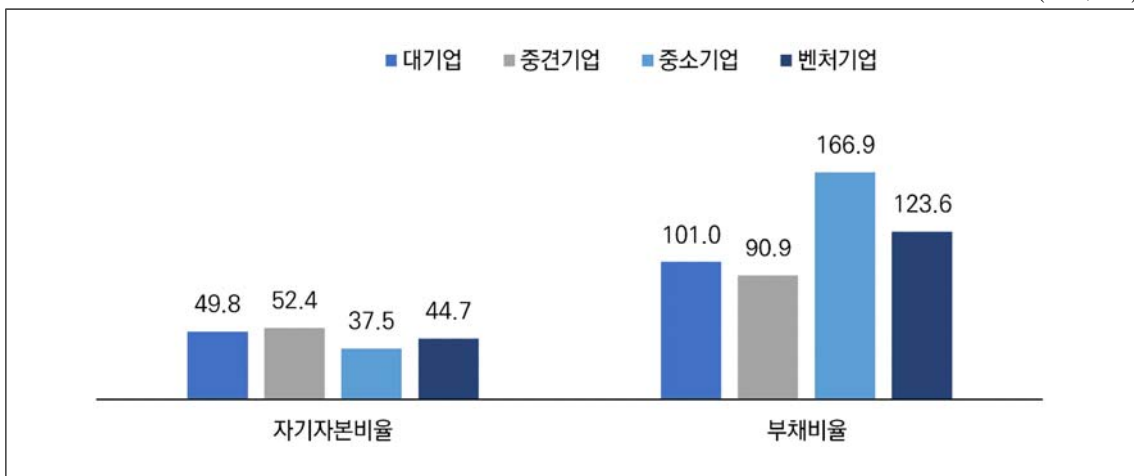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자산총계	총액	2,516,296	2,589,712	2,997,274	15.7
	평균	73.3	80.4	81.1	0.9
부채총계	총액	1,340,059	1,360,640	1,656,995	21.8
	평균	39.1	42.2	44.8	6.2
자본총계	총액	1,176,237	1,229,072	1,340,279	9.0
	평균	34.3	38.1	36.3	△4.9
자기자본비율(%)		46.7	47.5	44.7	-
부채비율(%)		113.9	110.7	123.6	-
개수		34,308	32,224	36,959	14.7

주: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산출한 결과값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022년보다 3.8%p 감소한 44.7%, 부채비율은 12.9%p 증가한 123.6%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중소기업(37.5%)보다 높으나 대기업(49.8%)과 중견기업(52.4%)보다는 낮음
 - 이와 반대로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대기업(101.0%), 중견기업(90.9%)보다 높으며 중소기업(166.9%)보다는 낮음

[그림 II -10] 기업 유형별 재무 현황 비교(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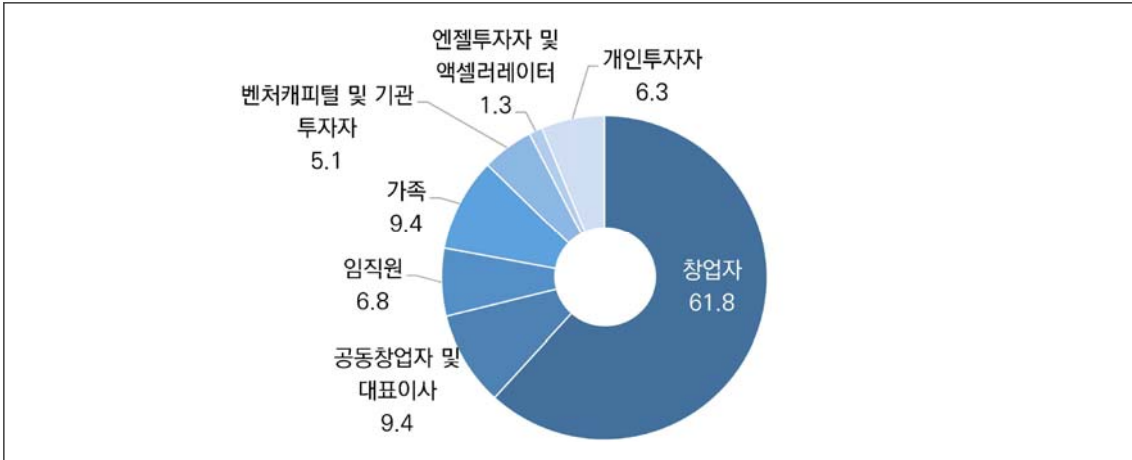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 2023년 기준으로 창업자가 전체 벤처기업의 61.8%의 지분을 보유함
 - 창업자 다음으로 가족과 공동창업자 및 대표이사가 9.4%씩, 임직원이 6.8%, 개인투자자 6.3%, 벤처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가 5.1%, 엔젤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가 1.3%의 지분을 차례로 가지고 있음
 -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지분을 갖는 비중은 다른 유형들보다 비교적 낮음

[그림 II -11] 지분 현황(2023년)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2) 업종 및 업력별 분포 현황

-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 중 제조업은 56.3%(첨단제조업(24.5%), 일반제조업(31.8%)), 서비스업은 40.9%(첨단서비스업(25.2%), 일반서비스업(15.7%)), 기타 업종은 2.7%의 비중을 차지함
 - 제조업 중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가 1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계/자동차/금속이 13.5%로 높음
 - 서비스업은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가 15.7%,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 서비스는 13.9%,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11.2%의 비중을 가짐
 - 2021년부터 전체 벤처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표 II -21> 업종별 벤처기업 분포 현황

(단위: %)

업종		2021년	2022년	2023년	
제조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7.9	7.9	7.8
		의료/제약	3.5	3.8	3.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0.2	10.1	9.9
		통신기기/방송기기	3.5	3.6	3.3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16.6	13.6	13.5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20.2	18.3	18.3

<표 II -21>의 계속

(단위: %)

업종		2021년	2022년	2023년	
서비스	첨단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1.4	13.6	13.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0.5	11.4	11.2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3.7	15.0	15.7
기타		2.3	2.7	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 2023년 기준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10.8년이며, 그중 업력이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하인 벤처기업의 비율은 48.6%임
 - 조사 기준인 업력 구분에 따른 비중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 다만 21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벤처기업의 비중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3.6%의 비중을 차지함

<표 II -22> 업력별 벤처기업 분포

(단위: %, 년)

업력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이하	13.5	14.2	11.7
3년 초과~10년 이하	47.2	46.3	48.6
10년 초과~20년 이하	26.9	27.2	26.1
21년 이상	12.4	12.3	13.6
평균 업력	10.6	10.4	10.8

주: 2021년 기준 통계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통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 기업 성장단계로 구분할 경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9.7%), 초기성장기(28.4%), 성숙기(24.4%), 창업기(9.7%), 쇠퇴기(2.7%) 순의 비중으로 구성됨
 - 2022년에 비해 초기성장기의 비중이 4.4%p 증가하고 고도성장기의 비중이 1.8%p 증가한 데 반해, 성숙기의 비중은 6.5%p나 감소하였음

<표 II -23> 벤처기업 성장단계 분포

(단위: %)

기업 성장단계	2021년	2022년	2023년
창업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준비하는 단계)	9.9	9.5	9.7
초기성장기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어 매출이 처음 발생하는 단계)	32.8	24.0	28.4
고도성장기 (제품 및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단계)	32.9	32.9	34.7
성숙기 (고도성장기를 지나고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	23.4	30.9	24.4
쇠퇴기 (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0.9	2.7	2.7

주: 2021년 기준 통계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통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3) 혁신 및 역량 현황

- 경쟁 회사와 비교해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 회사의 역량(개발, 제조, 마케팅) 평가를 종합하면 벤처기업은 개발 역량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 개발 역량이 높다고 평가한 비율은 87.4%로, 제조 역량 77.2%, 마케팅 역량 57.5% 순으로 높음
 - 매우 낮음으로 답한 비중 역시 개발 역량이 0.9%로 가장 낮으며, 마케팅 역량이 4.0%로 가장 높음

- 두 가지 경쟁 전략(원가 우위,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문항에 제품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초점을 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제품 고부가가치화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율은 75.2%, 원가우위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율은 66.0%임

<표 II -24> 역량별 경쟁력 및 경쟁 전략 초점 비교 현황(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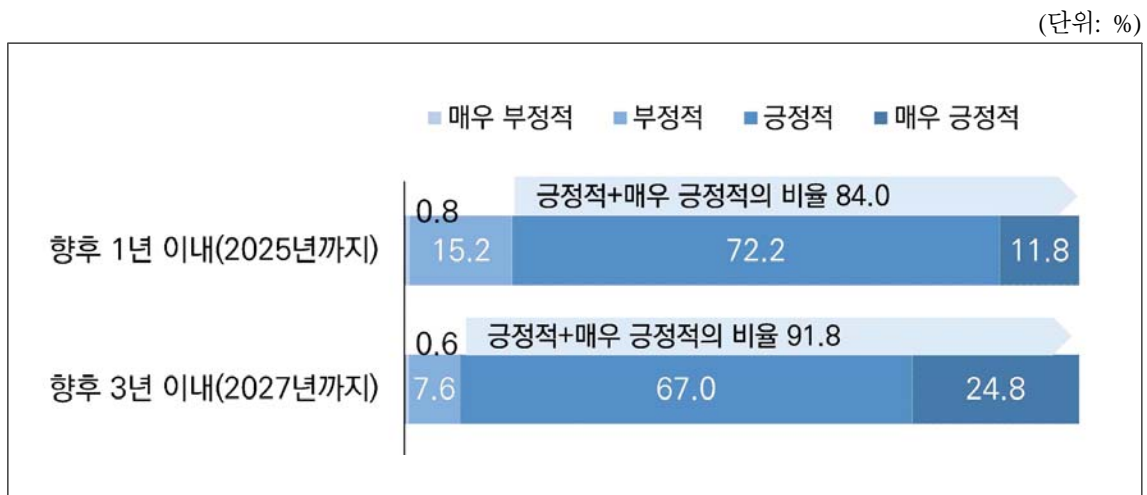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역량	개발 역량	0.9	11.7	68.1	19.3
	제조 역량	2.4	20.4	64.3	12.9
	마케팅 역량	4.0	38.5	50.7	6.8
경쟁전략초점	원가우위 수준	1.1	32.9	59.9	6.1
	제품 고부가가치화 수준	0.6	24.2	65.8	9.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 매출 및 고용에 대한 성장 전망에 관해 향후 1년 이내의 성장을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84.0%, 향후 3년 이내의 성장을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91.8%임
- “매우 긍정적”에 답한 비율은 향후 1년 이내의 성장에 대해서는 11.8%, 향후 3년 이내의 성장에 대해서는 24.8%로, 벤처기업들은 장기적인 미래를 단기적인 미래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임
- “매우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향후 1년 이내는 0.8%, 향후 3년 이내는 0.6%로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II -12] 장기적 성장 전망(매출 및 고용)(2023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4) 투자유치 경험 및 애로사항

- 투자유치를 경험한 벤처기업의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35.6%로, 2022년의 29.2%보다 6.4% 증가하였음
 - 투자유치의 유형은 벤처캐피탈이 16.7%로 가장 많았으며 엔젤투자자 10.2%, 액셀러레이터 6.9%, 크라우드펀딩 1.9% 순임
 - 모든 유형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증가함

〈표 II -25〉 연도별 투자유치 경험

(단위: %)

구분	2021년 ¹⁾	2022년	2023년
투자유치 경험 있음 ²⁾	-	29.2	35.6
크라우드펀딩	1.8	1.5	1.9
엔젤투자자	5.1	9.0	10.2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		3.8	6.9
벤처캐피탈(VC)	7.6	13.8	16.7
투자유치 경험 없음	-	71.8	64.4

주: 1) 2021년 기준 조사에서는 투자유치 경험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고 엔젤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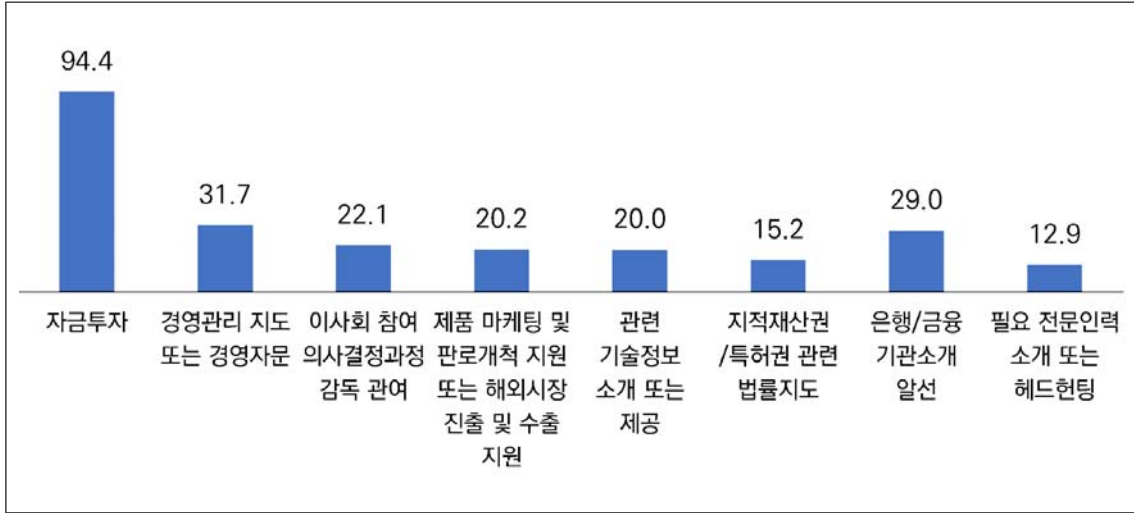
2) 2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유치 경험도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구성비로 재집계한 통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 투자유치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벤처캐피탈이 도움된 분야에 대해 “자금투자”를 답한 비율은 94.4%로 가장 높음
 - “자금투자”가 아닌 다른 분야들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를 조금 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함
 - 자금투자를 제외하면 “경영관리 지도 또는 경영자문”이 31.7%, “은행/금융기관 소개 알선”이 29.0%로 도움받았다고 응답함
 - 4점 척도로 계산한 점수에서도 “자금투자”는 3.51점으로 가장 높으며, “매우 도움됨”에 응답한 비율도 52.2%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음
 - 반면 “지적재산권/특허권 관련 법률지도”와 “필요 전문인력 소개 또는 헤드헌팅”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2%, 12.9%로 낮고 4점 척도 점수도 3.13, 3.17로 낮음

[그림 II -13] 벤처캐피탈 도움 분야

(단위: %)



주: 벤처캐피탈로부터 도움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814개 기업에 대해서 각 항목에 복수응답을 통해 구한 통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표 II -26> 벤처캐피탈 도움 정도

(단위: 개, 점, %)

구분	경험 기업	4점 척도	매우 도움됨	조금 도움됨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자금투자	6,436	3.51	52.2	46.6	1.0	0.1
경영관리 지도 또는 경영자문	2,157	3.38	44.2	49.7	6.0	-
이사회 참여 의사결정과정 감독 관여	1,504	3.22	38.2	46.8	14.0	1.0
제품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또는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1,375	3.23	35.9	52.1	10.6	1.4
관련 기술정보 소개 또는 제공	1,366	3.30	39.8	50.4	9.6	0.2
지적재산권/특허권 관련 법률지도	1,037	3.13	26.1	61.2	12.0	0.7
은행/금융기관 소개 알선	1,975	3.33	42.5	49.7	6.3	1.6
필요 전문인력 소개 또는 헤드헌팅	880	3.17	36.3	49.3	9.3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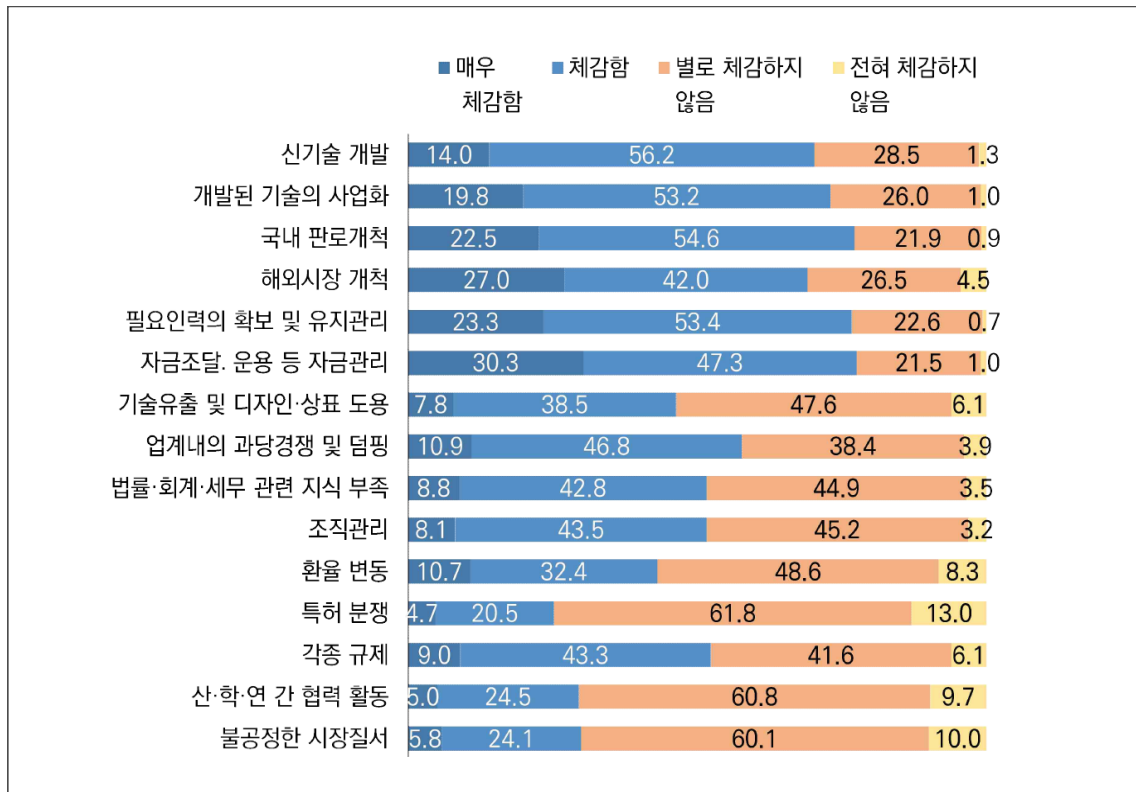
주: 1점-전혀 도움되지 않음, 2점-별로 도움되지 않음, 3점-조금 도움 됨, 4점-매우 도움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 벤처기업에 대해 경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은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로 체감 비율이 77.6%(매우 체감함 + 체감함)로 나타남
 -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항목 중 “국내 판로개척”(77.1%),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76.7%),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73.0%), “신기술 개발”(70.2%)은 체감 비율이 70%가 넘음
 -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에 대해 “매우 체감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30.3%로 모든 경영 애로사항 중에 가장 높음
 - 경영 애로사항으로 체감 비율이 낮은 유형은 “특허 분쟁”(25.2%), “산·학·연 간 협력 활동”(29.5%), “불공정한 시장질서”(29.9%)로 이들에 대한 체감 응답 비율은 30%를 넘지 않음

[그림 II -14] 경영 애로사항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사)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4. 12.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¹⁹⁾

가. 국내 연구

□ 김진수·김재진(2002)

- 정부지원제도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수정하고, 벤처기업에 직접적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재진·양동우(2014)

- 벤처캐피털 투자와 기술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함
 - 벤처캐피털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R&D 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
 - 벤처캐피털이 공동투자한 기업 또는 투자지분율이 월등하게 높은 투자자가 있는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기술적 성과가 높은 것을 보임
 -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술인력이 많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해당 결과는 벤처캐피털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리인 비용을 낮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김재진·홍범교(2014)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

19) 홍병진 외(2022),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서 발췌함

- 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지원제도의 유효성이 있는 것을 보임
- 조세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가 비수혜기업 대비 약 0.2~0.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김재진·기은선(2016)

- 벤처기업과 전문적·비전문적 벤처기업 투자자로 구분하여 국내 벤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벤처기업을 성장 단계에 따라 창업·성장·인수 및 합병의 단계로 나누고, 벤처캐피털을 투자 및 회수 단계에 따라 투자·보유·양도의 단계로 나누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
- 설문조사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을 평가해 봄으로써 벤처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 방안을 제시

□ 박성욱·김영훈(2016)

-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없으며 과거 연구에 대한 요약, 벤처캐피털투자와 엔젤투자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소득 중 특정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특례를 인정하고,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제안함

□ 강대권·전병욱(2016)

- 벤처캐피털의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편된 반면,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투자조합의 형태를 가지는 벤처캐피털은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형평 및 재원조달의 중립성 측면에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하고 특정 출자방식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

□ 김승찬·김홍근(2019)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벤처투자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재무 특성, 제품서비스 특성, 시장특성, 경영자 특성 순으로 벤처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박지영·신현한(2020)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전후의 벤처캐피털 지원 여부, 유형 및 지분율에 따라 수혜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봄
 - 벤처캐피털의 지원 여부는 벤처기업 상장 이전에만 특허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벤처캐피털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는 역U자형 관계를 보임

□ 김재진·기은선(2020)

-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자에 대해서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에 대한 효과성 파악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성을 파악하였으며, 동 제도가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지만 지원방식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함

□ 김학수·문운상·우석진·김도형(2020)

- 2020년에 일몰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대한 평가 실시
 - 소득공제제도의 투자 유인효과와 엔젤투자 수혜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정 수준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제도의 단순화와 중개기관의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간접투자 공제율 조정을 제안

나. 해외 연구

□ Barry, Muscarella, Peavy and Vetsuypens(1990)

- 1978년부터 1987년 사이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 기업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의 효과를 분석
 -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이 IPO시 기업과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켜 할인 발행 폭이 작아지는 것을 보임

□ Meggison and Weiss(1991)

- 벤처캐피탈의 정보 비대칭 완화 효과에 대해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 벤처캐피탈의 정보 비대칭 완화 효과는 수혜 벤처기업들이 더 명성 있는 IPO 주관회사와 회계 감사인을 선임할 기회를 얻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참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Jeng and Wells(2000)

- 21개국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함
 - 정부 정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양도소득세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Wadhwa and Kotha(2006)

- 벤처캐피탈 지원 여부에 따른 경영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봄
 -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임
 - 벤처캐피탈은 수혜기업의 기술자문과 같은 경영지원 활동과 감시 및 통제와 같은 모니터링 역할 등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

□ Chemmanur, Loutskina and Tian(2014)

- 벤처캐피탈 지원과 기업 기술혁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함

- 벤처캐피털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수혜 벤처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활발해지고, R&D를 통한 기술혁신이 확대 및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보임
- 특히 수혜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그들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간 지식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기업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에서 혁신성과가 두드러지게 향상됨을 보임

2. 국제 비교

가. 미국

1) 벤처지원제도 개요

- 미국의 연방과 주(state) 차원에서 각각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법인투자자에게는 일부 주에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미국 연방정부는 일반법인에 벤처투자과 관련된 세제지원은 운영하지 않음
 -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으로 과세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투자조합 등의 경우 도관이론(pass-through)에 근거하여 과세받지 않음
 - 개인투자자는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로부터 투자세액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적격소기업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의 처분에 따른 공제 및 과세이연 등을 제공함
 - QSBS에 따른 직접적인 지분 관계에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친척, 임원 기업에 투자해도 신주를 직접 발행 형태로 취득하면 가능함
 - 일부 주정부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적격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여하나, 주마다 적격기업의 기준과 방식이 다름
-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2개 주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율, 연간공제한도, 환급 및 이연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요건과 내용은 주별로 차이가 있음

2) 법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가) 일반법인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벤처투자를 유도할 목적의 세제혜택을 일반법인에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연방 차원의 세제지원에서는 자본손실(capital loss)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서만 상계될 수 있으며,²⁰⁾ 수동적 활동 손실(passive activity loss)(10% 미만, LP를 통해 보유한 투자 포함)은 수동적 활동 소득(passive activity income)에서 공제가 가능함²¹⁾
- 도관이론(pass-through)은 VC 투자에 사용되는 기업의 형태에 대부분 적용됨
 - 상장 VC 펀드에는 도관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함

나) 투자조합

- 투자조합(partnership)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과세되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도관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중으로 과세받지 않음²²⁾
- 투자조합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조합의 개인 구성원들이 이를 분담하여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함²³⁾
 - 조합이 비과세 이자나 자본이득을 실현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득은 조합원이 조합의 출자지분에 준하여 배분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됨²⁴⁾
 - 조합의 손실을 나누는 경우 공제는 조정된 각 조합원 지분의 기초가액까지만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 말에 허용되고, 초과분은 조합에 다시 환급되는 회계연도 말에 공제가 가능함²⁵⁾

20) 미국 국세법 §1212 Capital loss carrybacks and carryovers

21) 미국 국세법 §469 Passive activity losses and credits limited

22) 미국 국세법 §701 Partners, not partnership, subject to tax

23) 미국 국세법 §701 Partners, not partnership, subject to tax

24) 미국 국세법 §704 Partner's distributive share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²⁶⁾

- 1980년 미국 의회는 기존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을 개정하면서 「소기업 투자촉진법(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을 제정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는 미등록 폐쇄형 투자회사 형태를 도입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벤처투자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 지원 및 전문 경영 능력을 필요한 기업에 대해 경영을 지원하고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를 말함
 - 공모시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중소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임

- BDC는 자산의 70% 이상을 적격 포트폴리오 회사(Eligible Portfolio Company)에 투자해야 하며 중요한 경영적인 지원(significant managerial assistance)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적격 포트폴리오 회사는 미국 내 비상장기업 또는 시가총액이 2.5억달러 이하인 소규모 상장기업을 뜻함²⁷⁾

- 적격투자는 지분 또는 채권투자를 모두 허용하며, 이때 BDC는 분산투자의 요건을 만족하고 수입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음
 - 이와 함께 「투자회사법」의 일반 폐쇄형 투자회사와 비교하면 레버리지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운용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있음

3) 연방정부의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제도²⁸⁾

가)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²⁹⁾

- 2025년 7월 5일 이후 취득한 적격소기업주식(QSBS)에 대해서 5년 이상 보유 요건

25) 미국 국세법 §704 Partner's distributive share

26) 박용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특징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10, 2022.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https://www.sec.gov/info/smallbus/secg/rule2a-46-secg.htm>, 검색일자: 2025. 2. 20.

28) 미국 국세청,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In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Cat. No. 15093R」

29) 미국 국세법 §1202 Partial exclusion for gain from certain small business stock

을 폐지하고 최소 3년 보유 요건과 함께 보유기간별 면세율을 설정함³⁰⁾

- 2025년 7월 4일 서명/발효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QSBS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개정됨
- 2025년 7월 5일 이후에 취득한 QSBS를 다음 기간 동안 보유하고 양도·교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의 공제율(applicable percentage)을 적용함
 - 3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50% 비과세
 - 4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75% 비과세
 -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0% 비과세

- 2010년 9월 28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취득한 QSBS를 5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100%가 과세에서 면제됨
 -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그 이전일 경우 구간에 따라 비과세율이 다름
 - 2009년 2월 17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의 50% 비과세
 - 2009년 2월 18일부터 2010년 9월 27일 사이에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의 75% 비과세
 -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은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직접적인 지분 관계에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친척, 임원 기업에 투자해도 신주를 직접 발행 형태로 취득하면 가능함

- 다만 발행 전후 2년(총 4년)간 회사가 투자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만달러, 2% 초과 자사주를 환매하면 해당 주식은 QSBS 자격을 잃음
 - 이때의 특수관계인은 IRC Section 267(b), 707(b) 기준을 따름
 - 267(b)는 개인, 법인, 신탁 등 전반을 다룸
 - 707(b)는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따로 다룸

- IRC Section 267(b)에서 정의하는 관계는 다음과 같음
 1. 가족 구성원(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및 자녀)
 2. 개인 또는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유통주식(outstanding stock) 가치의 50%를 초과 보유

30) 미국 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text>, 검색일자: 2025. 7. 10.

3. 같은 통제 집단(controlled group)의 구성원인 두 개의 법인
4. 하나의 신탁에서의 위탁자와 수탁자
5. 동일한 사람이 두 신탁 모두의 위탁자인 경우, 두 신탁 각각의 수탁자
6. 하나의 신탁의 수탁자와 그 신탁의 수혜자
7. 동일한 사람이 두 신탁 모두의 위탁자인 경우, 하나의 신탁의 수탁자와 다른 신탁의 수혜자
8. 신탁의 수탁자이고 해당 신탁이나 그 위탁자인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
9. 면세 대상인 특정 교육기관 및 자선단체와 관련된 개인 및 조직으로서 해당 개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거나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통제되는 개인 및 조직
10. 동일한 사람이 다음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 및 파트너십
 - 회사의 유통주식 가치의 50% 초과
 - 합자회사의 자본 지분 또는 이익 지분이 50% 초과
11. 동일한 사람이 각 법인의 유통주식 가치의 5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두 개의 다른 S 법인
12. 동일한 사람이 각 법인의 유통주식 가치의 5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S 법인과 C 법인
13. 금전적 유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집행인과 수혜자

□ IRC Section 707(b)는 파트너십과 관련된 특수관계를 서술함

-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개인 또는 파트너십과 해당 파트너십 간의 거래에 대해서 언급함

□ 하나 이상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처분하여 적격 이익이 발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식 발행 시점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서 이전 연도에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7월 4일 이전 발행한 주식: 1,000만달러(부부 개별 신고 시 500만달러)
 - 2025년 7월 5일 이후 발행한 주식: 1,500만달러(부부 개별 신고 시 750만달러)

-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1,500만달러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을 적용함
 - 해당 과세연도에서 납세자가 처분한 해당 주식 종목의 취득원가(adjusted basis)의 10배의 금액(단 최초 주식 취득 후 추가된 원가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음)
- 적격소기업주식으로서 과세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미국 내 C 법인(C Corporation) 주식이어야 함
 - 1993년 8월 10일 이후 최초 발행한 주식이어야 함
 - 회사의 총자산이 1993년 8월 10일 이후 주식 발행 전까지 계속 7,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주식 발행 직후 회사의 총자산도 7,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7,500만달러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한도를 조정함
 - 기존 주식 취득(구주취득)이 아닌 신규 주식 취득에 해당해야 함
 - 단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적격소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적격소기업주식을 전환하거나 교환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식 취득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 특례요건을 만족할 수 있음
 - 주식 보유 기간 동안 회사 총자산의 최소 80% 이상을 적격사업(qualified trade or business)에 사용해야 함
 - 주식 발행 시점 전후 2년 동안(총 4년) 회사는 신주인수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없음
 - 주식 발행 시점을 전후로 1년 동안(총 2년) 회사는 모든 주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의 총액이 회사 전체 주식 가치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적격기업(Eligible Corporation)은 해외판매 내국법인(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또는 과거 해외판매 내국법인, 규제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 부동산투자신탁(REIT), 부동산모기지투자도관체(REMIC), 협동조합(cooperative)을 제외한 모든 미국 내 기업(domestic corporation)을 의미함

- 과세특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회사 자산의 최소 80%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적격사업(qualified trade or business)은 다음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뜻함
 - 보건, 법률, 공학, 건축, 회계, 보험계리, 공연예술, 컨설팅, 운동, 금융서비스 또는 중개서비스 분야의 사업 또는 해당 사업의 주요 자산이 1인 이상의 직원의 평판이나 기술인 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임대, 투자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
 - 영농사업(수목을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사업 포함)
 - IRC §613 또는 §613A(비율 감모 공제) 적용이 가능한 특성의 제품 생산 또는 추출과 관련된 사업
 - 호텔, 모텔, 레스토랑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운영하는 사업

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³¹⁾

- 납세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매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적격소기업주식 취득에 이용할 경우, 이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rollover)할 수 있음
 - 신규 주식을 구입한 금액만큼만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것이 아님
 - 매도할 주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고 매도 후 60일 이내에 다른 QSBS를 구매해야 하며, 이후 매수한 주식 역시 최소 6개월 이상은 보유해야 함
 - 과세이연 거래에 있어서 후매수주식의 보유기간은 선매수주식의 보유기간과 합할 수 있으나, 과세이연에 대한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만족하는 데에는 이렇게 합산된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다) 양도차손 공제특례³²⁾

- 소기업주식 양도차손(losses on small business stock)을 적용받게 되면 자본손실(capital loss)이 아닌 경상손실(ordinary loss)로 공제할 수 있음
 - 경상손실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연 5만달러(부부합산 연 10만달러)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손실로 처리함

31) 미국 국세법 §1045 Rollover of gain from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to another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32) 미국 국세법 §1244 Losses on small business stock

- 양도차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주식 (section 1244 stock)이어야 함
 - 미국 내 소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현금이나 기타 재산(다른 주식 및 증권 제외)과 교환하여 발행해야 함
 - 법인이 주식을 발행했을 당시 총자본금과 불입잉여금의 합이 10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주식이 교환되었다면 그 자산의 조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손실이 발생하기 전 최근 다섯 번의 과세연도 동안, 주식발행 기업의 총수익의 50% 이상이 로열티, 임대료, 배당금, 이자, 연금 및 주식 또는 증권의 매매 또는 교환이 아닌 다른 수익원에서 발생해야 함
 - 법인의 존속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손실이 발생한 날까지 존재한 과세 연도 전체를 고려하고, 1년 미만이면 존재했던 기간 전체를 고려함
 - 단 공제액이 총수익보다 클 경우는 예외로 두어 비금융 수익 50% 이상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소기업주식 양도차손 공제특례는 주식의 최초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며, 구주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주별 개인투자자 세제지원제도

- 2025년 6월 기준, 미국의 22개 주에서 엔젤투자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표 III-1〉 미국의 엔젤투자 세액공제제도 주별 프로그램 명칭

구분	명칭
Arizona	Angel Investment program
Arkansas	Equity Investment Incentive Program
Colorado	Advanced Industry Investment Tax Credit
Connecticut	Angel Investor Tax Credit Program
Georgia	Angel Investor Tax credit

<표 III-1>의 계속

구분	명칭
Illinois	Angel Investment Tax Credit Program
Indiana	Venture Capital Investment Tax Credit
Iowa	Angel Investor Tax Credit Program
Kansas	Angel Investor Tax Credit
Kentucky	Angel Investment Act Program
Louisiana	Angel Investor Tax Credit
Maine	The Maine Seed Capital Tax Credit Program
Maryland	Innovation Investment Tax Credit, Biotechnology Investment Incentive Tax Credit
Minnesota	Angel Tax Credit
New Jersey	Angel Investor Tax Credit
New Mexico	Angel Investment Tax Credit
New York	Qualified Emerging Technology Company Certification and Capital Tax Credit
North Dakota	Angel Investor Investment Credit
South Carolina	Angel Investor Tax Credit
Tennessee	Angel Investor Tax Credit
Virginia	Qualified Equity and Subordinated Debt Investments Credit
Wisconsin	Qualified New Business Venture Program

자료: 각 주정부 홈페이지

가) 뉴욕³³⁾

- 뉴욕은 적격신흥기술기업(Qualified Emerging Technology Companies, QETC) 제도로 인증된 신기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세액공제를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 소득세의 공제율이 달라짐
 - 최초 세액공제 이후 해당 투자를 4년 동안 보유할 경우 QETC에 대한 투자액의 10%(연 15만달러 한도), 9년 동안 보유할 경우 QETC에 대한 투자액의 20%(연 30만달러 한도)를 주정부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³⁴⁾
 - 이때 보유 기간 내에 해당 투자의 매각, 양도, 거래 또는 처분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뉴욕의 세무 당국에 입증해야 함

33)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https://www.tax.ny.gov/pit/credits/qetc_capital.htm
검색일자: 2025. 2. 21.

34) 뉴욕주 정부, “Instructions for Form DTF-622”

- 이연되는 공제세액에 제한을 두어 QETC 제도 단독으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당해 납세자가 부담할 뉴욕의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용하지 않은 공제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세액공제의 이연은 무기한 가능함
- 투자대상 기업은 뉴욕에 소재한 기업으로 연간 총매출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다음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의 원제품 또는 서비스가 뉴욕주의 「공공당국법(Public Authorities Law)」 §3102-e(1)(b)에서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로 구분된 것에 해당해야 함
 - 첨단 소재 및 가공 기술
 - 엔지니어링, 생산 및 방위 기술
 - 전자 및 광자 장치 및 구성 요소
 - 정보통신기술
 - 생명공학
 - 첨단 재료 제조 기술
 - 뉴욕에서 연구개발 활동(R&D)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R&D 자금 대비 순매출 비율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산업연구개발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의 평균 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또는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비슷한 후속 조사에서 결정된 평균 비율과 크거나 같아야 함
- 인증된 QETC의 투자자 중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뉴욕주 Article 9-A(법인세법)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 뉴욕의 Article 22(개인소득세법)에서 다음과 같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 개인사업자(단일 납세자로서의 재산 또는 신탁 포함)
 - 파트너십의 파트너(연방세법상 파트너십으로 간주되는 LLC 회원 포함)
 - 뉴욕 S 법인의 주주
 - 재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해당 재산 또는 신탁이 위의 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여러 법인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통합 그룹(combined group)의 경우 그룹에 속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QETC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산된 공제액은 통합 그룹의 총법인세(combined tax)에서 차감하여 적용됨

나) 뉴저지³⁵⁾

- 뉴저지는 엔젤투자자 세액공제(Angel Investor Tax Credit)를 통해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과 관련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세액공제는 적격투자 금액의 20%(최대 연 50만달러)의 공제율을 제공함
 - 특정 기업(소수민족 소유 기업(MBE), 여성 소유 기업(WBE),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또는 신규 시장 세액공제 인구 조사 트랙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5%를 추가하여 적격투자 금액의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주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총세액공제액은 연 3,500만달러로 공제 신청의 총합이 초과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 순서대로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됨
 - 공제세액의 초과분은 환급이 가능하며, 총소득세는 세액공제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인세는 세액공제의 이연이 최대 15년까지 허용됨
 - 단 법인투자자가 합병 또는 인수의 대상이 되는 해에는 합병(인수) 추진 기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이월공제가 불가능함
- 뉴저지의 엔젤투자자 세액공제에서의 투자대상 기업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정규직 직원 수가 225명 미만이며, 그중 75% 이상이 뉴저지에서 일해야 함
 - 사업 운영, 직원 고용, 자본 또는 자산을 소유, 사무실 보유 중 최소 하나를 뉴저지에서 이행해야 함
 - 뉴저지에서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함
 - 적격 연구비 지출
 - 파일럿 스케일 제조
 - 첨단 소재, 첨단 컴퓨팅, 생명기술공학, 전자장치, 정보기술, 생명과학, 의료

35) 뉴저지주 경제개발당국, <https://www.njeda.com/angeltaxcredit/>, 검색일자: 2025. 2. 21.

장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기술 및 탄소저감기술 중 하나 이상의 기술의 상업화

○ 주요 사업으로 이상의 적격기술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해야 함

□ 투자자는 다음과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엔젤투자자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 적격투자자는 뉴저지에서 지정한 적격기술 기업에 제공되는 환급이 불가능한 (non-refundable) 현금 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투자 항목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주식 및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의 지분 취득, 라이선스, 기술 사용권, 마케팅 권리, 보증, 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

- 상기한 항목들을 구매, 생산, 연구개발 계약하는 옵션 또는 권리도 포함

○ 환급 불가능 현금 이전으로 인정받으려면 현금 이전일로부터 최소 2년간 보유하거나 만료되지 않아야 함

- 단 기업공개(IPOs), 인수합병,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투자자의 통제 밖의 초기 투자금 회수 등의 경우로 환불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 버지니아³⁶⁾

□ 버지니아는 적격 지분 및 후순위 채권 투자 공제(Qualified Equity and Subordinated Debt Investments Credit)를 근거로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세제혜택을 운영하고 있음

○ 적격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0%(최대 연 5만달러)를 주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주정부가 한 해 사용 가능한 세액공제액은 500만달러이며, 절반은 상업화 투자에 대한 공제에 배타적으로 할당됨

- 만약 상업화 투자에 대한 공제 요청 총금액이 250만달러 이하라면 잔액은 모든 적격사업에 대한 투자로 할당됨

○ 개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의 환급을 불가하며,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액은 최대 15년까지 이월이 가능함

36) 버지니아주 세무 당국, <https://www.tax.virginia.gov/business-development-credits#qualified-equity-subordinated-debt-investments-credit>, 검색일자: 2025. 2. 21.

-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투자대상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총수익이 300만달러 이하여야 함
 - 버지니아에 본사 또는 시설이 위치해야 함
 - 버지니아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주로 모든 생산을 수행해야 함
 - 주식 또는 대출 투자로부터 얻은 총 현금 수익이 300만달러 이하(공인 은행 및 상업 대출 제외)
 -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임해야 함
 - 첨단 컴퓨팅, 첨단 소재, 첨단 제조업, 농업 기술, 생명공학 기술, 전자장치 기술, 에너지, 환경 기술, 정보 기술, 의료장비 기술, 나노공학 기술, 버지니아 세무 당국이 규정한 기타 유사한 기술 관련 분야

- 지분(equity)은 공제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기업의 경우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뜻하고, 유한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의 수익을 뜻하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원의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함
 - 이 중 하나 이상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해당 투자가 3년 이내 상환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액공제 자격을 받지 못함

- 후순위 채권(subordinated debt)이란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으며 누구의 보증도 받지 않는 채권으로, 이 유형의 대출은 기업의 다른 부채가 모두 상환된 후에야 변제가 가능함
 - 지분 투자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채권 투자는 대출이 발행된 후 최소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아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콜로라도³⁷⁾

- 콜로라도는 첨단산업투자 세액공제(Advanced Industry 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제3자 투자자에게 주정부 소득세를 공제해 주고 있음
 - 적격사업에 1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25%(연 10만달러 한도)를

37) 콜로라도 경제개발 국제무역 부처, <https://oedit.colorado.gov/advanced-industries-invest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5. 2. 24.

주정부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콜로라도 기업특구(enterprise zone)³⁸⁾ 또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3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됨
- 투자자는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개별투자자는 여러 개의 인증된 기업에 투자하여 각 기업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 기업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개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 세액공제액의 환급은 불가하며 세액공제의 이연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함³⁹⁾
- 주정부의 승인 가능한 세액공제의 총액은 연 400만달러로 공제를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액공제 신청의 총합이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첨단 산업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음

-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
- 첨단 기술 제조, 항공우주, 생명과학, 전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인프라공학 및 정보 기술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콜로라도에 본사가 위치하거나 최소 50%의 직원이 콜로라도에 근무할 것
- 콜로라도주의 국무장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설립 및 존속 상태여야 함
- 사업 개시 후 제3자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 규모가 1천만달러 미만일 것
- 연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이거나 5년 이내에 수익 창출이 있을 것

□ 본 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다음에 모두 해당해야 함

- 제3자 투자자 또는 기업과 무관한 투자자여야 함
- 개인,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 S법인을 포함하는 적격 법인에 해당해야 함(C법인은 적격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탁(trust)은 일반적으로 적격 대상이 아님)
- 투자회사와 다른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또는 납세자 ID를 보유할 것
- 보통주, 우선주, 파트너십 지분, 유한책임회사 지분, 지분증권, 단순계약지분증권 또는 전환사채의 유형에 투자해야 함
- 최소 1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함

38) 기업특구(enterprise zone)란 콜로라도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실업률·1인당 소득·인구성장률을 고려하여 지정되며 10년마다 지정 구역을 갱신함

39) 콜로라도 소득세법 §39-22-532

- 투자 직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이 30% 미만이어야 하며, 투자 직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이 50% 미만이어야 함

나. 캐나다

1) 벤처지원제도 개요

- 캐나다는 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하며,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차원의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벤처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
 - 법인투자자는 주(state)별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받음
 - 일반법인은 주별로 규정된 적격기업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투자조합 등은 도관이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배당세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받음
 -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내국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의 주식지분을 처분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 과세이연을 허용함
 - 연방정부와 별개로 캐나다의 각 주마다의 적격기업 기준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격기업 투자에 대해 다양한 세액공제를 제공함
 - 연방정부에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벤처투자 세액공제인 노동후원 벤처캐피탈 기업 세액공제(Labour 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 Tax Credit)는 2017년에 폐지되었음
 - 배당세액 공제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제공하나 해당 공제의 수혜대상인 적격기업은 벤처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캐나다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캐나다에서 벤처투자가 활발한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직접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제공함

- 온타리오주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관련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주정부 프로그램(Invest Ontario)을 운영하고 있음
 - 온타리오주는 연구 및 혁신, 제조업, 지역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운영하지 않음
- 퀘벡주는 CCPC의 투자의 배당에 대해 비환급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퀘벡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국제 기업의 퀘벡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Investissement Québec이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Investissement Québec은 벤처투자자와 퀘벡에 등록된 벤처투자 관련 펀드들과 퀘벡에 위치한 벤처기업들을 매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연방정부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 연방정부는 벤처와 관련한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조세지원을 하지 않으나 좀더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세제혜택은 존재함
 - 캐나다 「소득세법」에서의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에 대한 개별 주주는 다음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정 활동 및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자산 평가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주식 매각에 대한 잠재적 양도소득의 비과세
 - 배당소득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 유예

3) 주별 벤처투자 세제지원제도

가) 브리티시컬럼비아⁴⁰⁾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모두 투자액의 30%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함
-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벤처자본 세액공제(Venture Capital Tax Credit)는 벤처캐피털

40)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investment-capital/venture-capital-programs/venture-capital-corporation/tax-credits>, 검색일자: 2025. 7. 4.

법인(VCC) 또는 적격기업(EBC)에 대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환급 가능 여부, 연간 공제액, 세액공제 신청 시기 등은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이 서로 다름⁴¹⁾

- 개인투자자는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를 제공받으며 2025년 3월 4일 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연간 공제액은 최대 30만캐나다달러(CAD)임
 - 1월 1일 기준으로 60일 안에 투자하면 전년도의 세액공제에 신청이 가능함
 - 2025년 3월 3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12만CAD임
- 일반법인에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하지만 연간 공제액에 한도는 없음
 - 개인투자자와 달리 오직 투자 당해 연도에 대한 세액공제만 신청이 가능함
- 개인투자자 및 일반법인 모두 세액공제를 4년 동안 이월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지분에 대하여 최소 5년 이상 보유 요건이 존재함⁴²⁾
- 적격기업이 벤처자본 프로그램으로 모금이 가능한 금액은 최대 1천만CAD임

□ 투자대상 기업은 자기 자본이 최소 2만 5천CAD 이상인 기업이며 다음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⁴³⁾

- 계열사를 포함하여 총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함
- 기업의 임금과 급여 중 75% 이상이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함

□ 벤처자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투자받는 기업은 다음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함⁴⁴⁾

- 브리티시컬럼비아 내에서 수행되는 상품의 제조 및 가공, 그리고 해당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 관광업(관광객으로 총수익이 50% 이상 발생), R&D 활동 및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 브리티시컬럼비아 내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제품 개발, 첨단 상업화 등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함

41)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investment-capital/venture-capital-programs/venture-capital-corporation/tax-credits>, 검색일자: 2025. 7. 4.

42) 브리티시컬럼비아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Act」 제28.91장

43) 브리티시컬럼비아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Act」 제10조 내지 제28.2조

44) 브리티시컬럼비아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Regulation」 제11조

- 이때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는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외부에서 제공되어도 됨
- 이상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다음의 활동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기업의 요건에 배제됨
 - 원자재 탐사 또는 시추
 - 대출, 보험 또는 부동산 판매, 주식 교환 같은 금융 서비스
 - 부동산 관리 또는 토지나 시설물의 임대
 - 토지 개발 또는 정비
 - 일반 농업 활동(단 사육용 야생동물 농장, 소규모 작물, 가축, 가금류 생산, 또는 첨단 기술 활용 농업은 제외)
 - 식당 또는 음식 서비스
 - 개인적인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한 유무형 자산의 임대

나) 매니토바

- 매니토바는 중소기업 벤처자본 세액공제(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Tax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적격 매니토바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액공제임⁴⁵⁾
 - 이 프로그램은 최소 투자금액이 투자자 1인당 1만CAD인 순자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매니토바 소재의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벤처자본 세액공제의 투자대상 기업은 매니토바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캐나다 내국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⁴⁶⁾
 - 보유 자산이 활성 사업(active business)에 사용되어야 하며 매출이 이에 비롯될 것
 - 최소 2만 5천CAD의 현금이 주식 발행 이전에 투입될 것
 - 연매출이 1,500만CAD 미만이거나 정규직 직원이 100명 미만일 것
 - 25% 이상의 직원이 매니토바에서 근무할 것
 - 상장기업이 아닐 것

45) 매니토바 주정부, <https://www.gov.mb.ca/jec/busdev/financial/sbvctc/>, 검색일자: 2025. 2. 24.

46) 매니토바 주정부, <https://www.gov.mb.ca/jec/busdev/financial/sbvctc/>, 검색일자: 2025. 2. 24.

- 중소기업 벤처자본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엔젤투자자는 매니토바 주 세금의 45%에 대하여 비환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⁴⁷⁾
 - 2021년 4월 7일 이후에 발행된 주식을 기준으로 최대 세액공제액은 연 22만 5천 CAD이며 1년 동안 신청 가능한 최대 세액공제의 한도는 12만CAD임
 -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는 이후 최대 10년까지 이월하거나 이전 3년까지 소급할 수 있음⁴⁸⁾

- 현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평생 한도는 1천만CAD이며 투자자는 회사 하나당 50만CAD까지 투자할 수 있음⁴⁹⁾
 - 매니토바주는 주식의 발행 시점에 따라 세액공제율, 연간 최대 공제세액, 연간 적용한도, 연간·평생 투자 한도를 구분하여 적용함

〈표 III-2〉 매니토바주 중소기업 벤처캐피탈 자본 세액공제(SBVCTC)

주식 발행 시점	세액공제율	연간 최대 공제액	연간 적용 한도	연간·평생 투자 한도
2021년 4월 7일 이후	45%	\$225,000	\$120,000	\$500,000
2014년 6월 12일 이후 ~ 2021년 4월 6일 이전	45%	\$202,500	\$67,500	\$450,000
2014년 6월 11일 이전	30%	\$135,000	\$45,000	\$450,000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provincial-territorial-corporation-tax/manitoba-provincial-corporation-tax/manitoba-small-business-venture-capital-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5. 7. 4.

47)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provincial-territorial-corporation-tax/manitoba-provincial-corporation-tax/manitoba-small-business-venture-capital-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5. 2. 24.

48) 캐나다 국세청, Schedule 387, Manitoba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tax credit.

49) 매니토바 주정부, <https://www.gov.mb.ca/jec/busdev/financial/sbvctc/>, 검색일자: 2025. 2. 24.

다) 뉴브런즈웍⁵⁰⁾⁵¹⁾

- 뉴브런즈웍의 중소기업 또는 지역사회경제개발기업(CEDC)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부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Small Business Investor Tax Credi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뉴브런즈웍의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기업은 주에서 규정한 적격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들이 존재함
 - 사기업으로 뉴브런즈웍에 설립되거나 영업하기 위해 등록되어야 함
 - 액면가가 없는 주식으로 구성된 수권자본금을 보유해야 함
 - 회사의 총자산은 4천만CAD 미만으로 자산과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모두를 뉴브런즈웍에서 활성 사업에 사용해야 함
 - 회사 등록일 이후 4개의 과세연도 동안 임금 또는 급여의 최소 75%를 뉴브런즈웍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함
 - 단 총매출의 50% 이상을 주 외부로 수출하는 기업은 지급 비율 요건을 50%로 조정
 - 투자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주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보증·기타 금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2002년 12월 10일 이후, 그리고 해당 주식 발행 이전 회사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가 재매입하지 않아야 함
 - 발행 주식은 해당 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 새로 발행한 전액 지불된 주식이어야 하며 대체 주식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개인투자자는 연간 최대 25만CAD 투자에 대하여 최대 50%(최대 12만 5천CAD)의 주 소득세에 세액공제를 부여받으며, 법인 또는 신탁투자자는 연간 최대 15%(최대 7만 5천CAD)의 주 법인세에 세액공제를 부여받음⁵²⁾

50) 뉴브런즈웍 주정부,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finance/taxes/credit/program.html>, 검색일자: 2025. 6. 26.

51)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provincial-territorial-corporation-tax/new-brunswick-provincial-corporation-tax/new-brunswick-small-business-investor-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5. 2. 26.

52) 뉴브런즈웍 주정부,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finance/taxes/credit.html>, 검색일자: 2025. 6. 26.

- 개인투자자는 1월 1일 기준 첫 60일 이내에 투자한 경우, 이때 투자한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
- 개인투자자와 법인·신탁투자자 모두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세액은 환급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공제세액은 이후 최대 7년까지 이월 또는 이전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함

다. 영국

1) 벤처지원제도 개요⁵³⁾

- 영국은 주로 개인투자자에게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감면해 주어 비상장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자금 유치를 지원하고 있음
 - 법인투자자는 일반 기업 대상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으나 벤처캐피털신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은 현재 벤처투자과 관련하여 기업가투자지원제도(EIS), 초기기업 투자지원제도(SEIS), 벤처캐피털신탁(VCT)이라는 세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는 직접투자, VCT(Venture Capital Trust)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투자는 창업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음
 - EIS는 최초 상업적 판매 이후 7년 이내의 소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 SEIS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창기 소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 VCT는 최초 상업적 판매 이후 7년 이내의 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신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 사회적투자세액공제(Social Investment Tax Relief)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6월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 EIS, SEIS, VCT를 제공받기 위한 투자 대상 기업의 요건은 <표 III-3>과 같음

53)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raise-money-by-offering-tax-reliefs-to-investors>, 검색일자: 2025. 2. 24.

- 투자유형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 시점, 종업원 수, 신주발행 시점 및 직후 총자산 등의 요건이 존재함
- EIS의 경우 지식집약형기업(knowledge-intensive corporation)에 대해서 완화된 요건을 제공함

<표 III-3> 영국의 벤처지원제도

구분	투자 대상 기업
EIS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신주 발행 직전 총자산은 £1,500만 이하이며 직후는 £1,600만 이하, 직원 250명 이내, 상업적 판매 개시 후 7년 이내 비상장기업 ¹⁾
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서 투자시점에 총자산 £35만 이하, 직원 25명 이내,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야 함 ²⁾
VCT (Venture Capital Trust)	신주 발행 직전 총자산은 £1,500만 이하이며 직후는 £1,600만 이하, 직원 250명 이내, 상업적 판매개시 후 7년 이내인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벤처캐피털신탁 ³⁾

주: 1) 지식집약형기업은 상업적 판매 개시 후 10년 이내, 직원수는 500명 미만의 비상장기업으로 요건을 일부 완화함

2) EIS 또는 VCT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은 SEIS의 적용이 불가함

3) 벤처캐피털신탁은 영국 국세청의 승인하에 비상장회사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로 연구개발 또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EIS와 동일하게 투자대상기업의 요건을 완화함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검색일자: 2025. 2. 24.

- EIS, SEIS, VCT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투자대상 기업은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함
 - 영국에 고정사업장 보유하여야 함
 - 적격사업(qualifying trade)를 수행하며 이에 투자 사용을 계획하여야 함
 - 투자 시점에 비상장기업이어야 하며 다른 기업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투자대상기업은 투자금을 반드시 적격사업에 사용해야 함
 - 대부분의 사업활동은 적격하다고 판단하며 향후 적격사업으로 이어질 연구 개발도 이에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이 전체 사업의 20%를 초과할 경우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석탄·철강 생산, 농업·원예, 임대 사업, 법률·금융 서비스, 부동산 개발, 호텔 운영, 요양원 운영, 전기·열 등의 에너지 생산, 가스 및 기타 연료 생산, 전기 수출, 은행·보험·대출·금융 서비스

-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금 한도와 함께 투자대상 기업이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달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존재함
 - 기업이 한 해 동안 조달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EIS 및 VCT 투자의 경우 500만파운드이며 평생 누적 조달 금액은 SEIS 투자는 25만파운드, EIS 및 VCT 투자는 1,200만파운드임
 - SEIS 투자에는 연간 투자금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단 EIS와 VCT 투자에 대해 기업이 일정한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수행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식집약형기업(knowledge-intensive company)의 경우에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연간 한도는 1천만 파운드, 평생 누적 한도는 2천만 파운드임

<표 III-4> 영국의 EIS와 SEIS 비교

분류	EIS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지원대상	최초 상업적 판매 이후 7년 이내 영국의 미등록/비상장 기업 (지식집약형기업은 10년 이내)	거래 시작일 후 3년 이내 영국의 미등록/비상장 기업
총자산 한도	1,500만파운드	35만파운드
정원 수 제한	250명 (지식집약형 기업은 500명)	25명
타 제도 수혜 여부	-	EIS나 VCT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최대 조달 가능 금액	1,200만파운드(평생) (지식집약형기업은 2,000만 파운드)	25만파운드(평생)
투자자 연간 한도	100만파운드 (지식집약형기업에 100만파운드 이상 투자하면 한도가 200만파운드로 조정)	20만파운드
소득세 감면율	30%	50%
자본이득세 혜택	3년 보유 후 양도차익 전액 과세 면제	3년 보유 후 양도차익 전액 과세 면제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금의 100% 과세이연	투자금의 50% 세금감면 (10만파운드 한도)

자료: 저자 작성

2) 법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 일반법인이 수행하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없는 반면, 투자조합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존재함
 - 영국의 벤처캐피털신탁(VCT)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1995년에 도입된 상장 투자회사임
 - VCT는 보통주 투자 중심의 지분형 투자기구로 운용되고 있음
- 벤처캐피털신탁(VCT)이 처분하여 얻은 소득 또는 자본이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⁵⁴⁾

- 개인투자자가 벤처캐피털제도를 이용하는 적격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털신탁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감면이 가능함
 - 적격기업 또는 벤처캐피털신탁 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자산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적격기업에 재투자 분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 자산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주 발행 시 반드시 전액을 현금으로 취득해야 함
 - EIS와 SEIS의 경우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해당 주식 양도 시 자본이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VCT는 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감면됨
 - EIS와 SEIS는 적격기업의 주식을 최소 3년 이상, VCT는 주식을 최소 5년 이상 보유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EIS와 SEIS의 경우 3년 보유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철회되거나 감소할 수 있음
 - 투자자 또는 기업이 적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자가 주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처분한 경우

54)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tax-reliefs-you-can-claim>, 검색일자: 2024. 2. 24.

- 투자자가 기업 또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편익 등의 가치를 얻은 경우
 -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다른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 또는 증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 VCT 투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일부 또는 전체 주식의 자격 승인 요건을 상실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불가함
 - 단 EIS와 SEIS와 달리 투자자가 VCT 또는 VCT가 투자한 기업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소득세 공제는 그대로 유지됨
-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이 연결(connect)되어 있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투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회사나 그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을 때
 - 회사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때
 - 회사 지분에는 주식, 회사가 청산될 경우 받을 자산에 대한 권리, 의결권, SITR 대상 대출 자본을 포함함
- EIS와 SEIS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를 환수하거나 일부만 공제됨
- 투자자가 기업 또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편익 등의 가치를 얻은 경우
 -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 또는 증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associate)은 다음과 같음
- 친족(relative)
 -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civil partner)
 - 부모 또는 직계존속(조부모, 증조부모 등)
 - 자녀 또는 직계비속(손자, 증손자 등)
 - ※ 단 형제자매는 미포함
 - 사업파트너
 - 신탁 수탁자

- 이해관계의 회사의 주식이나 채무가 어떤 신탁의 자산이거나 사망자의 유산의 일부인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산 관리인
- EIS와 SEIS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31일 이후 최대 5년까지 소득세 감면 청구가 가능하며, VCT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종료 후 최대 4년까지 청구가 가능함
 - 투자자는 EIS 또는 SEIS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컴플라이언스 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 HMRC에 제출해야 함
 - 컴플라이언스 증명서에는 피투자회사의 적격 여부, 자금 사용계획, 투자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음
- 2022~2023년 회계연도 기간 중 VCT 투자자들은 2021~2022년에 비해 6% 감소한 9억 8,500만파운드의 투자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청구함⁵⁵⁾
 - 같은 시기에 소득세 감면을 청구한 VCT 투자자 수는 직전 기간에 비해 1% 증가한 2만 6,260명임⁵⁶⁾

가) 소득세 감면

- 개인투자자가 적격기업이나 VCT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출자금의 30% 또는 5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EIS와 VCT의 소득세 공제율은 30%임
 - SEIS를 적용할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 EIS나 SEIS 제도에 따라 적격기업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 당시 연도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납세자가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전 연도에 투자한 것으로 선택했을 경우)의 소득세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VCT의 신주 투자의 경우는 오직 투자 당해 연도의 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음
 - <표 III-4>와 같이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각 제도는 투자금액에 연간 한도가 존재함

55)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venture-capital-trusts-2024/venture-capital-trusts-statistics-2024>, 검색일자: 2025. 6. 19.

56)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venture-capital-trusts-2024/venture-capital-trusts-statistics-2024>, 검색일자: 2025. 6. 19.

- 미사용 공제세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지 못함
- VCT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신주투자자와 함께 구주투자자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면제함

<표 III-5>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적격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배당소득세 공제
	투자금 한도	감면율	
EIS	£ 1,000,000 ¹⁾	30%	×
SEIS	£ 200,000	50%	×
VCT	£ 200,000	30%	○

주: 1) 지식집약형기업(knowledge-intensive company)에 £1,000,000 이상 투자하면 한도가 £2,000,000로 확대됨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tax-reliefs-you-can-claim>, 검색일자: 2025. 6. 19.

나) 자본이득세 감면

(1) 자산 매각 후 적격기업주식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EIS에서는 자산 매각 후 양도차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EIS의 적격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자본이득세의 과세이연이 가능함
 -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자산 양도일 기준 1역년(曆年) 전부터 3역년(曆年) 후까지 기간 내에 EIS의 적격기업에 투자(적격 신주의 발행 및 인수)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그동안 이연된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함
 - EIS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이 취소·상환·환매되는 경우
 - 적격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투자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SEIS에서는 자산 매각 후 자산양도차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SEIS 적격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50%의 자본이득세를 감면함
 - SEIS에서 연 최대 20만파운드까지 투자가 가능하므로 투자금의 50%에 대해 자본이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감면액은 10만파운드임
 -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함

- 투자하기 전에 자산을 먼저 매각할 필요는 없음
 - 단 자산 매각과 신주 발행이 같은 과세연도(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 안에 모두 발생해야 조세감면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SEIS 소득세 감면을 전년도로 소급하여 청구하는 경우 자산 매각도 그 전년도 안에 이루어져야 함

(2) 적격기업주식 등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 EIS와 SEIS 중 하나의 제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소득세 감면을 받은 엔젤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본이득세 전체가 면제됨
 - 단 투자 시점에 각 제도를 통해 소득세 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았으며 반드시 환수되지 않아야 함
 - 두 제도 모두 자본이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음
- VCT 주식에 투자하고 5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새로 발행된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제2투자자 포함)에도 적용됨

(3) 손익통산

- EIS 또는 SEIS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차감한 순손실을 총소득과 상계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주식을 매각한 과세연도 또는 그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과 상계가 가능함

<표 III-6> 영국의 벤처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제도	자산매각 후 적격기업주식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양도 시 자본이득세 면제	양도차손의 소득통산
EIS	적격기업주식 등 투자금의 100%까지 과세이연 가능	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가능 ¹⁾	○
SEIS	적격기업주식 등 투자금의 50% 세급감면(£100,000 한도)	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가능 ¹⁾	○
VCT	해당 사항 없음	가능	×

주: 1) EIS 또는 SEIS를 통해 주식양도 시 자본이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하나, 만약 이를 일부라도 환수했다면 자본이득세 감면을 제공받을 수 없음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tax-reliefs-you-can-claim>, 검색일자: 2025. 6. 19.

라. 일본

1) 벤처지원제도 개요

- 일본은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별개로 벤처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함
 -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음
 - 이와 함께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각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당해 연도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通算)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통산하지 못한 손실은 이후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 법인투자자에게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
 - 일반법인에 대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출자할 경우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근거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음
 - 투자조합 등은 도관이론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법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⁵⁷⁾⁵⁸⁾

- 일본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스타트업에 출자하는 대기업에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税制)”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20년 4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가 도입되었으며 2026년 3월까지 일몰되어 총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년 단위로 일몰 기한을 두 번 연장함
 - 현재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는 신규출자형과 M&A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 2023년 4월 1일 개정을 거쳐 스타트업 성장과 연관된 M&A도 지원함

가)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신규출자형)

-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의 신규출자형은 일본의 국내 법인 등이 오픈이노베이션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과세

57) 일본 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eiei_innovation/open_innovation/open_innovation_zei.html, 검색일자: 2025. 2. 25.

58)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575.htm>, 검색일자: 2025. 2. 25.

소득에서 주식 취득가액의 25%를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대상 기업은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목표로 하는 일본 국내 주식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 CVC가 출자하는 경우임
-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은 설립된 지 10년 미만의 일본 국내외 비상장기업이어야 함
 - 단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자된 회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의 요건이 추가되며,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설립 15년 미만의 기업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 신규출자형의 기업의 출자 요건은 출자를 받는 기업의 유형과 출자일 시점에 따른 보유기간에 의해 달라짐

- 기업 유형은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 스타트업으로 구분함
 - 대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1억엔 이상
 -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1천만엔 이상
 - 해외 스타트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5억엔 이상
- 보유기간 요건은 출자시점이 2022년 4월 이후부터 다른 기준이 적용됨
 - 2022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5년 이상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이어야 함
 - 2022년 4월 1일 이후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이어야 함

□ 신규출자형 소득공제는 한 건당 최대 12.5억엔(취득 금액 기준 건당 50억엔)으로 상한이 존재하며 2023년 3월 31일 이전의 출자는 소득공제의 상한이 한 건당 최대 25억엔(취득 금액 기준 건당 100억엔)임

- 만약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M&A형)과 합산할 경우, 대상 법인은 한 해 최대 125억엔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M&A형)

□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M&A형)란 일본 국내 법인 등이 스타트업을 M&A(의결권 과반수 취득)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4월 개정으로 추가됨

- 공제대상 기업과 피투자 스타트업의 요건은 신규출자형과 동일함
 - 단 신규출자형에 존재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에서 해외 스타트업은 제외됨

- 소득공제의 상한은 한 건당 최대 50억엔(취득 금액 기준 건당 200억엔)임
 - 같은 세제의 신규출자형과 합산할 경우 대상 법인 한 해에 125억엔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 M&A 후 5년 이내에 성장투자, 사업성장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전의 소득공제분을 환급해야 함
 -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를 M&A 시점의 요건에 따라 매출성장, 성장투자, 연구개발특화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에 따라 성장투자와 사업성장의 두 가지 요건이 다르게 규정함
 - 각 성장 단계에 따라 M&A 시점에서의 요건과 5년 내 달성해야 하는 요건은 <표 III-7>과 같음

<표 III-7>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M&A형) 요건

유형	M&A 시점의 요건	5년 내 달성해야 할 요건	
		성장투자	사업성장
매출 성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33억엔 • 매출액증가율 ≥ 1.7배
성장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10억엔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액 비율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 4.6억엔 & 연구개발비증가율 ≥ 1.9배 또는 • 설비투자 ≥ 0.7억엔 & 설비투자액증가율 ≥ 3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1.5억엔 • 매출액증가율 ≥ 1.1배
연구 개발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4.2억엔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10% • 적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 6.5억엔 • 연구개발비증가율 ≥ 2.4배 • 연구개발비증가액 ≥ 주식취득가액의 15% 	-

주: 1. 각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최초 신청 시에는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성장발전 증명을 신청할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했는지 제출해야 함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eiei_innovation/open_innovation/open_innovation_zei.html, 검색일자: 2025. 2. 25.

- 일본은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하며 조합 재산을 모든 조합원에 의한 공유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⁵⁹⁾⁶⁰⁾
 -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은 업무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을 출자액 한도로 제한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자의 자금이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한 투자조합이 주로 「민법」상 조합 형태로 설립되어,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조합원까지 출자액을 초과하는 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하였음

3)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⁶¹⁾⁶²⁾

가) 엔젤세제 및 특례 요건⁶³⁾

- 일본은 엔젤세제(エンジェル税制)를 운영하여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4월 1일 개정된 엔젤세제는 기존 투자 지원과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립 초기의 스타트업 투자를 비과세 대상으로 삼음
- 엔젤세제를 통해 개인투자자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 시점과 매각 시점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 시점에서의 세제혜택은 우대조치 A(우대조치 A-2 포함), 우대조치 B, 프리시드·시드 특례로 나눌 수 있음
 - 우대조치 A는 종합소득 공제이며 우대조치 B와 프리시드·시드 특례는 양도 소득에 대한 공제임
 - 매각 시점에서의 세제혜택으로 매각 시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주식 양도 차익과 상계할 수 있는 손익통산이 가능함

59) 일본 전자정부 법령 검색, <https://laws.e-gov.go.jp/law/410AC0000000090>, 검색일자: 2025. 2. 25.

6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hojin/14/14_01_01.htm, 검색일자: 2025. 2. 25.

61) 일본 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angeltax/index.html>, 검색일자: 2025. 2. 25.

62)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chiiki/angel/index2.html>, 검색일자: 2025. 2. 25.

63) 일본 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angeltax/investment.html>, 검색일자: 2025. 2. 25.

- 개인투자자는 엔젤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투자방법에 관계없이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현금을 지불하여 대상 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해야 함
 - 투자 대상 스타트업이 동족회사인 경우, 소유 비율이 큰 순서대로 상위 3위까지의 주주의 소유 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50%를 처음 초과하는 시점의 주주 그룹에 속하지 않아야 함
 - 동족회사란 3인 이하의 주주 내지 주주그룹이 가지는 주식의 총수 또는 의결권의 총수(소유비율)가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함
 - 투자 대상 회사가 투자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투자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됨
 -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배우자 및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2. 사실혼 배우자
 3. 특정사업주였던 자의 사용인
 4. 1~3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사업주였던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
 5. 2~4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동거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투자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나 과세특례의 내용은 같음
 - 개인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직접투자)
 -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또는 소액전자모집취급업자를 통한 투자(간접투자)

-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은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설립 5년 미만(또는 10년 미만)의 중소기업
 - 우대조치 A와 프리시드·시드 특례의 경우는 사업연수가 5년 미만인 회사, 우대조치 B의 경우는 10년 미만의 회사여야 함
 - 설립 경과 연수(사업 연도)마다 주어진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업연도에 따라서 우대조치 A, 우대조치 B, 프리시드·시드 특례의 세부적인 요건이 다르며, 프리시드·시드 특례는 우대조치 B의 조건에 다른 요건이 추가됨(<표 III-9>, <표 III-10>, <표 III-11> 참고)

- 외부(특정 주주 그룹 이외)로부터 1/6 이상의 투자를 받은 회사일 것
 - 대규모 법인 그룹의 소유가 아닐 것
 - 미등록·비상장 주식회사일 것
 - 풍속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닐 것
 - 직접투자가 아닌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또는 소액전자모집취급업자(클라우드 펀딩)를 경유하는 투자는 앞선 요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인정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또는 소액전자모집취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엔젤세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주식회사)은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 제2조의 각 호에서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미등록·비상장 주식회사여야 함
- 각 업종별로 구분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기업조합,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소규모 사업협동조합, 상공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그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업종별로 자본금과 종업원 수의 요건이 서로 다르며 두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됨
 -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튜브 제조업, 산업용 벨트 제조업은 업종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⁶⁴⁾

〈표 III-8〉 일본의 엔젤세제 대상 중소기업 요건

업종	자본금	종업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서비스업	5,000만엔 이하	100명 이하
소매업	5,000만엔 이하	50명 이하
고무 제품 제조업	3억엔 이하	900명 이하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서비스업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여관업	5,000만엔 이하	200명 이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신청가이드라인(기업특례,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자용)』

64)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chiiki/angel/subject/index.html>, 검색일자: 2025. 6. 26.

나) 투자 시점의 소득세 우대조치

- 투자 단계의 세제혜택은 대상 세목과 외부 자본 비율 요건에 따라 우대조치 A, 우대조치 A-2, 우대조치 B, 프리시드·시드 특례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투자자는 요건에 맞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우대조치 A는 기업 투자 금액에서 2천엔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할 수 있는 투자액의 상한은 800만엔과 종합소득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만약 우대조치 A-2를 적용한다면 외부 자산 비율 요건이 1/20 이상으로 완화되거나 공제 방식은 바뀌지 않음
 - 우대조치 B는 투자금 전액을 당해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
 - 이 경우는 별도의 투자액 상한이 없음
 - 다만 투자 대상 스타트업이 “창업 특례” 요건(자기 자본을 활용한 창업에 대한 비과세 조치)을 충족할 경우 설립연도의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도 그 투자에 대하여 우대조치 B를 적용할 수 있음
 - 프리시드·시드 특례는 사업화 전(前) 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그 해의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 사실상 비과세 처리하는 세제혜택임
 - 연간 최대 20억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됨

<표 III-9> 일본의 엔젤투자 우대조치(투자 시점)

구분	조치내용	외부자본요건	우대조치
투자연도의 종합소득 공제	과세이연	1/6 이상	우대조치 A - (투자액-2천엔)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 공제대상 투자액의 상한선: 종합소득의 40%와 800만엔 중 낮은 금액
	과세이연	1/20 이상	우대조치 A-2 - 우대조치 A와 동일 ※ 프리시드·시드 특례 기업 요건(영업손익 0엔 미만 등)을 추가로 만족할 경우

<표 III-9>의 계속

구분	조치내용	외부자본요건	우대조치
투자연도의 주식양도소득 공제	과세이연	1/6 이상	우대조치 B - 투자액 전액을 당해 연도의 주식양도소득에서 공제 - 공제대상 투자액의 상한 없음
	비과세	1/20 이상	프리스이드·시드 특례 - 투자액을 당해 연도의 주식양도소득에서 공제 - 공제대상 투자액의 상한 없음 (연간 20억엔까지 취득가액의 조정 없음)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신청가이드라인(기업특례,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자용)』

- 우대조치 A와 B는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부 요건이 다름
 - 우대조치 A는 사업연도가 5년 미만의 회사, 우대조치 B는 사업연도가 10년 미만의 회사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요건이 설정됨
 - 프리시드·시드 특례의 요건은 우대조치 B의 요건에 일부 요건이 추가·조정됨
 - 프리시드·시드 특례의 주요 요건에는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종사자의 인원 수 및 상근 임직원 대비 비율, 현금흐름 적자 여부,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의 매출 비중, 매출성장률 등이 있음

<표 III-10> 일본 엔젤세제의 우대조치 A 요건

사업연도	요건
1년 미만 (최초 사업연도 미경과)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의 향후 성장·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유
1년 미만 (최초 사업연도 미경과)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하고,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1년 이상~2년 미만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하고,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매출성장률이 25%를 초과하고,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표 III-10>의 계속

사업연도	요건
2년 이상 ~ 3년 미만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하고,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매출성장률이 25%를 초과하고,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3년 이상 ~ 5년 미만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하고, 직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 주: 1. 광고비, 마케팅 비용이란 신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 조직 도입, 기술 개선, 시장 개척 또는 신사업 개시를 위해 특별히 지출된 비용을 의미함
 2. 설립 2년 미만의 기업이라도 두 번째 사업연도를 경과한 경우 매출성장률 조건(25% 초과)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음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신청가이드라인(기업특례,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자용)』

<표 III-11> 일본 엔젤세제의 우대조치 B 요건

사업연도	요건
1년 미만 (최초 사업연도 미경과)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을 차지
1년 미만 (최초 사업연도 경과)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을 차지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3%를 초과
1년 이상 ~ 2년 미만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을 차지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3%를 초과
	매출성장률이 25%를 초과
2년 이상 ~ 5년 미만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3%를 초과
	매출성장률이 25%를 초과
5년 이상 ~ 10년 미만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

- 주: 1. 광고비, 마케팅 비용이란 신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 조직 도입, 기술 개선, 시장 개척 또는 신사업 개시를 위해 특별히 지출된 비용을 의미함
 2. 설립 1년 미만의 기업이라도 두 번째 사업연도를 경과한 경우 매출성장률 조건(25% 초과)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음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신청가이드라인(기업특례,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자용)』

<표 III-12> 일본 엔젤세제의 프리시드·시드 특례 요건

사업연도	우대조치 B 요건에 추가되는 요건
1년 미만 (최초 사업연도 미경과)	사업의 향후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연구개발비(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출자금 대비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
1년 미만 (최초 사업연도 경과)	(1)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0엔일 경우, 각 사업연도의 영업손익도 0엔 미만이어야 함
1년 이상 ~ 2년 미만	(2) 각 사업연도의 어느 한 연도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① 각 사업연도의 영업손익이 0엔 미만이고, ② 시험 연구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의 출자금 대비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

주: 1. 광고비, 마케팅 비용이란 신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 조직 도입, 기술 개선, 시장 개척 또는 신사업 개시를 위해 특별히 지출된 비용을 의미함
2. 설립 1년 미만의 기업이라도 두 번째 사업연도를 경과한 경우 매출성장률 조건(25% 초과)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음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신청가이드라인(기업특례,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자용)』

다) 매각 시점의 소득세 우대조치⁶⁵⁾

-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의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즉시 상계(손익통산)할 수 있으며, 그 해에 다 상계하지 못한 잔액은 이후 3년간 이월하여 순차적으로 주식 양도소득과 계속 통산할 수 있음
 - 기업이 상장하지 못한 채 파산 또는 해산 등을 하여 주식 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손실을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음
 - 투자연도에 우대조치 A 또는 우대조치 B의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매각 손익을 계산해야 함
 - 프리시드·시드 특례는 20억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차감해 매각 손익을 계산함

마.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벤처투자자와 관련하여 개인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는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받음

65) 일본 경제산업성, 『신청가이드라인(기업특례,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자용)』

- 일반법인에게 제공되는 벤처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조합 등은 도관이론을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2023년 7월 이스라엘 의회는 「지식집약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2026년 12월 31일까지 R&D 기업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함⁶⁶⁾
 - 이스라엘은 2011년 「경제정책법」을 제정하면서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도입하여 2015년까지 시행되었음
 - 2016년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세제혜택은 2019년으로 연장된 후 일몰됨
 - 기존 「경제정책법」의 기초를 따르는 「지식집약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과거처럼 스타트업에 집중하기보다 하이테크 기업과 연구개발 투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스라엘 R&D 기업에 투자한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함
 - 최대 400만셰켈(ILS) 한도 내에서 공제액은 투자금에 투자자가 적용받는 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됨
 -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는 이후의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투자자는 해당 주식에 투자한 연도의 과세연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함
 - 단 해당 투자금은 주식의 원가를 기준으로 차감되므로, 이후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
- 투자자는 우대 기업(preferred company)의 주식을 매각한 후 R&D 기업 주식으로 전환 시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됨⁶⁷⁾
 - 우대 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매각일 4개월 전부터 R&D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 매각으로 얻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 투자자는 우대기업에 최대 550만ILS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6) 이스라엘 의회, <https://main.knesset.gov.il/en/news/pressreleases/pages/press26723q.aspx>, 검색일자: 2025. 2. 26.

67) Gornitzky & Co., <https://www.gornitzky.com/new-tax-benefits-for-the-israeli-hi-tech-industry/>, 검색일자: 2025. 2. 26.

- 재투자한 주식을 최소 6개월 보유해야 하며,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투자한 연도의 과세연도의 시작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함
 - 재투자한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세금을 이월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음
 - 투자자는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납부 연기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
- 투자 직전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됨
- 해당 세제에서 언급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음
 -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상기 모든 사람의 배우자)
 - 50% 이상 의결권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일상적으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
- 적절한 하이테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함⁶⁸⁾
- 이스라엘의 비상장기업이며 이스라엘 내에서 주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연간 총매출이 450만ILS 미만이어야 함
 - 설립 이후 조달한 총자금이 1,200만ILS 이하여야 함
 - R&D에 참가하는 직원이 최소 20%여야 함
 - 총수익의 7% 이상이 R&D 비용이어야 함
 - 설립 이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총비용의 70% 이상이 R&D를 기반으로 한 무형자산 개발에 사용되어야 함

바. 법인투자자 세제지원 해외 사례

-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법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대해서 별도의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음

68) SRK, <https://kronengold.com/israels-angels-law/>, 검색일자: 2025. 2. 26.

1) 프랑스⁶⁹⁾

- 프랑스에서는 법인세 부과를 위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PME innovantes)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년간 예외적 감가상각(amortissement exceptionnel)을 적용할 수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출자한 금액
 - 총자산의 자산의 70% 이상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권으로 구성된 위험투자펀드, 전문사모펀드, 유한책임조합 또는 벤처캐피탈회사 등의 투자기구에 현금으로 출자된 금액
 - 이때 투자기구 총자산의 40% 이상은 신주 발행 또는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권이여야 함
 - 이상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EU 또는 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내의 외국법 기반 펀드·회사의 지분·증권에 현금으로 출자한 금액

- 법인은 해당 제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적 중소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20%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함
 -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보유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지분을 처분한다면 처분이익 중 이미 상각된 금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함
 - 법인투자자가 감가상각 대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지분 장부가액은 자산총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금액은 혁신형 중소기업 하나당 1,500만 유로의 상한이 존재함

- 투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함
 - 2024년 6월 17일자의 위원회 규정 제651/2014호에 따른 혁신 회사여야 함
 - 운영비용의 10% 이상이 연구지출에 사용되어야 함
 - EU 또는 EEA 회원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
 - 비상장 기업

69) 프랑스 공식 법률 정보 포털,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31817157/2023-02-15, 검색일자: 2025. 6. 18.

- 첫 상업적 판매 이후 10년 미만의 동안 영업을 지속한 기업이어야 함
- 투자 시점이 201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납입된 금액에만 적용되는 10년간의 한시적인 세제혜택임

2) 이탈리아⁷⁰⁾⁷¹⁾

- 이탈리아는 2012년 스타트업 관련 법령을 제정하면서 혁신 스타트업 투자 인센티브 조항을 새로 규정함
 - 이 조항에 따라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 또는 법인은 세제혜택을 부여받음
 - 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은 하나 이상의 혁신 스타트업 자본금에 직접 투자하거나 혁신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타 법인을 통해 투자한 법인세(IRES) 납세자임
 - 혁신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나 기타 법인의 경우 본 세제혜택을 제공받지 못함
- 이탈리아에서의 혁신 스타트업(start-up innovativa)은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자본 회사로 다음 요건들을 충족하는 비상장기업을 뜻함
 - EU의 2003/361/EC에서 규정한 영세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 설립 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음
 - 이탈리아에 소재하거나 EU 또는 EEA 회원국에 위치하되 이탈리아에 생산시설이나 지점을 보유해야 함
 - 두 번째 연도부터 연간 총생산가치가 500만유로 이하여야 함
 -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고 분배할 계획이 없어야 함
 -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상업화가 주목적으로 주된 활동이 대행 또는 컨설팅이 아니어야 함
 - 합병, 분할 등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닐 것

70) 이탈리아 CERDEF, <https://def.finanze.it/DocTribFrontend/getAttoNormativoDetail.do?ACTION=getSommario&id={4EB5EA56-624C-4829-9A21-FDBBDC574F47}>, 검색일자: 2025. 6. 23.

71) 이탈리아 CERDEF, https://def.finanze.it/DocTribFrontend/decodeurn?url=urn:doctrib::DL:2012-10-18;179_art25-com2, 검색일자: 2025. 6. 23.

- 다음 세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연구개발 비용이 총비용 대비 15% 이상
 - 전체 인력의 1/3 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박사과정생 또는 학사 후 3년 이상 공인 연구 경력 보유자이거나, 전체 인력의 2/3 이상이 석사학위 소지자
 -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된 산업, 생명공학, 반도체, 식물의 신제품 특허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록권 중 하나 이상을 보유

- 본 제도가 최초로 도입될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자에게 손금산입률을 20%로 제 공하였으며 2017년부터 손금산입률을 최대 30%로 상향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함
 - 30% 손금산입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스타트업이 특별등록부에 최 초 등록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법인투자자는 혁신 스타트업 투자 인센티브를 제 공받지 못함
 - 투자로 인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투자자가 해당 스타트업에 대해(직접 또는 자회사·관계 회사를 통해) 투자 가 능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제 최대 금액은 180만유로이며, 해당 출자지분은 최소 3년간 유지되어야 함
 - 만약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은 과세대상 소득에 이자상당액도 추가하여 환수됨
 - 공제액이 당해 총소득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은 최대 3개 과세연도까지 이월 가능함

3) 오스트레일리아⁷²⁾⁷³⁾⁷⁴⁾

- 오스트레일리아는 2016년 7월부터 발행한 적격 ESIC(Early Stage Innovation Company, 초기 단계 혁신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초기 단계 투자자 세제혜택(Early Stage Investor Tax Incentives)을 제공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세금감면과 수정 자본이득세 조치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규모 혁신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짐

- 초기 단계 투자자 세제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ESIC에서 새로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매수해야 함
 - 법인의 경우 신탁, 파트너십, 초기 단계 벤처투자유한회사, 주주 5명 이상 또는 상장사(widely-held company) 또는 그것의 자회사가 아니어야 함⁷⁵⁾
 - 한 과세연도에서 ESIC 투자 금액이 5만오스트레일리아달러(AUD)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전문 투자자 평가(sophisticated investor test)를 통과해야 함
 - 전문 투자자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총투자금액이 5만AUD를 초과하는 경우, ESIC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음
 - 주식 발행 직후 ESIC 또는 ESIC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배당, 자본 분배 또는 의결권 중 어느 하나라도 30%를 초과하여 보유·통제해서는 안 됨
 - 발행 시점에 투자자와 ESIC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안 됨

- ESIC 세제혜택을 위해 벤처기업이 적격하기 위해서는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 기업법」에 의해 외국 기업이 아니면서 다음 두 평가를 통과해야 함
 - 초기 단계 평가(early stage test)

72)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incentives-and-concessions/tax-incentives-for-innovation/tax-incentives-for-early-stage-investors>, 검색일자: 2025. 6. 18.

73) 오스트레일리아 재무부, <https://treasury.gov.au/national-innovation-and-science-agenda/tax-incentives-for-early-stage-investors>, 검색일자: 2025. 6. 18.

74) 오스트레일리아 법제처, <https://www.legislation.gov.au/C2004A05138/latest/text/10>, 검색일자: 2025. 6. 23.

75) 참고로 신탁과 파트너십의 경우 신탁과 파트너십이 개인이면서 과세연도 말에 구성원이 주주 5명 이상 또는 상장사(widely-held company) 또는 그 100% 자회사가 아닐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

- 법인화 등록 완료, 회사의 총비용이 100만AUD 이하, 과세소득 20만AUD 이하, 비상장
 - 다음 두 테스트 중 하나 이상
 - 100점 혁신 평가(100-point innovation test)
 - 다수의 객관적인 혁신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총획득점수가 최소 100점 이상이어야 함
 - 원칙 기반 혁신 평가(principles-based innovation test)
 - 상용화 계획, 성장 잠재력, 성공(확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 우위 등의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함
 - 테스트 기간 이후에 투자 대상 회사가 ESIC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의 세제혜택 자격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
- ESIC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적격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총액(비현금을 포함함)의 20%에 해당함
- 공제세액의 한도는 최대 연 20만AUD임
 - 단 전문 투자자 평가를 통과할 경우 한도는 존재하지 않음
 - 공제세액에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나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이 가능함
- 이와 함께 수정 자본이득세 조치(modified CGT treatment)를 통하여 주식을 1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자본이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음
- 그러나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 발생한 자본손실을 불산입(disregard)함

4) 말레이시아⁷⁶⁾⁷⁷⁾

- 말레이시아는 과세연도 2018년부터 VC(벤처기업) 또는 VCC(벤처캐피탈기업)에 투자한 개인 또는 법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제공함

76)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https://www.sc.com.my/development/vcpe/venture-capital-tax-incentives>, 검색일자: 2025. 6. 25.

77) 말레이시아 국세청, 『Venture Capital Tax Incentives PUBLIC RULING NO. 7/2022』, 2022. 12. 23.

- 세제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적격 벤처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적격 벤처회사는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벤처회사로 해당 과세연도 기준에 말레이시아에 위치해야 함
 - 적격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시드·창업·초기단계 자금에 조달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투자진흥법」에서 지정한 활동 또는 제품
 - 기술 기반 활동
 - 과학기술혁신부에서 승인한 연구개발 계획 아래에서 개발된 활동 또는 제품
 -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가 승인한 제도하에서 개발된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

- 법인투자자의 경우 적격벤처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거주자 지위를 가진 회사여야 함

- 적격벤처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시드·창업·초기 단계 자금의 형태로 투자되어야 함
 - 2017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여야 함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첫 투자 시점에 적격벤처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함
 -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간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함

- 이중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100%)을 소득공제함
 - 공제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보유 기간의 종료 시점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1. 개요

- 제IV장에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6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조의2) 및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예 대한 비과세(§13조)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타당성의 평가 기준은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도 설계·운영의 적절성,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참여자 중심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로 구분됨
 - 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정책목표의 적절성
 - 대상의 선정과 수단의 구성이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제도의 실효적 운영과 사후 성과관리, 제도 간 정합성, 조세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의 문제점
 -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운영상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개편 방향 제시

- 민간 중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정책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며, 제도의 존속 타당성은 충분함
 - 벤처투자 시장은 고위험·고수익 구조, 정보 비대칭, 회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간 자본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됨
 - 창업 초기기업은 담보력과 재무정보가 부족하여 은행 금융이나 공모시장 접근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민간자본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시장실패에 대응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
 - 세제지원은 간접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개입 수단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도구임
 - 조세특례는 직접보조금 대비 재정 부담은 낮고, 민간의 판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성을 보장함
 - 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 수단별로 수혜자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유인구조를 제공함

- 정부 정책자금에 편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현재 벤처자금에서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자금 배분 왜곡이 발생함
 - 조세특례는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함

- 다만 제도 운영 전반에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정책 목표 - 대상 - 수단 - 운영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성과기반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조세혜택이 특정 법인과 일부 벤처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동 제도 구조상 특정 벤처기업에 복수 투자자나 복수 펀드가 집중 출자하여도 조세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 자금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 감면제도의 성과 기반 연동이 부족하고, 사후 성과관리체계가 부재함
 - 현행 제도는 감면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회수율·고용창출·기술사업화 성과 등에 따라 감면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조세지출이 지속되는 구조로 인해 정책성과와 재정효율성 모두가 저하될 수 있음
 - 특수관계인 출자에 대한 제한 장치가 미흡하여 조세 형평성 저해 우려가 존재함
 -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수관계자 간 내부 자금 이동에도 감면이 허용될 수 있음
 -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나 지배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 요건은 감면 남용 우려를 키우고 있음
 - 정책목표 - 대상 - 수단 - 운영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후 성과 기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야 함

- 민간 운용사의 자금 운용, 투자처,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재간접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보호해야 함

2.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정부 개입의 적절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간접적 정부 개입 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이 충분함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정책목표: 벤처캐피탈(창업기획자, 유한회사형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 투자에 대해 양도차익을 비과세함으로써, 전문 투자기관의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함
 - 정부 개입의 근거: 고위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어 투자 회수 시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 리스크를 줄이고 회수 가능성 향상을 기대함
 - 사회적 이익 창출 구조: 벤처투자회사의 고위험 투자는 기술혁신, 고용창출 등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므로, 사회 전체 후생은 개별 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초과할 수 있음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정책목표: 일반 법인(대·중견·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함으로써 민간 법인의 전략적 자본 유입을 유도함
 - 정부 개입의 근거: 법인의 전략적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사업 발굴, M&A 가능성 등을 높이지만 회수 불확실성과 내부 심사 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실현이 저조함
 - 사회적 이익 창출 구조: 민간 법인의 전략투자는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기술 상용화·마케팅·해외진출 등 성장지원 기능을 동반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을 초과할 것임

○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정책목표: 일반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소득공제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자발적 투자 참여를 유도함
- 정부 개입의 근거: 개인투자자는 전문성 부족, 회수기간 장기화, 손실 우려로 벤처투자에 소극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제 유인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필요함
- 사회적 이익 창출 구조: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초기 창업기업에 소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민간 중심의 투자문화 확산 및 시장 다양성 제고에 기여함

□ 이들 세 제도는 각기 다른 투자 주체(개인, 법인, 벤처투자회사 등)를 대상으로 하나, 공통적으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에서 민간 자본의 위험 회피를 보완하고, 사회 전체의 자본효율성을 제고하는 간접적 정부 개입 수단임

○ 벤처투자의 경제적 속성상 외부경제 효과(기술 파급, 고용 창출, 산업 다변화 등)가 크며, 민간의 사적 판단만으로는 투자 수요가 과소 발생함

- 이는 사적 한계비용(PMC) > 사회적 한계비용(SMC)인 상황으로, 정부는 조세 감면을 통해 PMC를 낮추어 민간 투자를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음

○ 이하의 홍병진 외(2022)⁷⁸)에서 제시된 경제모형은 벤처투자는 외부경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비용(SMC)보다 개별 투자자의 사적 한계비용(PMC)이 더 클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

- $PMC > SMC$ 의 구조로 인해 투자자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사적 한계 편익(PMB)과 PMC가 일치하는 수준까지(즉 $PMB = PMC$)만 투자하게 됨
-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회적 한계비용(SMC)보다 크므로($SMB > SMC$), 이러한 사적 투자 수준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저투자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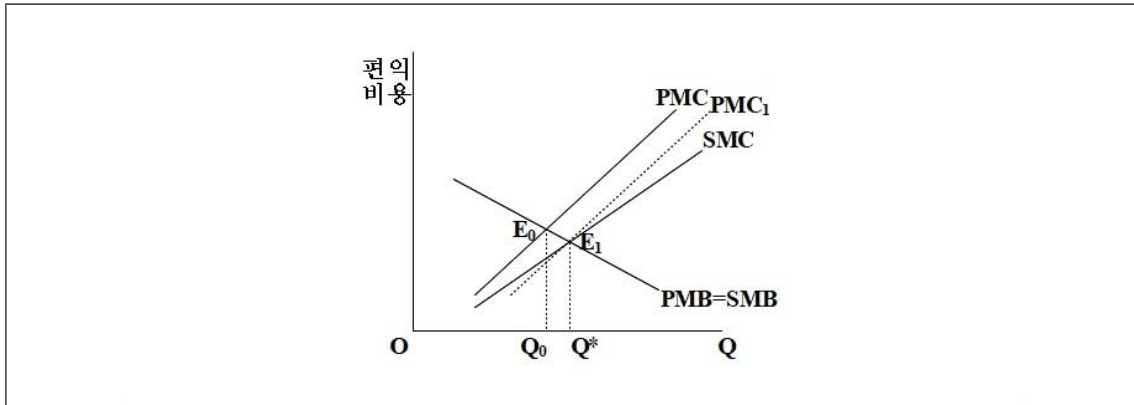
○ [그림 IV-1]에서는 사적 투자균형 수준 Q_0 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투자 수준 Q^* 보다 낮음

- 사회적 최적 수준(Q^*)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지원을 통해 투자

78) 홍병진·전병욱·송호신,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자의 사적 한계비용을 낮춰야 함($PMC \rightarrow PMC_1$)
- 그 결과 투자 균형점이 E_0 에서 E_1 로 이동하며, 벤처투자 규모가 Q_0 에서 Q^* 로 증가하게 됨

[그림 IV-1]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벤처투자 수준



자료: 홍병진 외(2022), p. 101, [그림 4-1]

-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제도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유인을 설계해 투자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책 목표에 적합한 간접 개입 구조를 제공함
- 조세특례는 직접보조금보다 재정 부담이 낮고, 성과 발생 시점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져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 앞선 절의 분석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해당 개입이 ‘조세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책수단으로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류덕현·박기백(2012)⁷⁹⁾이 정리한 기준(홍병진 외(2022)⁸⁰⁾의 분석을 인용)에 따라, 정책목표(벤처투자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중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한지를 다면적으로 검토함

79) 류덕현·박기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발표자료, 2012.

80) 홍병진·전병욱·송호신,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본 절에서는 <표 IV-1>을 기반으로 ① 수혜자 특성 ② 보조 수준 및 대상 ③ 지원 시점 ④ 행정집행 효율성 ⑤ 부작용 통제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조세지원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함

<표 IV-1>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간의 선택 기준

구분	재정지출	조세지출
수혜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담과 무관한 경우 - 취약계층 중심인 경우 - 수혜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 특정 수혜자만 혜택을 주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담이 있는 수혜자 - 일반 계층 중심(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는 없는지 판단) - 시장이 존재하여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한 경우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경우 (다수 지원 목적)
보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상이 다양하여 보조수준이 달라야 하는 경우 -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생필품, 필수 비용인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퇴직저축, 건강보험 등)
보조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수준이 높은 경우 - 취약계층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 효율적인 대상에 더 높은 보조를 하고 싶은 경우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한시적 지원(시범사업 성격이 거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지원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사전적 지원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이후 지원에 적합
행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점검, 결과확인 등이 필요하여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적합한 대상자 선정 등에 순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으로 부정의 소지가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시 관여기관, 인원, 선정 절차 등이 매우 어려울 경우 - 적합한 대상자 선정 필요성이 낮은 경우 -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으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
부작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후적으로 수혜가 아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지원한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사후적으로 수혜가 아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소규모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영향이 적은 경우

자료: 류덕현·박기백, 2012.

- 분석 결과 조세지출 방식은 다양한 기준에서 재정지출에 비해 정책수단으로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수혜자 특성 측면

- 벤처투자자는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납세자로서 명시적 세금 부담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투자자에게 조세감면이 제공됨
 - 별도 선별 없이 시장 참여자 전반에 적용되어 형평성과 일반성을 확보함
 - 보조대상 및 보조 수준 측면
 - 투자자는 성과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큰 감면을 받게 되어 성과연동형 유인 구조가 형성됨
 - 영리활동을 전제로 하는 투자 행위에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자생적 투자 확대에 효과적임
 - 지원 기간 및 지원 시점 측면
 - 조세감면은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중장기 정책수단으로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짐
 - 투자자들은 사전 예측 가능한 조건하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행정집행 효율성 측면
 - 조세지원은 법적 요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개별적 심사나 선정 없이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함
 - 복잡한 집행 구조가 없어 행정 비용과 재정 누수 우려가 적음
 - 부작용 통제 가능성 측면
 - 과세관청의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 통제가 가능하고, 세법상 엄격한 요건 설정도 가능함
 - 지원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운영의 가능성이 낮음
-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수혜자별로 차별화된 조세지원 수단을 설계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행태에 따라 유연한 유인구조를 제공하고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이 있음
- 각 제도는 수혜자 유형별로 상이한 감면 방식(소득공제, 세액공제, 양도차익 비과세)을 적용함으로써 투자 동기별 유인을 정교하게 반영하고 있음
 - 제16조(소득공제): 개인투자자의 벤처조합 출자 유도
 - 제13조의2(세액공제): 법인의 벤처기업 지분취득 시 법인세 절감 효과
 - 제13조(양도차익 비과세): 전문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세 부담 제거

- 이러한 구성은 단일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 주체의 리스크 감수 특성에 맞춰 감면 방식과 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정책목표-수단 간 정합성을 확보함
 - 민간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 가능한 유인구조를 통해 정부 개입의 강제성을 최소화함
 - 회수 기대수익에 대한 비과세(제13조)는 장기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고, 진입 시점의 소득공제(제16조)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 수행

- 특히 2022년 이후 개정 내용을 보면 제도별 수단이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확장되고 있음
 - 제16조 개정: 간접투자자 대상에 민간 재간접벤처조합을 포함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다양한 진입 통로를 수용함
 - 간접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소득공제 범위로 제도 수단을 조정한 것으로 평가됨
 - 제13조의2 개정: 법인의 재간접 출자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여 법인자본의 간접 벤처투자 장려
 - 대기업·중견기업도 우회 경로를 통해 창업생태계에 자본 공급 가능
 - 제13조 개정: 엔젤투자자의 유상증자 인수 비율 요건을 완화(10→30%)함으로써 초기투자자 중심의 인센티브 강화
 - 투자 유치가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수단 적합성을 높인 사례임

- 그러나 일부 제도는 감면 수단의 설계가 과도하거나 적용 요건의 불일치로 인해 실효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함
 - 제13조의2는 법인의 대규모 자본이 형식적 출자만으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한 법인세 감면 문제가 우려됨
 - “정책 취지와 무관한 중간지주회사, CVC 등의 포괄 적용은 형식적 수단 오용”이라는 비판 제기됨
 - CVC 제도화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회사/신기사를 설립하여 제13조의 혜택인 양도 및 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13조의 2와의 역할이 중복

- 각 제도 간 적용 기준이 상이하어 민간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함
 - 예: 제13조는 창업 7년 이내 기준, 제16조는 3년 이내 적용 등
 - 수혜대상 벤처기업 기준(R&D 비중, 업력 등)의 비일관성은 투자 왜곡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정책수단의 기본 설계는 정책목표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 투자자별 위험 감수도에 따른 유인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감면 수단의 정밀성 보완이 필요함
 - 정책수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 제13조의2만 수혜받을 수 있었던 내국법인이 CVC를 설립하여 제13조도 혜택 대상이 되어 이 두 제도 사이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
 - 감면 수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수관계인 감면 적용 제한 검토

3.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민간 자본 유입 확대를 핵심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고위험·고성장 산업에서의 시장실패 대응과 투자유인 제공이라는 정책 필요성에 비추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 벤처기업의 고위험·고성장 특성으로 인한 만성적 자금조달 문제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벤처기업은 초기 사업성과 불확실성, 무형자산 중심 구조, 담보력 부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민간 금융시장에서 지속적인 과소투자에 직면
 - 벤처기업 전체의 77.6%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의 경우 자금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비중이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심화됨⁸¹⁾

81)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24.

- 이는 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 민간 자본만으로는 벤처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PMB = PMC < SMB = SMC$)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조세를 통한 민간 투자유도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적절한 정책목표로 작동함
- 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구조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절대적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민간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민간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정책목표로서 여전히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2024)에 따르면 외부자금 조달 중 정책금융의 비중은 24.1%로 나타나, 2021년 보고서의 통계치(65.8%) 대비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정부 자금 의존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 대출(28.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 등 민간 직접투자 비중은 10.2%에 그쳐 자생적 생태계로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
 - 특히 창업 초기 고위험 기업에 대한 투자 회피 성향은 여전히 존재하며, 세계 유인을 통해 민간 자본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함
- 이와 같은 정책목표는 정부의 조세특례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지속 반영되고 있음
 - 제16조 개정: 간접투자 대상에 ‘민간 재간접벤처조합’이 포함됨
 - 개인투자자의 다양한 진입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현실적인 투자 경로 다변화와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
 - 제13조의2 개정: 법인의 재간접 출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 대기업·중견기업이 직접 출자 외에도 우회 경로를 통해 창업생태계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 민간 대형자본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정책목표와 정합성을 확보함
 - 제13조 개정: 엔젤투자자의 유상증자 인수 허용비율 상향(10 → 30%)
 -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 초기자본 공급을 강화하고, 고위험투자에 인센티브를 집중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특례 제도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산업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과소투자 문제 해결 여부⁸²⁾
 - 벤처기업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인해 일반 금융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과소투자의 시장실패가 발생함
 -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산업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정부 개입의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 자생적 민간투자 기반의 확대 유도 여부
 -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민간자본의 참여를 저해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유발함
 - 조세 유인을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고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함
- 민간 직접투자 확대의 정당성과 필요성 여부
 - 정책금융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직접투자의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민경제 차원의 혁신성과 잠재성장률 제고 기여 여부
 - 벤처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 기술혁신, 산업 재편 등 파급효과가 크며, 이는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도 직결됨
 - 조세특례를 통한 벤처투자 촉진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그 정책목표가 정당함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 투자자 등으로 설정된 정책대상은 조세지원 목적과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세 가지 조세특례제도(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는 모두 민간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대상도 “투자자” 중심으로 설정됨
 - 제13조는 벤처투자회사(VC)나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를 부여함

82) 김재진·기은선,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제13조의2는 법인자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함
- 제16조는 개인투자자와 간접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최근 개정으로 재간접펀드까지 포함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한 점이 확인됨
- 이처럼 투자자 등 벤처생태계 참여자를 조세지원의 수혜대상으로 한 것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정책의 취지와 정합성이 있음
- 2025년 개정안에서는 “창업 7년 이내” 등의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간접·재간접 경로 등 실무상의 다양한 투자 유형을 포괄하고 있음
- 이는 정책대상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특정 방식의 투자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투자자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투자 대상 업종의 설정은 과도하게 포괄적이며, 세분화된 관리 필요

- 현재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 업종은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체 업종에 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제13조 및 제13조의2는 투자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중소기업이면 대부분 적용되며,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포괄적임
- 하지만 포화산업·유망산업·필수산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인 감면을 제공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또한 특정 업종으로 조세혜택이 과도하게 몰리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 위험도나 투자 성과를 반영한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됨
- 취약 산업이나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종별 미세조정(fine tuning)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임

□ 벤처기업 요건 및 업종 설정 기준의 불일치와 편향성이 정책대상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조세특례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2조의2의 R&D 투자 비중 요건을 채택하여, 일정 매출 이상 및 성장성을 요하는 기업 중심의 설계로 편중됨
- 이로 인해 초기 기술 기반 창업기업, 비수도권 기반 혁신기업 등은 제도적 사

각지대에 놓이며, 고성장 가능성보다는 외형상 조건이 충족된 기업 중심으로 조세혜택이 집중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음

- 초기기업에 자금이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존재하며, 벤처기업 정의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수관계 출자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조세회피 가능성 존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상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지분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30% 미만의 출자나 가족·사적 관계에 기반한 영향력 있는 출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질적 내부 자금 순환도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구조는 정책적 목적과 무관한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고의적 조세회피와 비효율적 자금 운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특수관계 출자에 대한 감면 배제 또는 제한, 실질적 영향력 기준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다. 제도운영의 적절성

□ 조세특례제도는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지닌 벤처·창업 생태계에서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기반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직접지원 대비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운영 방식으로서의 적절성이 인정됨

-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제고하고, 초기·고위험 기업에도 투자 유인이 발생하도록 유도함
 -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 등의 민간자본이 벤처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세액공제·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다양한 수단은 투자자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조세 부담을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음
 - 예컨대 제13조(양도차익 비과세)는 벤처투자회사·VC 등 SPC 구조의 배당 중심 법인에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제13조의2·제16조는 실

효세율이 높은 일반 법인·개인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제공함

- 그러나 제도 운영상 여러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자금의 비정상적 집중과 조세 형평성 훼손 가능성 등이 운영상의 적절성을 저해함
 - 시장실패 및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수 벤처기업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업종·기술력이 유사한 기업들 사이에서도 특정 기업으로 자금이 편중됨
 -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출자 집중에 대한 억제 장치 부재
 - 투자집중 완화를 위해 투자대상인 벤처기업 단위로 세제혜택의 한도 설정 필요
 - 투자자뿐만 아니라 피투자기업 기준으로 조세특례 적용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영국 SEIS 제도 등에서는 특정 벤처기업 단위로 조세혜택 총액 한도를 설정한 사례가 있음
 - 다양한 기업으로 자본이 분산되어 산업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제도 개정을 통한 수단 확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감면 혜택이 대기업 계열 운용사(CVC)나 중간지주회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감면 혜택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제13조의2 개정으로 법인의 재간접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규모 자금력을 지닌 일부 법인이 제도 수혜자로 포섭됨
 - 정책 취지와 무관한 형식적 투자에도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발견됨
 - 제16조 개정으로 민간 재간접조합이 포함되며, 개인투자자 대상 간접투자 경로 확대는 긍정적이나 관리 체계 미비 시 투명성 저하 및 혜택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수관계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문제도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됨
 - 형식적 기준만 충족하면 사실상 내부자금 이동에도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한 상황임
 - 특수관계인 요건 기준이 협소하여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구조가 일부 운용사에서 지적됨
 - 예시로 대기업인 A기업과 신생 벤처기업 B가 있다고 가정하고, a씨와 b씨를 각각 A기업과 B기업의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가정하고,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이며 b씨가 과거에 a씨 아래에서 임원으로 일하였었고, 현재 법적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가정
 - A 기업이 B 벤처기업에 100억원 신주 투자하는 계약을 맺고 A는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다음과 같이 자금의 내부화를 실현시킬 수 있음
 - B 벤처기업이 A 기업 또는 a씨가 소유한 다른 회사에 'R&D 컨설팅', '경영 자문'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용역비를 지불
 - 또는 A 기업이 보유한 불필요한 자산을 B 벤처기업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
- 특수관계자 출자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 또는 공제율 차등 등 규제가 필요함

라.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 조세특례 간 중복 지원의 제도적 한계장치는 존재하나, 간접 및 재간접 투자 허용 등 제도 확대에 따라 실질적 중복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는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등 주요 조세특례를 모두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며, 총감면 한도 내 감면액이 제한됨
 - 동일 납세자가 복수 특례를 활용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법정 세부담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세회피의 구조적 위험은 제한됨
 - 이는 명목상 세제중복을 허용하되 감면총액을 통제함으로써 제도 간 중복혜택이 조세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완충장치로 평가됨
 - 그러나 2022년 이후 제도 개편을 통해 간접 및 재간접투자 방식이 허용되면서, 동일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 조합 및 출자 경로를 활용한 중첩적 세제수혜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예: A기업이 설립한 B조합에 C법인이 재간접 출자하는 경우, B조합과 C법인 모두 제13조 및 제13조의2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는 투자금 유입의 중복성과 감면 대상의 중첩이라는 점에서, 벤처기업 단위의 자금 및 감면 집중 문제로 연결됨

- 수혜 대상을 투자자(법인·개인)로 특정함에 따라 동일 기업에 복수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제도상 허용되고 있음
 - 이는 개별 투자자 중심의 감면 체계 설계로 인해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투자에 여러 투자자가 중복 참여할 경우 감면 효과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함
 - 예: A벤처기업에 대해 B조합, C조합, D법인이 각각 출자 시 각 수혜자 단위로 감면이 적용되며, A기업은 정책적으로 동일 자금 유입에 대해 중복 혜택을 얻게 되는 구조임
 - 투자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기업 중심의 세제유입 추적을 차단함으로써, 세제 지원의 효율성 및 자원배분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
 - 특히 자금력이 큰 대기업·지주회사 등이 CVC 구조를 활용하거나 특수목적펀드(SPF) 다층 구조로 복수 출자 시, 조세지출 효과가 특정 그룹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정책의 초기 취지였던 위험 분산형 민간투자 유도라는 방향성이 훼손되며, 세제지원이 대기업 자본의 전략적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기능이 우려됨
 - 또한 대기업 계열사 및 중간지주회사 등을 통한 ‘형식적 재간접 투자’ 구조가 감면 제도의 예외 적용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점도 우려사항임

- 동일 목적을 지닌 기타 벤처투자 조세특례(제13조의4, 제14조, 제16조의2~4)와의 기능 중복은 제도 취지상 구분되며, 실질적 중복 가능성은 제한적임
 - 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제16조의2~4)는 기업 내 인력 유인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로, 투자자 대상의 조세감면 제도와 목적 및 적용 대상이 다름
 -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특례(제13조의4) 역시 기술자립 및 산업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한 제도로, 범용적 벤처투자 조세지원과의 목적·범위상 차이가 있음
 - 조세특례 간 실질적 목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 과세표준에 대해 복수 특례를 적용하는 구조는 제도상 허용되지 않음

- 조세특례와 비조세 직접지원(재정지원) 간 실질적 중복은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자(수혜자) 단위의 보조금 및 융자 지원 항목은 부재함
 - 투자 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및 보조금(모태펀드 등)은 존재하나, 투자자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항목은 대부분 명시되지 않음
 - 투자자는 조세감면을 통해 간접적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뿐, 민간펀드에 대한 정부 직접투자나 매칭비율 조정은 기업(수혜자) 단위에 국한됨
 - 또한 투자자에 대한 정부 매칭 또는 수익보전 장치는 별도로 없으며, 조세지원이 유일한 유인구조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보임

5. 소결

- 정부 개입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확보
 - 벤처투자는 외부경제를 창출함에도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한계비용(PMC)이 사회적 한계비용(SMC)보다 커지는 구조($PMC > SMC$)를 가지고 있어,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한 투자($Q_0 < Q^*$)가 이루어짐
 -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며, 조세지원은 사회적 한계비용을 줄여($PMC \rightarrow PMC1$) 사회적 최적 수준의 투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정책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우월성
 - 기존의 일반적 재정지원은 보조금의 직접 지급 등 방식으로 행정비용, 정보비대칭, 정책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조세지원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행정집행 효율성과 세제 유인에 따른 선순환 효과를 제공함
 - 실제 2022년 이후 개정을 통해 민간 재간접조합을 포함하거나 유상증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수단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고위험투자에 대한 유연한 자금 유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과 일치함
- 정책목표 및 제도 설계의 타당성
 - 정책목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공급 기반 확충과 민간 중심 자금조달 체계

유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 기준 외부자금에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24.1%로 낮아졌음에도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 비중이 여전히 10.2%에 불과한 현실에서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음

- 정책대상은 벤처·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투자자, 전문 조합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 제한이 없으면서도 조세지원 악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출자 제한 등 정교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 다만 특정 벤처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과 같이 벤처기업 단위로 한도액을 설정하거나 특수관계자 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제도 운영의 적절성 및 실무 적용성

- 창투조합 비과세 등은 벤처투자 특수목적법인의 소득구조(배당 중심)를 고려하여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로 설계되었고, 일반법인 및 개인 투자자에게는 세액공제·소득공제를 통해 위험 분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조세형평 훼손 우려, 투자집중 유인, 특수관계자 투자의 우회 가능성 등 시행상 문제점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감면 상한 설정, 실질관계 판단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V. 효과성 분석



V. 효과성 분석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 원천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 수혜자집단의 특징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수혜자는 비수혜자와 비교하여 소득 및 세금 관련 지표 전반에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남
 - 압도적인 소득 격차
 - 분석 결과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집단은 소득 수준 자체가 월등히 높아, 수혜자의 평균 총급여(1억 7,300만원)는 비수혜자(4,218만원)의 4배를 넘어섰으며, 세금의 기반이 되는 과세표준은 무려 5배 이상 차이
 - 전반적인 세제혜택 활용도 차이
 - 수혜자들은 평균 1,420만원의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것 외에도 다른 소득공제(평균 1,820만원)와 세액공제(평균 195만원) 역시 비수혜자집단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활용
 - 이는 수혜자집단이 전반적인 세테크에 더 적극적이고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
 - 세대주 비율은 여러 지표들 가운데 유일하게 동일하였음
 - 두 집단 간의 유일한 통계적 공통점은 세대주 비율(75%)
- 세대주 비율을 제외한 총급여, 전체 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세 관련 주요 변수들의 평균은 수혜자집단이 비수혜자집단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이 상호 이질적인 집단임을 시사
 - 이는 관측 가능한 변수들의 이질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의 추정방식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표 V-1>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요약 통계(제16조, 원천세)

(단위: 만원)

구분	수혜자 (n=121,803)				비수혜자 (n=5,840,960)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총급여	17,300	43,300	550	3,470,000	4,218	7,913	0	8,250,000
근로소득금액	15,800	42,800	180	3,470,000	3,245	7,687	0	8,080,000
벤처투자 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420	2,280	0.0001	96,500	0	0	0	0
여타 소득공제	1,820	1,090	150	30,400	829	654	0	37,800
소득공제전체	3,240	2,820	160	106,000	829	654	0	37,800
과세표준	12,600	41,800	0	3,410,000	2,417	7,445	0	8,080,000
세액공제	195	395	0	40,500	82	121	0	86,300
세대주더미	0.75	0.43	0	1	0.75	0.43	0	1

주: 1. 그밖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전체에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2. 세대주더미는 세대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변수
 3. 전체 연도는 귀속연도 기준 2016~2023년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실제 절세 효과에 대한 추정

-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통계적 회귀분석을 다각도로 시행
 - 해당 분석은 평균치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소득공제 1원이 늘어날 때 과세표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리고 이 효과가 벤처투자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분석 방법론: 상호작용 효과를 통한 집단 간 차이 측정

- ‘상호작용 변수(교차항)’를 도입하여 두 집단 간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
 - 기본 효과 측정: 먼저 ‘소득공제’ 변수를 통해, 일반적인 비수혜자 그룹에서 소득공제 1원이 과세표준을 얼마나 줄이는지(기본 효과)를 측정하며, <표 V-2>~<표 V-5>에서 소득공제 항목의 계수가 바로 이 값에 해당
 - 차이 효과 측정: ‘수혜자’라는 그룹 특성과 ‘소득공제’ 변수를 곱한 ‘소득공제 × 수혜더미’라는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해당 변수의 계수는 비수혜자 대비 수혜자 그룹의 소득공제 효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차이 값’임

- 수혜자의 순수 효과 계산: 따라서 수혜자 그룹의 최종적인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 계수) + (소득공제 × 수혜더미 계수)의 합으로 계산
- 또한 ‘수혜자’의 정의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의 입체성을 제고함
 - 실수혜자: 해당 연도에 실제로 벤처투자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 제도의 즉각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 용이
 - 수혜자군: 분석 기간(2016~2023년) 전체에서 한 번이라도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납세자이며, 제도의 장기적 수혜자 그룹의 특성을 보여줌

□ 분석 결과 1: 전체 기간(2016~2023년) 통합 분석

- 실수혜자 분석 결과
 - 소득공제 계수는 약 -1.30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비수혜자의 경우 다른 소득공제액이 1원 증가할 때 과세표준이 1.30원 감소함을 의미함
 - 실수혜자에게 적용되는 효과 조정분은 +0.50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실수혜자의 최종 절세 효과는 $-0.80(= -1.30 + 0.50)$ 으로 추정되어, 수혜자의 소득공제 1원은 과세표준을 0.8원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함
- 수혜자군 분석 결과
 - 비수혜자의 기본 효과는 -1.27이고, 수혜자군에게 적용되는 효과 조정분은 +0.40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수혜자군의 최종 절세 효과는 $-0.87(= -1.27 + 0.40)$ 으로 추정됨
- 두 분석 모두 일관되게 벤처투자 수혜자 그룹이 비수혜자 그룹보다 소득공제 1원당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한계 효과’가 현저히 약한 것을 확인하였음
- 이는 수혜자들이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이미 다른 공제 항목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함
 - 결과적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질성을 제거한 통계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분석 결과 2: 연도별 분석

- 실수혜자 더미를 기준으로 납세자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전체 기간과 달리, 개인별·연도별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연도별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와 전체 소득공제 교차항의 계수에 대한 추정값은 0.40~0.99로 나타남

- 특히 2019년 이후(2019~2023년)로는 모두 0.4~0.48 사이의 추정값을 보여 2016~2018년의 0.87~0.99에 비하여 낮아진 모습을 보임
- 해당 소득공제 수혜자의 소득공제 한 단위가 증가하면 과세표준은 약 0.46 단위 감소(2016년), 0.38 단위 감소(2017년), 0.48 단위 감소(2018년), 0.87 단위 감소(2019년), 0.90 단위 감소(2020년), 0.87 단위 감소(2021년) 0.98 단위 감소(2022년), 1.0 단위 감소(2023년)하는 것으로 추정됨
- 비수혜자의 소득공제 한 단위가 증가하면 과세표준은 약 1.37 단위 감소(2016년), 1.37 단위 감소(2017년), 1.35 단위 감소(2018년), 1.35 단위 감소(2019년), 1.35 단위 감소(2020년), 1.34 단위 감소(2021년), 1.41 단위 감소(2022년), 1.40 단위 감소(2023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군 더미의 경우에도 연도별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와 전체 소득공제 교차항의 계수에 대한 추정값은 0.36~0.61로 나타나 실수혜자 더미를 이용한 경우보다 다소 낮아져 과세표준 절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커짐
- 2019년 이후(2019~2023년)로는 이전에 비하여 낮아지는 추세 등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표 V-2>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 1(제16조, 원천세, 실수혜자 더미)

(단위: %)

변수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소득공제	-1.30** (0.0003)	-1.37** (0.0004)	-1.37** (0.0005)	-1.35** (0.0004)	-1.35** (0.0004)
소득공제×수혜더미	0.50** (0.0005)	0.91** (0.0017)	0.99** (0.0013)	0.87** (0.0010)	0.48** (0.0008)
총급여	0.99** (0.00002)	0.97** (0.0005)	0.98** (0.0004)	0.98** (0.00004)	0.98** (0.00003)
세대주더미	113337** (2853.2)	255216** (5332.8)	265298** (5412.0)	240083** (5569.3)	251227** (5962.6)
연도 고정효과	○	×	×	×	×
납세자별 고정효과	○	×	×	×	×
표본크기	5,962,763	733,161	734,637	739,804	749,582

주: 1. 상수에 대한 계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2. **는 해당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값이 0.00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

3. 수혜더미는 실수혜자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짐

자료: 저자 작성

<표 V-3>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 2(제16조, 원천세, 실수혜자 더미)

(단위: %)

변수	전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소득공제	-1.30** (0.0003)	-1.35** (0.0004)	-1.34** (0.0005)	-1.41** (0.0004)	-1.40** (0.0004)
소득공제×수혜더미	0.50** (0.0005)	0.45** (0.0007)	0.47** (0.0007)	0.43** (0.0007)	0.40** (0.0007)
총급여	0.99** (0.00002)	0.98** (0.00002)	0.98** (0.00002)	1.00** (0.00002)	1.00** (0.00002)
세대주더미	113337** (2853.2)	208735.2** (6076.2)	160826.9** (6965.7)	169813.3** (6959.1)	138744.7** (6822.3)
연도 고정효과	○	×	×	×	×
납세자별 고정효과	○	×	×	×	×
표본크기	5,962,763	750,099	754,455	751,475	749,550

- 주: 1. 상수에 대한 계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2. **는 해당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값이 0.00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
 3. 수혜더미는 실수혜자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짐

자료: 저자 작성

<표 V-4>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 3(제16조, 원천세, 수혜자군 더미)

(단위: %)

변수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소득공제	-1.27** (0.0003)	-1.37** (0.0004)	-1.38** (0.0004)	-1.35** (0.0005)	-1.35** (0.0004)
소득공제×수혜더미	0.40** (0.0004)	0.46** (0.0010)	0.57** (0.0009)	0.61** (0.0008)	0.43** (0.0007)
총급여	0.98** (0.0000)	0.97** (0.0000)	0.98** (0.0000)	0.98** (0.0000)	0.98** (0.0000)
세대주더미	61068.57** (3160.8)	175328.6* (5475.0)	183248.3** (5768.9)	160547.2** (5808.2)	216077.7** (5701.1)
연도 고정효과	○	×	×	×	×
납세자별 고정효과	○	×	×	×	×
표본크기	6,425,537	803,613	803,132	803,132	803,132

- 주: 1. 상수에 대한 계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2. **는 해당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값이 0.00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
 3. 수혜자군 더미는 분석 기간 동안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짐

자료: 저자 작성

<표 V-5>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 4(제16조, 원천세, 수혜자군 더미)

(단위: %)

변수	전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소득공제	-1.27** (0.0003)	-1.35** (0.0004)	-1.34** (0.0005)	-1.41** (0.0004)	-1.40** (0.0004)
소득공제×수혜더미	0.40** (0.0004)	0.41** (0.0006)	0.43** (0.0006)	0.40** (0.0006)	0.36** (0.0006)
총급여	0.98** (0.0000)	0.98** (0.00002)	0.98** (0.0002)	1.00** (0.00002)	1.00** (0.00002)
세대주더미	61068.57** (3160.8)	180916.9** (5796.7)	141798.2** (6685.0)	151730** (6741.8)	117143.6** (6632.6)
연도 고정효과	○	×	×	×	×
납세자별 고정효과	○	×	×	×	×
표본크기	6,425,537	803,132	803,132	803,132	803,132

주: 1. 상수에 대한 계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2. **는 해당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값이 0.00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

3. 수혜자군 더미는 분석 기간 동안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짐

자료: 저자 작성

□ 매칭을 통한 순수 효과 추정

- 앞선 회귀분석이 벤처투자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한계 절세 효과’의 차이를 보여주었다면, 다음 분석 단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발라내는 데 집중
 - 매칭은 관측 가능 변수 측면에서의 이질성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
- 앞서 확인했듯이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수혜자집단은 비수혜자집단에 비해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은, 근본적으로 다른(이질적인) 집단임
 - 예를 들어 운동화의 성능을 평가하려고 한다고 가정할 때 이전의 분석은 최신행 운동화를 신은 ‘프로 마라톤 선수’ 그룹과 일반 운동화를 신은 ‘일반인’ 그룹의 달리기 기록을 비교하는 것과 유사함
 - 이러한 표본 구성은 선수 그룹의 기록이 더 좋은 것이 과연 운동화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래부터 잘 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경제학에서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라고 하며, 매칭 분석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임

- 매칭은 처치집단인 수혜자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수혜자로 구성된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을 비교하며 해당 비교집단의 구성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1단계(처치집단 확인): 먼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대상인 처치집단을 그대로 활용
 - 2단계(비교대상 탐색): 다음으로 수많은 ‘비수혜자’ 중에서 각 수혜자와 소득, 나이, 기타 공제액 등 관찰 가능한 모든 조건이 거의 동일한 사람을 찾음
 - 3단계(비교집단 구성): 이렇게 찾아낸 사람들을 새로운 ‘비교집단’에 포함시키며, 이 과정을 모든 수혜자에 대해 반복하여 수혜자집단과 거의 동일한 프로필을 가진 ‘가상의 쌍둥이 집단’을 완성
- 이렇게 공정하게 구성된 두 집단을 비교하여 얻은 결과가 바로 처치집단인 수혜자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결과변수 평균의 차이인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ATE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임
 - 이러한 ATET 값은 두 집단 간의 타고난 이질성(선택 편의)이 제거된 상태에서 측정된 ‘순수한 정책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매칭 통제변수

-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재무적 특성을 대표하는 다음 네 가지 핵심 변수를 ‘매칭의 기준점’으로 사용
 - 총급여: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 과세대상 근로소득: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 세대주 더미: 세대주 여부는 부양가족 공제 등 세금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
 - 세액공제 감면 합계: 벤처투자 소득공제 외에 다른 세금감면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수
- 소득공제 이전에 결정된 변수와 소득공제 수혜 여부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이들 변수가 유사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수혜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수혜자와 가장 유사한 비수혜자를 정교하게 찾아내기 위해 통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한 페어 매칭(Pair Matching)’ 기법을 사용

- 마할라노비스 거리: 위에서 선택한 네 가지 통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개인(수혜자)과 다른 개인(비수혜자)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종합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고급 통계 기법임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까지 고려하므로 매우 정교한 매칭이 가능
- 페어 매칭 (Pair Matching): 이 기법은 한 명의 수혜자에 대해 계산된 ‘종합 유사도 점수’가 가장 가까운(즉, 가장 유사한) 단 한 명의 비수혜자를 찾아 1:1로 짝을 지어주는 방식임
- 이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해당 소득공제 수혜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

□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납세자의 세금 구조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변수를 ‘결과 변수’로 선택하여 분석

- 과세표준: 벤처투자 공제가 납세자의 최종적인 세금 부담 기반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총소득공제액: 벤처투자 공제가 다른 공제 항목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여타 소득공제액: ‘총소득공제액’에서 ‘벤처투자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액이며, 구축효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 만약 벤처투자 공제가 다른 공제를 ‘대체’했다면 이 값은 줄어들 것이고, 다른 공제 활용을 ‘촉진’했다면 이 값은 늘어날 수 있음
- 소득공제한도 초과액: 종합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며, 벤처투자 공제가 고소득층 수혜자들을 공제 한도 이상으로 밀어내어 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

□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ATET)’는 다음과 같이 추정

- 처치집단인 수혜집단과 처치집단 납세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통제집단 C에 속한 근로소득세 납세자로 이루어진 비교집단 간 결과변수 평균의 차이인 ATET(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treated)를 추정

○ 처치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ATET = \frac{1}{N_T} \sum_{i \in T} (Y_i - Y_{m,i}),$$

- 여기에서 처치집단 T 에 속한 납세자 i 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제집단에 속한 납세자의 결과변수와 설명변수는 각각 $Y_{m,i}$ 와 $x_{m,i}$ 임
-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Mahalanobis distance가 가장 짧은 것을 의미함
- $x_{m,i}$ 은 $\operatorname{argmin}_{m \in C} (x_i - x_m)' \Sigma_X^{-1} (x_i - x_m)$ 으로부터 찾을 수 있음
- 여기에서 Σ_X 는 설명변수 벡터 X 의 표본 표준편차를 대각원소로 하는 대각행렬이고, $(x_i - x_m)' \Sigma_X^{-1} (x_i - x_m)$ 을 Mahalanobis distance라고 함
- $x_{m,i}$ 을 찾으면 해당 납세자의 결과변수 $Y_{m,i}$ 를 찾을 수 있음
- 이렇게 i 에 매칭된 $(Y_{m,i}, x_{m,i})$ 를 갖는 통제집단(control group) 내 구성원들의 집합이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임

□ (매칭을 이용한 ATET 추정 결과) 수혜자와 모든 조건이 유사한 ‘통계적 쌍둥이’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납세자의 세금 구조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에 대한 효과(-)

- 분석 기간인 최근 5년(귀속연도 기준 2016~2023) 동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수(-)로 추정되었음
- 효과 규모: 이 제도의 수혜자는 자신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비수혜자에 비해 과세표준을 연평균 약 769만원에서 1,558만원까지 낮춘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과세표준 축소 효과가 평균 1천만원을 꾸준히 상회
- 이는 해당 공제 수혜의 과세표준 절세 효과가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총소득공제에 대한 효과(+)

- 해당 소득공제의 총소득공제에 대한 ATET 추정값은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나타남
- 수혜자의 총소득공제액은 비수혜자보다 연평균 약 897만원에서 1,734만원 더 많았음

- 이는 벤처투자 소득공제액만큼 전체 공제 파이가 커지는 직접적인 효과이며, 앞서 확인한 과세표준 축소 효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임
- 여타 소득공제에 대한 효과(-)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외의 여타 소득공제에 대한 ATET는 분석 기간의 모든 연도(2016~2023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수(-)로 추정
 - 동 소득공제의 수혜가 여타 소득공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축소 규모는 26만~87만원으로 총소득공제 확대 효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됨
 - 최근 2개 귀속연도인 2022~2023년에는 여타 소득공제 축소 규모가 그 이전 연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한 효과(+)
 -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남
 - 해당 공제의 수혜는 평균적으로 소득공제한도 초과액을 약 35만~395만원 더 높이는 것으로 추정됨
 - 2016~2018년에는 소득공제한도 초과액 증가 효과가 약 356만~371만원으로 추정된 반면, 2019~2023년에는 약 35만~73만원으로 해당 소득공제 수혜로 인한 소득 공제 한도 초과액 증가 효과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
 - 이는 2019년 이후 수혜자들이 공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효과가 전반적인 벤처투자가 감소해서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한 것이라면 해당 변화가 제도의 설계나 공제 한도 적용 방식의 개선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표 V-6> 귀속연도 2016~2023년간 연도별 매칭을 이용한 ATET 추정 결과

귀속연도	결과변수			
	과세표준	총소득공제	여타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초과액
2016	-878** (-19.4)	1,376** (35.9)	-67** (-4.6)	395** (15.5)
2017	-776** (-13.4)	1,246** (36.3)	-87** (-7.6)	356** (13.7)

<표 V-6>의 계속

귀속연도	결과변수			
	과세표준	총소득공제	여타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초과액
2018	-769** (-19.9)	1,205** (56.5)	-72** (-8.6)	371** (27.3)
2019	-772** (-25.0)	897** (56.3)	-60** (-10.0)	50** (9.9)
2020	-1,028** (-49.4)	1,118** (68.8)	-61** (-9.5)	43** (8.9)
2021	-1,101** (-18.7)	1,464** (80.0)	-55** (-8.4)	73** (12.0)
2022	-1,432** (-15.3)	1,734** (95.5)	-29** (-3.6)	51** (13.1)
2023	-1,558** (-21.9)	1,715** (91.4)	-26** (-3.1)	35** (11.9)

주: 1. 결과 변수 단위는 만원

2. () 안의 값은 t-값

자료: 저자 작성

-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별 매칭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매칭의 기준이 된 네 가지 핵심변수(총급여, 과세대상 근로소득, 세대주 더미, 세액감면공제 합)에서 평균과 중위값이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임⁸³⁾

나.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벤처투자 소득공제 수혜자 그룹과 비수혜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소득 수준과 소득 유형 등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였음
 - 귀속연도 2016~2023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해당 소득공제’)를 받은 종합소득세 납세자(이하 ‘수혜자’)와 받지 않은 납세자(이하 ‘비수혜자’)의 무작위 표본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종합소득의 경우 수혜자집단의 평균은 3억 6,621만원인 반면, 비수혜자집단의 표본 평균은 2,027만원으로 양자의 차이가 매우 큼
 - 이는 종합소득이 매우 높은 납세자들이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자임을 시사

83) 매칭 결과는 부록의 표를 참조

- 총소득공제의 경우 수혜자집단의 평균은 3,817만원인 반면, 비수혜자집단의 표본 평균은 544만원으로 큰 차이가 남
- 과세표준의 경우 수혜자집단의 평균이 3억 2,807만원인 반면, 비수혜자집단의 표본 평균은 1,483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큼
- 수혜자의 해당 소득공제 평균은 2,349만원이며, 총소득공제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제외한 여타소득공제의 평균은 1,633만원임
- 한편 비수혜자집단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가 없으므로 여타 소득공제의 평균은 총소득공제 평균과 같은 544만원임
- 수혜자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 평균이 전체 소득공제 평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적공제의 경우도 수혜자의 평균(446만원)이 비수혜자의 평균(246만원)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종합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의 이질성
 - 수혜자집단(처치집단)과 비수혜자 표본(통제집단)의 신고유형 분포는 [그림 V-1]의 두 히스토그램과 같이 상이함
 - 그러나 신고유형 중 40(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32(사업소득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20(근로·연금소득자), 31(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소득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의 상대적인 분포는 두 그룹에서 다소 유사성을 보임
- 이질성 통제를 위하여 매칭을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표 V-7>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표본의 요약 통계(제16조, 종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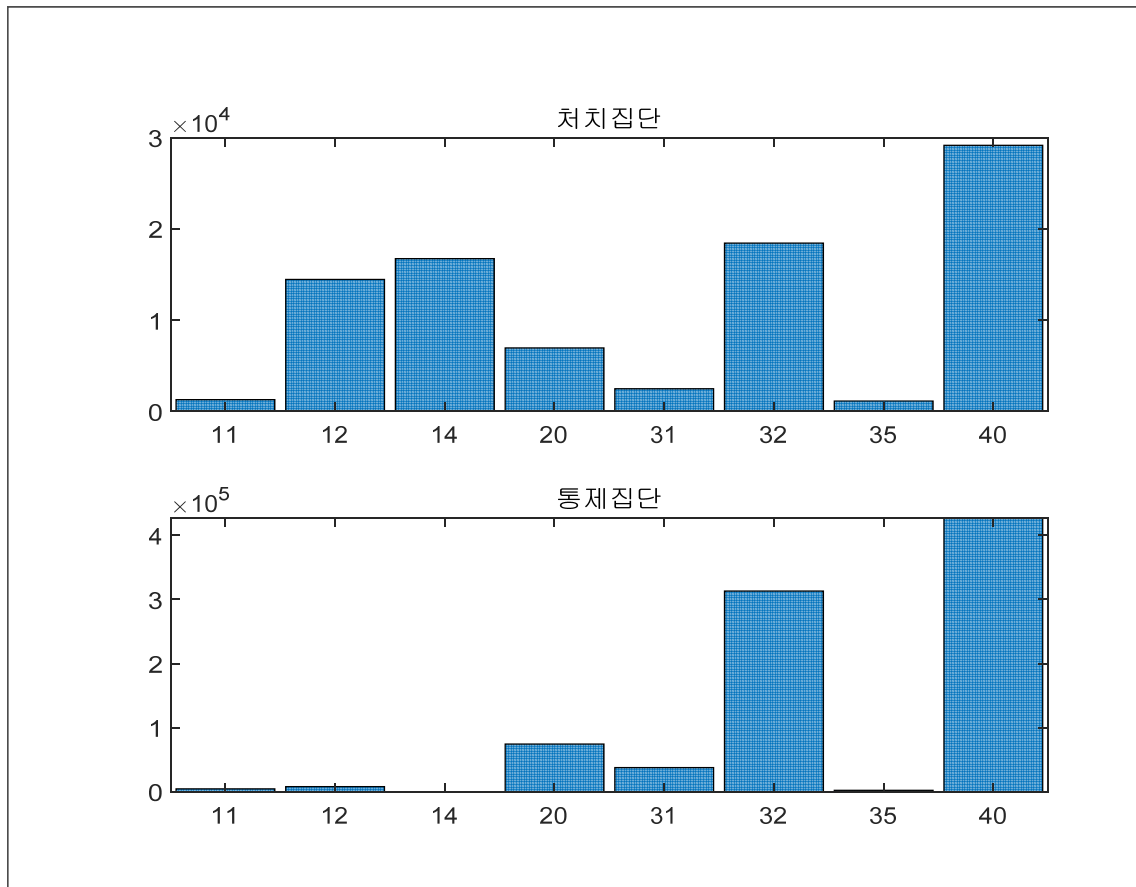
변수	처치집단(n=90,702)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종합소득	36,621	14,010	197,399	31,020,000	0
과세표준	32,807	10,470	196,296	31,000,000	0
총산출세액	11,791	2,067	87,138	13,940,000	0
총소득공제	3,817	3,021	5,122	505,000	0
여타소득공제	1,633	1,343	1,848	264,800	0
출자소득공제	2,349	1,500	5,400	505,100	0
총세액공제	1,332	178	15,282	2,696,000	0.00
총세액감면	33	0	483	62,340	0
인적공제	446	400	320	2,550	150

<표 V-7>의 계속

변수	통제집단(n=866,624)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종합소득	2,027	1,097	7,612	5,129,000	0
과세표준	1,483	688	7,468	5,121,000	0
총산출세액	211	41	3,145	2,297,000	0
총소득공제	544	350	506	15,590	0
여타소득공제	544	350	506	15,590	0
출자소득공제	0	0	0	0	0
총세액공제	52	20	617	489,800	0.00
총세액감면	3	0	44	13,660	0
인적공제	246	150	199	2,500	150

주: 1. 근로소득더미와 신고유형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단위는 만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1] 종소세 신고유형 분포: 처치집단 vs 통제집단



자료: 저자 작성

-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집단은 소득 수준과 유형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이질성)가 매우 크기에, 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 분석과 동일하게 ‘페어 매칭(Pair Matching)’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
 - 결과변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소득공제, 여타소득공제를 결과변수로 고려하여 분석
 - 해당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고려
 - 해당 소득공제가 여타 소득공제를 구축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타 소득공제 및 총소득공제를 결과변수로 고려
 - 매칭 기준 변수
 - 결과변수 이전 단계의 변수로 선정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유무 더미, 신고유형, 인적공제 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종합소득만을 이용함
 - 이는 다른 변수들을 추가로 매칭에 이용하는 경우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불균형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임
 - ATET의 추정
 -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매칭된 비교집단이 구축된 후, 처치집단(수혜자)과 비교집단(매칭된 비수혜자) 간의 결과 변수(과세표준, 공제액 등) 평균 차이를 계산
 - 처치집단인 수혜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비수혜자로 구성된 통제집단에서 매칭으로 구축한 비교집단 간의 결과변수 평균의 차이인 ATET(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treated)를 추정

-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칭을 통해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순수한 효과(ATET)를 분석한 결과, 동 제도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과세표준
 - 귀속연도 2018년 및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ATET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통계적으로 유의한 ATET 추정 결과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비수혜자보다 과세표준을 약

1,200.8만~6,509.1만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해당 공제를 받는 행위가 더 높은 과세표준을 감수하는 다른 경제 활동과 맞물려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즉 이들에게 벤처투자 공제는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체적인 재무 전략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귀속연도 2022~2023년의 효과는 2016~2017년의 효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총소득공제

- 모든 연도(귀속연도기준 2016~2023)에서 ATET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추정됨
- 해당 소득공제 수혜는 수혜자의 총소득공제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비수혜자에 비하여 약 1,470만~2,215만원 더 높이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20년 이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여타 소득공제

- 2021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해당 소득공제 수혜가 여타 소득공제에 미치는 효과 ATET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수(-)로 추정되었음
-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경우만을 고려하면,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는 여타 소득공제를 약 212만~407만원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총소득공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이는 해당 소득공제 수혜가 여타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 구축하였으나 전체 소득공제의 확대를 상쇄할 정도는 되지 못하였음을 시사

<표 V-8> 귀속연도 2016~2023년간 ATET 추정 결과(제16조, 종합소득세)

ATET	결과변수		
	과세표준	총소득공제	여타 소득공제
2016	4290.6** (3.2)	1930.2** (20.0)	-211.5** (-7.1)
2017	6509.1** (3.5)	1719.6** (14.2)	-284.4** (-16.4)
2018	1289.2 (1.9)	1958.6** (35.5)	-217.2** (-5.1)

<표 V-8>의 계속

ATET	결과변수		
	과세표준	총소득공제	여타 소득공제
2019	2777.1** (3.7)	1470.021** (35.1)	-356.8** (-14.0)
2020	1200.8* (2.0)	1763.4** (58.9)	-306.9** (-23.9)
2021	1085.6 (0.7)	1891.9** (69.8)	-2.6 (-0.2)
2022	2999.7* (2.2)	2167.6** (52.4)	-260.9** (-20.3)
2023	2742.1* (2.4)	2215.0** (46.8)	-406.8** (-30.4)

주: 1. 결과 변수 단위는 만원

2. () 안의 값은 t-값

3. ** 및 *는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각각 0.01 및 0.05보다 작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이러한 결과는 해당 제도에 대해 근로소득자는 ‘안정적인 절세’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반면, 종합소득자는 ‘투자의 기회비용 감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수혜자들은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통해 평균 2천만원에 가까운 큰 규모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공제를 약 200만~400만원 정도 덜 사용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득공제 규모가 순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이들이 벤처투자 공제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이 공제 혜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다른 과세 소득을 발생시키는 공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

□ 매칭 결과

- 종합소득, 근로소득더미, 인적공제, 신고유형 등 다양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칭을 시도하였으나,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한 경우가 발생하여 종합소득만을 매칭에 이용하여 비교집단 구성
 - 종합소득만으로 매칭을 하는 것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가장 유사하게 구성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종합소득, 인적공제) 또는 (종합소득, 인적공제, 신고유형, 근로소득유무) 등을 기준으로 매칭을 시도하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종합소득만으로 매칭을 수행함
-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도별 매칭 결과, 종합소득의 중윗값이 두 집단 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의 경우 중윗값 만큼의 유사성을 보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표준편차, 최대·최솟값의 경우에는 유사성이 중윗값과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 V-9> 종합소득을 이용한 연도별 매칭 결과

연도	표본 수	처치집단				
		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2016	(1,916)	31,614	12,020	90,992	2,069,000	47
2017	(3,410)	32,191	12,675	158,226	7,412,000	2
2018	(6,536)	30,760	13,750	921,53	3,503,000	0
2019	(11,417)	32,021	13,250	109,244	4,552,000	0
2020	(12,258)	32,625	12,600	110,197	4,014,000	0
2021	(19,945)	37,093	12,600	291,870	31,020,000	0
2022	(17,677)	41,827	15,290	217,600	16,680,000	0
2023	(17,543)	40,218	16,790	177,886	14,200,000	0
연도	표본 수	비교집단				
		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2016	(20,182)	34,231	14,102	91,363	2,068,656	60
2017	(34,951)	25,398	12,010	47,829	326,300	150
2018	(69,968)	27,517	13,760	55,593	636,400	150
2019	(118,804)	27,775	13,250	48,666	375,100	59
2020	(118,351)	29,664	12,600	64,285	626,600	99
2021	(166,893)	34,119	12,600	126,960	5,129,000	150
2022	(168,419)	36,660	15,290	79,553	833,000	34
2023	(169,056)	35,265	16,790	63,655	563,200	52

자료: 저자 작성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이용 데이터

○ 국세청 법인세 행정자료

- 법인의 특징(업태, 업종, 기업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총액 등)과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국세청 추출 표본 활용
- 귀속연도 2017~2022년(신고연도 기준으로 2018~2023년) 수혜자 전수 표본 및 비수혜자 무작위 표본 활용
- 제공자료는 제도가 시행 이후인 귀속연도 2017년(신고연도 기준 2018년) 이후에 해당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 세액공제 감면 현황을 건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과 연구·인력개발(R&D) 관련 공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총 1만 4,058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며 가장 핵심적인 세액감면 제도로 활용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3,154건으로 14.5%를 차지하여 기업들의 R&D 활동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임이 확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기에 이들의 R&D 활동을 의미함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899건으로 8.7%의 비중을 기록하며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

<표 V-10> 2018~2023년 세액공제감면 빈도 및 비중

(단위: 건, %)

공제감면명	빈도 수	비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1	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17	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4,058	64.5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319	1.5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179	0.8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1,108	5.1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720	3.3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3	0.0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2	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98	0.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3	0.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48	0.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3,154	14.5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899	8.7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83	0.4
계	21,802	100

자료: 저자 작성

- 세액공제감면의 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니, 연구·인력개발(R&D) 관련 세액공제가 전체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건수 기준 1위였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비중은 미미해짐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로 금액 기준으로 전체에서 약 26.6%를 차지함
 - 그 다음 높은 건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로 전체 금액 중 약 23.1%를 차지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에서 약 2.2%에 불과한 수준

<표 V-11> 2018~2023년 세액공제감면 금액 및 비중

(단위: 억원, %)

공제감면명	금액	비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5	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15,770	15.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28	0.9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14	0.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23,430	23.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27,020	26.6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14,420	14.2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1	0.0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7,284	7.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984	3.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63	0.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331	0.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3,218	3.2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2,230	2.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2,637	2.6
계	101,434	100.0

자료: 저자 작성

□ 시행연도 2018~2020년 자료의 요약 통계

○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이질성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해당 세액공제’) 수혜기업의 영업손익 평균은 2,270억원인 반면, 비수혜기업의 표본 평균은 2.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남
- 수혜기업의 과세표준 평균은 2,270억원인 반면, 비수혜기업의 표본 평균은 1.7억원으로 큰 차이가 남
- 수혜기업의 산출세액 평균은 546억원인 반면, 비수혜기업의 표본 평균은 0.5억원으로 큰 차이가 남
- 수혜기업의 영업손익,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중윗값도 비수혜기업의 중윗값과 큰 차이를 보임
- 세액공제·감면의 경우 수혜집단의 평균은 97억원인 반면, 비수혜집단 표본의 평균은 0.1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임

- 총부담세액의 경우에도 수혜집단 평균은 442억원인 반면, 비수혜집단 표본 평균은 0.5억원으로 격차가 매우 큼
- 수혜집단 내 이질성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수혜집단 내 영업손익,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감면의 표준편차도 매우 커서 수혜집단 내의 이질성도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표 V-12>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요약 통계(제13조의2, 법인세)

(단위: 억원)

변수	수혜집단(처치집단)					
	평균	증윳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관측치수
영업손익	2,020	62.0	12,400	320,000	-1,300	1,896
과세표준	2,270	91.9	14,800	409,000	-75	1,896
산출세액	546	18.2	3,690	102,000	0	1,896
세액공제/감면	97	0.7	1,440	42,100	0	1,896
총부담세액	442	13.8	2,410	60,200	0	1,896
변수	비수혜집단(통제집단)					
	평균	증윳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관측치수
영업손익	2.0	0.1	74.1	8,390	-6,900	50,719
과세표준	1.7	0.0	63.8	5,930	-6,010	50,719
산출세액	0.5	0.0	12.7	1,390	0	50,719
세액공제/감면	0.1	0.0	3.6	531	0	50,719
총부담세액	0.5	0.0	10.6	1,390	0	50,719

자료: 저자 작성

□ 연도별 매칭 분석

- 관측 가능한 특징 측면에서 수혜기업과 유사한 비수혜기업을 찾아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수혜가 결과변수에 미친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TET)를 추정
 - 결과변수로는 총부담세액 및 벤처기업 출자 이외의 여타 세액공제(이하 ‘여타 세액공제’)를 고려
 - 관측 가능한 특징인 영업이익,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이용하여 Mahalanobis distance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법인과 매칭
 -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질성이 너무 커서 Mahalanobis distance가 0.03이하인 조건을 추가하여 매칭에 이용

□ ATET 추정 결과

○ 총부담세액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2019년, 2020년 및 2023년 추정 결과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TET는 약 1.8억~2.0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해당 세액공제의 수혜는 신고년 기준 2019, 2020년 및 2023년에 총부담세액을 각각 약 1.8억원, 2.0억원 및 1.9억원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
- 그 밖의 연도에서의 ATET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타 세액공제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신고년 기준 2019, 2021, 2022 및 2023년 ATET 추정 결과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연도의 추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2022년 및 2023년에는 0.9억~2.1억원 사이의 ATET가 추정된 반면, 2019년에는 -1.0억원의 ATET가 추정됨
- 구체적으로 2021년, 2022년 및 2023년에는 여타세액공제를 각각 약 0.9억원, 2.1억원 및 1.9억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 반면, 2019년에는 여타세액공제를 약 1.0억원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됨
- 최근 3개 연도(신고연도 기준 2021~2023년)의 추정 결과는 해당 세액공제의 수혜가 여타세액공제를 구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총부담세액 및 여타세액공제의 양(+)의 ATET 추정 결과는 수혜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절세 목적보다는 미래 수익창출 목적을 위한 결정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

○ 특히 2020년 이후의 추정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줌

<표 V -13> ATET 추정 결과(제13조의2, 법인세)

연 도	결과변수	
	총부담세액(억원)	여타 세액공제
2018	-0.1 (-0.22)	0.3 (1.03)
2019	1.8** (3.29)	-1.0* (-2.13)

<표 V-13>의 계속

연 도	결과변수	
	총부담세액(억원)	여타 세액공제
2020	2.0* (2.00)	-1.1 (-1.09)
2021	0.6 (0.26)	0.9* (1.97)
2022	-0.5 (-0.73)	2.1** (4.42)
2023	1.9** (2.06)	1.9** (4.21)

주: 1. 여타 세액공제는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공제

2. () 안의 값은 t-값

3. ** 및 *는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각각 0.01 및 0.05보다 작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비록 일부 통계치에서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벤처투자 세액공제 수혜기업(처치집단)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수혜기업(비교집단)을 성공적으로 구성함⁸⁴⁾

- 모든 연도에서 매칭의 기준이 된 핵심 변수들(영업이익, 과세표준, 산출세액)에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과 중위값이 매우 근사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이후 자료에서는 양 집단의 평균, 중위값 등은 유사하지만 ‘최솟값’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거나, 이는 전체적인 평균의 유사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 이는 수혜기업 중에 큰 영업손실(-121.3억원)을 기록한 극단적인 사례가 포함된 반면, 매칭된 비교집단에서는 그 정도의 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84) 연별 매칭 결과는 부록의 표를 참조

VI. 설문조사 분석



VI.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제도 수혜자의 체감도와 현장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 수단의 실효성과 운영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함
 - 설문조사는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의 실질적 수혜자인 법인투자자, 운용사, 개인투자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함
 - 응답자들은 세제혜택이 민간 벤처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도별 장단점, 감면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특히 감면 혜택의 체감 효과, 절차의 복잡성, 투자 유인 요인 등에 대한 응답은 제도 실효성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됨
 - 이를 통해 문헌 기반 정책 분석과 현장 수요자의 인식 간 괴리를 파악하고,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도출함
 - 문헌 및 제도 비교를 통해 제도의 정책적 정합성을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실질 수요자들의 체감도와 인식 수준을 확인함
 - 정책 수단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 개선 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 판단 근거를 제공함

- 제VI장에서는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함
 - 설문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납세자(이하 “수혜자”)와 함께 이들 납세자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도 현재까지 이들 조세특례를 받은 적이 없는 납세자(이하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
 - 구체적인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구성은 <표 VI-1>와 같음
 - 벤처투자회사의 경우 총 100개 조합 중 46개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음
 - 법인의 경우 총 150개 기업 중 18개가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음
 - 개인의 경우 총 136명 중 116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음

○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세부적 구성은 <표 VI-2>과 같음

<표 VI-1> 설문조사 대상 납세자의 구성

(단위: 개, 명)

구분	수혜자				비수혜자	계
	①	②	③	소계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0(20.0%)	23(23.0%)	3(3.0%)	46(46.0%)	54(54.0%)	100
법인 과세특례	18(12.0%)				132(88.0%)	150
개인 소득공제	116(85.3%)				20(14.7%)	136
계	226(52.3%)				206(47.7%)	432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
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모두 받은 적이 있음
②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음
③	배당소득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음

<표 VI-2>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세부적 구성

(단위: 개, 명)

구분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계
		수혜자	비수혜자	수혜자	비수혜자	수혜자	비수혜자	
소득세법 상 지위	개인사업자	-	-	-	-	16	6	22
	비사업자	-	-	-	-	100	14	114
기업규모	중소기업	44	49	5	59	-	-	157
	중견기업	0	2	10	60	-	-	72
	대기업	2	3	3	13	-	-	21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하	31	39	0	6	15	6	97
	11~30명	10	9	1	8	1	0	29
	31명 이상	5	6	17	118	0	0	146
연혁	10년 이하	21	34	2	16	11	6	90
	11~20년	22	17	3	26	3	0	71
	20년 초과	3	3	13	90	2	0	111

주: 개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지위가 개인사업자인 표본만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 이하의 구분을 적용함

2. 설문조사 결과

-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개별 조세특례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5.2%가 최소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 소득공제의 인지율은 매우 높지만, 벤처투자회사 비과세와 법인 과세특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개인 소득공제의 인지도는 90.0%로 가장 높았으며, 벤처투자회사 비과세는 53.7%, 법인 과세특례는 46.2%에 불과했음
 - 특히 법인 과세특례의 인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제도 설계 및 홍보의 미흡을 반영함
 - 벤처투자회사 비과세와 법인 과세특례의 비인지율이 각각 46.3%와 53.8%로 나타나, 제도 운영상 정보 접근성과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복잡한 요건, 다양한 출자 방식, 투자자 유형별 차별적 기준이 제도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세무 담당자가 아닌 현장 투자자들이 조세특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정책적 측면에서는 각 조세특례 제도별 수혜대상 및 적용 요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함께 직관적이고 간결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법인 및 조합 등 제도 대상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홍보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임
 - 각 조세특례별 구체적 사례 중심의 홍보자료 제작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간접홍보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표 VI-3〉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여부(비수혜자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인지	비인지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4	53.7%	46.3%
법인 과세특례	132	46.2%	53.8%
개인 소득공제	20	90.0%	10.0%
계	206	65.2%	34.8%

- 다음으로 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등의 인지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I-4>와 같이 대다수의 표본이 개별 조세특례의 사전 인지율은 평균 66.9%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투자·출자 결정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됨
 - 개인 소득공제는 사전 인지율이 81.3%로 가장 높은 반면, 법인 과세특례는 53.2%에 불과함
 - 이는 개인투자자는 제도 활용에 적극적이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반면, 법인이나 벤처투자회사 등은 상대적으로 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시사함
 -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역시 사전 인지율이 55.4%로 절반 수준에 그쳐 제도 설계 및 홍보의 미흡함이 드러남

-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비교에서 수혜자는 인지 시점이 앞선 반면, 비수혜자는 인지 시점이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함
 - 수혜자는 전체 평균 대비 70.9%가 투자·출자 결정 전에 해당 조세특례를 인지한 반면, 비수혜자는 60.2%에 그침
 - 수혜자는 제도 활용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제도를 학습하고 선택한 경우가 많음
 - 반면 비수혜자는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거나, 제도 설명 접근성이 부족해 활용 기회를 상실함
 - 특히 법인 과세특례의 수혜자 사전 인지율은 38.9%로 매우 낮아,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대상 홍보가 전반적으로 미흡함을 보여줌

-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제도의 경우 비수혜자 중에서도 19.4%가 제도 존재를 투자 결정 후에야 알게 되었고, 이는 투자 의사결정에 세제혜택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즉 세제혜택이 투자 판단의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후적 정보로 전달되는 구조임
 - 조세정책이 투자유인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제공이 핵심임
 - 단순 제도 소개가 아니라 실제 투자 유치 단계와 연동된 시점 맞춤형 정보 전달이 필요함

<표 VI-4>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시기(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74	55.4%	21.6%	23.0%	
	법인 과세특례	79	53.2%	22.8%	24.1%	
	개인 소득공제	134	81.3%	17.2%	1.5%	
	계	287	66.9%	19.9%	13.3%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45	57.8%	22.2%	20.0%
		법인 과세특례	18	38.9%	27.8%	33.3%
		개인 소득공제	116	81.0%	17.2%	1.7%
		계	179	70.9%	19.5%	9.5%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9	51.7%	20.7%	27.6%
		법인 과세특례	61	57.4%	21.3%	21.3%
		개인 소득공제	18	83.3%	16.7%	0.0%
		계	85	60.2%	20.4%	19.4%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	벤처투자회사·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
②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후 출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후 출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벤처투자회사·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후 출자·투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③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후에 알게 되었음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후에 알게 되었음	벤처투자회사·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후에 알게 되었음

- 다음으로 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등의 인지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I-5>에서는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경로는 정부 공식 홍보보다는 비공식 네트워크나 실무경험 경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특례 인지 경로 중 정부·지자체 등의 공식 홍보를 통한 인지는 평균 24.7%에 그치며, 특히 법인 과세특례(29.1%) 및 개인 소득공제(18.7%)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이는 제도 도입이나 개편 시 공공기관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실무적으로 제도를 접할 기회가 없는 투자자나 기업의 경우 제도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법인의 경우 절반 가량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개인의 경우 투자 대상을 통한 조세특례를 인지함

- 수혜자 중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인지 경로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47.8%) 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이는 조세특례 관련 정책 홍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벤처투자회사 중심의 투자 관련 제도에서는 공공부문의 사전 안내가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시사함

<표 VI-5>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경로(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75	30.7%	42.7%	22.7%	24.0%	20.0%	
	법인 과세특례	79	29.1%	8.9%	26.6%	49.4%	6.3%	
	개인 소득공제	134	18.7%	42.5%	50.0%	11.2%	10.4%	
	계	288	24.7%	33.3%	36.5%	25.0%	11.8%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46	47.8%	23.9%	34.8%	26.1%	15.2%
		법인 과세특례	18	5.6%	16.7%	38.9%	61.1%	0.0%
		개인 소득공제	116	19.8%	46.6%	50.9%	12.1%	7.8%
		계	180	25.5%	37.8%	45.6%	20.6%	8.9%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9	41.4%	34.5%	17.2%	6.9%	27.6%
		법인 과세특례	61	36.1%	6.6%	23.0%	45.9%	8.2%
		개인 소득공제	18	11.1%	16.7%	44.4%	5.6%	27.8%
		계	108	33.4%	15.8%	25.0%	28.7%	16.7%

- 주: 1. 중복응답한 결과임
2.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②	다른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부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벤처투자회사·벤처기업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다른 거주자로부터
③	출자·투자 대상인 벤처투자 회사·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출자·투자 대상인 벤처투자 회사·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출자·투자 대상인 벤처투자회사·벤처기업 등으로부터
④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⑤	기타	기타	기타

3. “④ 기타”의 사유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에서는 “VC교육 및 선임자”, “관리교육 통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및 “세법 연구를 통해”라고 응답했고, 법인 과세특례에서는 “벤처투자회사라서”, “교육연수”, “세법개정 사항 확인”, “고벤처포럼” 및 “직접 세법에서 확인”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지인” 및 “인터넷 검색”이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5년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의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I-6>과 같이 전체적으로 전부 직접투자와 전부 간접투자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나, 수혜 여부에 따라 뚜렷한 경향 차이를 보임
 - 혼합투자는 17.9%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
 - 수혜자 중 전체의 51.1%가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였으며, 직접투자는 31.1%, 혼합투자는 17.8%임
 -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수혜자 중에서도 간접투자 비중이 65.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제도 설계 취지에 부합함
 - 법인 과세특례 수혜자의 경우 간접투자 비중이 무려 72.2%로 나타나 법인 출자의 주된 방식이 간접경로임을 확인 가능함
 - 반면 비수혜자의 경우 직접투자 비중이 51.0%로 수혜자보다 높고, 간접투자는 31.1%에 불과함
 - 특히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비수혜자 중 직접투자 비중은 29.6%이며, 간접투자 비중은 40.7%로 수혜자 대비 낮은 수준임
 - 이는 비수혜자들이 제도 접근성 또는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대상에 맞는 투자방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냄

<표 VI-6>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방식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전부 직접투자	혼합투자	전부 간접투자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100	21.0%	27.0%	52.0%	
	법인 과세특례	150	56.0%	13.3%	30.7%	
	개인 소득공제	136	41.2%	16.2%	42.6%	
	계	386	41.7%	17.9%	40.4%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46	10.9%	23.9%	65.2%
		법인 과세특례	18	22.2%	5.6%	72.2%
		개인 소득공제	116	40.5%	17.2%	42.2%
		계	180	31.1%	17.8%	51.1%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4	29.6%	29.6%	40.7%
		법인 과세특례	132	60.6%	14.4%	25.0%
		개인 소득공제	20	45.0%	10.0%	45.0%
		계	206	51.0%	18.0%	31.1%

- 다음으로 <표 VI-6>에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표 VI-7>과 같이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제한적 활용은 낮은 수익 기대와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기준 간접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것 같아서”(①)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응답자 중 절반(50.0%)이 수익률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함
 - 이는 간접투자 수단의 수익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시사함
 -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잘 알지 못해서”(③)이며 전체의 30.6%가 해당
 - 법인 과세특례 응답자 중 29.8%, 개인 소득공제 응답자 중 32.1%가 정보 부족을 이유로 들
 - 이는 간접투자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줌
 - “비용 부담이 과중할 것 같아서”(②)는 전체의 18.1%로 세 번째를 차지
 -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25.0%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간접투자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개 수수료 등 간접투자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표 VI-7>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은 사유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0	50.0%	10.0%	25.0%	15.0%	
	법인 과세특례	84	34.5%	17.9%	29.8%	17.9%	
	개인 소득공제	56	35.7%	21.4%	33.9%	8.9%	
	계	160	36.9%	18.1%	30.6%	14.4%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	100.0%	0.0%	0.0%	0.0%
		법인 과세특례	4	25.0%	50.0%	25.0%	0.0%
		개인 소득공제	47	34.0%	17.0%	40.4%	8.5%
		계	56	39.3%	17.9%	35.7%	7.1%

<표 VI-7>의 계속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수혜 여부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15	33.3%	33.3%	20.0%	13.3%
		법인 과세특례	80	35.0%	16.3%	30.0%	18.8%
		개인 소득공제	9	44.4%	44.4%	0.0%	11.1%
		계	104	35.6%	21.2%	26.0%	17.3%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①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②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서
③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④	기타

2. “④ 기타”의 사유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에서는 “법령 등 규제” 및 “예산의 절차에 따름”으로 응답했고,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2024년에 출자함”이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표 VI-6>에서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표 VI-8>과 같이 높은 위험성과 전문성 부족, 시간·노력 부담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기준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서”(①)가 10.3%, “간접투자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 가능”(②)이 46.8%,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크다”(③)가 27.6%로 나타났음
 - 특히 ②항목 응답률이 가장 높아 정보 접근성의 한계와 시장 전문성 부족이 주요 기피 사유임을 시사함
 - 이는 고위험 영역에 대한 비전문가의 직접 진입장벽을 반영하는 결과임
 -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비수혜자집단에서는 ③ ‘시간과 노력 부담’(34.4%) 비율이 크게 상승함
 - 수혜자는 제도에 대한 사전 노출과 정보 접근성이 더 높고 간접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리스크 헷지를 시도한 집단으로 보임
 - 반면에 비수혜자는 전반적으로 정보와 제도 활용 경험이 부족해 시간·노력 부담에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됨

<표 VI-8>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은 사유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2	13.5%	44.2%	17.3%	25.0%	
	법인 과세특례	46	8.7%	45.7%	32.6%	13.0%	
	개인 소득공제	58	8.6%	50.0%	32.8%	8.6%	
	계	156	10.3%	46.8%	27.6%	15.4%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30	10.0%	50.0%	16.7%	23.3%
		법인 과세특례	13	7.7%	53.8%	23.1%	15.4%
		개인 소득공제	49	10.2%	53.1%	26.5%	10.2%
		계	92	9.8%	52.2%	22.8%	15.2%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2	18.2%	36.4%	18.2%	27.3%
		법인 과세특례	33	9.1%	42.4%	36.4%	12.1%
		개인 소득공제	9	0.0%	33.3%	66.7%	0.0%
		계	64	10.9%	39.1%	34.4%	15.6%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는 것이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는 것이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②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③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과다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④	기타	기타

2. “④ 기타”의 사유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에서는 “출자재원 확보”, “전문가 부족 및 투자심의 문제”, “법령 등 규제”, “조합 투자가 목적인 회사임”, “예산상”, “조합운용을 위하여”, “LLC는 창투사와 달리 자본금이 적음”, “해당사항 없음” 및 “조합운용 및 수익창출에 집중”으로 응답했고, 법인 과세특례에서는 “자금소진”으로 응답했으며,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2024년에 출자”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5년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의 방식 중에서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방식에 질문한 결과 <표 VI-9>과 같이 간접투자 방식이 우세하며, 직접투자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함

○ 전체 응답자 중 47.1%가 간접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다고 인식함

- 직접투자(13.2%)보다 약 3.5배 높은 비중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익률 측면에서 간접투자에 우위를 두고 있음
- 무차별 응답도 39.7%에 달해 방식 간 명확한 수익률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자자도 상당수 존재함
-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제도 응답자의 경우 간접투자(60.8%)에 대한 수익률 기대가 매우 높은 반면, 직접투자 선호는 3.8%로 매우 낮음
 - 이는 고위험 고수익 특성의 벤처투자 환경에서 정보비대칭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수익률 불확실성을 간접투자를 통해 회피하려는 인식으로 해석 가능함
- 수혜자집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간접투자에 대한 수익률 기대가 강하게 나타남 (56.5%)
 - 특히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응답자 중 68.3%가 간접투자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도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에 대한 선호가 뚜렷함
 - 반면 비수혜자 중 직접투자 선호 비중(15.3%)은 수혜자집단보다 약간 높으나, 여전히 간접투자(37.3%)와 무차별(47.5%)이 우세함
- 특이하게도 개인 소득공제 비수혜자 2명은 모두 직접투자 선호(100%)로 응답함
 - 그러나 이는 표본 수(2명)가 극히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고 특정 사례에 해당함

<표 VI-9>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출자·투자의 방식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직접투자	간접투자	무차별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79	3.8%	60.8%	35.4%	
	법인 과세특례	20	35.0%	10.0%	55.0%	
	개인 소득공제	22	27.3%	31.8%	40.9%	
	계	121	13.2%	47.1%	39.7%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41	4.9%	68.3%	26.8%
		법인 과세특례	1	100.0%	0.0%	0.0%
		개인 소득공제	20	20.0%	35.0%	45.0%
		계	62	11.3%	56.5%	32.3%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38	2.6%	52.6%	44.7%
		법인 과세특례	19	31.6%	10.5%	57.9%
		개인 소득공제	2	100.0%	0.0%	0.0%
		계	59	15.3%	37.3%	47.5%

- 다음으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를 증가시키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I-10>과 같이 조세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인식은 높으나 제도 유형 및 수혜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 존재함
 - 전체 응답자 중 80.8%가 개별 조세특례가 출자·투자 유인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함
 - 특히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제도는 92.0%의 응답자가 효과성을 인식하여 가장 높은 신뢰를 보임
 - 반면 법인 과세특례(76.0%) 및 개인 소득공제(77.9%)는 효과성 인식이 다소 낮으며, 불인식 응답 비율도 각각 24.0%, 2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수혜자집단에서는 모든 제도에서 효과성 인식 비율이 더 높음
 -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수혜자의 경우 95.7%, 법인 과세특례는 88.9%, 개인 소득공제는 76.7%가 각각 제도의 효과성을 인식함
 - 이는 직접적인 수혜 경험이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 가능함
 - 비수혜자집단도 수혜자집단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VI-10>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증가에 대한 개별 조세특례의 효과성 인식 여부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효과성 인식	효과성 불인식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100	92.0%	8.0%	
	법인 과세특례	150	76.0%	24.0%	
	개인 소득공제	136	77.9%	22.1%	
	계	386	80.8%	19.2%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46	95.7%	4.3%
		법인 과세특례	18	88.9%	11.1%
		개인 소득공제	116	76.7%	23.3%
		계	180	82.8%	17.2%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4	88.9%	11.1%
		법인 과세특례	132	74.2%	25.8%
		개인 소득공제	20	85.0%	15.0%
		계	206	79.1%	20.9%

주: 조세혜택의 경험이 없어도 응답함

- 다음으로 <표 VI-10>에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등의 효과성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표 VI-11>와 같이 불충분한 조세감면 규모 및 낮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와 비수혜자는 각각 낮은 수익성 및 불충분한 조세감면 규모를 가장 중요한 사유로 응답함

<표 VI-11> 개별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인식하지 않은 사유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0	40.0%	50.0%	-	-	10.0%	
	법인 과세특례	84	13.9%	25.0%	5.6%	36.1%	19.4%	
	개인 소득공제	56	36.7%	53.3%	6.7%	-	3.3%	
	계	160	25.1%	38.0%	5.3%	19.0%	12.6%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	20.0%	80.0%	-	-	0.0%
		법인 과세특례	4	0.0%	50.0%	0.0%	0.0%	50.0%
		개인 소득공제	47	33.3%	55.6%	7.4%	-	3.7%
		계	56	29.8%	57.3%	6.2%	0.0%	6.7%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15	60.0%	20.0%	-	-	20.0%
		법인 과세특례	80	14.7%	23.5%	5.9%	38.2%	17.6%
		개인 소득공제	9	66.7%	33.3%	0.0%	-	0.0%
		계	104	25.7%	23.9%	4.5%	29.4%	16.5%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②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나빠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나빠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나빠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③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감소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해서
④	-	벤처투자 및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경영활동(고용, 고정자산 투자, 연구개발 등)에는 속하지 않기에	-
⑤	기타	기타	기타

2. “⑤ 기타”의 사유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에서는 “해당 없어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표 VI-12>과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3.15점으로 응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제도별로는 개인 소득공제의 영향력이 가장 큼
 - 개인 소득공제의 평균 영향력 점수는 4.18점으로, “매우 큰 영향”(44.1%)과 “큰 영향”(37.5%)을 합산하면 81.6%에 달함
 - 반면 법인 과세특례는 2.51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는 2.9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인식 차이도 존재함
 - 수혜자의 평균 평점은 4.04점으로, 비수혜자(2.64점)에 비해 1점 이상 높음
 - 특히 개인 소득공제의 경우 수혜자는 4.25점으로 강한 영향을 받은 반면, 비수혜자는 3.75점임

<표 VI-12>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단위: 개, 명,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음	작은 영향을 미침	보통임	큰 영향을 미침	매우 큰 영향을 미침	평균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0	8.0%	21.0%	43.0%	22.0%	6.0%	2.95	
	법인 과세특례	84	22.7%	11.3%	59.3%	5.3%	1.3%	2.51	
	개인 소득공제	56	2.9%	2.2%	13.2%	37.5%	44.1%	4.18	
	계	160	13.9%	9.3%	41.2%	18.7%	16.9%	3.15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	4.3%	21.7%	37.0%	23.9%	13.0%	3.20
		법인 과세특례	4	16.7%	11.1%	66.7%	0.0%	5.6%	2.67
		개인 소득공제	47	2.6%	2.6%	9.5%	37.9%	47.4%	4.25
		계	56	3.7%	4.9%	16.0%	34.0%	41.4%	4.04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15	11.1%	20.4%	48.1%	20.4%	0.0%	2.78
		법인 과세특례	80	23.5%	11.4%	58.3%	6.1%	0.8%	2.49
		개인 소득공제	9	5.0%	0.0%	35.0%	35.0%	25.0%	3.75
		계	104	20.1%	11.7%	54.8%	10.6%	2.7%	2.64

주: 비수혜자는 개별 조세특례를 받았을 경우의 예상 영향을 응답함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5년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에서 투자·출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표 VI-13>와 같이 전반적으로 투자대상수의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21.8%가 조세특례로 인해 투자 대상이 증가했다고 응답함
 - 응답자 전체 기준 평균 투자 증가 개수는 5.0개, 평균 증가비율은 67.9%로 나타났다으며, 조세특례가 투자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비수혜자집단은 전체적으로 조세특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89.0%)이 수혜자집단(68.2%)보다 상당히 높고, 평균 투자 증가 개수(1.6개), 평균 소요비율(71.0%)은 수혜자집단(4.7개, 63.5%)보다 낮음
 - 이는 제도 수혜 여부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사전 투자 설계 여부보다 실제 투자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줌

<표 VI-13>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 개수	평균 증가 비율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89	86.5%	13.5%	5.0	31.2%	
	법인 과세특례	116	97.4%	2.6%	9.0	90.0%	
	개인 소득공제	135	56.3%	43.7%	1.6	73.1%	
	계	340	78.2%	21.8%	5.0	67.9%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45	84.4%	15.6%	5.9	32.2%
		법인 과세특례	15	93.3%	6.7%	25.0	100.0%
		개인 소득공제	116	58.6%	41.4%	1.6	71.0%
		계	176	68.2%	31.8%	4.7	63.5%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44	88.6%	11.4%	3.2	30.0%
		법인 과세특례	101	98.0%	2.0%	1.0	85.0%
		개인 소득공제	19	42.1%	57.9%	1.4	91.3%
		계	164	89.0%	11.0%	1.6	71.0%

주: 1. 법인 과세특례의 경우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1% 미만이라 0으로 계산함
 2. 평균 증가개수 및 증가비율의 계산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응답결과는 증가개수와 증가비율을 각각 0개 및 0%로 적용함

□ 다음으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식의 출자·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I-14>와 같이 법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39.7%가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①)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비수혜자의 경우도 전체 52.0%가 ①번 항목을 선택하며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음
- 전체 응답자의 17.3%가 ③(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특히 개인 소득공제 수혜자와 비수혜자는 이 방식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33.6%, 45.0%로 비교적 높았으며, 이는 직접적 투자에 대한 세제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반면 법인 과세특례 수혜자의 개인 투자자나 벤처투자회사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에 대한 응답률은 한 자릿수로, 제도 이해 및 활용도보다도 수혜대상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VI-14>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출자·투자의 방식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0	25.0%	29.0%	3.0%	8.0%	10.0%	25.0%	0.0%	
	법인 과세특례	84	57.3%	16.7%	8.7%	4.0%	6.7%	6.7%	0.0%	
	개인 소득공제	56	18.4%	7.4%	35.3%	33.1%	0.0%	4.4%	1.5%	
	계	160	39.7%	14.9%	17.3%	14.7%	4.8%	8.2%	0.5%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	19.6%	37.0%	2.2%	4.3%	10.9%	26.1%	0.0%
		법인 과세특례	4	33.3%	38.9%	5.6%	0.0%	5.6%	16.7%	0.0%
		개인 소득공제	47	17.2%	8.6%	33.6%	34.5%	0.0%	4.3%	1.7%
		계	56	18.6%	13.3%	28.8%	29.3%	1.4%	7.1%	1.4%

<표 VI-14>의 계속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혜 여부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15	22.2%	29.6%	24.1%	9.3%	11.1%	3.7%	0.0%
		법인 과세특례	80	60.6%	13.6%	9.1%	4.5%	6.8%	5.3%	0.0%
		개인 소득공제	9	25.0%	0.0%	45.0%	25.0%	0.0%	5.0%	0.0%
		계	104	52.0%	14.8%	14.4%	7.0%	6.8%	5.0%	0.0%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응답	내용(공통)
①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⑤	벤처투자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②	법인 투자자의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⑥	벤처투자회사 등의 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③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⑦	기타
④	개인 투자자의 벤처투자회사 통한 간접투자 방식		

- 다음으로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납세자별로 구분해서 해당 조세특례를 통한 조세지원의 수준에 어떠한지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표 VI-15>과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3.34점으로 응답해서 조세지원의 수준이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체 응답자 중 56.4%가 현행 조세지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함
 - 벤처투자회사 비과세(57.0%), 법인 과세특례(69.3%), 개인 소득공제(36.8%) 모두에서 '적당' 응답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평균점수도 각각 3.41, 3.21, 3.51점으로 기준값(3)을 상회함
- 제도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함
 - 흥미롭게도 수혜자집단은 평균적으로 조세지원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수혜자 전체의 평균 평가는 3.49점으로 비수혜자의 3.27점보다 높음
 - 특히 수혜자 중 개인 소득공제 대상자는 평균 3.5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비수혜자는 지원 수준에 대해 '다소 부족' 또는 '비교적 부족'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예를 들어 비수혜자 중 벤처투자조합은 3.7%, 법인은 3.0%, 개인은 5.0% 정도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응답함
- 이는 제도 수혜 경험이 없는 집단이 오히려 수혜자보다 정책 지원에 관심이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 가능함

<표 VI-15> 개별 조세특례의 조세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개, 명, 점)

구분		사례 수	지나치게 충분	비교적 충분	적당	다소 부족	지나치게 부족	평균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0	1.0%	2.0%	57.0%	35.0%	5.0%	3.41	
	법인 과세특례	84	0.7%	5.3%	69.3%	22.0%	2.7%	3.21	
	개인 소득공제	56	0.0%	12.5%	36.8%	37.5%	13.2%	3.51	
	계	160	0.5%	7.4%	56.4%	29.1%	6.7%	3.34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	2.2%	4.3%	56.5%	30.4%	6.5%	3.35
		법인 과세특례	4	0.0%	16.7%	55.6%	27.8%	0.0%	3.11
		개인 소득공제	47	0.0%	12.1%	36.2%	37.1%	14.7%	3.54
		계	56	0.2%	11.7%	39.4%	35.8%	12.9%	3.49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15	0.0%	0.0%	57.4%	38.9%	3.7%	3.46
		법인 과세특례	80	0.8%	3.8%	71.2%	21.2%	3.0%	3.22
		개인 소득공제	9	0.0%	15.0%	40.0%	40.0%	5.0%	3.35
		계	104	0.6%	4.2%	66.5%	25.4%	3.3%	3.27

주: 1. 평균 점수는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부터 지나치게 충분한 수준까지를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에 가중평균한 계산결과임

-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등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유형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I-16>과 같이 대다수의 표본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은 ‘조세지원의 강화’라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33.5%가 ‘법인·개인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①)’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특히 개인 소득공제 응답자의 42.6%가 이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선호를 보임
 - 수혜자집단에서도 전체의 43.2%가 ①번 항목을 선택함

□ 재정지원 및 인프라적 지원도 일정 부분 요구됨

- 전체 응답자의 22.0%는 ‘법인·개인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재정지원의 강화(②)’를 선택함
 - 특히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수혜자 응답자 중 45.7%가 재정지원을 요구하여, 벤처투자회사 투자자들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의 재정적 유인 필요성이 제기됨
 - 비수혜자집단에서도 20.9%가 ②를 선택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 수요 존재
- ‘창업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⑤)’를 요구한 비중은 전체의 12.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세제 및 재정 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표 VI-16>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적 지원의 유형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20	34.0%	46.0%	7.0%	6.0%	5.0%	2.0%	
	법인 과세특례	84	27.3%	15.3%	23.3%	16.7%	16.0%	1.3%	
	개인 소득공제	56	42.6%	23.5%	11.8%	12.5%	8.8%	0.7%	
	계	160	33.5%	22.0%	17.2%	13.9%	12.1%	1.2%	
수혜 여부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5	37.0%	45.7%	6.5%	4.3%	2.2%	4.3%
		법인 과세특례	4	22.2%	16.7%	50.0%	5.6%	0.0%	5.6%
		개인 소득공제	47	45.7%	22.4%	11.2%	12.9%	6.9%	0.9%
		계	56	43.2%	24.1%	13.6%	11.6%	6.0%	1.5%
	비수혜자	벤처투자회사 비과세	15	31.5%	46.3%	7.4%	7.4%	7.4%	0.0%
		법인 과세특례	80	28.0%	15.2%	19.7%	18.2%	18.2%	0.8%
		개인 소득공제	9	25.0%	30.0%	15.0%	10.0%	20.0%	0.0%
		계	104	28.3%	20.9%	17.5%	15.9%	16.8%	0.6%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①	법인·개인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②	법인·개인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재정지원의 강화
③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강화
④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화
⑤	창업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⑥	기타

2. “⑥ 기타”의 사유로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조세의 기타 법인들의 간접/직접투자 촉진 지원”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자 양도차익에서 조합보수 경비 인정”이라고 응답했음
3. 설문은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지원 유형을 선택하는 구조임

3. 소결

- 개별 조세지원 비수혜자 중에서 법인 과세특례의 인지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벤처·창업 생태계의 참가자들 중에서 법인 등의 조세지원에 대한 기본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단 대다수의 수혜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전에 개별 조세특례를 사전적으로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
 - 이는 조세지원이 실질적 투자 판단의 사전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주요 인지 경로는 동종 업계 투자자나 투자 대상기업이었으며, 비공식 경로인 지인·인터넷·회계사 등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비중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개별 조세지원 중에서 벤처투자회사는 간접투자를, 법인 투자자는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 수혜 여부에 따라서 출자·투자 방식이 상이함
 - 과세특례 수혜기업 중 간접투자를 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지만, 비수혜기업은 약 25%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남
 - 간접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간접투자의 수익성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으며, 직접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간접투자를 통한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타남

- 단 불충분한 조세감면 규모 및 조세혜택과 무관한 투자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효과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례들도 일부 나타남
 - 조세감면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을 우려해서 조세특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하는 투자자가 상당수 존재함
 - 조세특례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 비율은 20%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또한 개별 조세특례가 출자·투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세특례 수혜자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특히 수혜자들은 조세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육박하

지만 비수혜자의 경우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개인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를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의 결과는 앞선 절에서 분석한 조세특례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함
 - 다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세특례의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환경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임

- 설문조사에 따른 실증 검증 시사점
 - 조세지원의 인식 및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 존재
 - 설문 결과, 벤처투자회사 비과세의 사전적 인지율은 법인이나 개인 특례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수혜자 중 인지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음
 - 이는 세법의 복잡성, 사전 안내 부족, 벤처투자회사 투자에 대한 거리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일부 납세자는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실질 감면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다수 존재함
 - 이에 따라 제도의 단순화, 인지도 제고 및 실질 수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전반적인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벤처투자회사 비과세는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실질적 유인책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됨
 - 특히 조세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납세자 중 제도 내용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과 적용 절차상의 부담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어, 홍보·안내체계

- 강화와 함께 행정 절차 간소화, 최저한세 제외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책목적에 맞는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Ⅶ. 결론 및 개선방안



Ⅶ. 결론 및 개선방안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과세특례들의 정책목표는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는 것이며, 각 세부 제도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등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직접 투자를 장려하고,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지속적으로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 심층평가 분석 결과, 동 제도들이 벤처 생태계에서 민간자본 형성 촉진이라는 중요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일몰 연장을 건의함
 - 벤처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정부 정책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 타당성이 인정
 - 실증분석과 설문조사에서 모두 민간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세제혜택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인효과를 통계적인 분석과 설문조사에서 확인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법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벤처투자에 있어 해당 제도가 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 본 제도의 법인투자자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설문조사에서는 수혜 법인의 75%는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 이들 역시 제도가 투자 대상의 수나 기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출자금액 증대효과(8.4% 수준)가 있는 것으로 응답

-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본 제도의 일몰 연장을 건의하며,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벤처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들과의 대상 일치
 - 벤처기업별 세제혜택 한도 설정
 -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 적격투자 대상 업종 관련 개선방안
 - 세제혜택의 벤처투자 효과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1 벤처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들과의 대상 일치

-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도들의 적격투자 대상이 불일치하여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들의 정책목표는 동일하나 적격투자 대상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의 대상이 불일치함
 - 조세감면제도들의 적격투자 대상의 불일치는 투자대상의 결정에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들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2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벤처투자 지원제도는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대한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이 소수의 유망기업에 집중되는 비효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벤처투자의 현황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종합할 때, 창업 초기 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는 상장기업 투자 대비 본질적으로 높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위험을 수반

- 특히 투자자와 기업 간의 현저한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잠재적 가치가 유사한 기업군 내에서도 특정 기업으로 투자가 편중되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의 정책적 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과세특례 대상 투자금액에 총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
-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요국에서는 벤처기업별 한도와 연간 최대 혜택 금액을 설정하여 투자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있음

□ 주요국은 기업별 투자 유치 한도(per-company cap)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설정으로 투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 미국은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의 제한은 없으나 1980년에 제정된 「소기업투자 촉진법(Small Business Incentive Act)」에 의하여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폐쇄형 투자기구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산투자 요건이 있음
 - 포트폴리오의 최소 50%를 적격자산(eligible assets)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 50% 부분 내에서는 단일 기업에 대한 투자가 BDC 총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캐나다는 주별로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이 매우 상이함
 - 브리티시콜롬비아주와 매니토바주의 경우, 적격사업법인(Eligible Business Corporation)이 평생 동안 유치할 수 있는 총 자본한도를 1천만캐나다달러로 설정함
 - 뉴브런즈윅주는 투자자가 지역사회경제개발기업(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CEDC)에 투자할 경우 기업별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연간 최대한도가 300만캐나다달러로 설정되어 있음
- 영국은 벤처기업 종류별로 다른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초기 기업 투자지원제도(SEIS) 대상기업의 경우 25만파운드, 기업가투자지원제도(EIS) 대상기업의 경우 1,200만파운드와 같이 평생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다만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이 벤처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보다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한 적절한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해야 할 것임
 - 특히 산업과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금 수준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3.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들의 경우 제도별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려 여부가 상이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세제혜택이 제한되지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에서는 제한이 없음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활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존재함
 - 현재의 특수관계인 정의는 친족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악용 가능성이 존재함
 - 진화하는 기업형태에 따른 기업들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고려하기에는 현재의 친족 중심의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 설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가족관계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하면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변경된 관계와 함께 지배적 영향력의 기준인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영향력

- 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창업·벤처 관련 조세특례를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음
- 친인척의 범위 중심에서 벗어나 복잡해진 기업의 지배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종속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제도 정비
 - 각국의 세법상의 특수관계인(Related-party) 및 궁극적 실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를 참조하여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지배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국제조세에서 다루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다른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차선책으로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각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음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경우 특수관계인 요건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벤처투자 추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3년 미만의 극초기 기업들은 대부분의 투자 자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이 모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애주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

〈표 VII-1〉 개인 벤처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한 특수관계인 고려 여부

국가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개인 벤처투자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QSBS 과세특례	EIS, SEIS	엔젤세제 (エンジェル税制)	Angel's law
특수관계인 고려 여부	×	○	○	○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을 고려하지 않음 - 단 회사가 발행 전후 2년 (총 4년간 투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만달러, 2% 초과 자사주를 환매하면 공제 자격을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회사나 그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 - 투자자가 회사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여도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대상이 동족회사가 아니어야 함 - 투자 대상 회사가 투자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 전 부를 승계할 경우, 투자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이어서는 아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직전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상가 모든 사람의 배우자) - 50% 이상 의결권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일상적으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
특수관계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 50% 초과 소유한 법인 - 신탁의 증여자 또는 수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 사업파트너 - 신탁 수탁자 - 이해관계의 회사의 주식이나 채무가 어떤 신탁의 자산이거나 사망자의 유산의 일부인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산 관리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및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2. 사실상 배우자 3. 특정사업주였던 자의 사 용인 4. 1~3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사업주였던 자로부터 급전 기타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 5. 2~4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동거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상가 모든 사람의 배우자) - 50% 이상 의결권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일상적으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 	

자료: 저자 작성

4. 적격 투자대상 업종 관련 개선방안

-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들은 벤처기업 등의 산업 및 업종 제한이 실질적으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 따라 창업 7년 이내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유흥 및 사행성 시설)이면 본 「조세특례제한법」들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임

-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는 「조세제한특례법」의 경우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과소투자를 보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산업에는 지원할 타당성이 낮아 적격투자 대상의 산업 및 업종 제한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

- 대부분의 주요국은 유사 제도들의 산업 및 업종 제한이 있으며, 이미 벤처투자가 활발한 지역의 경우 관련 제도들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별 감면제도마다 상이한 산업 제한이 존재하며,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벤처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감면제도가 없음
 -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 혹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산업들이 적격투자 대상임
 - 캐나다는 주별로 산업 제한이 존재하나, 미국과 동일하게 벤처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인 토론토주와 퀘벡주에는 벤처투자 감면제도가 없음
 - 제조업, 관광업, 디지털 산업 등이 적격투자 대상임
 - 영국은 적격투자 대상이 아닌 산업들을 명시하는 식으로 산업 제한이 존재함
 - 일본의 경우 벤처투자 세액감면 적격대상 산업이 정해져 있으며, 각 산업별 자본금과 종업원 수의 제한을 다르게 둔 것이 특징임
 - 이스라엘의 경우 적격투자 대상이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주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 존재함

<표 VII-2> 각 나라별 벤처기업 범위

국가	벤처기업 범위
대한민국	<p>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금액의 합계는 5천만원 이상이고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문화산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7% 이상)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며,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것: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미국	<p>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C 법인(C corporation)인 미국 내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또는 전신)의 총자산의 합계가 the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3의 제정일 이후, 그리고 이후 주식 발행 이전의 모든 시점에 대해 7,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식 발행 직후의 총자산의 합계가 7,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위해 재무부 장관과 주주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데에 동의해야 함 <p>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기업은 active business requirements를 충족해야 함 최소 80%의 자산이 eligible corporation의 하나 이상의 적격사업에 대한 active conduct에 사용되어야 함</p> <p>eligible corporation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 기업을 의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 또는 과거 DISC - 규제투자회사 -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REMIC - 협동조합 <p>적격사업(qualified trade and business)은 다음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법률, 공학, 건축, 회계, 보험계리, 공연예술, 컨설팅, 운동, 금융서비스 또는 중개 서비스 분야의 사업 또는 해당 사업의 주요 자산이 1인 이상의 직원의 평판이나 기술인 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임대, 투자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 - 영농 사업(수목을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사업 포함) - IRC Section 613, 613A가 적용이 가능한 특성의 제품 생산 또는 추출과 관련된 사업 - 호텔, 모텔, 식당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운영하는 사업

자료: 저자 작성

<표 VII-2>의 계속

국가	벤처기업 범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 고정사업장 보유하여야 함 - 적격사업(qualifying trade)을 수행하며 이에 투자 사용을 계획하여야 함 - 주식발행 시점에 비상장기업이어야 하며, 다른 기업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기업과 적격자회사의 총자산 가치가 주식 발행 이전에는 1,500만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직후는 1,60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EIS 기준) - 주식 발행 시 25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EIS 기준) - 투자대상 기업은 투자금을 반드시 적격사업에 사용해야 함 <p>: 대부분의 사업활동은 적격하다고 판단하며 향후 적격사업으로 이어질 연구개발도 이에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이 전체 사업의 20%를 초과할 경우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p> <p>(20% 제한 사업) 석탄·철강 생산, 농업·원예, 임대 사업, 법률·금융 서비스, 부동산 개발, 호텔 운영, 요양원 운영, 전기·열 등의 에너지 생산, 가스 및 기타 연료 생산, 전기 수출, 은행·보험·대출·금융 서비스</p>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5년 미만 또는 10년 미만의 중소기업 : 우대조치 A와 프리시드·시드 특례의 경우는 사업연수가 5년 미만인 회사, 우대조치 B의 경우는 10년 미만의 회사여야 함 - 설립 경과 연수(사업 연도)마다 주어진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업연도에 따라서 우대조치 A, 우대조치 B, 프리시드·시드 특례의 세부적인 요건이 다르며, 프리시드·시드 특례는 우대조치 B의 조건에 다른 요건이 추가됨 - 외부(특정 주주 그룹 이외)로부터 1/6 이상의 투자를 받은 회사일 것 - 대규모 법인 그룹의 소유가 아닐 것 - 미등록·비상장 주식회사일 것 - 풍속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닐 것 - 직접투자가 아닌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또는 소액전자모집취급업자(크라우드펀딩)을 경유하는 투자는 앞선 요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인증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또는 소액전자모집취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엔젤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자본금과 종업원 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의 비상장기업이며 이스라엘 내에서 주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연간 총매출이 450만ILS 미만이어야 함 - 설립 이후 조달한 총자금이 1,200만ILS 이하여야 함 - R&D에 참가하는 직원이 최소 20%여야 함 - 총수익의 7% 이상이 R&D 비용이어야 함 - 설립 이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총비용의 70% 이상이 R&D를 기반으로 한 무형자산 개발에 사용되어야 함

자료: 저자 작성

□ 적격투자 대상의 업종 제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의 융합화로 인하여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및 업종 제한을 둘 경우 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나,⁸⁵⁾ 본 제도들이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시 발생하는 시장 실패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과소투자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산업에는 지원할 타당성이 낮음

- 주요국의 경우처럼 고부가가치 산업 혹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산업들로 제한하여 중점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산업정책과 맞물려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탄력관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산업의 경제성·정책성 등을 파악하여 민간과 함께 감면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차선적으로 업종 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격투자 대상을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받은 기업들로 한정하는 대신 벤처기업 인증과정과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의 융합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

5. 세제혜택의 벤처투자 효과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 정확한 분석 및 정책 설계를 위하여 벤처투자 형태에 따른 자료 구축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활용 가능한 자료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국세청 과세 미시자료의 경우, 원천세 자료에서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 있으나 제한적임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아닌 투자금액 정보만 제공
 -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제한이 2017년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었으나 귀속년도 기준 2020년 자료까지 간접투자금액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금액을 나누어 파악하지 않고 있음
- 종합소득세 자료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확인할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와 제13조의2의 경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투자자와 벤처투자회사 등의 직접 및 간접투자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85) 최종보고회의 자문위원의 의견임.

- 보다 효과적인 분석 및 정책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안함
 - 벤처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혜택을 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종합소득세 자료에서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정보 제공
 - 간접투자금액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금액도 분리하여 정보 제공
 - 비록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와 제13조의2의 경우 투자 종류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가 없으나 추후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위하여 적어도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 확보가 필요함
 - 특히 제13조의 경우 자체 재원과 타 재원도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대권·전병욱, 「특별법상 투자조합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8권 제2호, 2016. pp. 253~274.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2022. 6. 16.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금융위원회,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 2019. 10. 7.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_____,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김승찬·김홍근,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출자의사결정요인 실증연구: 벤처기업 투자 의사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2권 제11호, 2019, pp. 2051~2084.
- 김재진·기은선,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_____,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재진·양동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4호, 2014, pp. 115~131.
- 김재진·홍범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김진수·김재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2.
- 김학수·문윤상·우석진·김도형,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
- 류덕현·박기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 박성욱·김영훈,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개인투자 조합을 중심으로」, 제34권 제3호, 『회계정보연구』, 2016, pp. 533~563.
- 박용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특징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 보고서 22-10, 2022.

- 박지영·신현한, 「벤처캐피털 투자가 벤처기업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2020, pp. 1~15.
- 중소벤처기업부, 「'23년 상반기 '벤처투자' 4.4조원·'펀드결성' 4.6조원」, 보도자료, 2023. 8. 10.
- _____,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21. 12.
- _____,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펀드결성 10.6조원」, 보도자료, 2025. 2. 12.
- _____,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보도자료, 2023. 6. 13.
- _____,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보도자료, 2022. 1. 27.
-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보도자료, 2023. 4. 20.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년 5월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5. 6. 27.
- _____,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 홍병진·전병욱·송호신,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Barry, C. B., Muscarella, C. J., Peavy Iii, J. W., and Vetsuypens, M. R., "The role of venture capital in the creation of public companies: Evidence from the going-public proces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7(2), 1990), pp. 447~471.
- Chemmanur, T. J., Loutskina, E., and Tian, X., "Corporate venture capital, value creation, and innovation,"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7(8), 2014, pp. 2434~2473.
- Jeng, L. A., and Wells, P. C., "The determinants of venture capital funding: evidence across countrie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 6(3), 2000, pp. 241~289.
- Meggison, W. L., and Weiss, K. A., "Venture capitalist certification in initial public offerings," *The Journal of Finance*, 46(3), 1991, pp. 879~903.
- Wadhwa, A., and Kotha, S., "Knowledge creation through external venturing: Evidence from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9(4), 2006, pp. 819~835.

<미국>

Lowtax, 『The US Tax Regime for Venture Capital』, <https://www.lowtax.net/us-tax-guide/investment/the-us-tax-regime-for-venture-capital.html>, 검색일자: 2025. 5. 19.

IRS,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https://www.irs.gov/pub/irs-prior/p550-2021.pdf>, 검색일자: 2025. 5. 19.

ACA, 『ACA Public Policy State Program』, <https://www.angelcapitalassociation.org/aca-public-policy-state-program-details/>, 검색일자: 2025. 5. 19.

New York State, 『QETC capital tax credit』, https://www.tax.ny.gov/pit/credits/qetc_capital.htm, 검색일자: 2025. 5. 23.

Venture South, 『South Carolina Angel Investor Credit』, <https://venturesouth.vc/south-carolina-angel-investor-credit>, 검색일자: 2025. 5. 19.

New Jersey State, 『Angel Investor Tax Credit Program』, <https://www.njeda.com/angeltaxcredit/>, 검색일자: 2025. 5. 23.

Virginia State, 『Qualified Investments Credit』, <https://www.tax.virginia.gov/business-development-credits#qualified-equity-subordinated-debt-investments-credit>, 검색일자: 2025. 5. 23.

Colorado State, 『Advanced Industries Investment Tax Credit』, <https://oedit.colorado.gov/advanced-industries-invest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5. 5. 23.

<캐나다>

Thomson Reuters, 『Canada Practical Law』,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0-500-8581?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contextData=\(sc.Default\)&ppcid=515f5c9e9b464e38b26f80bca6a8072e&comp=pluk#co_anchor_a431421](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0-500-8581?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contextData=(sc.Default)&ppcid=515f5c9e9b464e38b26f80bca6a8072e&comp=pluk#co_anchor_a431421), 검색일자: 2025. 6. 16.

British Columbia State, 『Venture Capital Tax Credits』,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investment-capital/venture-capital-programs/venture-capital-corporation/tax-credits>, 검색일자: 2025. 5. 9.

Manitoba State,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Tax Credit』, <https://www.gov.mb.ca/jec/busdev/financial/sbvctc/>, 검색일자: 2025. 5. 11.

Canada Government,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Tax Credi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provincial-territorial-corporati>

on-tax/manitoba-provincial-corporation-tax/manitoba-small-business-venture-capital-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5. 5. 11.

Prince Edward Island, 『Investment Tax Credit』,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service/enriched-invest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5. 5. 12.

Atlantic, 『Share Purchase Tax Credit』, <https://atlanticcanadabusinessgrants.com/tax-credit/share-purchase-tax-credit/>, 검색일자: 2025. 5. 12.

<영국>

UK Government, 『Use a venture capital scheme to raise money for your company』,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raise-money-by-offering-tax-reliefs-to-investors>, 검색일자: 2025. 5. 2.

<일본>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税制』,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eiei_innovation/open_innovation/open_innovation_zei.html, 검색일자: 2025. 6. 17.

中小企業廳,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税制』, https://www.chusho.meti.go.jp/keiei/sogyo/2003/030226yuugen_gaiyou.htm, 검색일자: 2025. 6. 22.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税優遇の内容』, <https://angel-tax.tokyo/zeiyugu.php>, 검색일자: 2025. 5. 30.

<이스라엘>

Nimrod Yaron & Co., 『Angels Law』, <https://y-tax.co.il/en/angels-law/>, 검색일자: 2025. 5. 16.

Ministry of Finance, 『Angels Law』, https://www.gov.il/he/departments/news/press_03042022c, 검색일자: 2025. 6. 17.

Auren, 『Tax benefits for private investors in innovation israeli angels law』, <https://auren.com/il/blog/tax-benefits-for-private-investors-in-innovation-israeli-angels-law/>, 검색일자: 2025. 5. 16.

Globes, 『Gov't proposes new tax breaks for early-stage tech investors』, <https://en.globes.co.il/en/article-govt-proposes-new-tax-breaks-for-early-stage-startup-investment-1001407976>, 검색일자: 2025. 5. 16.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 감면규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증권거래세법」, 「공정거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 등록현황」,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453&sid=388&itemSeq=296945&bizCategoryCode>, 검색일자: 2025. 7. 10.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196, 검색일자: 2025. 6. 17.

미국 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text>, 검색일자: 2025. 7.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https://www.sec.gov/info/smallbus/secg/rule2a-46-secg.htm>, 검색일자: 2025. 2. 20.

부 록



부록 1. 연별 매칭 결과(개인투자자)

□ 2016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및 최대·최솟값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매칭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부표 I -1> 귀속연도 2016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3,041)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693	8,590	25,377	622,100	810
과세대상 근로소득	12,220	7,183	24,832	608,400	336
세대주 더미	0.77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9	152	203	3,580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3,041)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588	8,606	24,157	556,000	810
과세대상 근로소득	12,118	7,198	23,627	543,600	336
세대주 더미	0.77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9	151	202	3,920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17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및 최솟값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매칭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총급여, 과세대상근로소득 및 세액공제감면의 최대값은 처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부표 I -2> 귀속연도 2016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4,517)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964	9,239	25,141	787,800	662
과세대상 근로소득	12,483	7,802	24,611	770,800	247
세대주 더미	0.77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92	158	216	7,260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4,517)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847	9,248	23,141	577,900	660
과세대상 근로소득	12,369	7,810	22,650	565,100	246
세대주 더미	0.77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91	158	196	6,440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18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최솟값 및 표준편차 등 최대값을 제외하고는 두 집단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임

<부표 I -3> 귀속연도 2018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9,684)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4,580	9,720	25,640	1,027,662	600
과세대상 근로소득	13,076	8,259	25,104	1,005,834	210
세대주더미	0.75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95	165	179	6,319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9,684)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4,513	9,722	24,047	781,815	600
과세대상 근로소득	13,011	8,261	23,541	764,904	210
세대주더미	0.75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94	165	176	6,012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19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및 최소까지 두 집단 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임

<부표 I -4> 귀속연도 2019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19,462)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876	9,246	27,749	1,623,708	600
과세대상 근로소득	12,398	7,808	27,170	1,589,959	210
세대주더미	0.74	1.00	0.44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7	156	281	24,607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19,462)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799	9,244	26,620	1,723,995	600
과세대상 근로소득	12,322	7,807	26,063	1,688,240	210
세대주더미	0.74	1.00	0.44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7	156	312	31,221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20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및 최솟값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총급여 및 과세대상근로소득의 경우 비교집단의 최댓값이 처치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이 다소 흥미로움

<부표 I -5> 귀속연도 2020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19,979)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4,518	9,522	23,680	565,000	654
과세대상 근로소득	13,022	8,071	23,178	552,425	242
세대주더미	0.75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3	151	267	22,356	0

<부표 I -5>의 계속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19,979)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4,470	9,519	23,360	604,891	654
과세대상 근로소득	12,975	8,068	22,865	591,518	242
세대주더미	0.75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2	151	254	20,918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21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및 최솟값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총급여 및 과세대상근로소득의 경우 처치집단의 표준편차 및 최댓값이 비교집단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부표 I -6> 귀속연도 2021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24,335)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9,078	10,997	59,092	3,377,416	600
과세대상 근로소득	17,478	9,502	57,897	3,308,592	210
세대주더미	0.75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204	159	370	21,664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24,335)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8,782	11,001	56,702	3,028,451	600
과세대상 근로소득	17,188	9,506	55,554	2,966,607	210
세대주더미	0.75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205	158	385	21,143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22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및 최솟값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총급여 및 과세대상근로소득의 경우 처치집단의 표준편차 및 최댓값이 비교집단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부표 I -7> 귀속연도 2022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21,355)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20,817	12,230	53,050	3,318,000	834
과세대상 근로소득	19,280	10,710	52,958	3,316,000	350
세대주더미	0.76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214	158	583	35,900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21,355)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20,565	12,220	45,934	1,891,000	834
과세대상 근로소득	19,028	10,700	45,830	1,889,000	350
세대주더미	0.76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211	158	534	26,200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23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및 최솟값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총급여 및 과세대상근로소득의 경우 처치집단의 표준편차 및 최댓값이 비교집단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부표 I -8> 귀속연도 2023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19,430)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20,158	12,620	47,924	3,469,000	550
과세대상 근로소득	18,614	11,090	47,833	3,467,000	180
세대주더미	0.77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99	153	502	40,500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19,430)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20,035	12,610	49,346	3,950,000	550
과세대상 근로소득	18,491	11,090	49,267	3,950,000	180
세대주더미	0.77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97	153	412	21,400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부록 2. 연별 매칭 결과(법인투자자)

□ 매칭 결과 두 집단 통제 변수 분포 요약

- 신고연도 기준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처치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통제집단 내 기업을 매칭하여 통제집단을 구성한 결과, 요약 통계값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1> 2018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영업이익	30.7	2.8	64.3	265.0	-61.9
과세표준	35.2	4.0	61.2	278.9	0.0
산출세액	6.9	0.6	12.3	57.2	0.0
통제집단					
영업이익	28.3	2.8	56.8	225.7	-24.5
과세표준	33.5	4.1	58.2	215.8	0.0
산출세액	6.7	0.6	11.9	43.3	0.0

주: 1. 2018년 처치집단 수는 65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하고, Mahalanobis distance가 0.03보다 작은 페어로 구축.

- 시행연도 기준 2019년 자료를 이용한 매칭 결과, 요약 통계값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2> 2019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영업이익	64.3	3.8	154.2	881.5	-54.8
과세표준	76.7	5.1	161.8	910.6	-5.5
산출세액	15.8	0.8	34.4	196.1	0.0

<부표 II -2>의 계속

(단위: 억원)

	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비교집단					
영업이익	61.3	3.9	142.1	766.2	-46.5
과세표준	73.2	5.1	152.3	818.8	0.0
산출세액	15.0	0.8	32.3	175.9	0.0

주: 1. 2019년 처치집단 수는 130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하고, Mahalanobis distance가 0.03보다 작은 페어로 구축.

- 신고연도 기준 2020년 자료를 이용한 매칭 결과, 처치집단과 요약집단의 요약 통계값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3> 2020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영업이익	58.4	4.4	139.4	1165.0	-57.4
과세표준	72.4	8.0	154.6	1277.0	-39.6
산출세액	14.9	1.4	32.9	276.8	0.0
비교집단					
영업이익	59.2	4.2	138.2	1060.0	-29.0
과세표준	70.3	7.6	149.8	1250.0	-16.7
산출세액	14.4	1.4	31.8	270.9	0.0

주: 1. 2020년 처치집단 수는 206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하고, Mahalanobis distance가 0.03보다 작은 페어로 구축.

- 신고연도 기준 2021년 자료를 이용한 매칭 결과, 최솟값을 제외한 요약 통계 값들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4> 2021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영업이익	125.5	18.1	290.9	2504.0	-121.3
과세표준	132.4	25.8	286.3	2140.0	0.0
산출세액	27.8	5.0	62.6	466.6	0.0
비교집단					
영업이익	119.6	19.5	275.5	2287.0	-12.2
과세표준	125.9	25.7	280.2	1772.0	0.0
산출세액	26.2	4.9	60.6	385.5	0.0

주: 1. 2021년 처치집단 수는 270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하고, Mahalanobis distance가 0.03보다 작은 페어로 구축.

- 신고연도 기준 2022년 자료를 이용한 매칭 결과, 처치집단과 요약집단의 요약 통계값이 최솟값을 제외하고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5> 2022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영업이익	58.4	4.4	139.4	1165.0	-57.4
과세표준	72.4	8.0	154.6	1277.0	-39.6
산출세액	14.9	1.4	32.9	276.8	0.0
비교집단					
영업이익	59.2	4.2	138.2	1060.0	-29.0
과세표준	70.3	7.6	149.8	1250.0	-16.7
산출세액	14.4	1.4	31.8	270.9	0.0

주: 1. 2022년 처치집단 수는 456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하고, Mahalanobis distance가 0.03보다 작은 페어로 구축.

- 신고연도 기준 2023년 자료를 이용한 매칭 결과, 처치집단과 요약집단의 요약 통계값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6> 2023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영업이익	163.7	23.6	313.9	1860.0	-256.2
과세표준	190.2	43.8	323.6	1940.0	-13.4
산출세액	40.0	8.6	70.0	422.6	0.0
비교집단					
영업이익	158.4	26.0	295.8	1506.0	-165.2
과세표준	169.3	38.6	308.9	1657.0	-13.6
산출세액	35.5	7.5	66.9	360.4	0.0

주: 1. 2023년 처치집단 수는 517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하고, Mahalanobis distance가 0.03보다 작은 페어로 구축.

부록 3.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인)」에 대한 결과보고서

2025. 7.

목 차

I. 조사개요	216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16
2. 조사 설계	217
3. 조사 내용	218
4. 자료 처리	219
5. 응답자 특성	219
II. 조사 결과	220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식 및 활용	220
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 여부	220
2)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여부	222
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224
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 시점	22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경로(중복응답)	228
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안 받은 이유	230
7) 최근벤처기업에 출자 및 투자 시행년도	233
8)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235
9) 벤처기업등에 창투조합을 통해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237
10)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239
11)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율이 더 높은 방식	241
12)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243
13)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245
14) 신규 출자 및 투자 금액	247
1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249
16)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51

17) 소득공제가 투자에 미친 영향	253
18)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255
19) 출자·투자 대상 현황	259
20) 소득공제가 투자계획에 미친 영향	261
21) 소득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263
22)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266
23) 소득공제 반영 후 투자계획 변동이 없었던 이유	269
24)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벤처투자 의향	271
25)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273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선방향	275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275
2) 소득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280
3) 소득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확대 규모	282
4)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	283
5)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적절성 의견	288
6)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290
7) 경영현황	292

I.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평가의 일부로서 동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동 제도의 목적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개인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금혜택(「조특법」 제16조 및 제13조의2), 이들 투자자의 간접투자 매개체인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금혜택(「조특법」 제13조)을 줌으로써 벤처기업 등에 투자 확대를 유인함
-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동 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기한 종료 전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 그동안의 운영성과 평가,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 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당 제도의 운영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2015년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량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부표 Ⅲ-1> 조사 설계

구 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대상	2015년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
표본수	136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2025년 5월 26일 ~ 6월 13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3.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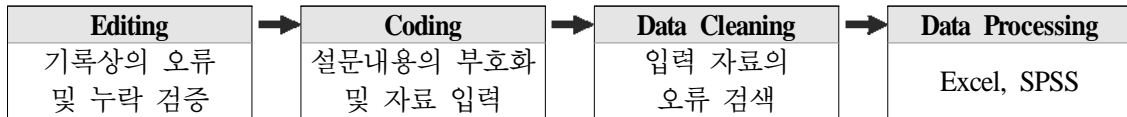
□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표 Ⅲ-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성별 소득세법상 지위 개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업종 분류 소득수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식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 여부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 여부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 시점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 경로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받지 않은 이유 최근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시행년도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벤처기업등에 창투조합을 통해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 신규 출자 및 투자 금액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소득공제가 투자에 미친 영향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2024년 출자·투자·회수 금액, 대상 개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소득공제가 투자계획에 미친 영향 소득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소득공제 반영 후 투자계획 변동이 없었던 이유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벤처투자 의향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소득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소득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 규모 소득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확대 규모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적절성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경영현황

4.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음



5.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부표 III-3〉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136	100.0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16.2
	근로소득자	100	73.5
	그 외	14	10.3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116	85.3
	없음	20	14.7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41.2
	직·간접 투자	22	16.2
	간접투자	58	42.6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77.9
	도움 되지 않음	30	22.1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12.5
	적당함	50	36.8
	부족함	69	50.7

II. 조사 결과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식 및 활용

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 여부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받은 적 있음’이 85.3%로 ‘받은 적 없음’(14.7%)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받은 적 있음’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받은 적 있음’이 88.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직접투자’가 90.9%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직접투자’가 90.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 여부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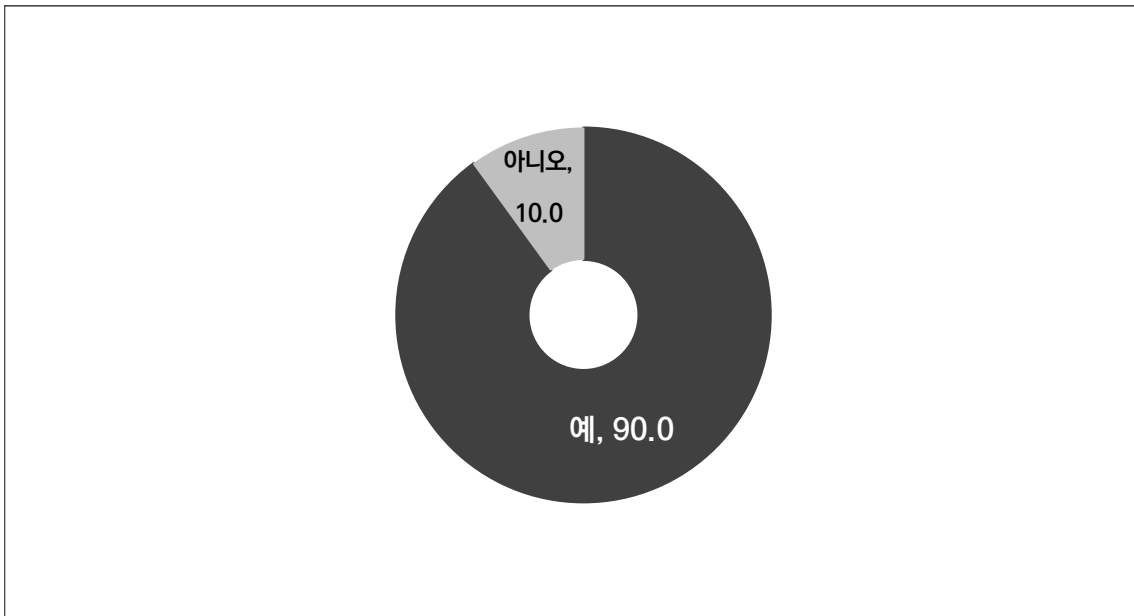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받은 적이 있음	받은 적이 없음
전 체		(136)	85.3	14.7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72.7	27.3
	근로소득자	(100)	88.0	12.0
	그 외	(14)	85.7	14.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100.0	0.0
	없음	(20)	0.0	10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83.9	16.1
	직간접 투자	(22)	90.9	9.1
	간접투자	(58)	84.5	15.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84.0	16.0
	도움 안됨	(30)	90.0	1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82.4	17.6
	적당	(50)	84.0	16.0
	부족함	(69)	87.0	13.0

2)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여부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예’가 90.0%로, ‘아니오’는 10.0%로 나타났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예’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예’가 83.3%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는 사례 수가 0명으로 분석 제외됨, ‘없음’ 응답자에서는 ‘예’가 90.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Ⅲ-2]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여부

(base 전체, n=20, 단위: %)



<부표 III-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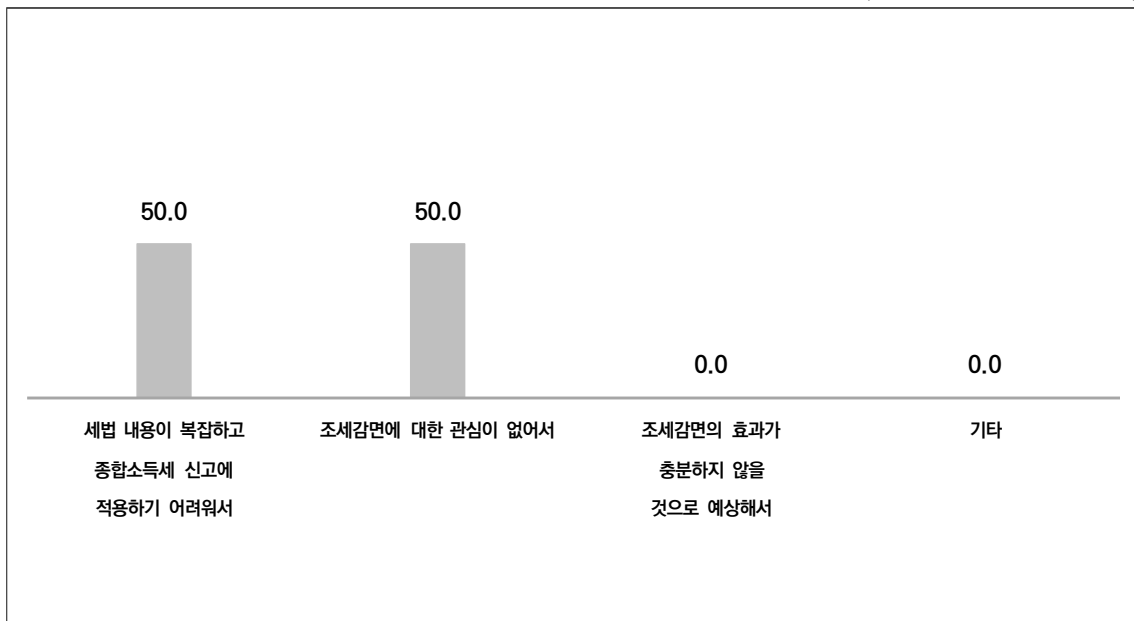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	90.0	10.0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6)	100.0	0.0
	근로소득자	(12)	83.3	16.7
	그 외	(2)	100.0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0)	-	-
	없음	(20)	90.0	1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9)	100.0	0.0
	직간접 투자	(2)	100.0	0.0
	간접투자	(9)	77.8	22.2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7)	88.2	11.8
	도움 안됨	(3)	100.0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3)	66.7	33.3
	적당	(8)	87.5	12.5
	부족함	(9)	100.0	0.0

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하기 어려워서’와 ‘조세감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각각 50.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Ⅲ-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base 전체, n=2, 단위: %)



<부표 III -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알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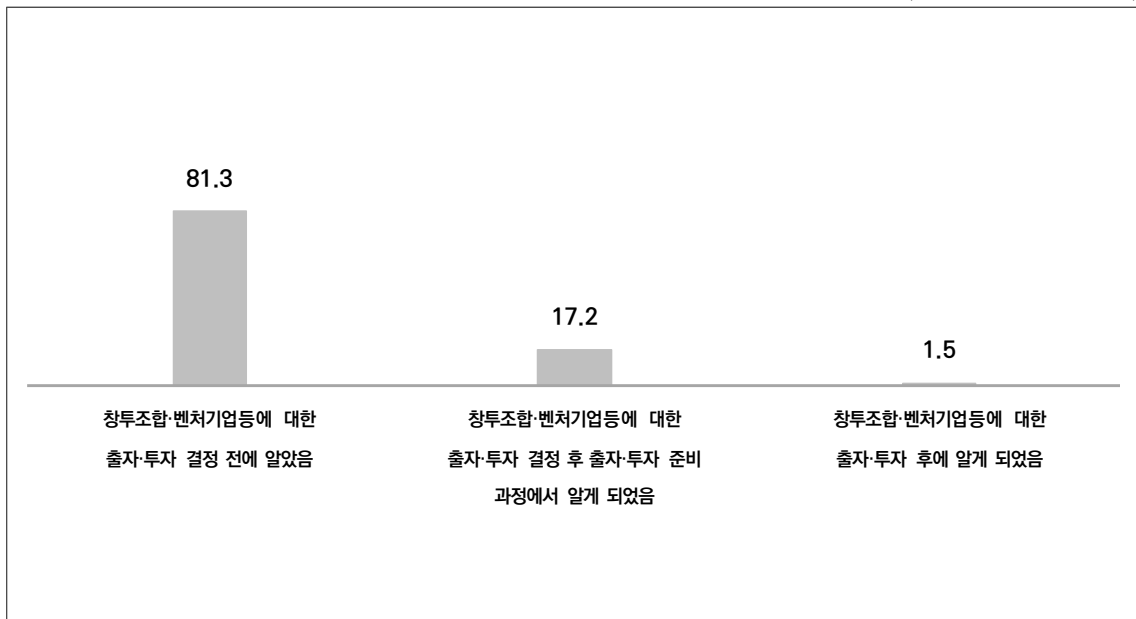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조세감면에 대한 관심이없어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것으로 예상해서	기타
전 체	(2)	50.0	50.0	0.0	0.0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0)	-	-	-
	근로소득자	(2)	50.0	50.0	0.0
	그 외	(0)	-	-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0)	-	-	-
	없음	(2)	50.0	50.0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0)	-	-	-
	직간접 투자	(0)	-	-	-
	간접투자	(2)	50.0	50.0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2)	50.0	50.0	0.0
	도움 안됨	(0)	-	-	-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	100.0	0.0	0.0
	적당	(1)	0.0	100.0	0.0
	부족함	(0)	-	-	-

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 시점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투조합·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81.3%로 가장 높았고, ‘창투조합·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후 출자·투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이 17.2%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창투조합·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90.9%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동일 항목이 80.6%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창투조합·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81.0%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창투조합·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83.3%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Ⅲ-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 시점

(base 전체, n=136, %)



<부표 Ⅲ-7>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 시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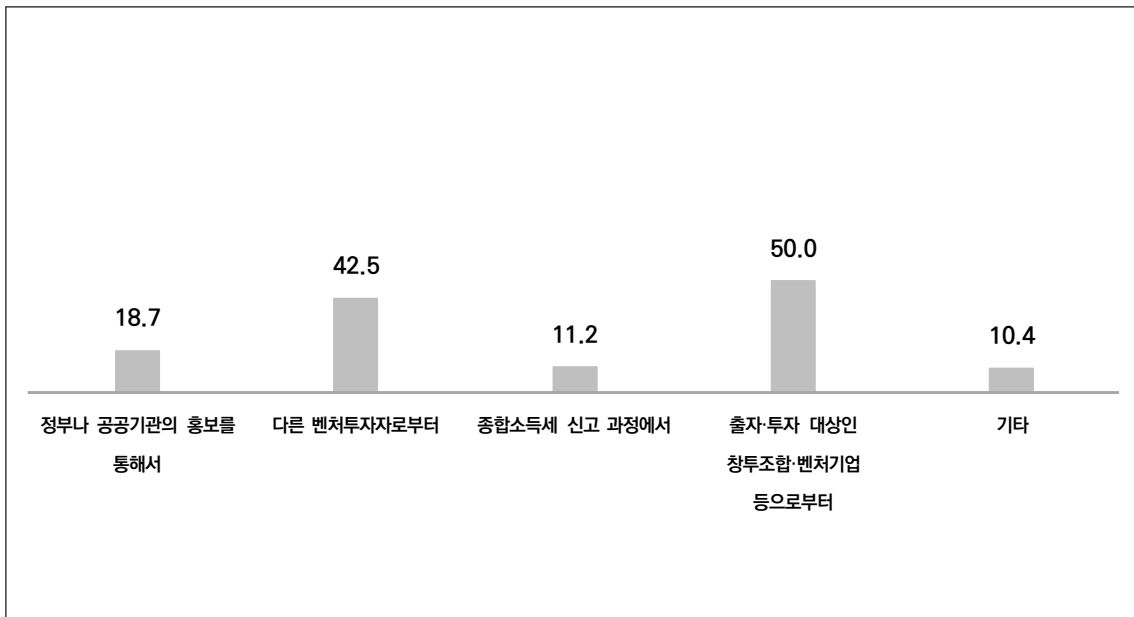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창투조합· 벤처기업등에 대한출자·투자 결정전에알았음	창투조합· 벤처기업등에 대한출자·투자 결정후 출자·투자 준비과정에서 알게되었음	창투조합· 벤처기업등에 대한출자·투자 후에알게되었음	
전 체	(134)	81.3	17.2	1.5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90.9	9.1	0.0
	근로소득자	(98)	80.6	18.4	1.0
	그 외	(14)	71.4	21.4	7.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81.0	17.2	1.7
	없음	(18)	83.3	16.7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83.9	16.1	0.0
	직간접 투자	(22)	95.5	4.5	0.0
	간접투자	(56)	73.2	23.2	3.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4)	84.6	14.4	1.0
	도움 안됨	(30)	70.0	26.7	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6)	87.5	12.5	0.0
	적당	(49)	73.5	24.5	2.0
	부족함	(69)	85.5	13.0	1.4

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경로 (중복응답)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경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출자·투자 대상인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으로부터’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른 벤처투자자로부터’가 42.5%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출자·투자 대상인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으로부터’가 59.1%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출자·투자 대상인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으로부터’가 46.9%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출자·투자 대상인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으로부터’가 50.9%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출자·투자 대상인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으로부터’가 44.4%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경로(중복응답)

(base 전체, n=134, 단위: %)



<부표 III -8>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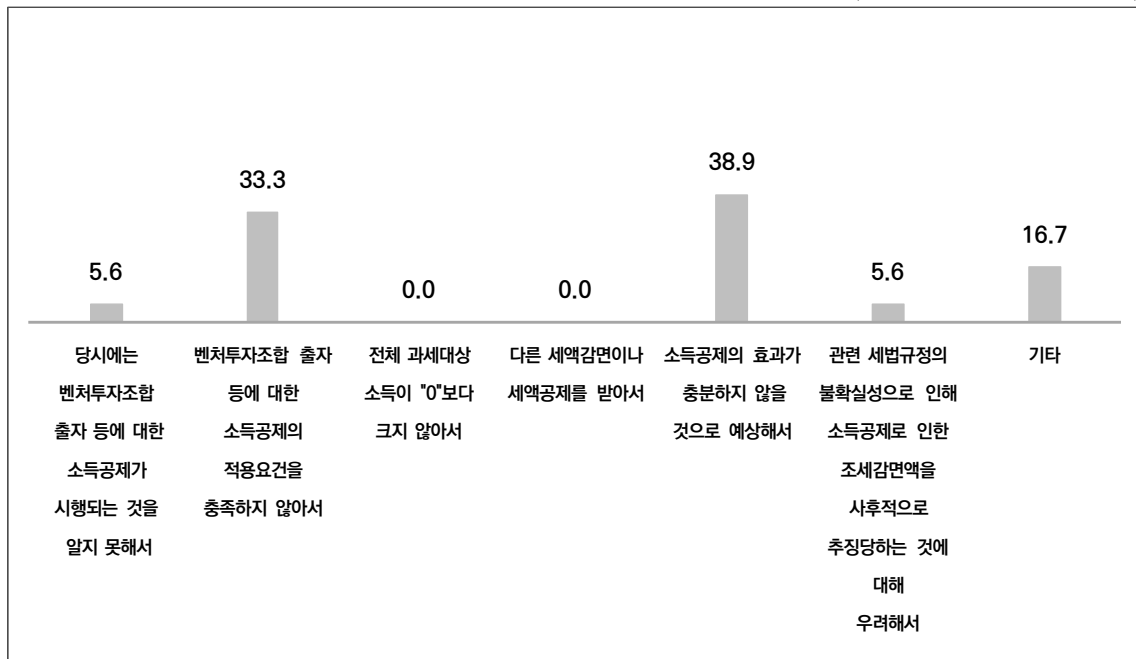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다른 벤처 투자자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출자·투자 대상인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으로부터	기타	
전 체	(134)	18.7	42.5	11.2	50.0	10.4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9.1	45.5	9.1	59.1	13.6
	근로소득자	(98)	20.4	42.9	11.2	46.9	10.2
	그 외	(14)	21.4	35.7	14.3	57.1	7.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19.8	46.6	12.1	50.9	7.8
	없음	(18)	11.1	16.7	5.6	44.4	27.8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19.6	41.1	16.1	41.1	14.3
	직간접 투자	(22)	4.5	54.5	4.5	50.0	9.1
	간접투자	(56)	23.2	39.3	8.9	58.9	7.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4)	19.2	44.2	10.6	47.1	13.5
	도움 안됨	(30)	16.7	36.7	13.3	60.0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6)	18.8	25.0	12.5	75.0	18.8
	적당	(49)	18.4	36.7	14.3	59.2	6.1
	부족함	(69)	18.8	50.7	8.7	37.7	11.6

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안 받은 이유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안 받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소득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가 38.9%로 가장 높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가 33.3%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가 40.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없음’ 응답자에서는 ‘소득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가 38.9%로 가장 높았으며, ‘있음’ 응답자는 사례 수가 0명으로 분석 제외됨.

[부그림 III-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안 받은 이유

(base 전체, n=18, 단위: %)



<부표 III-9>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안 받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당시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는것을 알지못해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않아서	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크지 않아서	
전 체	(18)	5.6	33.3	0.0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6)	0.0	33.3	0.0
	근로소득자	(10)	10.0	20.0	0.0
	그 외	(2)	0.0	100.0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0)	-	-	-
	없음	(18)	5.6	33.3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9)	11.1	11.1	0.0
	직간접 투자	(2)	0.0	50.0	0.0
	간접투자	(7)	0.0	57.1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5)	6.7	40.0	0.0
	도움 안됨	(3)	0.0	0.0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	0.0	50.0	0.0
	적당	(7)	0.0	14.3	0.0
	부족함	(9)	11.1	44.4	0.0

<부표 III-9>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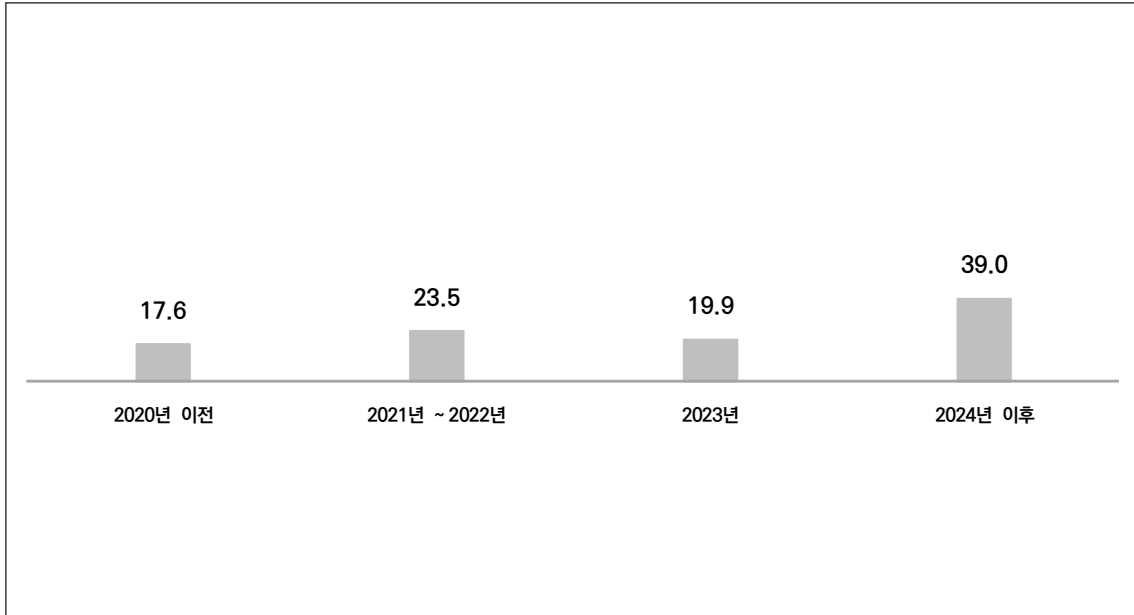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	소득공제의 효과가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액을 사후적으로 추정당하는것에 대해 우려해서	기타	
전 체	(18)	0.0	38.9	5.6	16.7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6)	0.0	50.0	0.0	16.7
	근로소득자	(10)	0.0	40.0	10.0	20.0
	그 외	(2)	0.0	0.0	0.0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0)	-	-	-	-
	없음	(18)	0.0	38.9	5.6	16.7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9)	0.0	55.6	11.1	11.1
	직간접 투자	(2)	0.0	0.0	0.0	50.0
	간접투자	(7)	0.0	28.6	0.0	14.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5)	0.0	40.0	0.0	13.3
	도움 안됨	(3)	0.0	33.3	33.3	3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	0.0	0.0	0.0	50.0
	적당	(7)	0.0	57.1	14.3	14.3
	부족함	(9)	0.0	33.3	0.0	11.1

7) 최근벤처기업에 출자 및 투자 시행년도

- 최근 벤처기업에 출자 및 투자 시행년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24년 이후가 39.0%로 가장 높았고, 2021년 ~ 2022년이 23.5%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2021년 ~ 2022년’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2024년 이후’가 38.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2024년 이후’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2024년 이후’가 50.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7] 최근벤처기업에 출자 및 투자 시행년도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10> 최근벤처기업에 출자 및 투자 시행년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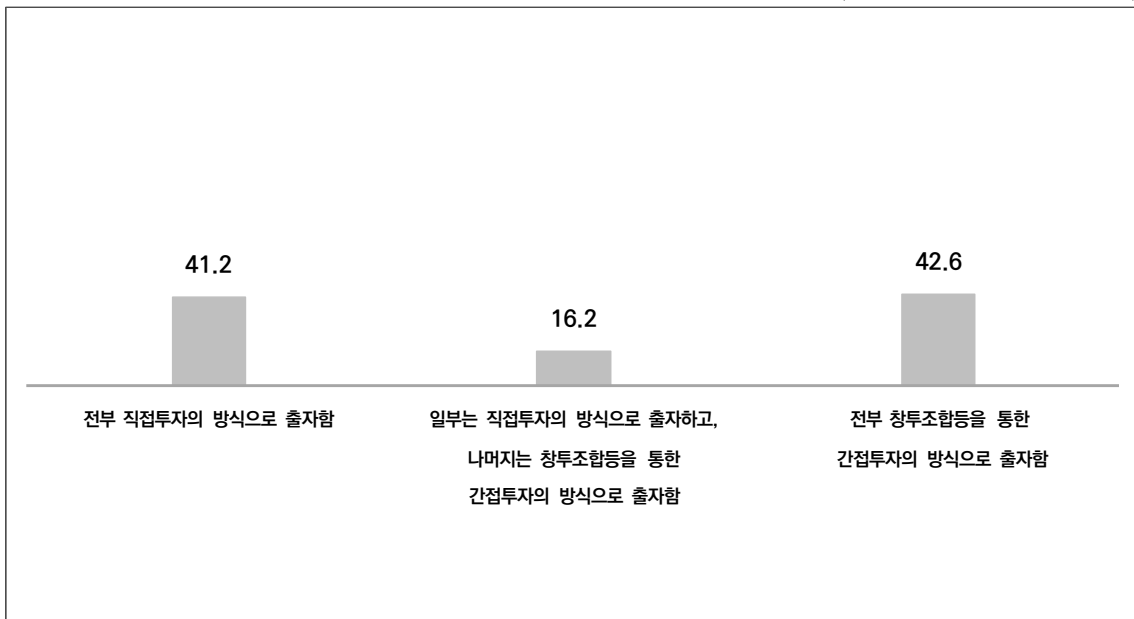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2020년 이전	2021년 ~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전 체		(136)	17.6	23.5	19.9	39.0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9.1	36.4	22.7	31.8
	근로소득자	(100)	21.0	21.0	20.0	38.0
	그 외	(14)	7.1	21.4	14.3	57.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19.8	23.3	19.8	37.1
	없음	(20)	5.0	25.0	20.0	5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14.3	16.1	19.6	50.0
	직간접 투자	(22)	27.3	31.8	18.2	22.7
	간접투자	(58)	17.2	27.6	20.7	34.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16.0	25.5	18.9	39.6
	도움 안됨	(30)	23.3	16.7	23.3	36.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17.6	29.4	23.5	29.4
	적당	(50)	12.0	22.0	22.0	44.0
	부족함	(69)	21.7	23.2	17.4	37.7

8)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42.6%로 가장 높았고,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41.2%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44.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과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각각 45.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8]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Ⅲ-11>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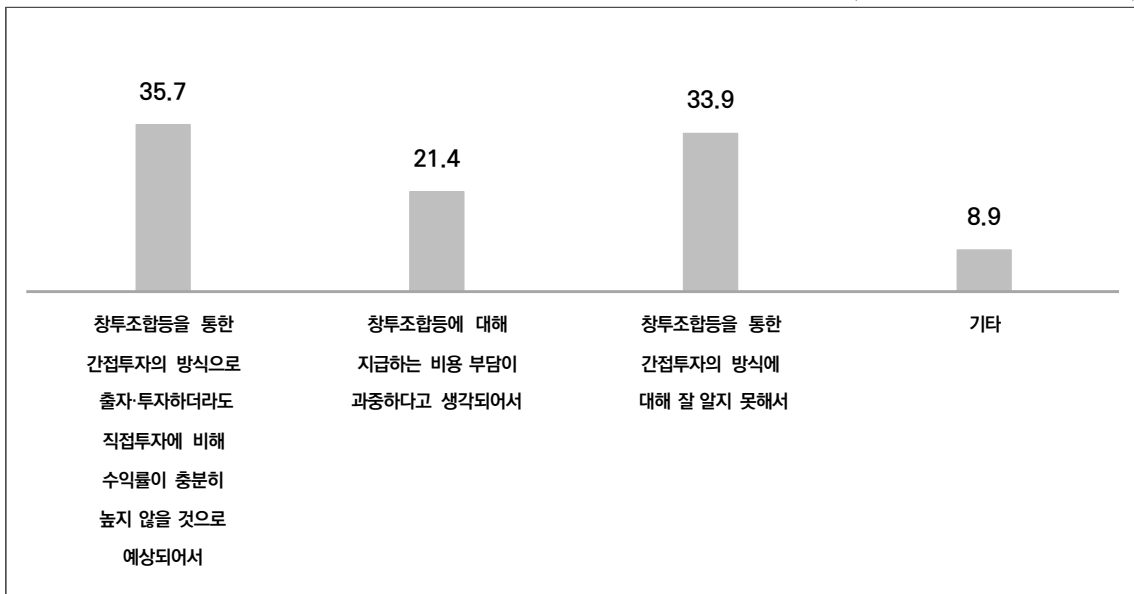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	일부는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	
전 체	(136)	41.2	16.2	42.6	
소득세법상 지 위	개인사업자	(22)	45.5	22.7	31.8
	근로소득자	(100)	41.0	15.0	44.0
	그 외	(14)	35.7	14.3	5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40.5	17.2	42.2
	없음	(20)	45.0	10.0	4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100.0	0.0	0.0
	직간접 투자	(22)	0.0	100.0	0.0
	간접투자	(58)	0.0	0.0	10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44.3	13.2	42.5
	도움 안됨	(30)	30.0	26.7	4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29.4	11.8	58.8
	적당	(50)	42.0	14.0	44.0
	부족함	(69)	43.5	18.8	37.7

9) 벤처기업등에 창투조합을 통해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 벤처기업 등에 창투조합을 통해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가 35.7%로 가장 높았고,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가 33.9%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창투조합 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서’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가 각각 36.6%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와 ‘창투조합 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서’가 44.4%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Ⅲ-9] 벤처기업등에 창투조합을 통해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base 전체, n=56, 단위: %)



<부표 Ⅲ-12> 벤처기업 등에 창투조합을 통해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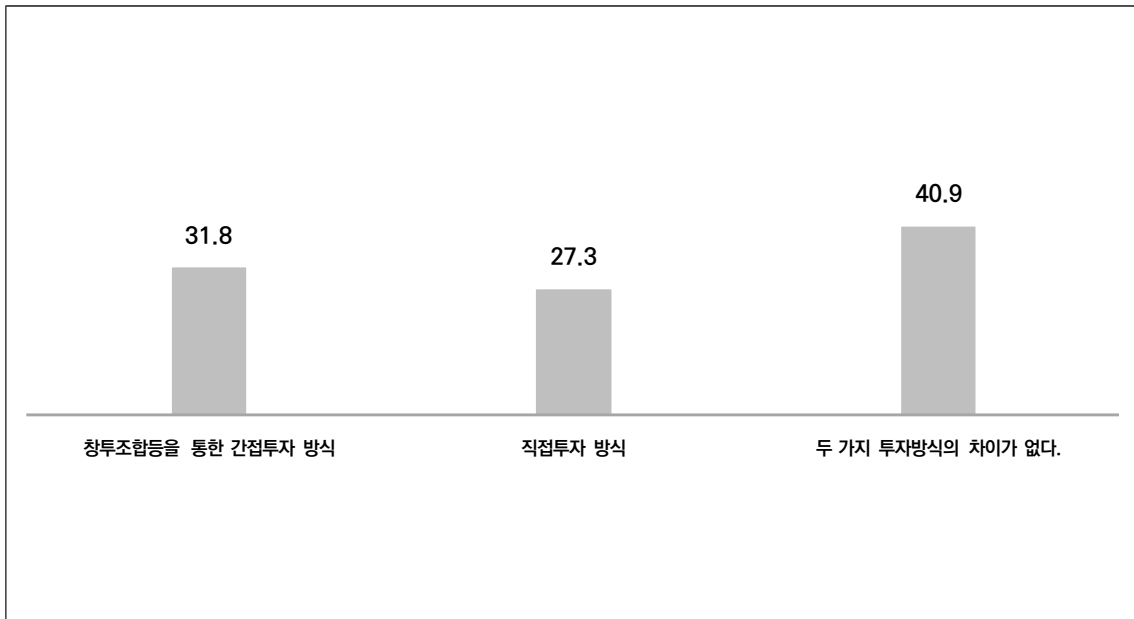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창투조합 등을 통한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다라도 직접투자에 비해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창투조합등에 대해지급하는 비용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서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알지못해서	기타
전 체		(56)	35.7	21.4	33.9	8.9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10)	20.0	50.0	20.0	10.0
	근로소득자	(41)	36.6	17.1	36.6	9.8
	그 외	(5)	60.0	0.0	40.0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47)	34.0	17.0	40.4	8.5
	없음	(9)	44.4	44.4	0.0	11.1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35.7	21.4	33.9	8.9
	직간접 투자	(0)	-	-	-	-
	간접투자	(0)	-	-	-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47)	36.2	21.3	31.9	10.6
	도움 안됨	(9)	33.3	22.2	44.4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5)	20.0	0.0	40.0	40.0
	적당	(21)	38.1	23.8	33.3	4.8
	부족함	(30)	36.7	23.3	33.3	6.7

10)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40.9%로 가장 높았고,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31.8%로 그 뒤를 이었음.

[부그림 III-10]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base 전체, n=22, 단위: %)



<부표 III-13>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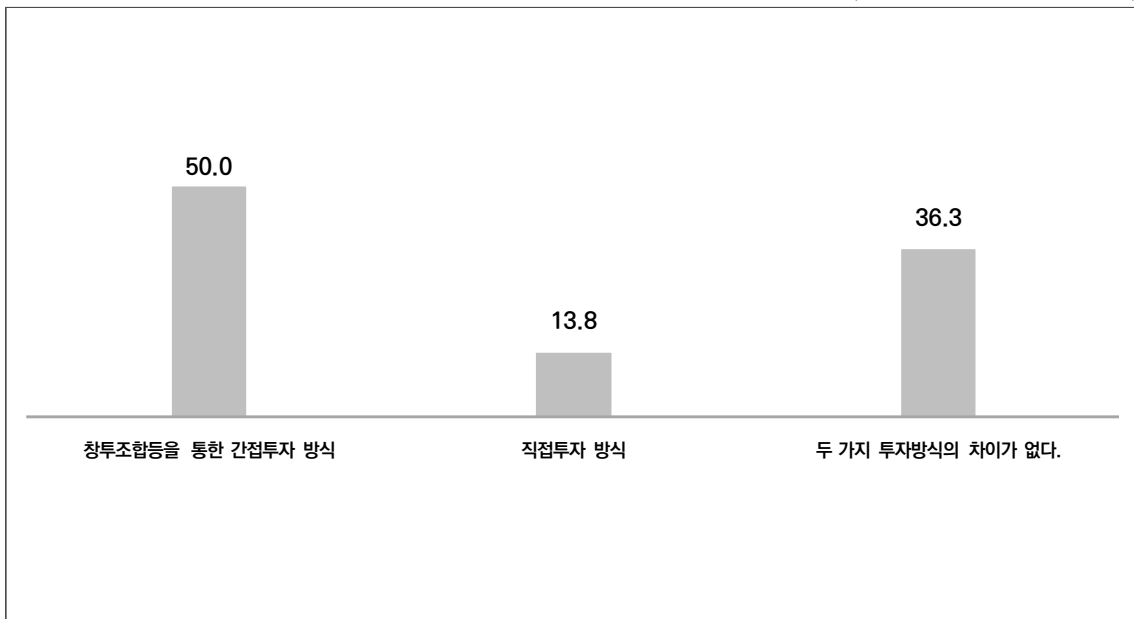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창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직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없다.	
전 체	(22)	31.8	27.3	40.9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20.0	40.0	40.0
	근로소득자	(15)	40.0	20.0	40.0
	그 외	(2)	0.0	50.0	5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20)	35.0	20.0	45.0
	없음	(2)	0.0	100.0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0)	-	-	-
	직간접 투자	(22)	31.8	27.3	40.9
	간접투자	(0)	-	-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4)	35.7	14.3	50.0
	도움 안됨	(8)	25.0	50.0	25.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	0.0	0.0	100.0
	적당	(7)	14.3	42.9	42.9
	부족함	(13)	46.2	23.1	30.8

11)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50.0%로 가장 높았고, ‘두 가지 투자 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36.3%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각 50.0%, 49.2%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과 ‘없음’ 응답자 모두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각 50.7%, 45.5%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Ⅲ-11]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

(base 전체, n=80, 단위: %)



<부표 III-14> 벤처기업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율이 더 높은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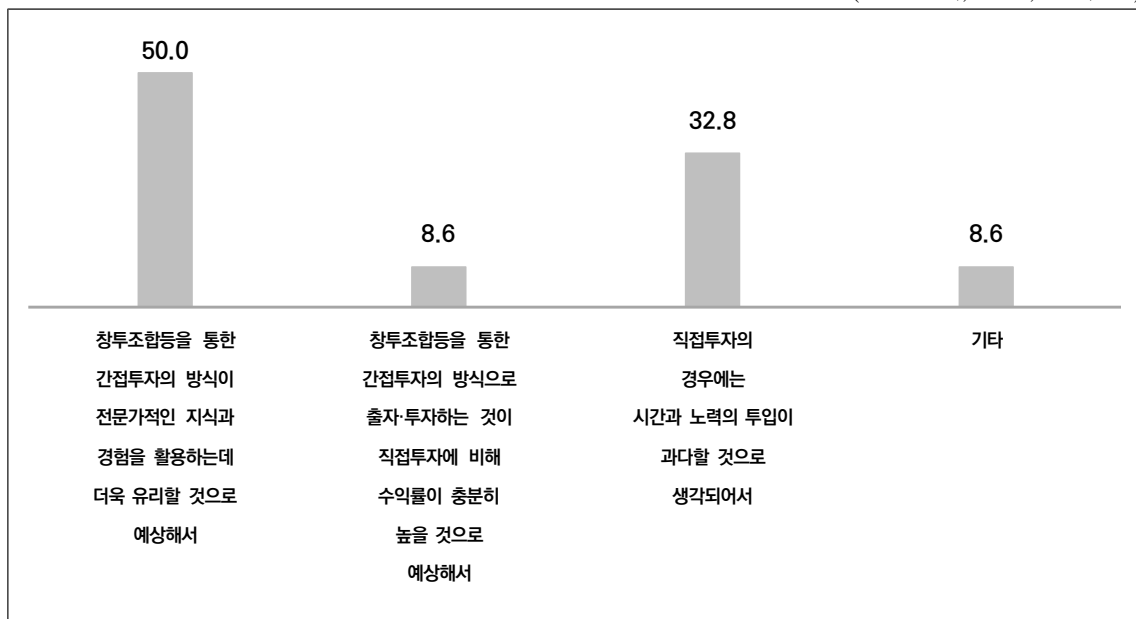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창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직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없다.	
전 체	(80)	50.0	13.8	36.3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12)	50.0	16.7	33.3
	근로소득자	(59)	49.2	13.6	37.3
	그 외	(9)	55.6	11.1	33.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69)	50.7	13.0	36.2
	없음	(11)	45.5	18.2	36.4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0)	-	-	-
	직간접 투자	(22)	36.4	22.7	40.9
	간접투자	(58)	55.2	10.3	34.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59)	50.8	10.2	39.0
	도움 안됨	(21)	47.6	23.8	28.6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2)	66.7	8.3	25.0
	적당	(29)	41.4	24.1	34.5
	부족함	(39)	51.3	7.7	41.0

12)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50.0%로 가장 높았고,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과다할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32.8%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57.1%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47.7%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53.1%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과다할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66.7%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Ⅲ-12]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base 전체, n=58, 단위: %)



<부표 Ⅲ-15>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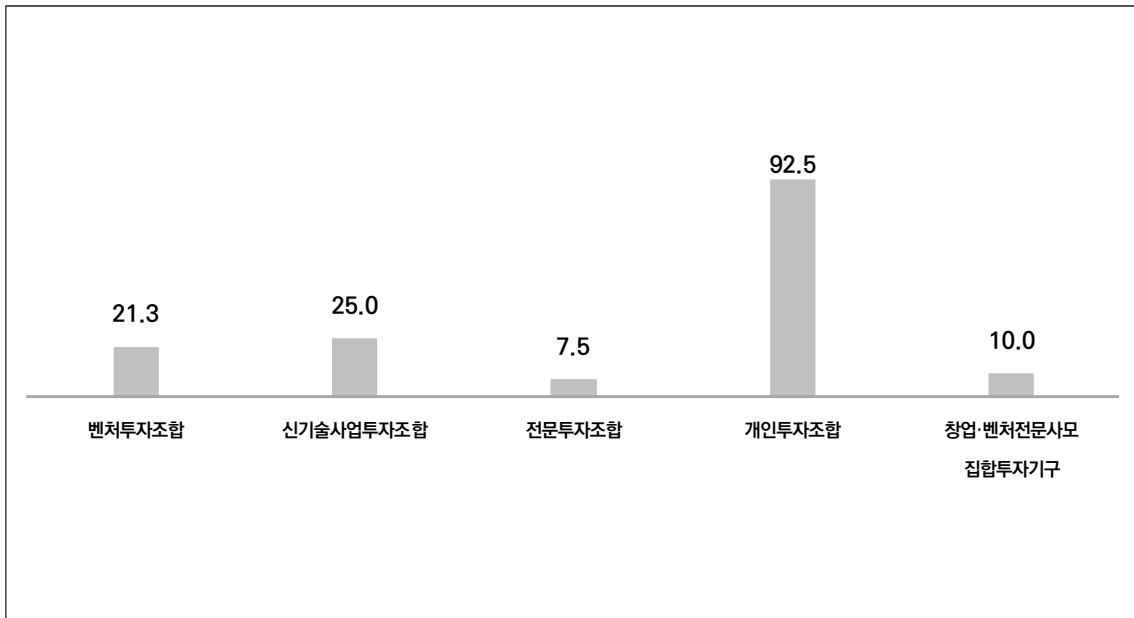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는것이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을것으로 예상해서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시간과노력의 투입이과다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기타	
전 체	(58)	50.0	8.6	32.8	8.6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7)	57.1	0.0	42.9	0.0
	근로소득자	(44)	47.7	11.4	31.8	9.1
	그 외	(7)	57.1	0.0	28.6	14.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49)	53.1	10.2	26.5	10.2
	없음	(9)	33.3	0.0	66.7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0)	-	-	-	-
	직간접 투자	(0)	-	-	-	-
	간접투자	(58)	50.0	8.6	32.8	8.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45)	55.6	4.4	28.9	11.1
	도움 안됨	(13)	30.8	23.1	46.2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0)	70.0	0.0	20.0	10.0
	적당	(22)	50.0	9.1	31.8	9.1
	부족함	(26)	42.3	11.5	38.5	7.7

13)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개인투자조합’이 92.5%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25.0%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개인투자조합’이 91.7%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개인투자조합’이 91.5%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이 94.2%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이 81.8%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13]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base 전체, n=80, 단위: %)



<부표 III-16>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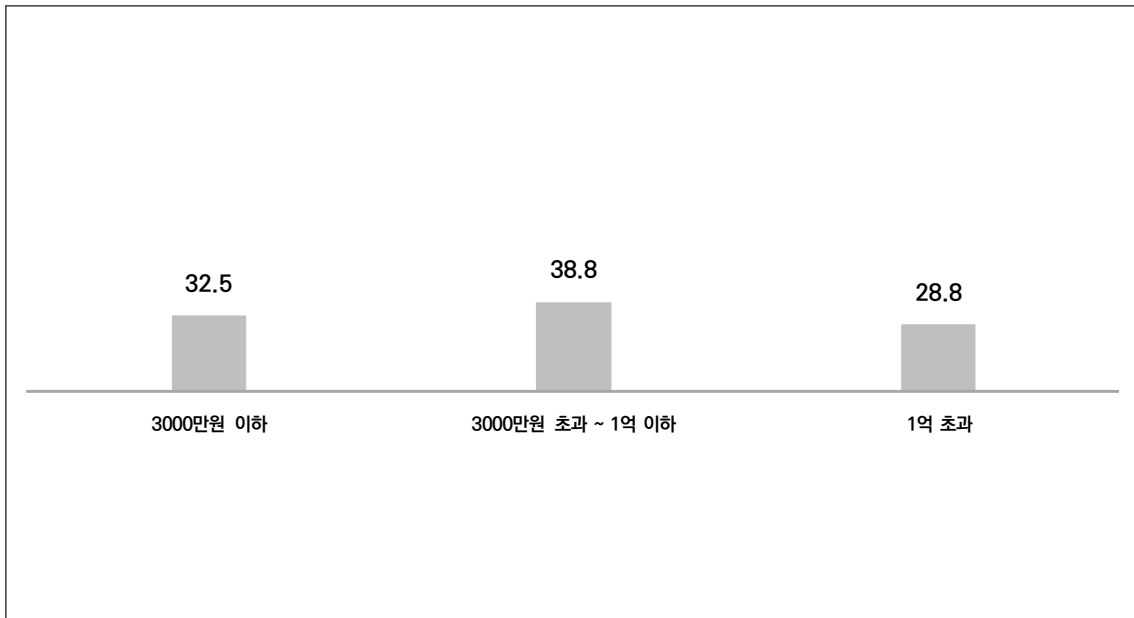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벤처 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전문 투자조합	개인 투자조합	창업·벤처 전문사 모집합 투자기구	
전 체	(80)	21.3	25.0	7.5	92.5	10.0	
소득세법상 지 위	개인사업자	(12)	33.3	0.0	0.0	91.7	0.0
	근로소득자	(59)	18.6	28.8	6.8	91.5	10.2
	그 외	(9)	22.2	33.3	22.2	100.0	22.2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69)	17.4	24.6	4.3	94.2	7.2
	없음	(11)	45.5	27.3	27.3	81.8	27.3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0)	-	-	-	-	-
	직간접 투자	(22)	36.4	54.5	9.1	90.9	18.2
	간접투자	(58)	15.5	13.8	6.9	93.1	6.9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59)	16.9	23.7	6.8	93.2	10.2
	도움 안됨	(21)	33.3	28.6	9.5	90.5	9.5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2)	16.7	16.7	0.0	91.7	8.3
	적당	(29)	27.6	27.6	6.9	93.1	3.4
	부족함	(39)	17.9	25.6	10.3	92.3	15.4

14) 신규 출자 및 투자 금액

- 신규 출자 및 투자 금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3000만원 초과~1억 이하’가 38.8%로 가장 높았고, ‘1억 초과’가 28.8%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3000만원 초과~1억 이하’가 42.4%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3000만원 초과~1억 이하’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3000만원 이하’가 45.5%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14] 간접투자 방식의 전체 출자건수 중 비율

(base 전체, n=80, 단위: %)



<부표 Ⅲ-17> 간접투자 방식의 전체 출자건수 중 비율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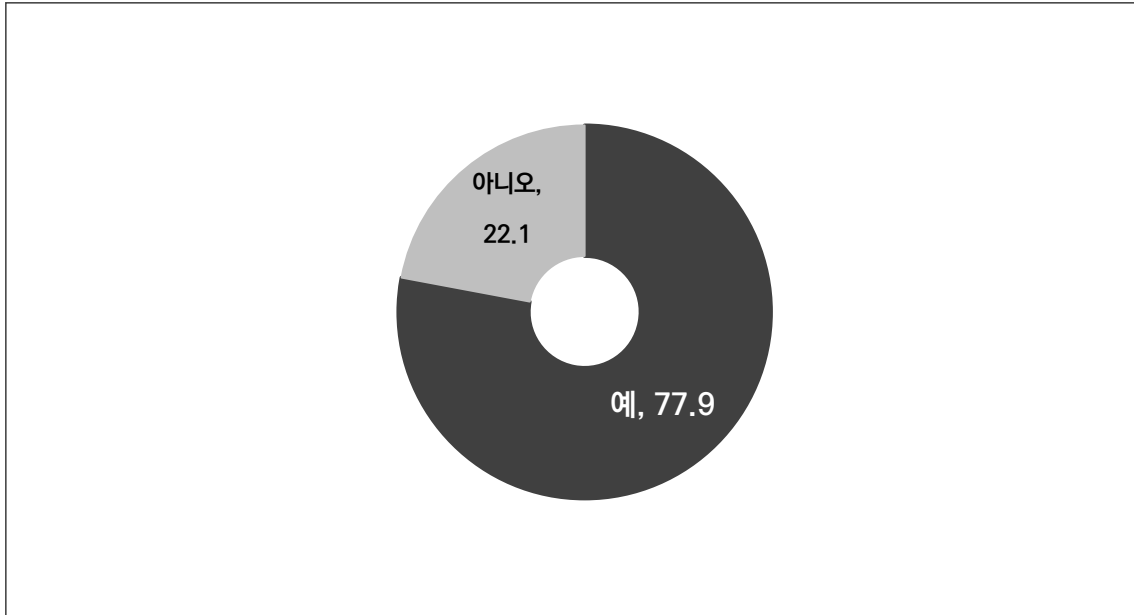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평균	
전 체	(80)	32.5	38.8	28.8	13455.00	
소득세법상 지 위	개인사업자	(12)	50.0	25.0	25.0	11733.33
	근로소득자	(59)	28.8	42.4	28.8	14503.39
	그 외	(9)	33.3	33.3	33.3	8877.78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69)	30.4	39.1	30.4	13569.57
	없음	(11)	45.5	36.4	18.2	12736.36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0)	-	-	-	-
	직간접 투자	(22)	18.2	40.9	40.9	17463.64
	간접투자	(58)	37.9	37.9	24.1	11934.48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59)	35.6	39.0	25.4	11833.90
	도움 안됨	(21)	23.8	38.1	38.1	18009.5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2)	50.0	16.7	33.3	16841.67
	적당	(29)	41.4	31.0	27.6	11717.24
	부족함	(39)	20.5	51.3	28.2	13705.13

1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예’가 77.9%로, ‘아니오’는 22.1%로 나타남.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예’가 86.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예’가 75.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예’가 76.7%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예’가 85.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1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18>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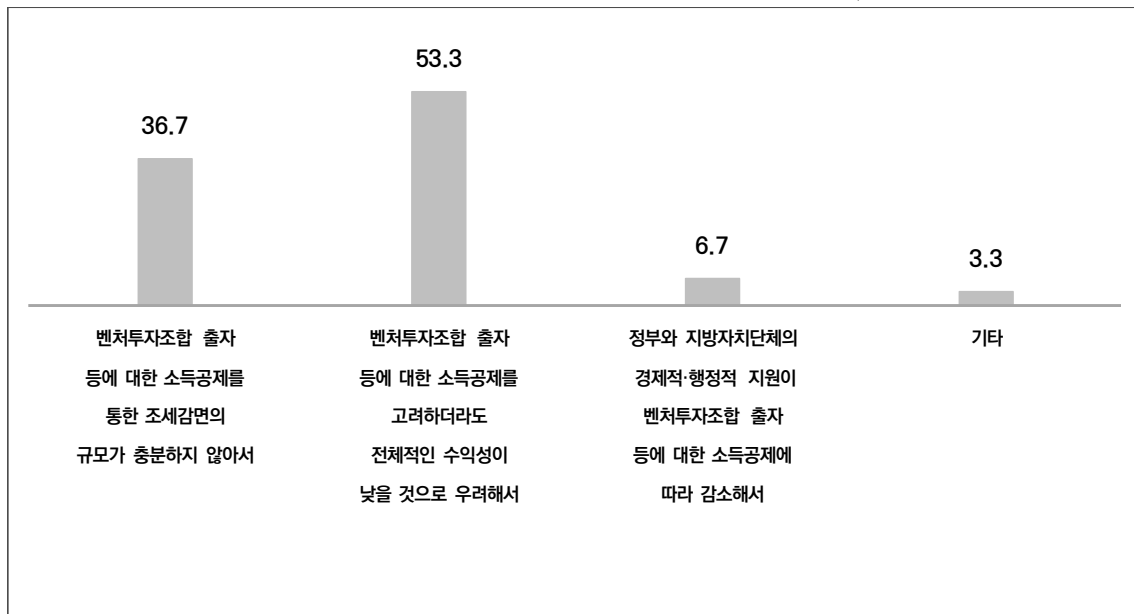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예	아 니 오	
전 체	(136)	77.9	22.1	
소득세법상 지 위	개인사업자	(22)	86.4	13.6
	근로소득자	(100)	75.0	25.0
	그 외	(14)	85.7	14.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76.7	23.3
	없음	(20)	85.0	1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83.9	16.1
	직간접 투자	(22)	63.6	36.4
	간접투자	(58)	77.6	22.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100.0	0.0
	도움 안됨	(30)	0.0	10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88.2	11.8
	적당	(50)	78.0	22.0
	부족함	(69)	75.4	24.6

16)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가 53.3%로 가장 높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36.7%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가 52.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66.7%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16]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base 전체, n=30, 단위: %)



<부표 III-19>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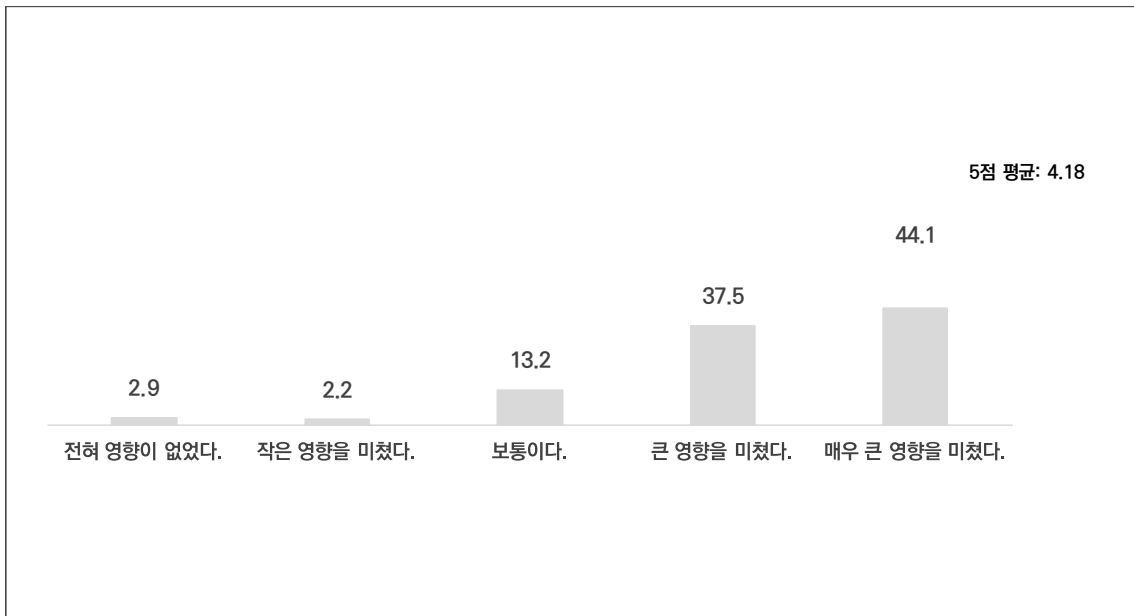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벤처 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벤처 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해서	기타	
전 체	(30)	36.7	53.3	6.7	3.3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3)	66.7	33.3	0.0	0.0
	근로소득자	(25)	36.0	52.0	8.0	4.0
	그 외	(2)	0.0	100.0	0.0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27)	33.3	55.6	7.4	3.7
	없음	(3)	66.7	33.3	0.0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9)	33.3	44.4	11.1	11.1
	직간접 투자	(8)	25.0	75.0	0.0	0.0
	간접투자	(13)	46.2	46.2	7.7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0)	-	-	-	-
	도움 안됨	(30)	36.7	53.3	6.7	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	50.0	50.0	0.0	0.0
	적당	(11)	36.4	63.6	0.0	0.0
	부족함	(17)	35.3	47.1	11.8	5.9

17) 소득공제가 투자에 미친 영향

- 소득공제가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4.18점으로 나타남.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4.05점, ‘근로소득자’는 4.17점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는 4.25점, ‘없음’ 응답자는 3.75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III-17] 소득공제가 투자에 미친 영향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20> 소득공제가 투자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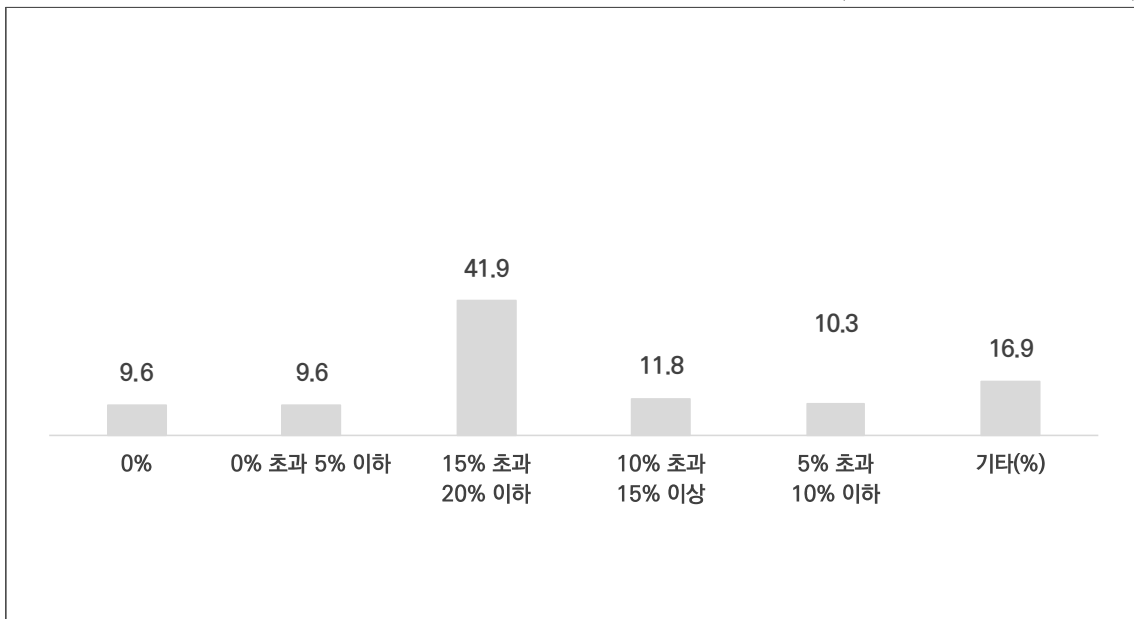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영향을 미쳤다.	5점 평균	
전 체	(136)	2.9	2.2	13.2	37.5	44.1	4.18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4.5	0.0	22.7	31.8	40.9	4.05
	근로소득자	(100)	3.0	3.0	12.0	38.0	44.0	4.17
	그 외	(14)	0.0	0.0	7.1	42.9	50.0	4.4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2.6	2.6	9.5	37.9	47.4	4.25
	없음	(20)	5.0	0.0	35.0	35.0	25.0	3.75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3.6	1.8	16.1	39.3	39.3	4.09
	직간접 투자	(22)	0.0	0.0	9.1	50.0	40.9	4.32
	간접투자	(58)	3.4	3.4	12.1	31.0	50.0	4.2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2.8	1.9	12.3	36.8	46.2	4.22
	도움 안됨	(30)	3.3	3.3	16.7	40.0	36.7	4.0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11.8	0.0	0.0	58.8	29.4	3.94
	적당	(50)	0.0	4.0	22.0	36.0	38.0	4.08
	부족함	(69)	2.9	1.4	10.1	33.3	52.2	4.30

18)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15% 초과 20% 이하’가 41.9%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16.9%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10% 초과 20% 이하’가 45.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15% 초과 20% 이하’가 47.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15% 초과 20% 이하’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15% 초과 20% 이하’가 35.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18]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Ⅲ-21>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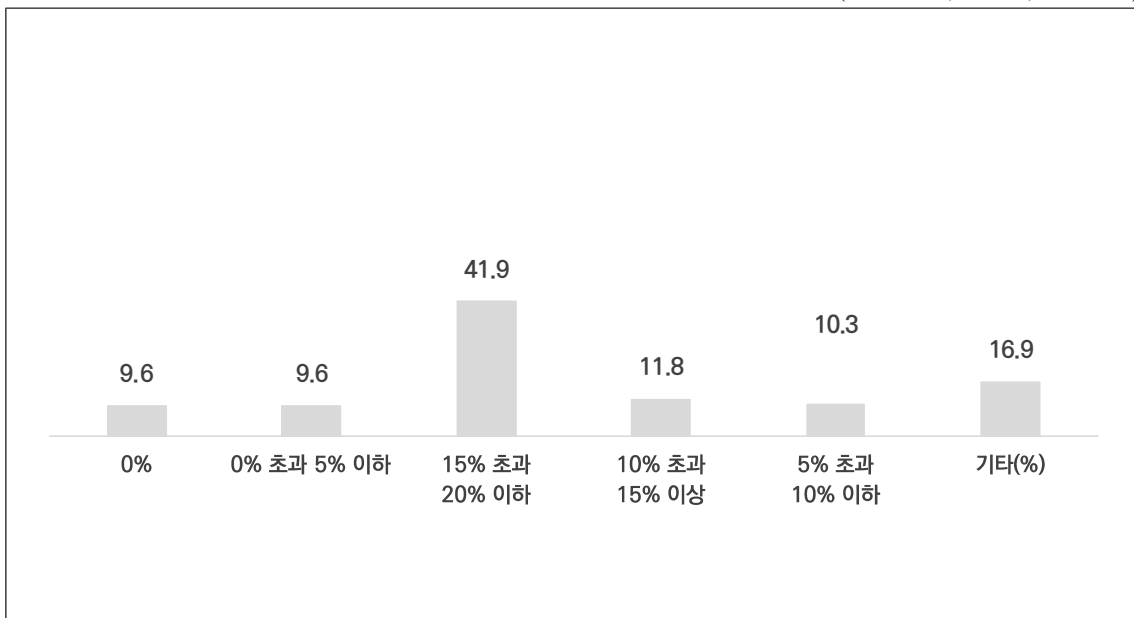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0%	0% 초과 5%이하	15% 초과 20%이하	10% 초과 15%이하	5% 초과 10%이하	기타
전 체		(136)	9.6	9.6	41.9	11.8	10.3	16.9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9.1	13.6	22.7	22.7	18.2	13.6
	근로소득자	(100)	9.0	9.0	47.0	9.0	9.0	17.0
	그 외	(14)	14.3	7.1	35.7	14.3	7.1	21.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7.8	6.0	43.1	12.9	11.2	19.0
	없음	(20)	20.0	30.0	35.0	5.0	5.0	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7.1	16.1	39.3	16.1	12.5	8.9
	직간접 투자	(22)	0.0	4.5	54.5	4.5	9.1	27.3
	간접투자	(58)	15.5	5.2	39.7	10.3	8.6	20.7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11.3	8.5	39.6	12.3	10.4	17.9
	도움 안됨	(30)	3.3	13.3	50.0	10.0	10.0	1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5.9	23.5	35.3	17.6	11.8	5.9
	적당	(50)	14.0	14.0	28.0	14.0	14.0	16.0
	부족함	(69)	7.2	2.9	53.6	8.7	7.2	20.3

-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15% 초과 20% 이하’가 41.9%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16.9%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10% 초과 20% 이하’가 45.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15% 초과 20% 이하’가 47.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15% 초과 20% 이하’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15% 초과 20% 이하’가 35.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19]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Ⅲ-22>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0%	0% 초과 5%이하	15% 초과 20%이하	10% 초과 15%이하	5% 초과 10%이하	기타
전 체		(136)	9.6	9.6	41.9	11.8	10.3	16.9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9.1	13.6	22.7	22.7	18.2	13.6
	근로소득자	(100)	9.0	9.0	47.0	9.0	9.0	17.0
	그 외	(14)	14.3	7.1	35.7	14.3	7.1	21.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7.8	6.0	43.1	12.9	11.2	19.0
	없음	(20)	20.0	30.0	35.0	5.0	5.0	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7.1	16.1	39.3	16.1	12.5	8.9
	직간접 투자	(22)	0.0	4.5	54.5	4.5	9.1	27.3
	간접투자	(58)	15.5	5.2	39.7	10.3	8.6	20.7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11.3	8.5	39.6	12.3	10.4	17.9
	도움 안됨	(30)	3.3	13.3	50.0	10.0	10.0	1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5.9	23.5	35.3	17.6	11.8	5.9
	적당	(50)	14.0	14.0	28.0	14.0	14.0	16.0
	부족함	(69)	7.2	2.9	53.6	8.7	7.2	20.3

19) 출자·투자 대상 현황

- 창투조합·벤처기업 등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출자·투자액은 11480.81만원, 회수액은 2372.01만원, 출자·투자대상의 개수는 1.10개, 주식양도차익은 823.63만원, 배당소득은 141.20만원으로 나타남.
- 벤처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출자·투자액은 664.76만원, 회수액은 199.26만원, 출자·투자대상의 개수는 0.19개, 주식양도차익은 170.59만원, 배당소득은 2.94만원으로 나타남.

〈부표 Ⅲ-23〉 현황_창투조합·벤처기업 등

(단위: 만원, 개)

구 분	사례수	신규 출자·투자액	회수액	출자·투자 대상의 개수	주식양도 차익	배당 소득	
전 체	(136)	11480.81	2372.01	1.10	823.63	141.20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11211.36	3277.27	1.05	145.45	172.73
	근로소득자	(100)	11889.40	2444.94	1.12	1058.14	114.03
	그 외	(14)	8985.71	428.57	1.07	214.29	285.7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10462.84	2760.29	1.20	962.88	164.59
	없음	(20)	17385.00	120.00	0.55	16.00	5.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13478.82	1096.32	0.93	142.75	72.02
	직간접 투자	(22)	10489.82	1181.82	1.91	818.18	2.73
	간접투자	(58)	9927.59	4055.17	0.97	1483.10	260.52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8412.17	2617.87	1.02	771.83	176.82
	도움 안됨	(30)	22323.33	1503.33	1.40	1006.67	15.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12941.18	711.76	0.88	5.88	0.00
	적당	(50)	11006.52	3482.00	1.10	1524.00	83.86
	부족함	(69)	11464.70	1976.72	1.16	517.59	217.54

<부표 III-24> 현황_벤처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대상

(단위: 만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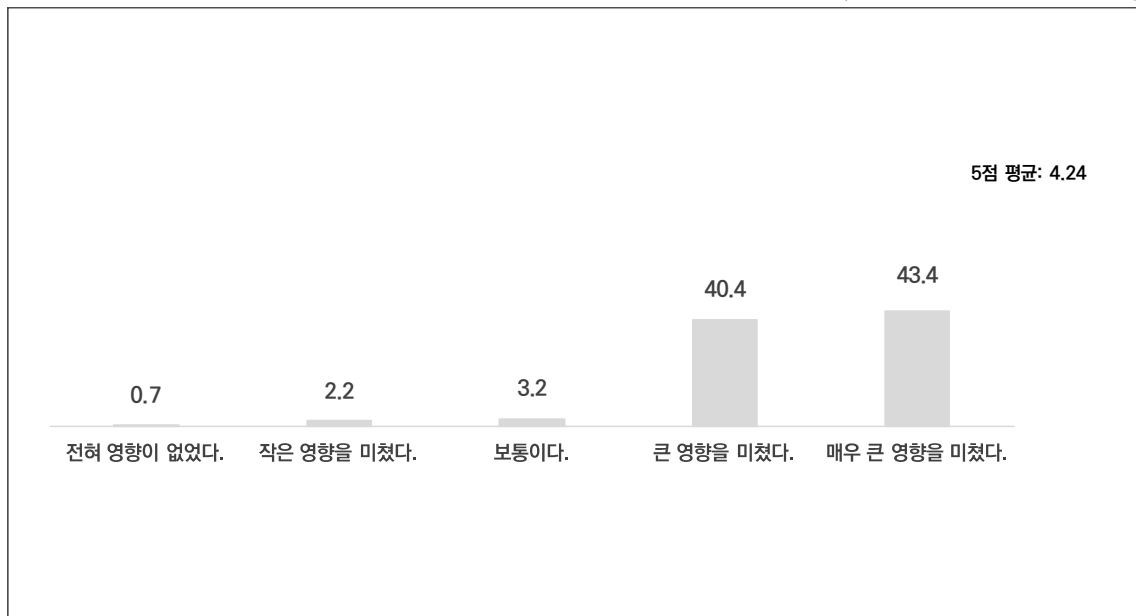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신규 출자·투자액	회수액	출자·투자 대상의 개수	주식양도 차익	배당 소득
전 체		(136)	664.76	199.26	0.19	170.59	2.94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93.18	4.55	0.05	9.09	4.55
	근로소득자	(100)	709.57	260.00	0.21	230.00	3.00
	그 외	(14)	1242.86	71.43	0.29	0.00	0.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750.06	232.76	0.22	198.28	2.59
	없음	(20)	170.00	5.00	0.05	10.00	5.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290.18	37.50	0.09	21.43	7.14
	직간접 투자	(22)	2102.59	909.09	0.55	909.09	0.00
	간접투자	(58)	481.03	86.21	0.16	34.48	0.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371.76	56.60	0.14	18.87	0.00
	도움 안됨	(30)	1700.00	703.33	0.37	706.67	13.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435.29	58.82	0.06	0.00	0.00
	적당	(50)	736.14	102.00	0.20	44.00	2.00
	부족함	(69)	669.57	304.35	0.22	304.35	4.35

20) 소득공제가 투자계획에 미친 영향

- 소득공제가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4.24점으로 나타남.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4.27점, ‘근로소득자’는 4.22점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는 4.31점, ‘없음’ 응답자는 3.80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III-20] 소득공제가 투자계획에 미친 영향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25> 소득공제가 투자계획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영향을 미쳤다.	5점 평균	
전 체	(136)	0.7	2.2	13.2	40.4	43.4	4.24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0.0	0.0	22.7	27.3	50.0	4.27
	근로소득자	(100)	1.0	3.0	12.0	41.0	43.0	4.22
	그 외	(14)	0.0	0.0	7.1	57.1	35.7	4.29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0.0	2.6	10.3	40.5	46.6	4.31
	없음	(20)	5.0	0.0	30.0	40.0	25.0	3.8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0.0	5.4	14.3	42.9	37.5	4.13
	직간접 투자	(22)	0.0	0.0	13.6	40.9	45.5	4.32
	간접투자	(58)	1.7	0.0	12.1	37.9	48.3	4.3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0.9	0.9	11.3	38.7	48.1	4.32
	도움 안됨	(30)	0.0	6.7	20.0	46.7	26.7	3.9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5.9	0.0	5.9	58.8	29.4	4.06
	적당	(50)	0.0	4.0	20.0	42.0	34.0	4.06
	부족함	(69)	0.0	1.4	10.1	34.8	53.6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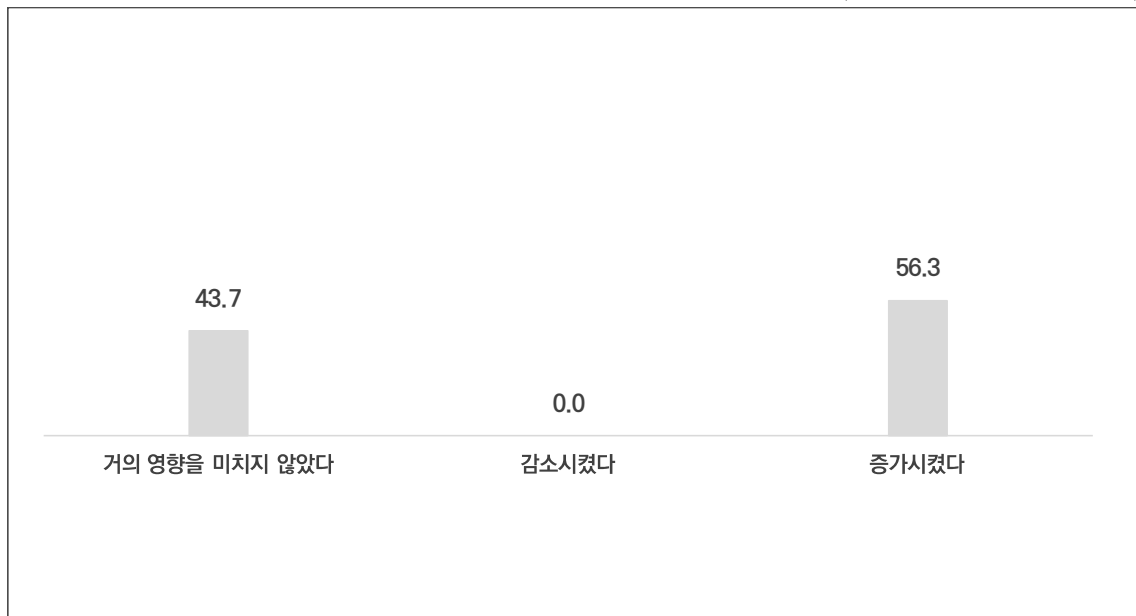
21) 소득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 소득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증가시켰다’가 56.3%로 가장 높았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43.7%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59.1%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증가시켰다’가 56.6%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증가시켰다’가 58.6%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57.9%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의 영향으로 투자 대상 기업이 증가한 개수는 평균 1.55개, 증가한 비율은 평균 73.09%로 나타남

[부그림 Ⅲ-21] 소득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base 전체, n=135, 단위: %)



<부표 III-26> 소득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소시켰다	증가시켰다	
전 체	(135)	43.7	0.0	56.3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59.1	0.0	40.9
	근로소득자	(99)	43.4	0.0	56.6
	그 외	(14)	21.4	0.0	78.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41.4	0.0	58.6
	없음	(19)	57.9	0.0	42.1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50.0	0.0	50.0
	직간접 투자	(22)	36.4	0.0	63.6
	간접투자	(57)	40.4	0.0	59.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5)	40.0	0.0	60.0
	도움 안됨	(30)	56.7	0.0	4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6)	31.3	0.0	68.8
	적당	(50)	58.0	0.0	42.0
	부족함	(69)	36.2	0.0	63.8

<부표 Ⅲ-27> 소득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수의 미친 영향_개, 비율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증가 개수	증가 비율	
전 체	(76)	1.55	73.09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9)	1.22	60.56
	근로소득자	(56)	1.66	76.07
	그 외	(11)	1.27	68.18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68)	1.57	70.96
	없음	(8)	1.38	91.25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28)	1.29	76.96
	직간접 투자	(14)	1.57	70.71
	간접투자	(34)	1.76	70.88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63)	1.43	75.00
	도움 안됨	(13)	2.15	63.85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1)	1.64	81.82
	적당	(21)	1.29	73.81
	부족함	(44)	1.66	7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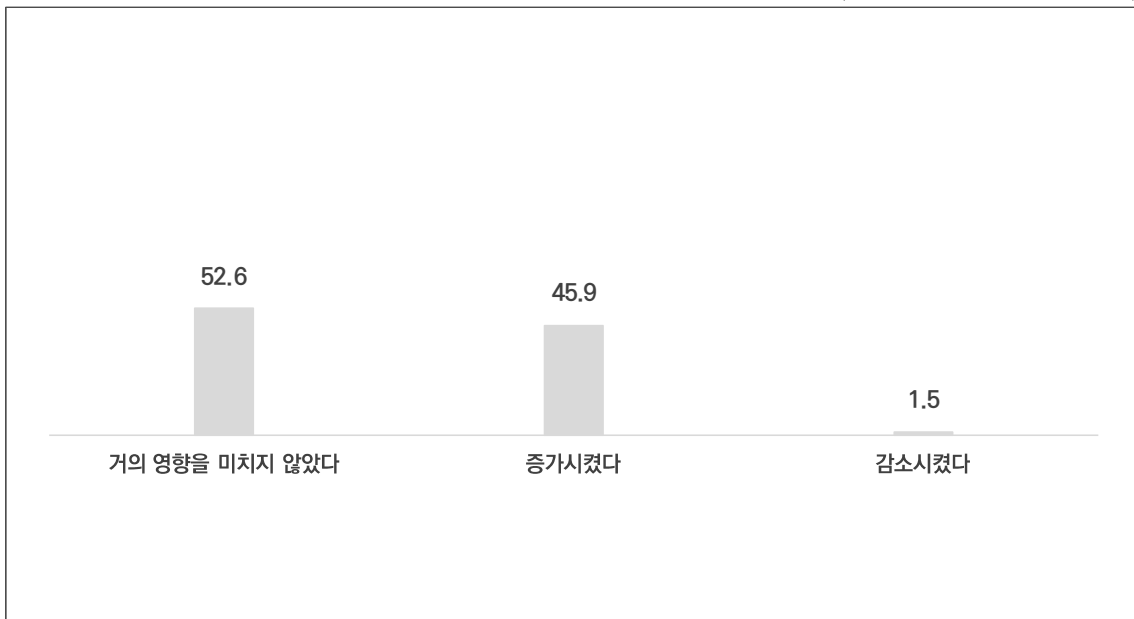
22)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52.6%로 가장 높았고, ‘증가시켰다’가 45.9%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증가시켰다’가 46.5%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증가시켰다’가 47.4%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63.2%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의 영향으로 투자 기간이 감소한 기간은 평균 1개월, 감소한 비율은 평균 52.50%로 나타났고, 증가한 기간은 평균 9.31개월, 증가한 비율은 평균 70.40%로 나타남

[부그림 III-22]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base 전체, n=135, 단위: %)



<부표 III-28>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전 체	(135)	52.6	45.9	1.5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54.5	36.4	9.1
	근로소득자	(99)	53.5	46.5	0.0
	그 외	(14)	42.9	57.1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50.9	47.4	1.7
	없음	(19)	63.2	36.8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58.9	37.5	3.6
	직간접 투자	(22)	36.4	63.6	0.0
	간접투자	(57)	52.6	47.4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5)	49.5	48.6	1.9
	도움 안됨	(30)	63.3	36.7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6)	50.0	43.8	6.3
	적당	(50)	68.0	32.0	0.0
	부족함	(69)	42.0	56.5	1.4

<부표 Ⅲ-29>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_개, 비율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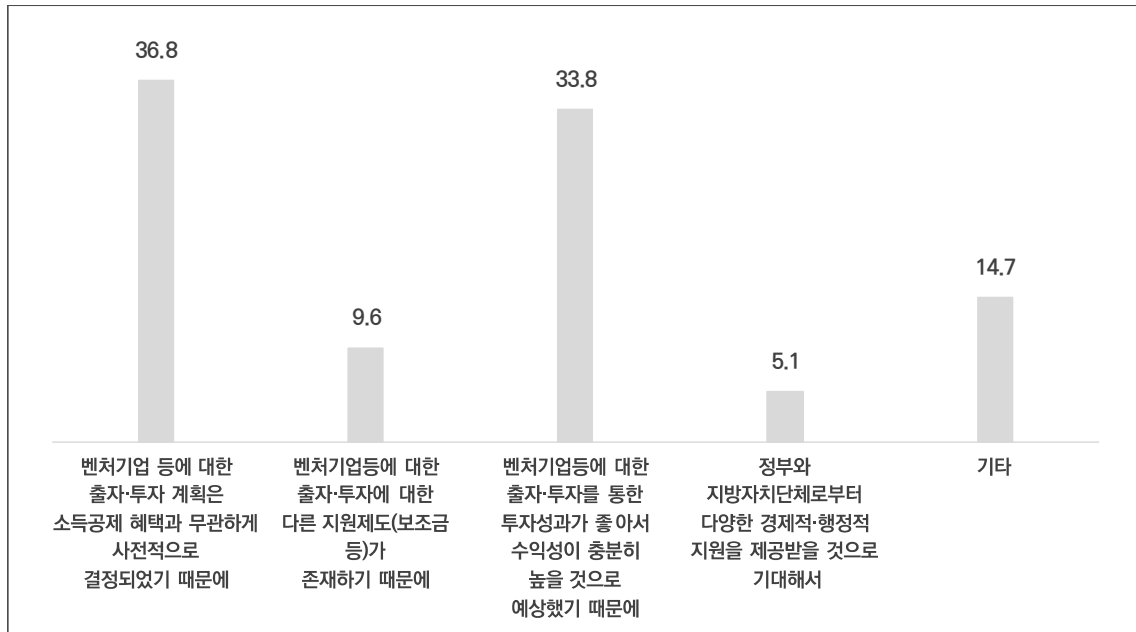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감소		사례수	증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 체	(2)	1.00	52.50	(62)	9.31	70.40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	1.00	52.50	(8)	8.50	73.13
	근로소득자	(0)	-	-	(46)	9.35	72.39
	그 외	(0)	-	-	(8)	9.88	56.2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2)	1.00	52.50	(55)	9.47	67.55
	없음	(0)	-	-	(7)	8.00	92.86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2)	1.00	52.50	(21)	8.81	74.76
	직간접 투자	(0)	-	-	(14)	9.00	62.14
	간접투자	(0)	-	-	(27)	9.85	71.3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2)	1.00	52.50	(51)	9.67	71.86
	도움 안됨	(0)	-	-	(11)	7.64	63.64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	1.00	100.00	(7)	6.71	64.29
	적당	(0)	-	-	(16)	10.00	71.88
	부족함	(2)	1.00	5.00	(39)	9.49	70.90

23) 소득공제 반영 후 투자계획 변동이 없었던 이유

- 소득공제 반영 후 투자계획 변동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계획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36.8%로 가장 높았고, ‘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투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좋아서 수익성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가 33.8%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계획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40.9%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계획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38.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계획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33.6%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계획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55.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23] 소득공제 반영 후 투자계획 변동이 없었던 이유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30> 소득공제 반영 후 투자계획 변동이 없었던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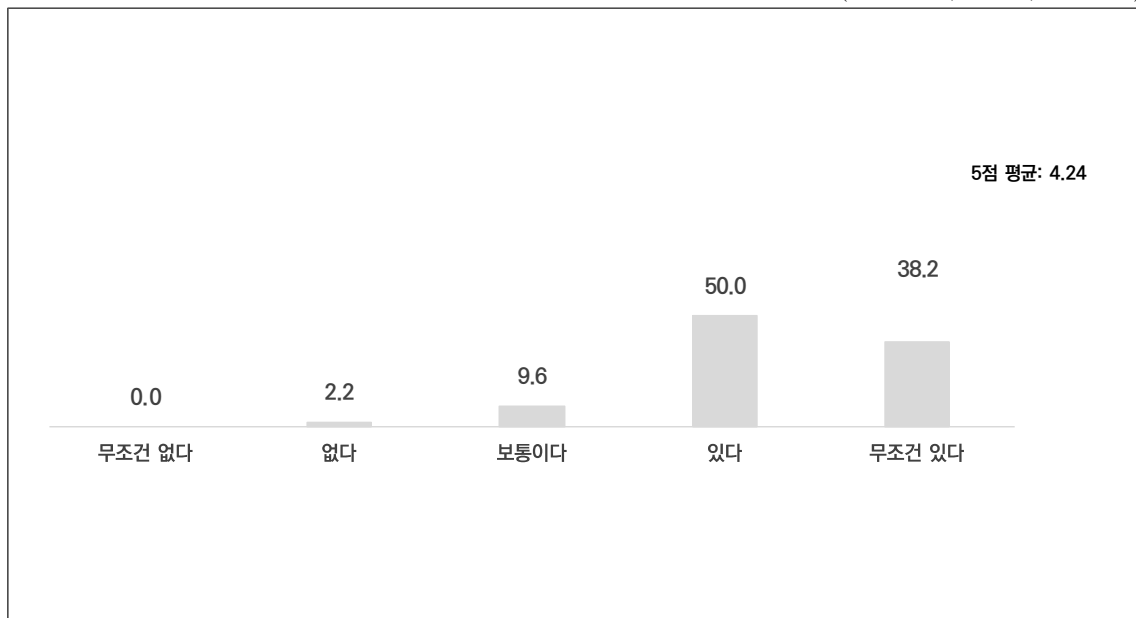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계획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벤처기업등에 대출자· 투자에 대한 다른지원 제도(보조금등) 가존재하기 때문에	벤처 기업등에 대한 출자·투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좋아서 수익성 이충분히 높을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기타	
전 체	(136)	36.8	9.6	33.8	5.1	14.7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40.9	13.6	31.8	0.0	13.6
	근로소득자	(100)	38.0	8.0	31.0	7.0	16.0
	그 외	(14)	21.4	14.3	57.1	0.0	7.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33.6	11.2	32.8	6.0	16.4
	없음	(20)	55.0	0.0	40.0	0.0	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39.3	12.5	21.4	7.1	19.6
	직간접 투자	(22)	31.8	4.5	50.0	0.0	13.6
	간접투자	(58)	36.2	8.6	39.7	5.2	10.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37.7	8.5	34.9	3.8	15.1
	도움 안됨	(30)	33.3	13.3	30.0	10.0	1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52.9	5.9	35.3	0.0	5.9
	적당	(50)	34.0	12.0	34.0	2.0	18.0
	부족함	(69)	34.8	8.7	33.3	8.7	14.5

24)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벤처투자 의향

- 소득공제가 향후 3년 내 벤처투자 의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4.24점으로 나타남.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3.95점, ‘근로소득자’는 4.32점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는 4.30점, ‘없음’ 응답자는 3.90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III-24]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벤처투자 의향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31>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벤처투자 의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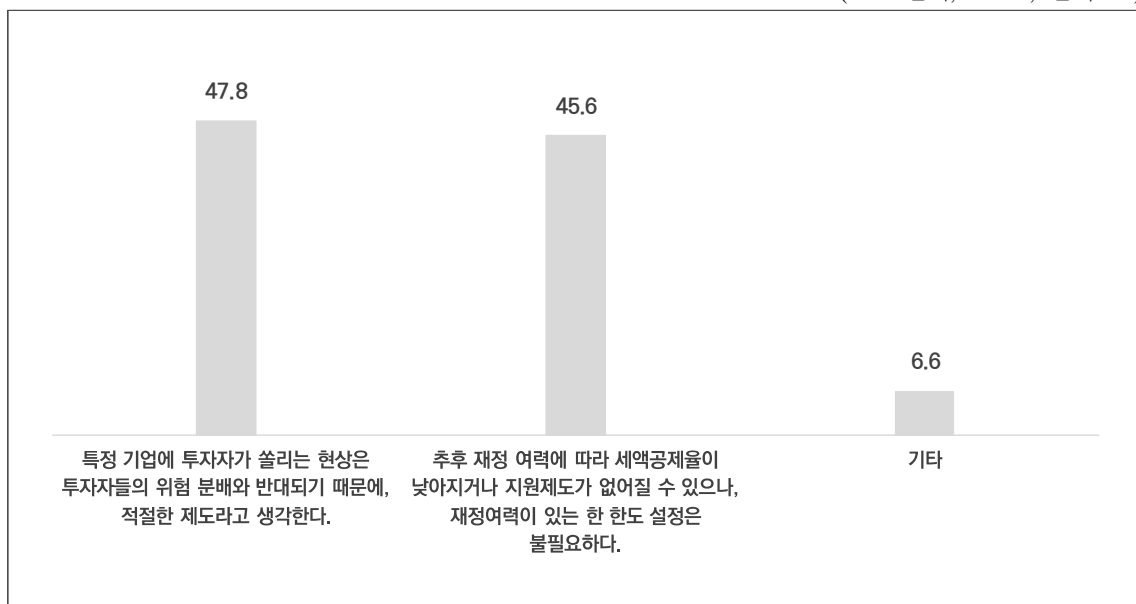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무조건 없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무조건 있다	5점 평균
전 체		(136)	0.0	2.2	9.6	50.0	38.2	4.24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0.0	9.1	9.1	59.1	22.7	3.95
	근로소득자	(100)	0.0	1.0	9.0	47.0	43.0	4.32
	그 외	(14)	0.0	0.0	14.3	57.1	28.6	4.1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0.0	0.9	8.6	50.0	40.5	4.30
	없음	(20)	0.0	10.0	15.0	50.0	25.0	3.9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0.0	3.6	5.4	55.4	35.7	4.23
	직간접 투자	(22)	0.0	4.5	13.6	40.9	40.9	4.18
	간접투자	(58)	0.0	0.0	12.1	48.3	39.7	4.28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0.0	1.9	5.7	50.9	41.5	4.32
	도움 안됨	(30)	0.0	3.3	23.3	46.7	26.7	3.9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0.0	0.0	0.0	64.7	35.3	4.35
	적당	(50)	0.0	2.0	14.0	54.0	30.0	4.12
	부족함	(69)	0.0	2.9	8.7	43.5	44.9	4.30

25)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알아본 결과,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47.8%로 가장 높았고, ‘추후 재정 여력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지원제도가 없어질 수 있으나, 재정여력이 있는 한 한도 설정은 불필요하다’가 45.6%로 그 뒤를 이었음.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추후 재정 여력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지원제도가 없어질 수 있으나, 재정여력이 있는 한 한도 설정은 불필요하다’가 51.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추후 재정 여력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지원제도가 없어질 수 있으나, 재정여력이 있는 한 한도 설정은 불필요하다’가 49.1%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70.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I-25]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32>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제도라고 생각한다.	추후 재정 여력에 따라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지원제도가 없어질수있으나, 재정여력이있는한 한도 설정은 불필요하다.	기타	
전체	(136)	47.8	45.6	6.6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54.5	36.4	9.1
	근로소득자	(100)	42.0	51.0	7.0
	그 외	(14)	78.6	21.4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44.0	49.1	6.9
	없음	(20)	70.0	25.0	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51.8	42.9	5.4
	직간접 투자	(22)	54.5	40.9	4.5
	간접투자	(58)	41.4	50.0	8.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50.0	43.4	6.6
	도움 안됨	(30)	40.0	53.3	6.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52.9	47.1	0.0
	적당	(50)	56.0	42.0	2.0
	부족함	(69)	40.6	47.8	11.6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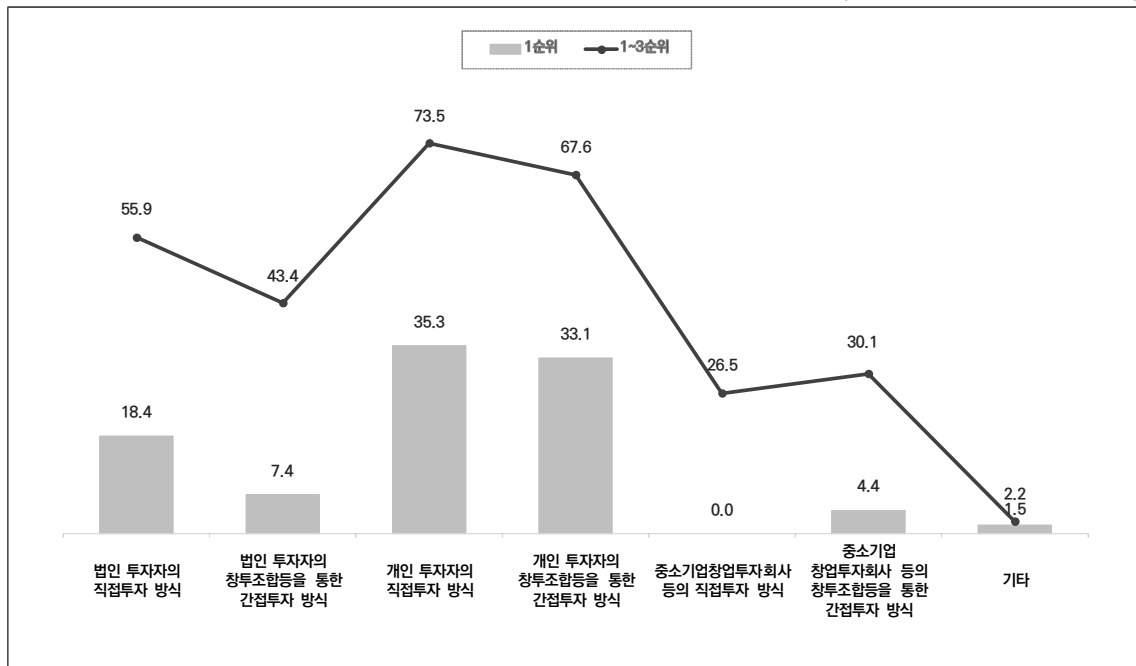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1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이 35.3%로 가장 높았고,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33.1%로 그 뒤를 이었음.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1+2+3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이 73.5%로 가장 높았고,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67.6%로 그 뒤를 이었음.

[부그림 III-26]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33>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간접투자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방식	
전 체	(136)	18.4	7.4	35.3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27.3	0.0	36.4
	근로소득자	(100)	16.0	10.0	36.0
	그 외	(14)	21.4	0.0	28.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17.2	8.6	33.6
	없음	(20)	25.0	0.0	4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28.6	0.0	55.4
	직간접 투자	(22)	9.1	22.7	27.3
	간접투자	(58)	12.1	8.6	19.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19.8	7.5	35.8
	도움 안됨	(30)	13.3	6.7	3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29.4	11.8	11.8
	적당	(50)	24.0	2.0	32.0
	부족함	(69)	11.6	10.1	43.5

<부표 III-33>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등의 직접투자방식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간접투자방식	기타	
전 체	(136)	33.1	0.0	4.4	1.5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31.8	0.0	0.0	4.5
	근로소득자	(100)	33.0	0.0	4.0	1.0
	그 외	(14)	35.7	0.0	14.3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34.5	0.0	4.3	1.7
	없음	(20)	25.0	0.0	5.0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16.1	0.0	0.0	0.0
	직간접 투자	(22)	27.3	0.0	4.5	9.1
	간접투자	(58)	51.7	0.0	8.6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32.1	0.0	3.8	0.9
	도움 안됨	(30)	36.7	0.0	6.7	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41.2	0.0	5.9	0.0
	적당	(50)	36.0	0.0	4.0	2.0
	부족함	(69)	29.0	0.0	4.3	1.4

<부표 III-34>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1+2+3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간접투자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방식	
전 체	(136)	55.9	43.4	73.5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77.3	27.3	77.3
	근로소득자	(100)	51.0	47.0	73.0
	그 외	(14)	57.1	42.9	71.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52.6	43.1	72.4
	없음	(20)	75.0	45.0	8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73.2	28.6	89.3
	직간접 투자	(22)	54.5	40.9	81.8
	간접투자	(58)	39.7	58.6	55.2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56.6	45.3	75.5
	도움 안됨	(30)	53.3	36.7	66.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64.7	47.1	70.6
	적당	(50)	62.0	46.0	68.0
	부족함	(69)	49.3	40.6	78.3

<부표 III-34>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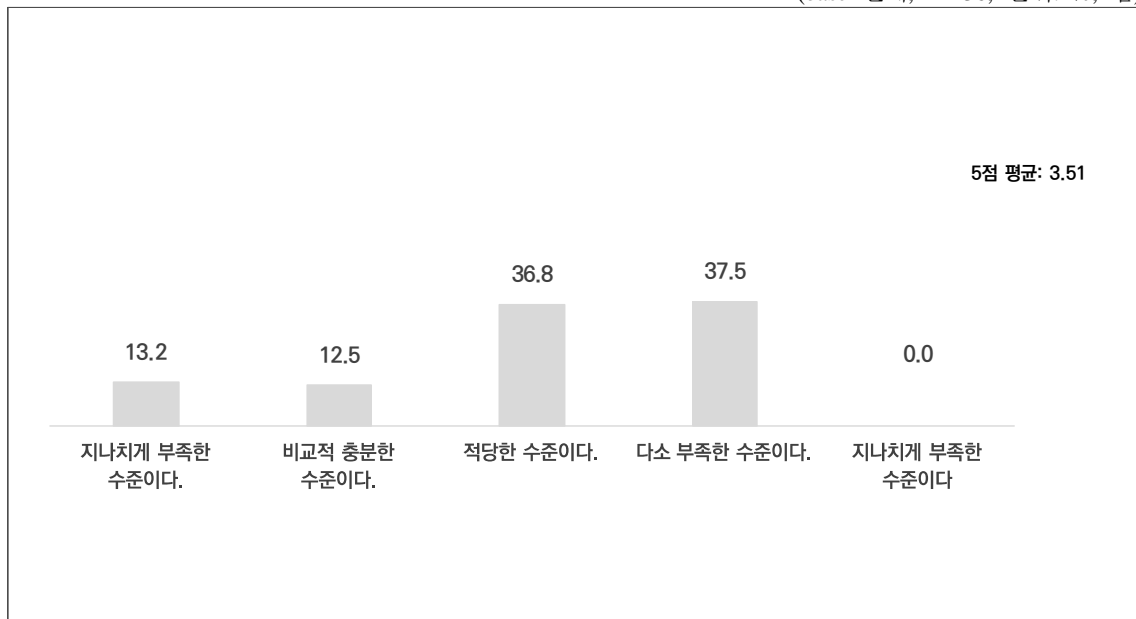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등의 직접투자방식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기타
전 체		(136)	67.6	26.5	30.1	2.2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68.2	27.3	18.2	4.5
	근로소득자	(100)	68.0	26.0	32.0	2.0
	그 외	(14)	64.3	28.6	35.7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69.0	27.6	31.9	2.6
	없음	(20)	60.0	20.0	20.0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60.7	30.4	17.9	0.0
	직간접 투자	(22)	63.6	9.1	36.4	13.6
	간접투자	(58)	75.9	29.3	39.7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66.0	26.4	28.3	1.9
	도움 안됨	(30)	73.3	26.7	36.7	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41.2	41.2	35.3	0.0
	적당	(50)	68.0	20.0	34.0	2.0
	부족함	(69)	73.9	27.5	26.1	2.9

2) 소득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 소득공제 현행 조세지원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3.51점으로 나타남.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3.55점, ‘근로소득자’는 3.53점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는 3.54점, ‘없음’ 응답자는 3.35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Ⅲ-27]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base 전체, n=136, 단위: %, 점)



<부표 III-35>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 여부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5점 평균	
전 체	(136)	13.2	12.5	36.8	37.5	0.0	3.51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9.1	4.5	45.5	40.9	0.0	3.55
	근로소득자	(100)	15.0	14.0	34.0	37.0	0.0	3.53
	그 외	(14)	7.1	14.3	42.9	35.7	0.0	3.3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14.7	12.1	36.2	37.1	0.0	3.54
	없음	(20)	5.0	15.0	40.0	40.0	0.0	3.35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14.3	8.9	37.5	39.3	0.0	3.59
	직간접 투자	(22)	22.7	9.1	31.8	36.4	0.0	3.73
	간접투자	(58)	8.6	17.2	37.9	36.2	0.0	3.3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11.3	14.2	36.8	37.7	0.0	3.46
	도움 안됨	(30)	20.0	6.7	36.7	36.7	0.0	3.7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0.0	100.0	0.0	0.0	0.0	2.00
	적당	(50)	0.0	0.0	100.0	0.0	0.0	3.00
	부족함	(69)	26.1	0.0	0.0	73.9	0.0	4.26

3) 소득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확대 규모

□ 소득공제가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확대 규모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축소 규모는 평균 10.00%, 확대 규모는 평균 88.84%로 나타남.

<부표 III-36> 소득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확대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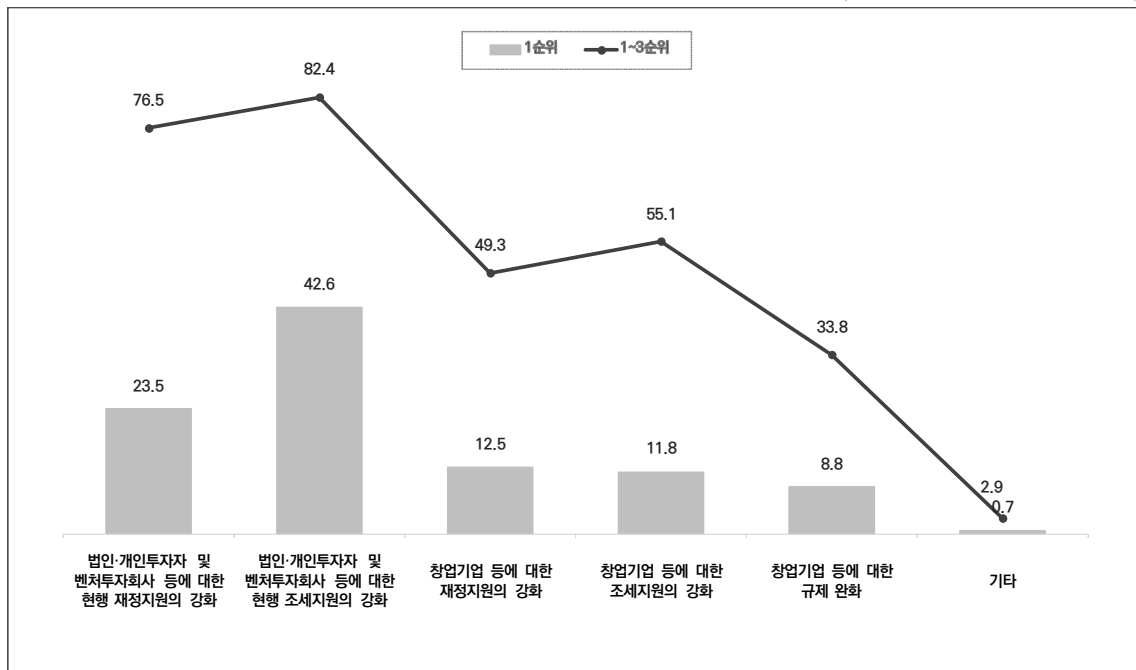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축소 규모	사례수	확대 규모
전 체		(17)	10.00	(69)	88.84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1)	0.00	(11)	80.00
	근로소득자	(14)	10.71	(52)	89.42
	그 외	(2)	10.00	(6)	100.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4)	10.71	(60)	88.00
	없음	(3)	6.67	(9)	94.44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	0.00	(30)	86.00
	직간접 투자	(2)	50.00	(13)	88.46
	간접투자	(10)	7.00	(26)	92.3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5)	9.33	(52)	87.12
	도움 안됨	(2)	15.00	(17)	94.12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10.00	(0)	-
	적당	(0)	-	(0)	-
	부족함	(0)	-	(69)	88.84

4)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1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가 42.6%로 가장 높았고,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재정지원의 강화’가 23.5%로 그 뒤를 이었음.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1+2+3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가 82.4%로 가장 높았고,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재정지원의 강화’가 76.5%로 그 뒤를 이었음.

[부그림 III-28]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

(base 전체, n=136, 단위: %)



<부표 III-37>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대한현행 재정지원의 강화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대한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화
전 체		(136)	23.5	42.6	12.5
소득세법상 지 위	개인사업자	(22)	18.2	31.8	18.2
	근로소득자	(100)	25.0	42.0	12.0
	그 외	(14)	21.4	64.3	7.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22.4	45.7	12.9
	없음	(20)	30.0	25.0	1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23.2	41.1	16.1
	직간접 투자	(22)	22.7	45.5	13.6
	간접투자	(58)	24.1	43.1	8.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25.5	41.5	14.2
	도움 안됨	(30)	16.7	46.7	6.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35.3	29.4	11.8
	적당	(50)	28.0	34.0	16.0
	부족함	(69)	17.4	52.2	10.1

<부표 III-37>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규제완화	기타
전 체		(136)	11.8	8.8	0.7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18.2	13.6	0.0
	근로소득자	(100)	12.0	8.0	1.0
	그 외	(14)	0.0	7.1	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11.2	6.9	0.9
	없음	(20)	15.0	20.0	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8.9	10.7	0.0
	직간접 투자	(22)	13.6	4.5	0.0
	간접투자	(58)	13.8	8.6	1.7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8.5	9.4	0.9
	도움 안됨	(30)	23.3	6.7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11.8	5.9	5.9
	적당	(50)	16.0	6.0	0.0
	부족함	(69)	8.7	11.6	0.0

<부표 III-38>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1+2+3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대한현행 재정지원의 강화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대한현행 조세지원의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강화
전 체		(136)	76.5	82.4	49.3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86.4	77.3	31.8
	근로소득자	(100)	76.0	83.0	53.0
	그 외	(14)	64.3	85.7	50.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75.9	81.9	47.4
	없음	(20)	80.0	85.0	60.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69.6	85.7	53.6
	직간접 투자	(22)	81.8	81.8	40.9
	간접투자	(58)	81.0	79.3	48.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77.4	85.8	48.1
	도움 안됨	(30)	73.3	70.0	5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82.4	58.8	70.6
	적당	(50)	80.0	78.0	42.0
	부족함	(69)	72.5	91.3	49.3

<부표 III-38>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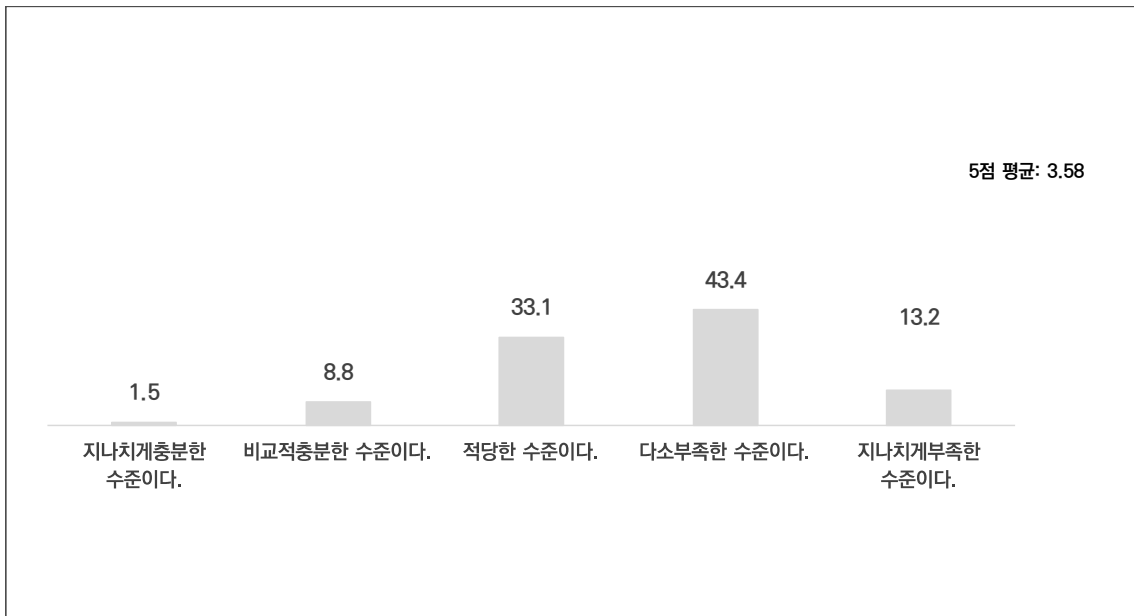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규제완화	기타	
전 체	(136)	55.1	33.8	2.9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63.6	40.9	0.0
	근로소득자	(100)	52.0	33.0	3.0
	그 외	(14)	64.3	28.6	7.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59.5	32.8	2.6
	없음	(20)	30.0	40.0	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57.1	33.9	0.0
	직간접 투자	(22)	54.5	31.8	9.1
	간접투자	(58)	53.4	34.5	3.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51.9	33.0	3.8
	도움 안됨	(30)	66.7	36.7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41.2	29.4	17.6
	적당	(50)	58.0	40.0	2.0
	부족함	(69)	56.5	30.4	0.0

5)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적절성 의견

-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적절성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전체 평균 3.58점으로 나타남.
 -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는 3.77점, ‘근로소득자’는 3.50점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 수혜 여부) ‘있음’ 응답자는 3.64점, ‘없음’ 응답자는 3.25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III-29]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적절성 의견

(base 전체, n=136, 단위: %, 점)



<부표 III-39>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적절성 의견

(단위: 명, 점)

구 분	사례수	지나치게 충분한 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5점 평균	
전 체	(136)	1.5	8.8	33.1	43.4	13.2	3.58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0.0	0.0	36.4	50.0	13.6	3.77
	근로소득자	(100)	2.0	12.0	34.0	38.0	14.0	3.50
	그 외	(14)	0.0	0.0	21.4	71.4	7.1	3.8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0.9	8.6	31.9	43.1	15.5	3.64
	없음	(20)	5.0	10.0	40.0	45.0	0.0	3.25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0.0	7.1	35.7	42.9	14.3	3.64
	직간접 투자	(22)	4.5	0.0	40.9	31.8	22.7	3.68
	간접투자	(58)	1.7	13.8	27.6	48.3	8.6	3.48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1.9	10.4	32.1	46.2	9.4	3.51
	도움 안됨	(30)	0.0	3.3	36.7	33.3	26.7	3.8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5.9	58.8	17.6	17.6	0.0	2.47
	적당	(50)	2.0	4.0	68.0	26.0	0.0	3.18
	부족함	(69)	0.0	0.0	11.6	62.3	26.1	4.14

6)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부표 III-40>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투자조합 출자공제_금액	투자조합 출자공제_공제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전 체		(136)	5402.85	2443.35	10139.85	468438.76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8200.00	3726.18	9870.27	7339.23
	근로소득자	(100)	4893.88	2319.30	10419.93	634828.19
	그 외	(14)	4642.86	1313.57	8562.86	4527.86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5173.17	2398.24	10734.78	548451.91
	없음	(20)	6735.00	2705.00	6689.20	4362.55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5269.91	2310.86	8185.20	7200.70
	직간접 투자	(22)	8459.09	3015.45	13781.50	9536.32
	간접투자	(58)	4371.95	2354.28	10645.78	1087838.52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5108.38	2385.62	9924.98	599086.92
	도움 안됨	(30)	6443.33	2647.33	10899.03	6815.3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2553.76	1820.53	9977.65	3695518.53
	적당	(50)	4455.98	1679.06	8073.58	5056.14
	부족함	(69)	6790.94	3150.64	11677.10	9145.65

<부표 III-40>의 계속

(단위: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감면 세액(합계)	총부담세액
전 체		(136)	1933.02	612.49	1130.72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3534.95	683.77	1550.86
	근로소득자	(100)	1669.66	593.98	1146.29
	그 외	(14)	1296.86	632.71	359.29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2040.80	665.02	1178.69
	없음	(20)	1307.90	307.85	852.5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2115.45	480.77	801.70
	직간접 투자	(22)	2431.68	642.55	1779.09
	간접투자	(58)	1567.74	728.28	1202.47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1919.74	577.04	1119.70
	도움 안됨	(30)	1979.97	737.77	1169.6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1857.94	346.06	1688.65
	적당	(50)	1202.38	564.80	640.34
	부족함	(69)	2480.97	712.70	1348.61

7) 경영현황

<부표 III-41> 경영현황

(단위: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매출액	자산총계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전 체	(136)	68371.64	80926.07	41590.01	6639.72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2)	38221.86	47504.77	27263.45	6026.23
	근로소득자	(100)	79905.62	96360.83	48946.75	7276.79
	그 외	(14)	33364.29	23197.00	11555.00	3053.29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수혜여부	있음	(116)	77451.36	80117.90	40247.66	8353.45
	없음	(20)	15709.25	85613.50	49375.65	-3299.90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방식	직접투자	(56)	120478.04	110413.66	37331.38	15411.48
	직간접 투자	(22)	25940.91	89772.73	73818.18	8227.27
	간접투자	(58)	34156.43	49099.67	33477.31	-2431.74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식	도움 됨	(106)	80382.48	90168.24	43048.68	7250.20
	도움 안됨	(30)	25933.33	48270.43	36436.03	4482.7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17)	66770.06	90466.65	53617.12	-1479.41
	적당	(50)	29266.64	54046.22	29711.04	4032.50
	부족함	(69)	97103.19	98053.65	47234.75	10529.38

부록 4.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에 대한 결과보고서

2025. 7.

Research  Research

목 차

I. 조사개요	296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96
2. 조사 설계	297
3. 조사 내용	298
4. 자료 처리	299
5. 응답자 특성	299
II. 조사 결과	300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인식 및 활용	300
1) 최근 직접·간접 벤처투자 연도	300
2) 개업 이후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수혜 여부	302
3)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여부	304
4)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를 미인지 이유	306
5)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시점	308
6)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경로(중복응답)	310
7) 과세특례를 알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312
8) 최근 출자 방식	315
9) 간접투자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317
10)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319
11)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	321
12) 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323
13)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325
14) 간접투자 방식시 구체적 출자방법	327
15) 투자성고가 더 좋은 방식	329
16) 출자금액 규모	331
1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333
18)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도움되지 않는 이유	335
19)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영향력	337

20)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339
21) 창투조합·벤처기업 등	341
22) 세액공제로 인한 출자 및 투자 영향	343
23) 세액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345
24)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348
25) 세액공제가 당초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351
26) 세액공제가 당초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352
27)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투자 의향	353
28)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355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선방향	357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357
2) 세액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362
3) 세액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확대 규모	364
4)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	365
5) 법인세 신고 내용	370

I.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평가의 일부로서 동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동 제도의 목적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개인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금혜택(「조특법」 제16조 및 제13조의2), 이들 투자자의 간접투자 매개체인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금혜택(「조특법」 제13조)을 줌으로써 벤처기업 등에 투자 확대를 유인함
-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동 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기한 종료 전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 그동안의 운영성과 평가,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 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당 제도의 운영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2015년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한 경험이 있는 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량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부표 IV-1> 조사 설계

구 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대상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한 경험이 있는 법인투자자
표본수	15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2025년 5월 26일 ~ 6월 13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3.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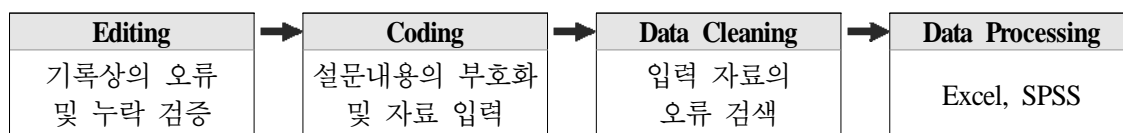
□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표 IV-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기업규모 • 주식시장 상장 유형 • 공공기관 여부 • 상시근로자 수 • 산업 분류 • 평균 매출액 • 최근 직접·간접 벤처투자 연도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인식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업 이후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수혜 여부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여부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미인지 이유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시점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경로 • 과세특례를 알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 최근 출자 방식 • 간접투자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 •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지 않은 이유 •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 • 간접투자 방식시 구체적 출자방법 • 투자성과가 더 좋은 방식 • 출자금액 규모 •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도움되지 않는 이유 •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영향력 • 세액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 출자·회수한 금액, 출자대상의 개수 등의 현황 • 세액공제로 인한 출자 및 투자 영향 • 세액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 세액공제가 당초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 향후 3년 이내 투자 의향 •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 세액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 세액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 규모 • 세액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확대 규모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 • 법인세 신고 현황

4.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음



5.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부표 IV-3〉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150	1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42.7%
	중견기업	70	46.7%
	대기업	16	10.7%
과세특례 수혜 여부	있음	18	12.0%
	없음	132	88.0%
최근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56.0%
	직·간접 투자	20	13.3%
	간접투자	46	30.7%
과세특례 인식	도움 됨	114	76.0%
	도움 되지 않음	36	24.0%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충분함	9	6.0%
	적당함	104	69.3%
	부족함	37	24.7%

II.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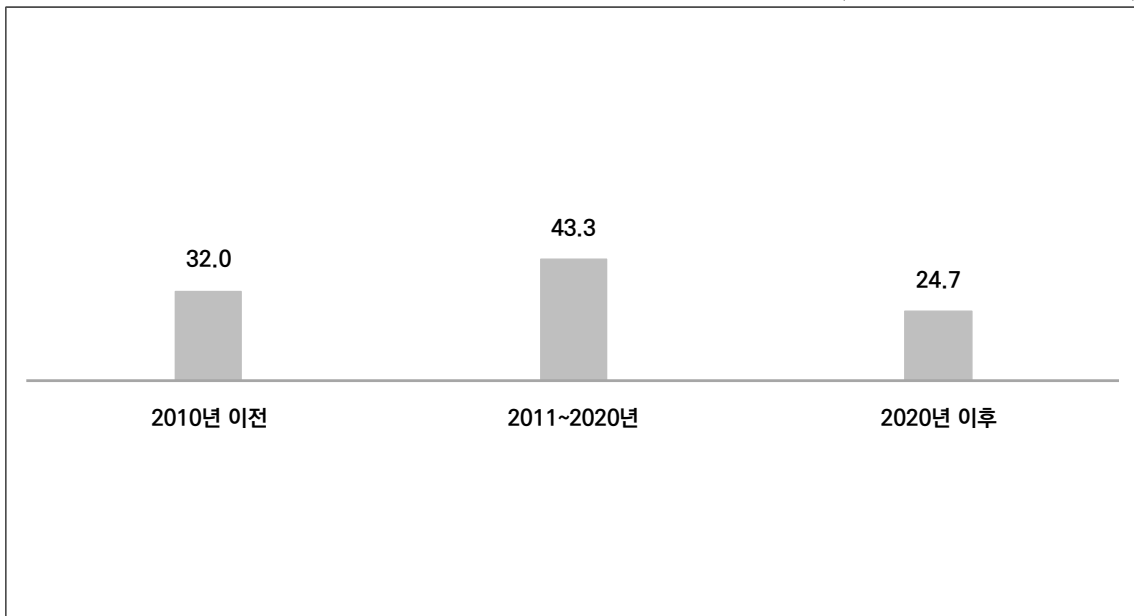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인식 및 활용

1) 최근 직접·간접 벤처투자 연도

- 최근 직접·간접 벤처투자 연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11~2020년’이 43.3%로 가장 높았고, ‘2010년 이전’이 32.0%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2011~2020년’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2011~2020년’이 42.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2020년 이후’가 50.0%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2020년 이후’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2011~2020년’이 44.7%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 최근 직접·간접 벤처투자 연도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4> 최근 직접·간접 벤처투자 연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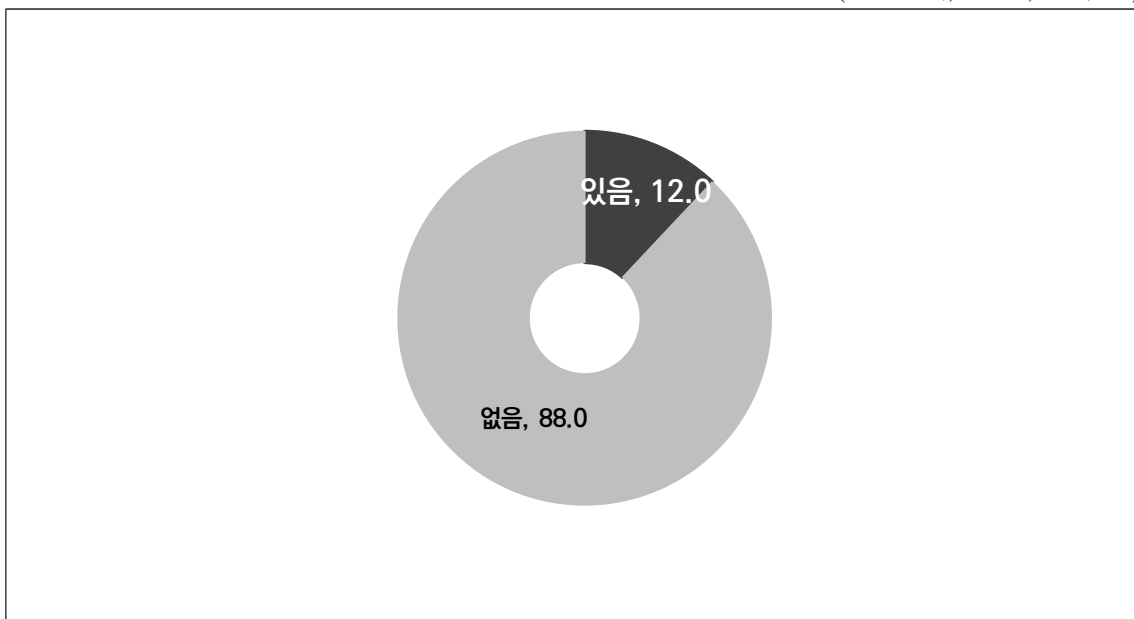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2010년 이전	2011~2020년	2020년 이후
전 체		(150)	32.0	43.3	24.7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32.8	45.3	21.9
	중견기업	(70)	35.7	42.9	21.4
	대기업	(16)	12.5	37.5	5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11.1	33.3	55.6
	없음	(132)	34.8	44.7	20.5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32.1	48.8	19.0
	직간접 투자	(20)	35.0	40.0	25.0
	간접투자	(46)	30.4	34.8	34.8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30.7	43.9	25.4
	도움 안됨	(36)	36.1	41.7	22.2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11.1	66.7	22.2
	적당	(104)	31.7	40.4	27.9
	부족함	(37)	37.8	45.9	16.2

2) 개업 이후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수혜 여부

- 개업 이후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수혜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받은 적이 없음’이 88.0%로 가장 높았고, ‘받은 적이 있음’이 12.0%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받은 적이 없음’이 92.2%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받은 적이 없음’이 85.7%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받은 적이 없음’이 81.3%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받은 적이 있음’이 100.0%로 유일하게 나타났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받은 적이 없음’이 100.0%로 유일하게 나타났음.

[부그림 IV-2] 개업 이후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수혜 여부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5> 개업 이후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수혜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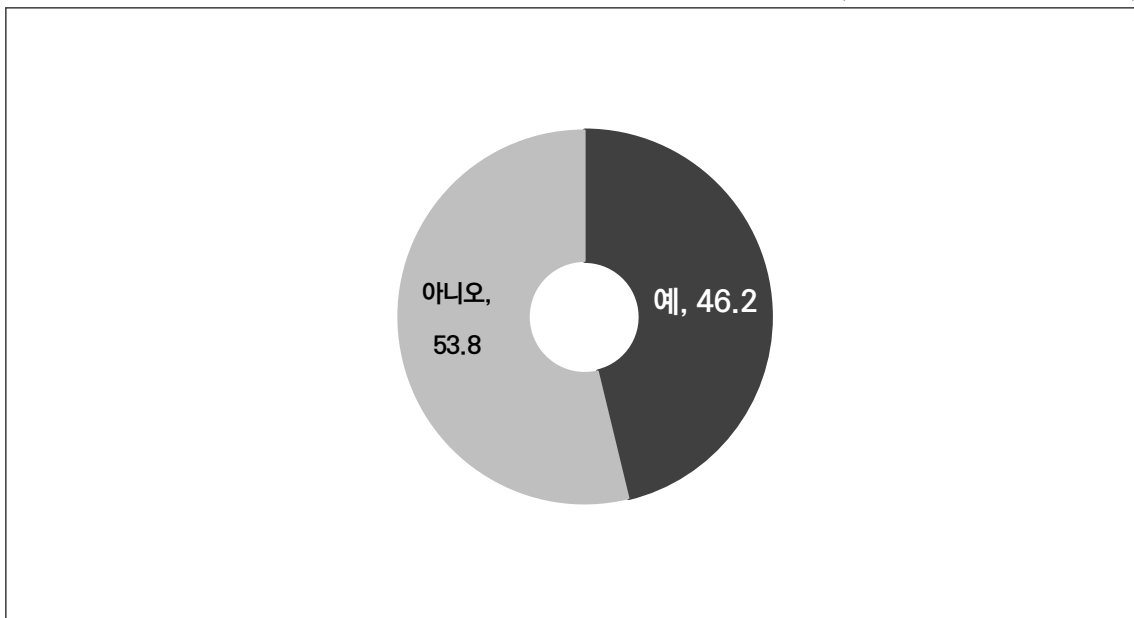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받은 적이 있음	받은 적이 없음
전 체		(150)	12.0	88.0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7.8	92.2
	중견기업	(70)	14.3	85.7
	대기업	(16)	18.8	81.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100.0	0.0
	없음	(132)	0.0	100.0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4.8	95.2
	직간접 투자	(20)	5.0	95.0
	간접투자	(46)	28.3	71.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14.0	86.0
	도움 안됨	(36)	5.6	94.4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33.3	66.7
	적당	(104)	9.6	90.4
	부족함	(37)	13.5	86.5

3)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여부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니오’가 53.8%로 가장 높았고, ‘예’가 46.2%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아니오’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아니오’가 56.7%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아니오’가 53.8%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은 적이 없지 않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아니오’가 53.8%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3]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여부

(base 전체, n=132, 단위: %)



<부표 IV-6>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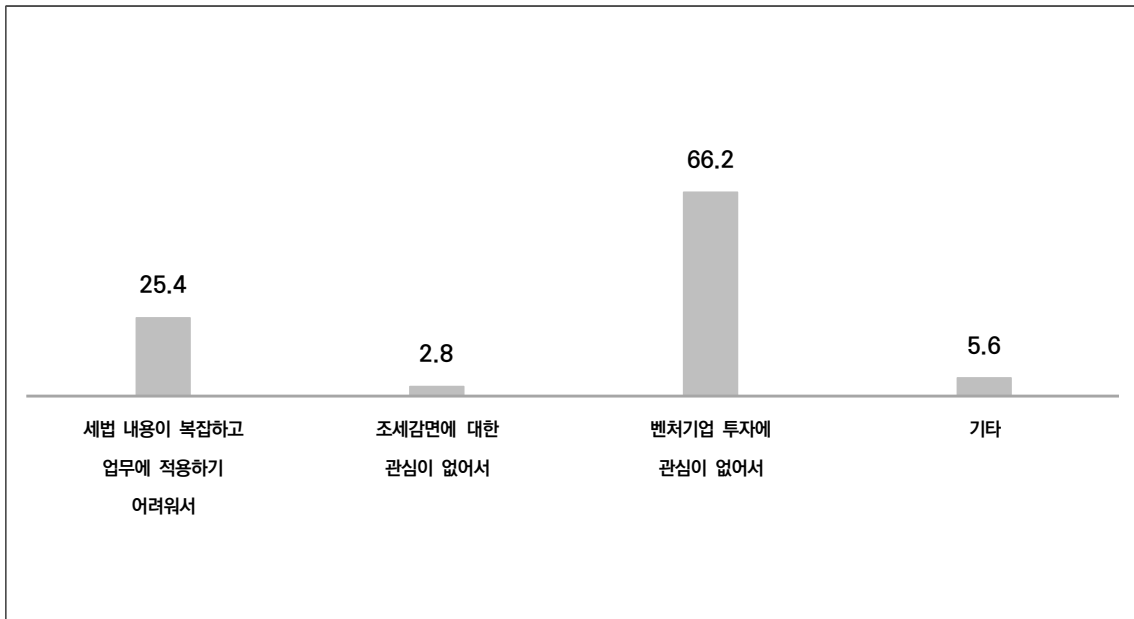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32)	46.2	53.8
기업규모	중소기업 (59)	49.2	50.8
	중견기업 (60)	43.3	56.7
	대기업 (13)	46.2	53.8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0)	-	-
	없음 (132)	46.2	53.8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0)	48.8	51.3
	직간접 투자 (19)	21.1	78.9
	간접투자 (33)	54.5	45.5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98)	45.9	54.1
	도움 안됨 (34)	47.1	52.9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6)	50.0	50.0
	적당 (94)	45.7	54.3
	부족함 (32)	46.9	53.1

4)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를 미인지 이유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를 미인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가 66.2%로 가장 높았고,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워’가 25.4%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가 67.6%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가 57.19%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과세특례를 미인지한 경우가 없었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가 66.2%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4]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를 미인지 이유

(base 전체, n=71, 단위: %)



<부표 IV-7>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를 미인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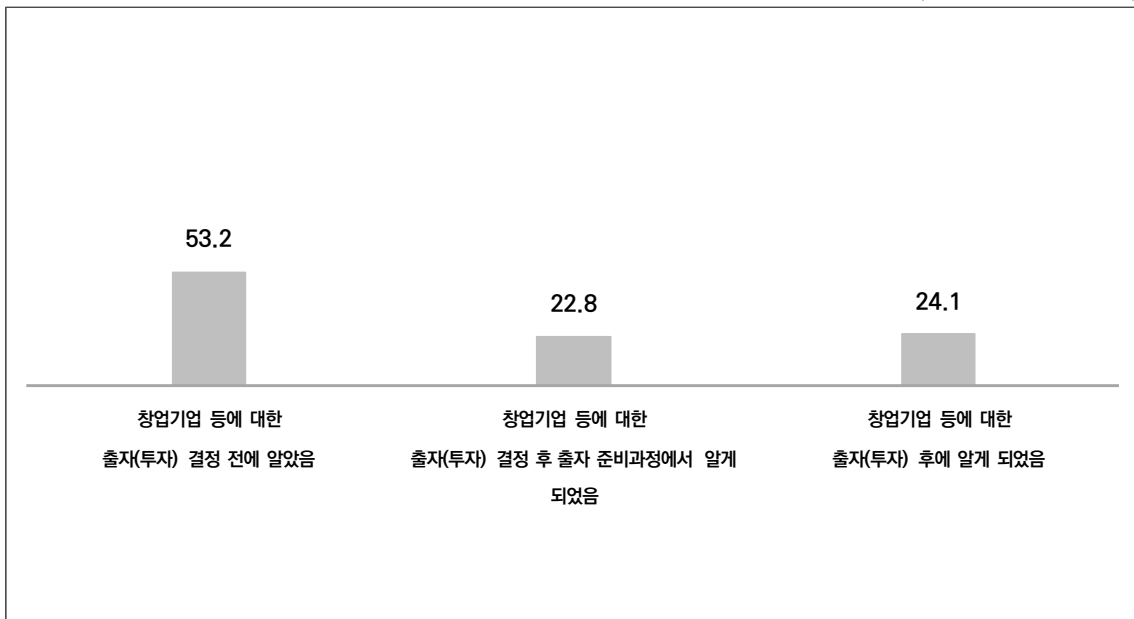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조세감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기타	
전 체	(71)	25.4	2.8	66.2	5.6	
기업규모	중소기업	(30)	23.3	3.3	66.7	6.7
	중견기업	(34)	23.5	2.9	67.6	5.9
	대기업	(7)	42.9	0.0	57.1	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0)	-	-	-	-
	없음	(71)	25.4	2.8	66.2	5.6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41)	17.1	2.4	70.7	9.8
	직간접 투자	(15)	20.0	6.7	73.3	0.0
	간접투자	(15)	53.3	0.0	46.7	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53)	28.3	1.9	64.2	5.7
	도움 안됨	(18)	16.7	5.6	72.2	5.6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3)	66.7	0.0	33.3	0.0
	적당	(51)	29.4	3.9	58.8	7.8
	부족함	(17)	5.9	0.0	94.1	0.0

5)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시점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 시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53.2%로 가장 높았고,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후에 알게 되었음’이 24.1%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58.3%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66.7%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38.9%로 가장 높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 57.4%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5]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시점

(base 전체, n=79, %)



<부표 IV-8>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시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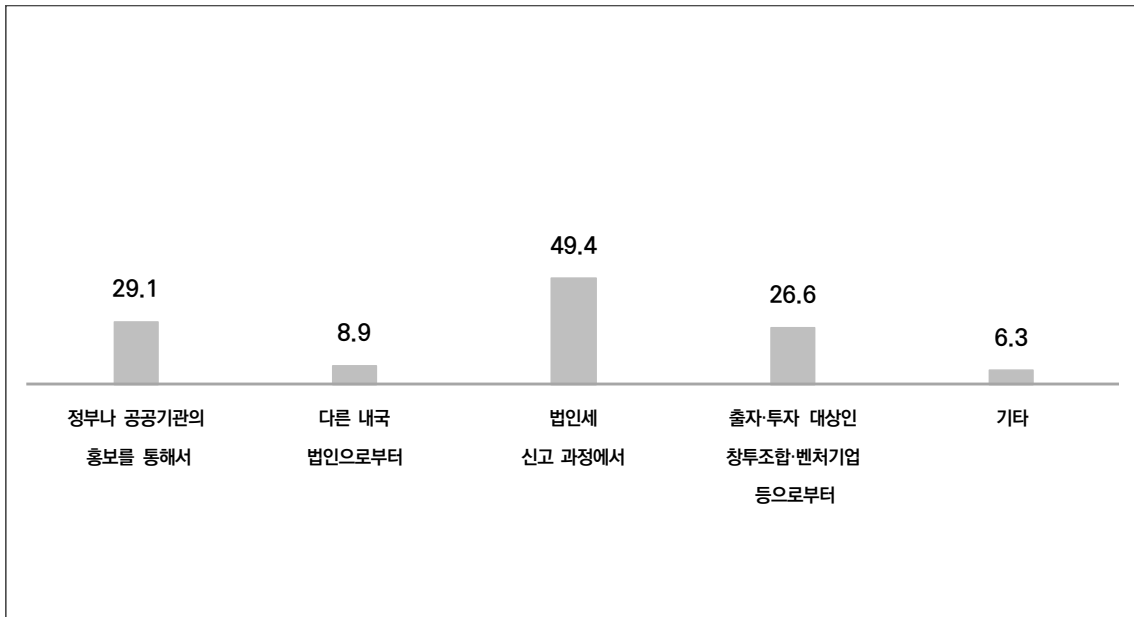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	창업기업 등에 대한출자(투자) 결정 후 출자 준비과정에서 알게되었음	창업기업 등에 대한출자(투자) 후에 알게 되었음	
전 체	(79)	53.2	22.8	24.1	
기업규모	중소기업	(34)	44.1	35.3	20.6
	중견기업	(36)	58.3	11.1	30.6
	대기업	(9)	66.7	22.2	11.1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38.9	27.8	33.3
	없음	(61)	57.4	21.3	21.3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43)	55.8	18.6	25.6
	직간접 투자	(5)	60.0	40.0	0.0
	간접투자	(31)	48.4	25.8	25.8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61)	54.1	21.3	24.6
	도움 안됨	(18)	50.0	27.8	22.2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6)	50.0	16.7	33.3
	적당	(53)	54.7	24.5	20.8
	부족함	(20)	50.0	20.0	30.0

6)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경로(중복응답)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경로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가 49.4%로 가장 높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가 29.1%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가 55.9%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가 50.0%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출자·투자 대상인 창투자조합·벤처기업 등으로부터’가 33.3%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가 61.1%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가 45.9%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6]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인지경로(중복응답)

(base 전체, n=79, 단위: %)



<부표 IV-9>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인지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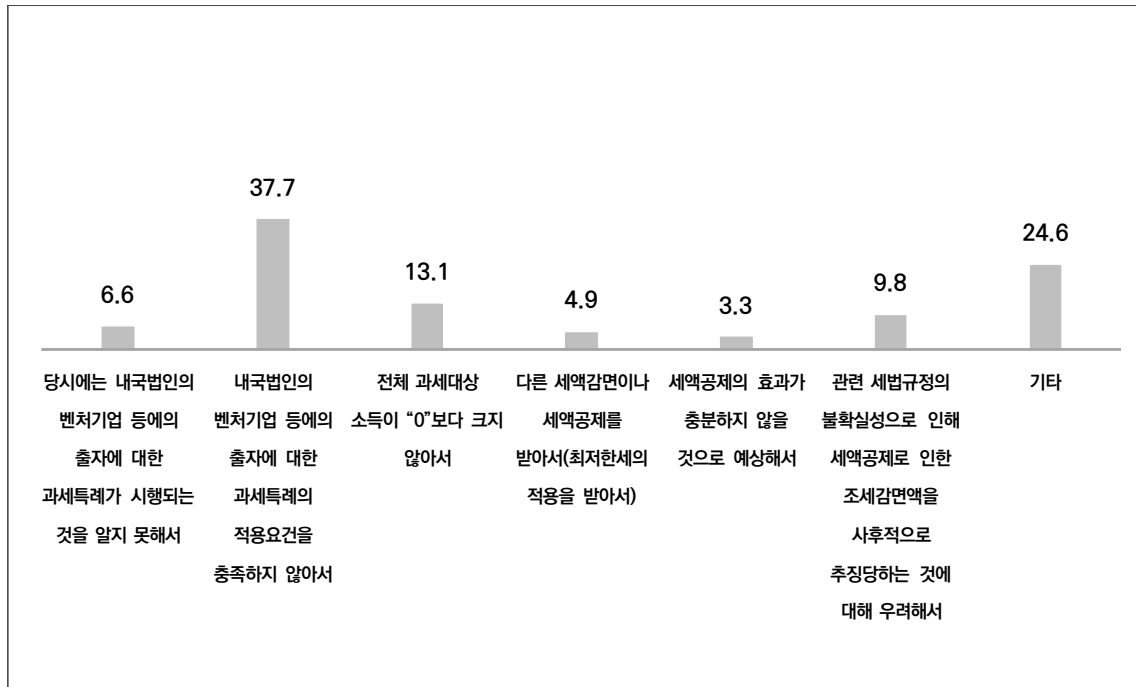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통해서	다른 벤처 투자자로부터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출자·투자 대상인 창투조합·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기타	
전 체	(79)	29.1	8.9	49.4	26.6	6.3	
기업규모	중소기업	(34)	23.5	5.9	55.9	26.5	2.9
	중견기업	(36)	36.1	13.9	50.0	25.0	5.6
	대기업	(9)	22.2	0.0	22.2	33.3	22.2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5.6	16.7	61.1	38.9	0.0
	없음	(61)	36.1	6.6	45.9	23.0	8.2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43)	34.9	7.0	46.5	18.6	4.7
	직간접 투자	(5)	0.0	20.0	40.0	20.0	40.0
	간접투자	(31)	25.8	9.7	54.8	38.7	3.2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61)	27.9	9.8	50.8	27.9	6.6
	도움 안됨	(18)	33.3	5.6	44.4	22.2	5.6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6)	16.7	50.0	33.3	16.7	16.7
	적당	(53)	32.1	5.7	54.7	26.4	1.9
	부족함	(20)	25.0	5.0	40.0	30.0	15.0

7) 과세특례를 알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 과세특례를 알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가 37.7%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24.6%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가 27.6%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가 46.2%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가 50.0%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 ‘있음’ 응답자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은 적이 없지 않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가 37.7%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7] 과세특례를 알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base 전체, n=61, 단위: %)



<부표 IV-10> 과세특례를 알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당시에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시 행되는것을 알지못해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출자에 대한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않아서	전체 과세대상 소득이“0”보다 크지않아서	
전 체	(61)	6.6	37.7	13.1	
기업규모	중소기업	(29)	3.4	27.6	24.1
	중견기업	(26)	11.5	46.2	3.8
	대기업	(6)	0.0	50.0	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0)	-	-	-
	없음	(61)	6.6	37.7	13.1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39)	7.7	28.2	17.9
	직간접 투자	(4)	0.0	25.0	0.0
	간접투자	(18)	5.6	61.1	5.6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45)	6.7	40.0	8.9
	도움 안됨	(16)	6.3	31.3	25.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3)	0.0	33.3	0.0
	적당	(43)	7.0	37.2	16.3
	부족함	(15)	6.7	40.0	6.7

<부표 IV-10>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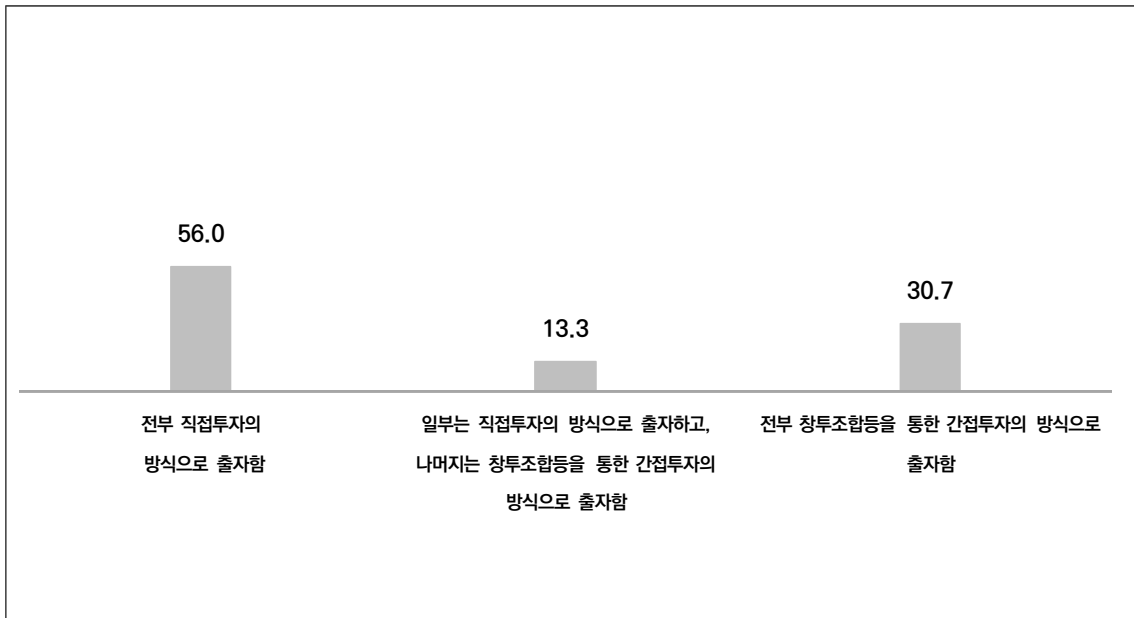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액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않을 것으로예상해서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세액 공제로인한 조세감면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것에 대해우려해서	기타	
전 체	(61)	4.9	3.3	9.8	24.6	
기업규모	중소기업	(29)	3.4	3.4	10.3	27.6
	중견기업	(26)	3.8	3.8	11.5	19.2
	대기업	(6)	16.7	0.0	0.0	33.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0)	-	-	-	-
	없음	(61)	4.9	3.3	9.8	24.6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39)	5.1	2.6	10.3	28.2
	직간접 투자	(4)	0.0	0.0	25.0	50.0
	간접투자	(18)	5.6	5.6	5.6	11.1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45)	6.7	2.2	13.3	22.2
	도움 안됨	(16)	0.0	6.3	0.0	31.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3)	0.0	0.0	0.0	66.7
	적당	(43)	7.0	2.3	9.3	20.9
	부족함	(15)	0.0	6.7	13.3	26.7

8) 최근 출자 방식

- 최근 출자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56.0%로 가장 높았고, ‘전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30.7%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67.2%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52.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일부는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과 ‘전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각각 37.5%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전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 60.6%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8] 최근 출자 방식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11> 최근 출자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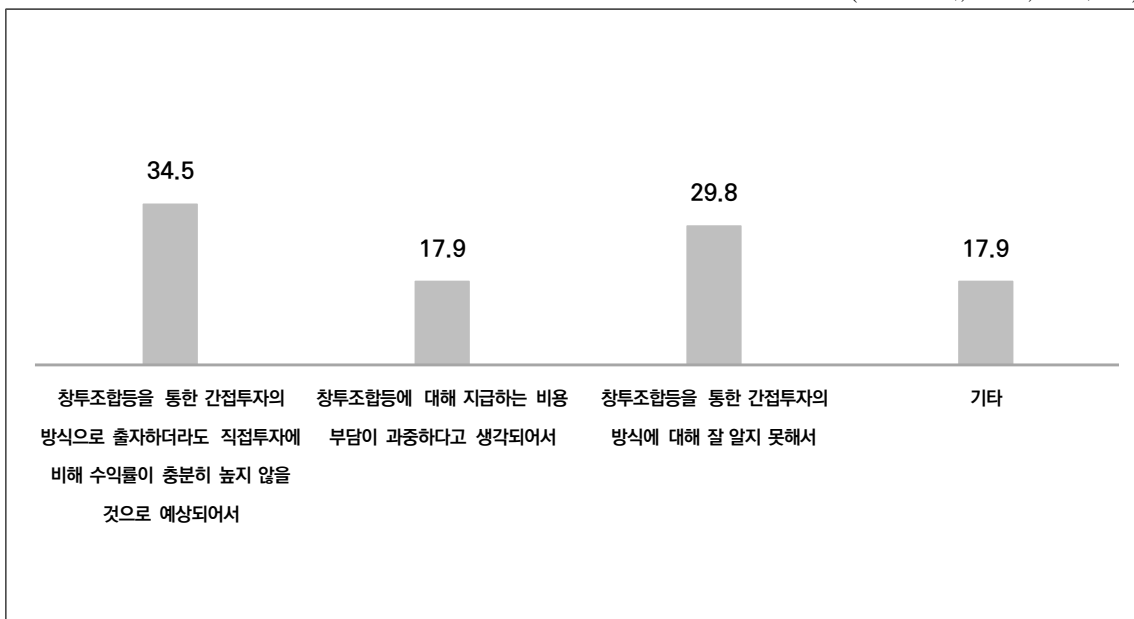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부 직접투자의 방식으로출자합	일부는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창투조합등을 통한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합	전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합	직접투자 방식의 출자건수비율	
전 체	(150)	56.0	13.3	30.7	44.75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67.2	6.3	26.6	50.00
	중견기업	(70)	52.9	14.3	32.9	46.00
	대기업	(16)	25.0	37.5	37.5	39.17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22.2	5.6	72.2	70.00
	없음	(132)	60.6	14.4	25.0	43.42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100.0	0.0	0.0	-
	직간접 투자	(20)	0.0	100.0	0.0	44.75
	간접투자	(46)	0.0	0.0	100.0	-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53.5	14.9	31.6	47.94
	도움 안됨	(36)	63.9	8.3	27.8	26.6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44.4	22.2	33.3	30.00
	적당	(104)	56.7	12.5	30.8	45.00
	부족함	(37)	56.8	13.5	29.7	50.00

9) 간접투자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간접투자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가 34.5%로 가장 높았고,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가 29.8%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가 37.2%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가 45.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가 50.0%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창투조합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서’가 50.0%로 가장 높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가 35.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9] 간접투자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base 전체, n=84, 단위: %)



<부표 IV-12> 간접투자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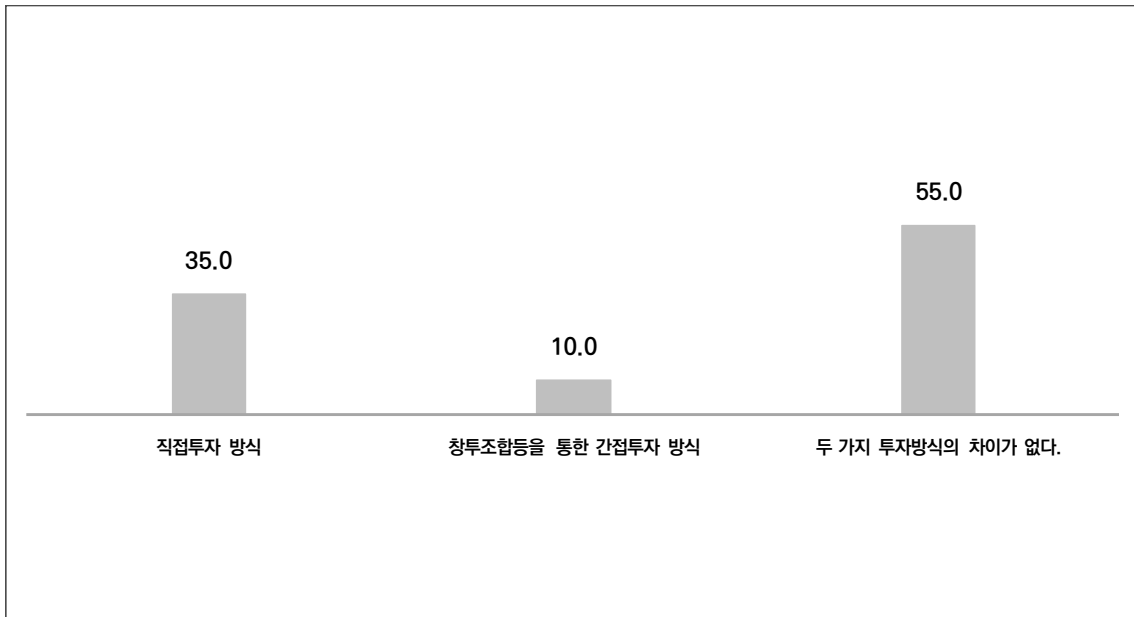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 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창투조합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서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기타	
전 체	(84)	34.5	17.9	29.8	17.9	
기업규모	중소기업	(43)	25.6	18.6	37.2	18.6
	중견기업	(37)	45.9	18.9	18.9	16.2
	대기업	(4)	25.0	0.0	50.0	25.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4)	25.0	50.0	25.0	0.0
	없음	(80)	35.0	16.3	30.0	18.8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34.5	17.9	29.8	17.9
	직간접 투자	(0)	-	-	-	-
	간접투자	(0)	-	-	-	-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61)	34.4	18.0	29.5	18.0
	도움 안됨	(23)	34.8	17.4	30.4	17.4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4)	0.0	75.0	0.0	25.0
	적당	(59)	28.8	16.9	33.9	20.3
	부족함	(21)	57.1	9.5	23.8	9.5

10)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55.0%로 가장 높았고, ‘직접투자 방식’이 35.0%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60.0%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직접투자 방식’이 83.3%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직접투자 방식’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57.9%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0]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base 전체, n=20, 단위: %)



<부표 IV-13>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수익율이 더 높은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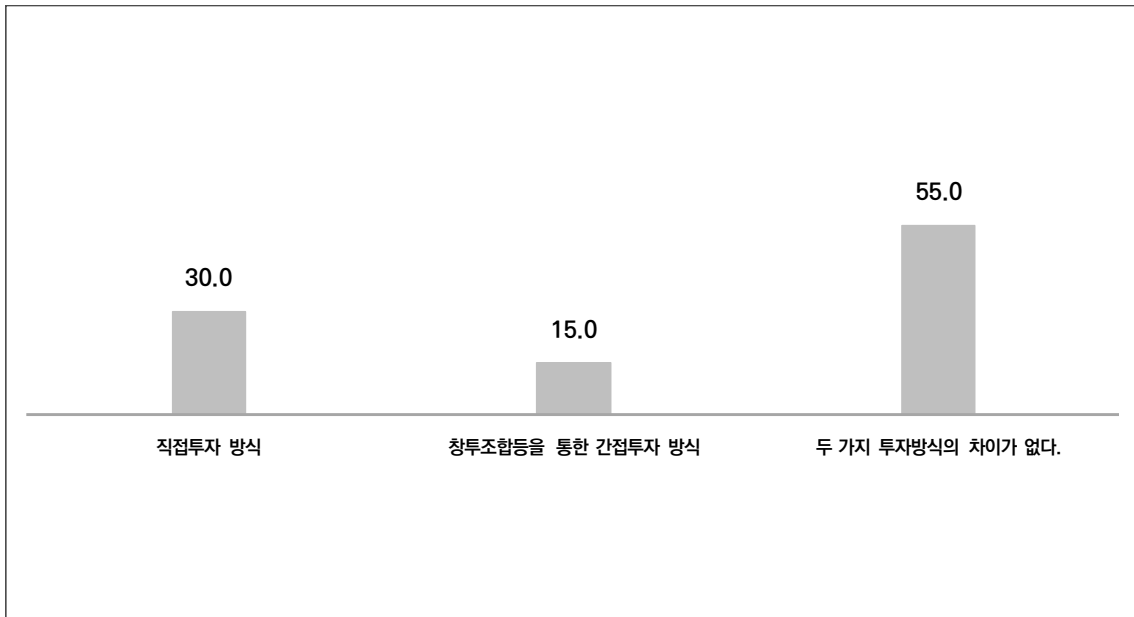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직접투자 방식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없다.	
전 체	(20)	35.0	10.0	55.0	
기업규모	중소기업	(4)	0.0	0.0	100.0
	중견기업	(10)	20.0	20.0	60.0
	대기업	(6)	83.3	0.0	16.7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	100.0	0.0	0.0
	없음	(19)	31.6	10.5	57.9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0)	-	-	-
	직간접 투자	(20)	35.0	10.0	55.0
	간접투자	(0)	-	-	-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7)	35.3	5.9	58.8
	도움 안됨	(3)	33.3	33.3	3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	100.0	0.0	0.0
	적당	(13)	23.1	7.7	69.2
	부족함	(5)	40.0	20.0	40.0

11)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

-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55.0%로 가장 높았고, ‘직접투자 방식’이 30.0%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60.0%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직접투자 방식’이 50.0%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직접투자 방식’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가 57.9%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1]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

(base 전체, n=20, 단위: %)



<부표 IV-14> 창업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 결과 순투자성공률이 더 높은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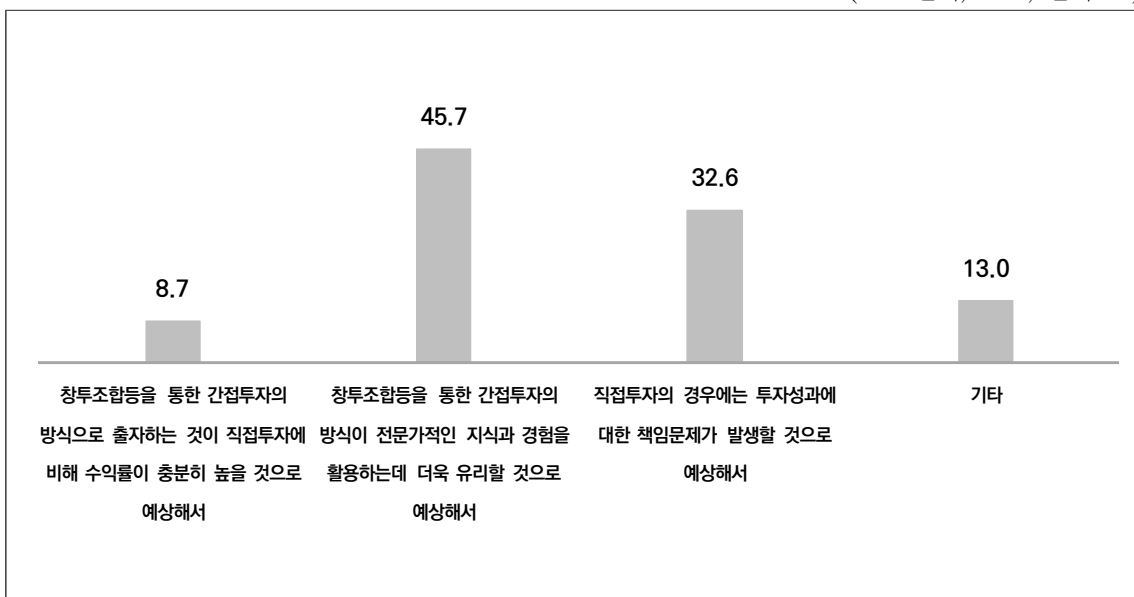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직접투자 방식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없다.
전 체		(20)	30.0	15.0	55.0
기업규모	중소기업	(4)	0.0	0.0	100.0
	중견기업	(10)	30.0	10.0	60.0
	대기업	(6)	50.0	33.3	16.7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	100.0	0.0	0.0
	없음	(19)	26.3	15.8	57.9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0)	-	-	-
	직간접 투자	(20)	30.0	15.0	55.0
	간접투자	(0)	-	-	-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7)	23.5	17.6	58.8
	도움 안됨	(3)	66.7	0.0	33.3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	50.0	50.0	0.0
	적당	(13)	23.1	0.0	76.9
	부족함	(5)	40.0	40.0	20.0

12) 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45.7%로 가장 높았고,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32.6%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41.2%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43.5%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66.7%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42.4%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2] 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base 전체, n=46, 단위: %)



<부표 IV-15> 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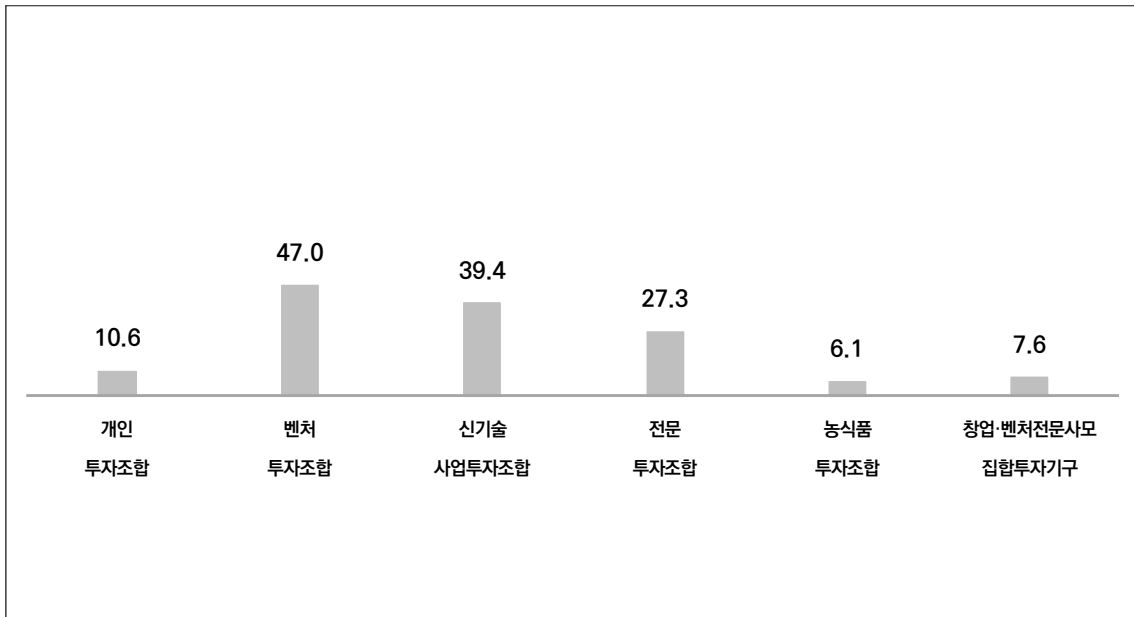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는것이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경험을 활용하는데 더욱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대한책임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해서	기타	
전 체	(46)	8.7	45.7	32.6	13.0	
기업규모	중소기업	(17)	17.6	41.2	41.2	0.0
	중견기업	(23)	4.3	43.5	30.4	21.7
	대기업	(6)	0.0	66.7	16.7	16.7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3)	7.7	53.8	23.1	15.4
	없음	(33)	9.1	42.4	36.4	12.1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0)	-	-	-	-
	직간접 투자	(0)	-	-	-	-
	간접투자	(46)	8.7	45.7	32.6	13.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36)	8.3	44.4	36.1	11.1
	도움 안됨	(10)	10.0	50.0	20.0	2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3)	0.0	33.3	33.3	33.3
	적당	(32)	6.3	46.9	43.8	3.1
	부족함	(11)	18.2	45.5	0.0	36.4

13)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벤처투자조합’이 47.0%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39.4%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벤처투자조합’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벤처투자조합’이 39.4%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58.3%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이 44.2%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3]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base 전체, n=66, 단위: %)



<부표 IV-16>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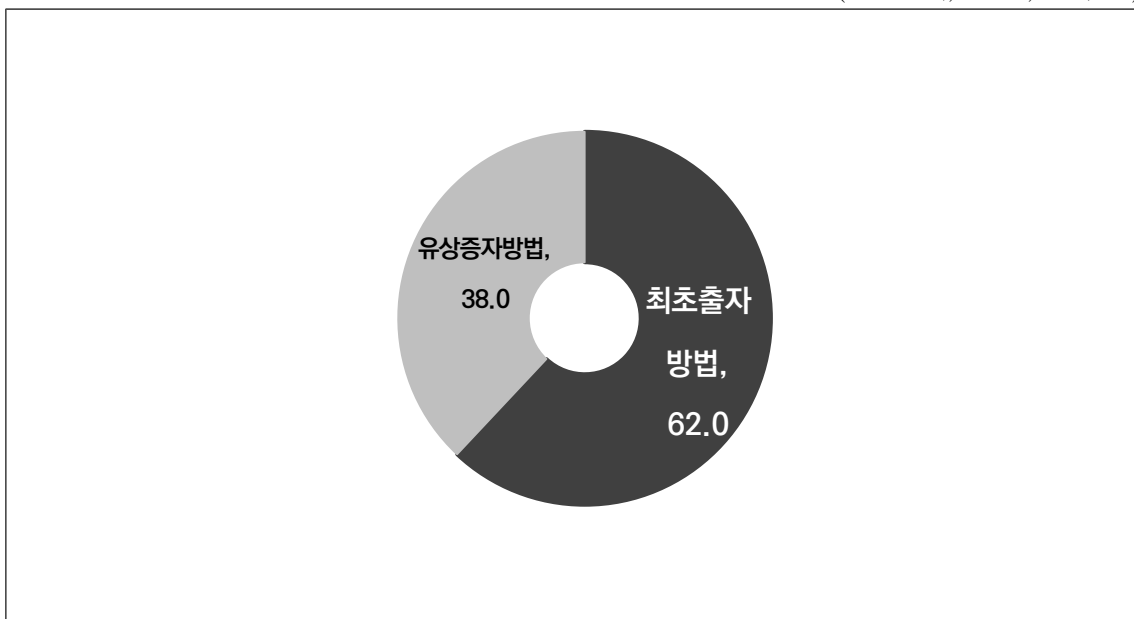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개인 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전문 투자조합	농식품 투자조합	창업· 벤처전문 사모집합 투자기구
전 체		(66)	10.6	47.0	39.4	27.3	6.1	7.6
기업규모	중소기업	(21)	0.0	52.4	33.3	33.3	0.0	0.0
	중견기업	(33)	15.2	39.4	36.4	30.3	12.1	12.1
	대기업	(12)	16.7	58.3	58.3	8.3	0.0	8.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4)	14.3	57.1	57.1	21.4	7.1	0.0
	없음	(52)	9.6	44.2	34.6	28.8	5.8	9.6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20)	10.0	40.0	35.0	40.0	10.0	10.0
	직간접 투자	(46)	10.9	50.0	41.3	21.7	4.3	6.5
	간접투자	(53)	11.3	54.7	34.0	28.3	1.9	7.5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3)	7.7	15.4	61.5	23.1	23.1	7.7
	도움 안됨	(5)	40.0	60.0	60.0	40.0	0.0	2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45)	8.9	48.9	37.8	26.7	4.4	6.7
	적당	(16)	6.3	37.5	37.5	25.0	12.5	6.3
	부족함	(39)	17.9	25.6	10.3	92.3	0.0	15.4

14) 간접투자 방식시 구체적 출자방법

- 간접투자 방식시 구체적 출자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최초출자방법)’이 62.0%로 가장 높았고,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유상증자방법)’가 38.0%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 70.0%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 81.3%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 61.4%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4] 간접투자 방식시 구체적 출자방법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17>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 및 투자를 이용할 때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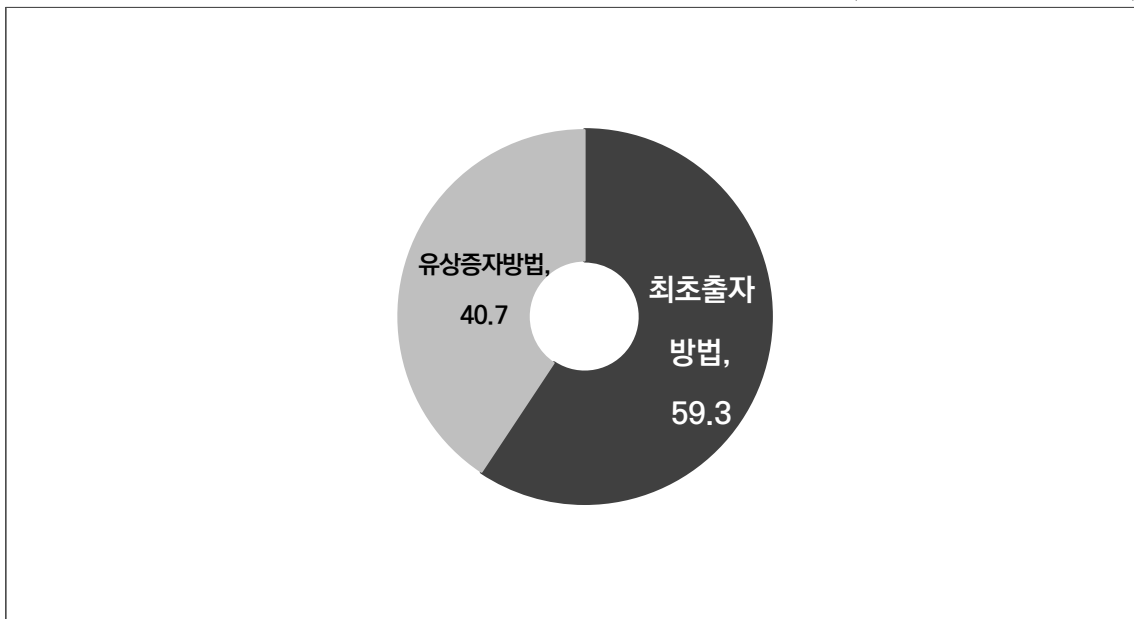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출자대상 창업기업등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방법 (최초출자방법)	출자대상 창업기업등이 설립된후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방법 (유상증자방법)	
전 체	(150)	62.0	38.0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48.4	51.6
	중견기업	(70)	70.0	30.0
	대기업	(16)	81.3	18.8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66.7	33.3
	없음	(132)	61.4	38.6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64.3	35.7
	직간접 투자	(20)	55.0	45.0
	간접투자	(46)	60.9	39.1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63.2	36.8
	도움 안됨	(36)	58.3	41.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66.7	33.3
	적당	(104)	57.7	42.3
	부족함	(37)	73.0	27.0

15) 투자성과가 더 좋은 방식

- 투자성과가 더 좋은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최초출자방법’이 59.3%로 가장 높았고, ‘유상증자방법’이 40.7%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최초출자방법’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최초출자방법’이 62.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최초출자방법’이 68.8%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최초출자방법’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최초출자방법’이 57.6%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5] 투자성과과 더 좋은 방식

(base 전체, n=80, 단위: %)



<부표 IV-18> 투자성과과 더 좋은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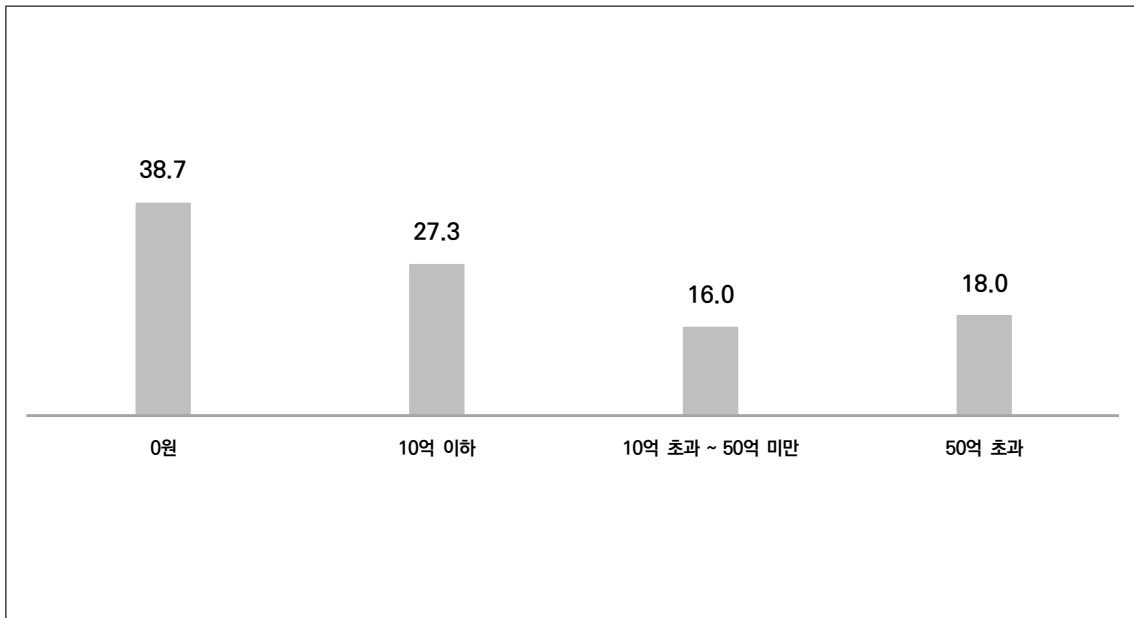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최초출자방법	유상증자방법
전 체		(150)	59.3	40.7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53.1	46.9
	중견기업	(70)	62.9	37.1
	대기업	(16)	68.8	31.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72.2	27.8
	없음	(132)	57.6	42.4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65.5	34.5
	직간접 투자	(20)	45.0	55.0
	간접투자	(46)	54.3	45.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59.6	40.4
	도움 안됨	(36)	58.3	41.7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66.7	33.3
	적당	(104)	54.8	45.2
	부족함	(37)	70.3	29.7

16) 출자금액 규모

- 출자금액 규모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464877.88만원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전체 평균 309914.08만원, ‘중견기업’은 550871.44만원, ‘대기업’은 708511.25만원으로 나타남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전체 평균 629822.22만원, ‘없음’ 응답자는 442385.47만원으로 나타남

[부그림 IV-16] 출자금액 규모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19> 출자금액 규모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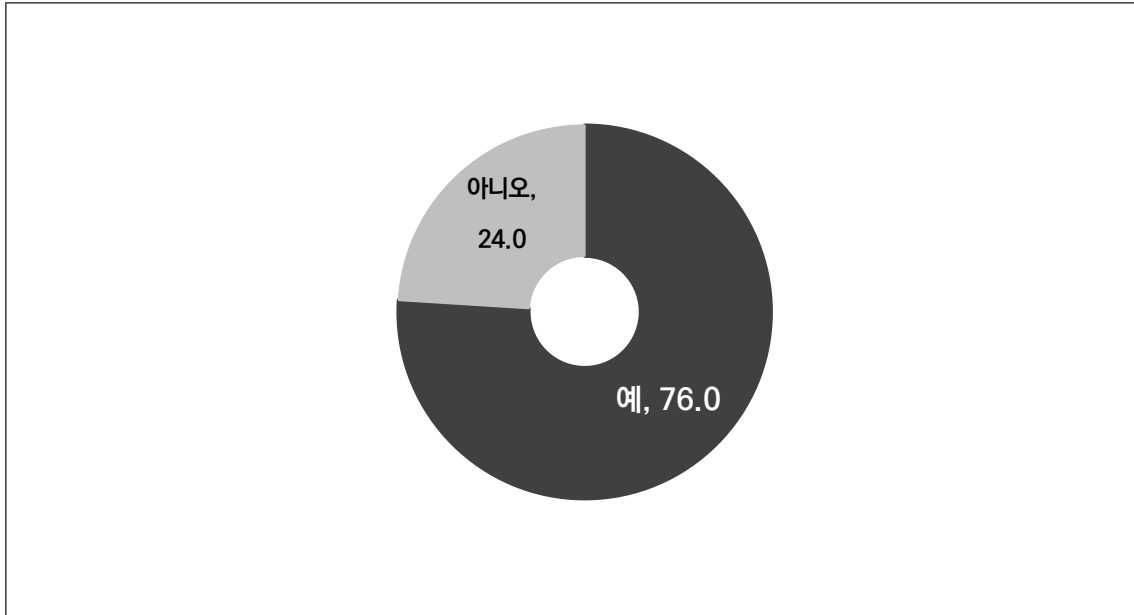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0원	10억 이하	10억 초과 ~ 50억미만	50억 초과	평균	
전 체	(150)	38.7	27.3	16.0	18.0	464877.88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37.5	32.8	20.3	9.4	309914.08
	중견기업	(70)	45.7	22.9	10.0	21.4	550871.44
	대기업	(16)	12.5	25.0	25.0	37.5	708511.25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11.1	27.8	27.8	33.3	629822.22
	없음	(132)	42.4	27.3	14.4	15.9	442385.47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48.8	26.2	14.3	10.7	280939.07
	직간접 투자	(20)	20.0	45.0	10.0	25.0	764725.00
	간접투자	(46)	28.3	21.7	21.7	28.3	670397.83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40.4	24.6	17.5	17.5	382312.99
	도움 안됨	(36)	33.3	36.1	11.1	19.4	726333.36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33.3	11.1	22.2	33.3	1422333.33
	적당	(104)	39.4	28.8	17.3	14.4	441463.29
	부족함	(37)	37.8	27.0	10.8	24.3	297797.30

1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예’가 76.0%로 가장 높았고, ‘아니오’가 24.0%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예’가 75.0%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예’가 72.9%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예’가 93.8%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예’가 88.9%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응답자에서는 ‘예’가 74.2%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2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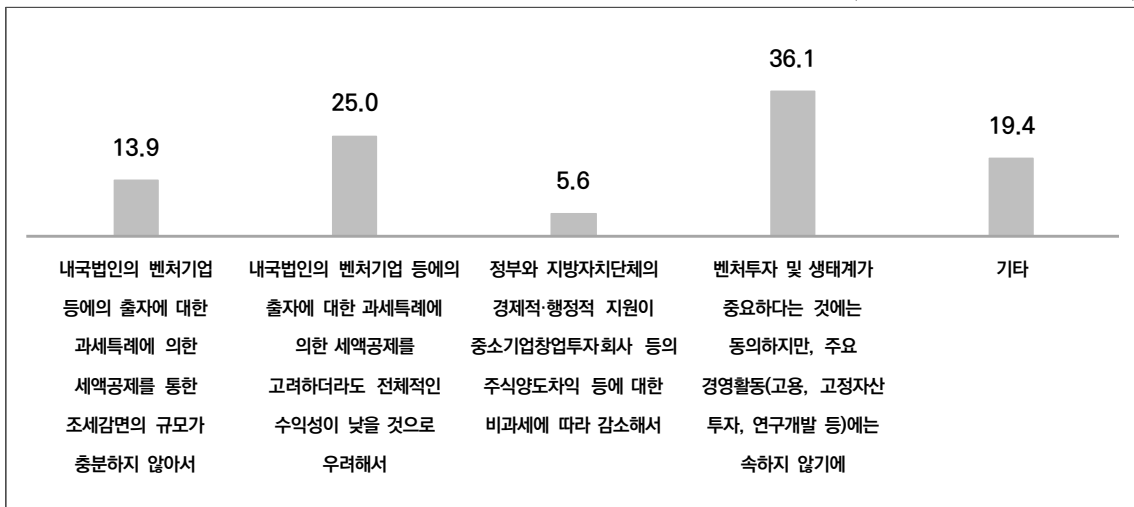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50)	76.0	24.0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75.0	25.0
	중견기업	(70)	72.9	27.1
	대기업	(16)	93.8	6.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88.9	11.1
	없음	(132)	74.2	25.8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72.6	27.4
	직간접 투자	(20)	85.0	15.0
	간접투자	(46)	78.3	21.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100.0	0.0
	도움 안됨	(36)	0.0	10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55.6	44.4
	적당	(104)	76.0	24.0
	부족함	(37)	81.1	18.9

18)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도움되지 않는 이유

-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벤처투자 및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경영활동(고용, 고정자산 투자, 연구개발 등)에는 속하지 않기에가 36.1%로 가장 높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가 25.0%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벤처투자 및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경영활동에는 속하지 않기에’가 43.8%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벤처투자 및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경영활동에는 속하지 않기에’가 26.3%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은 ‘벤처투자 및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경영활동에는 속하지 않기에’가 100.0%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벤처투자 및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경영활동(고용, 고정자산 투자, 연구개발 등)에는 속하지 않기에’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가 각각 50.0%로 나타났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벤처투자 및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경영활동에는 속하지 않기에’가 38.2%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18]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도움되지 않는 이유

(base 전체, n=36, 단위: %)



<부표 IV-21>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도움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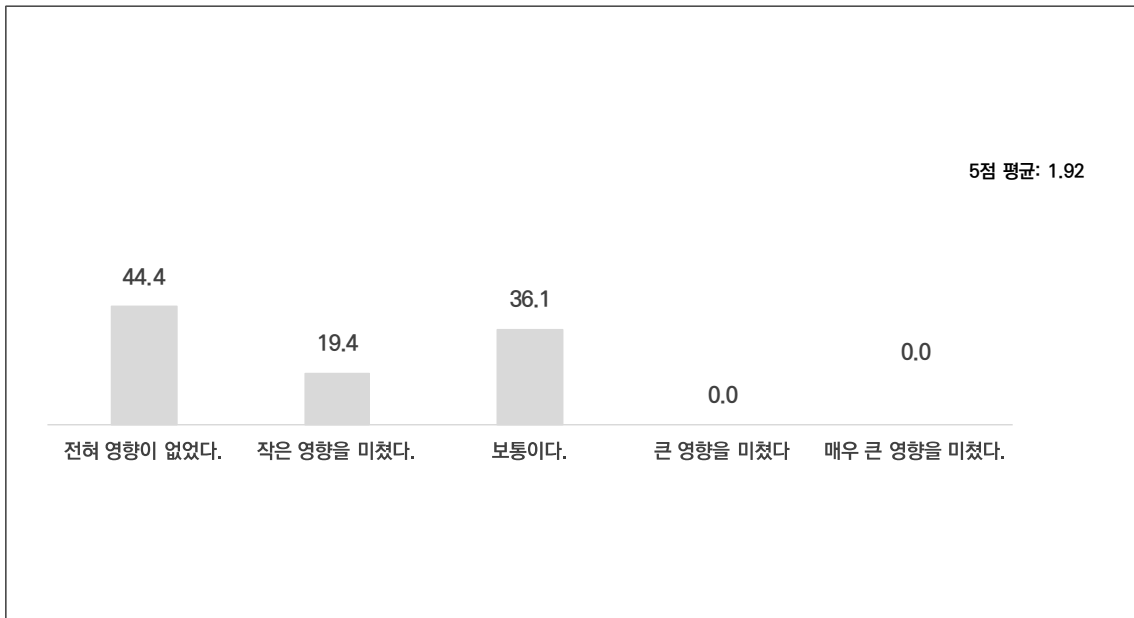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 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감소해서	벤처투자 및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요 경영활동에는 속하지 않기에	기타	
전 체	(36)	13.9	25.0	5.6	36.1	19.4	
기업규모	중소기업	(16)	12.5	37.5	0.0	43.8	6.3
	중견기업	(19)	15.8	15.8	10.5	26.3	31.6
	대기업	(1)	0.0	0.0	0.0	100.0	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2)	0.0	50.0	0.0	0.0	50.0
	없음	(34)	14.7	23.5	5.9	38.2	17.6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23)	17.4	13.0	4.3	47.8	17.4
	직간접 투자	(3)	33.3	33.3	0.0	33.3	0.0
	간접투자	(10)	0.0	50.0	10.0	10.0	3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0)	-	-	-	-	-
	도움 안됨	(36)	13.9	25.0	5.6	36.1	19.4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4)	0.0	0.0	0.0	25.0	75.0
	적당	(25)	16.0	28.0	8.0	40.0	8.0
	부족함	(7)	14.3	28.6	0.0	28.6	28.6

19)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영향력

-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1.92점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전체 평균 1.94점, ‘중견기업’은 1.95점, ‘대기업’은 ‘전혀 영향이 없었다’가 1.00점으로 나타남.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전체 평균 1.50점, ‘없음’ 응답는 1.94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IV-19]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영향력

(base 전체, n=36, 단위: %)



<부표 IV-22>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영향력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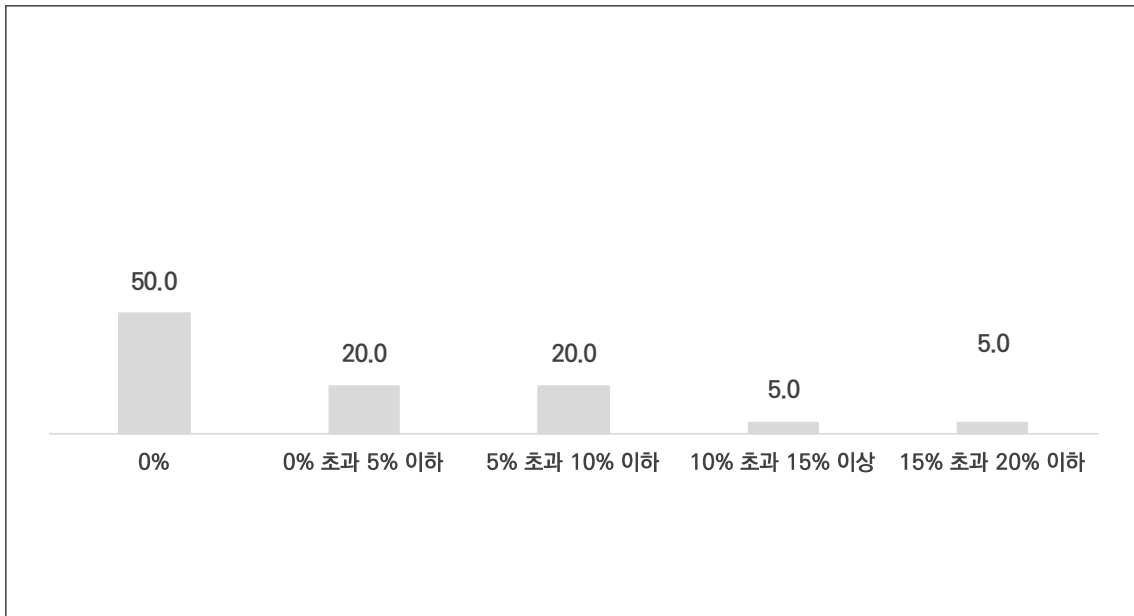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 평균
전 체		(36)	44.4	19.4	36.1	0.0	0.0	1.92
기업규모	중소기업	(16)	43.8	18.8	37.5	0.0	0.0	1.94
	중견기업	(19)	42.1	21.1	36.8	0.0	0.0	1.95
	대기업	(1)	100.0	0.0	0.0	0.0	0.0	1.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2)	50.0	50.0	0.0	0.0	0.0	1.50
	없음	(34)	44.1	17.6	38.2	0.0	0.0	1.94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23)	39.1	13.0	47.8	0.0	0.0	2.09
	직간접 투자	(3)	33.3	66.7	0.0	0.0	0.0	1.67
	간접투자	(10)	60.0	20.0	20.0	0.0	0.0	1.6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0)	-	-	-	-	-	-
	도움 안됨	(36)	44.4	19.4	36.1	0.0	0.0	1.92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4)	50.0	25.0	25.0	0.0	0.0	1.75
	적당	(25)	32.0	24.0	44.0	0.0	0.0	2.12
	부족함	(7)	85.7	0.0	14.3	0.0	0.0	1.29

20)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0%’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0% 초과 5% 이하’와 ‘5% 초과 10% 이하’가 각각 20.0%로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0%’와 ‘0% 초과 5% 이하’가 각각 33.3%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0%’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0%’가 100.0%로 가장 높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0%’가 47.4%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20]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base 전체, n=20, 단위: %)



<부표 IV-23>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수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0%	0% 초과 5%이하	5% 초과 10%이하	10% 초과 15%이상	15% 초과 20%이하
전 체		(20)	50.0	20.0	20.0	5.0	5.0
기업규모	중소기업	(9)	33.3	33.3	22.2	11.1	0.0
	중견기업	(11)	63.6	9.1	18.2	0.0	9.1
	대기업	(0)	-	-	-	-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	100.0	0.0	0.0	0.0	0.0
	없음	(19)	47.4	21.1	21.1	5.3	5.3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14)	57.1	21.4	7.1	7.1	7.1
	직간접 투자	(2)	0.0	50.0	50.0	0.0	0.0
	간접투자	(4)	50.0	0.0	50.0	0.0	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0)	-	-	-	-	-
	도움 안됨	(20)	50.0	20.0	20.0	5.0	5.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	100.0	0.0	0.0	0.0	0.0
	적당	(17)	41.2	23.5	23.5	5.9	5.9
	부족함	(1)	100.0	0.0	0.0	0.0	0.0

21) 창투조합·벤처기업 등

- 창투조합·벤처기업 등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출자·투자액은 15867.00만원, 회수액은 14143.22만원, 출자·투자대상의 개수는 0.56개, 주식양도차익은 5323.78만원, 배당소득은 255.61만원으로 나타남.
- 벤처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출자·투자액은 13778.11만원, 회수액은 3361.44만원, 출자·투자대상의 개수는 0.22개, 주식양도차익은 57.28만원, 배당소득은 250.33만원으로 나타남.

<부표 IV-24> 창투조합·벤처기업 등

(단위: 만원, 개)

구 분	사례수	신규 출자·투자액	회수액	출자·투자대상의 개수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전 체	(36)	15867.00	14143.22	0.56	5323.78	255.61	
기업규모	중소기업	(16)	18762.50	16887.50	0.31	9512.50	137.50
	중견기업	(19)	14263.79	12576.63	0.79	2076.63	368.53
	대기업	(1)	0.00	0.00	0.00	0.00	0.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2)	110000.00	119222.00	0.50	19222.00	0.00
	없음	(34)	10329.76	7962.12	0.56	4506.24	270.65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23)	8696.17	9565.74	0.70	6609.22	87.04
	직간접 투자	(3)	333.33	166.67	0.67	333.33	2333.33
	간접투자	(10)	37020.00	28864.40	0.20	3864.40	20.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36)	15867.00	14143.22	0.56	5323.78	255.61
	도움 안됨	(4)	0.00	0.00	0.00	0.00	0.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5)	20048.48	20366.24	0.76	7666.24	368.08
	적당	(7)	10000.00	0.00	0.14	0.00	0.00
	부족함	(69)	11464.70	1976.72	1.16	517.59	217.54

<부표 IV-25> 벤처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 대상

(단위: 만원, 개)

구 분	사례수	신규 출자·투자액	회수액	출자·투자 대상의 개수	주식양도 차익	배당 소득	
전 체	(36)	13778.11	3361.44	0.22	57.28	250.33	
기업규모	중소기업	(16)	30937.50	7500.00	0.25	125.00	125.00
	중견기업	(19)	53.26	53.26	0.21	3.26	369.05
	대기업	(1)	0.00	0.00	0.00	0.00	0.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2)	0.00	0.00	0.00	0.00	0.00
	없음	(34)	14588.59	3559.18	0.24	60.65	265.06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23)	17174.43	3044.00	0.26	87.48	87.48
	직간접 투자	(3)	333.33	333.33	0.67	16.67	2333.33
	간접투자	(10)	10000.00	5000.00	0.00	0.00	0.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36)	13778.11	3361.44	0.22	57.28	250.33
	도움 안됨	(4)	0.00	0.00	0.00	0.00	0.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25)	19840.48	4840.48	0.32	82.48	360.48
	적당	(7)	0.00	0.00	0.00	0.00	0.00
	부족함	(69)	669.57	304.35	0.22	304.35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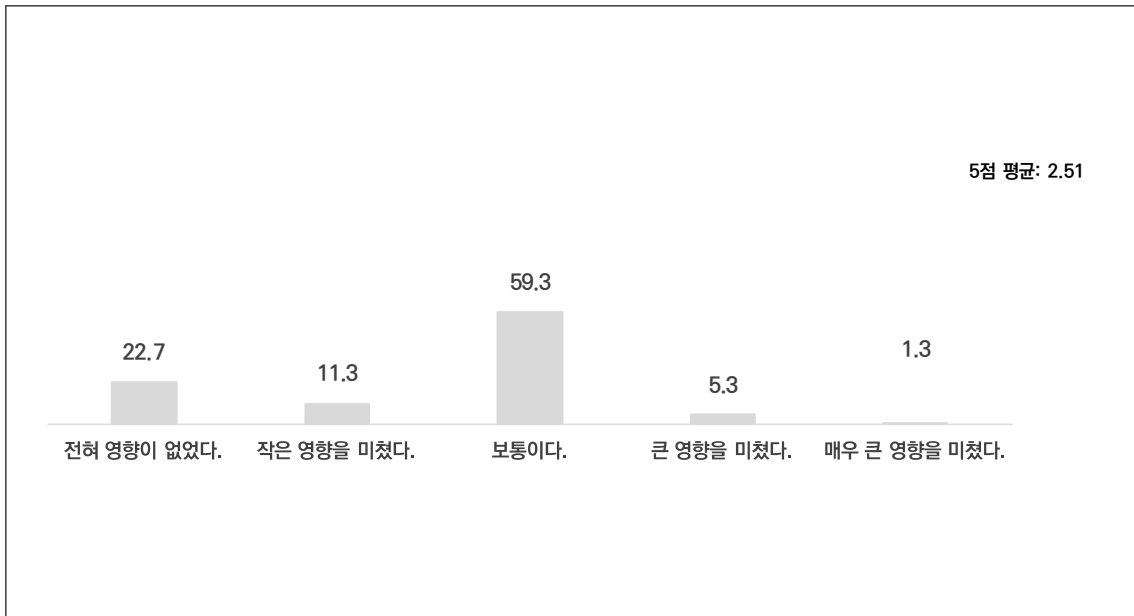
22) 세액공제로 인한 출자 및 투자 영향

□ 세액공제로 인한 출자 및 투자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은 2.51점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전체 평균 2.44점, ‘중견기업’은 평균 2.50점, ‘대기업’은 평균 2.88점으로 나타남.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전체 평균 2.67점, ‘없음’ 응답자는 2.49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IV-21] 세액공제로 인한 출자 및 투자 영향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26> 세액공제로 인한 출자 및 투자 영향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 평균
전 체	(150)	22.7	11.3	59.3	5.3	1.3	2.51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23.4	14.1	57.8	4.7	0.0	2.44
	중견기업 (70)	22.9	10.0	61.4	5.7	0.0	2.50
	대기업 (16)	18.8	6.3	56.3	6.3	12.5	2.88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16.7	11.1	66.7	0.0	5.6	2.67
	없음 (132)	23.5	11.4	58.3	6.1	0.8	2.49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25.0	15.5	54.8	4.8	0.0	2.39
	직간접 투자 (20)	20.0	5.0	65.0	10.0	0.0	2.65
	간접투자 (46)	19.6	6.5	65.2	4.3	4.3	2.6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14.0	11.4	65.8	7.0	1.8	2.71
	도움 안됨 (36)	50.0	11.1	38.9	0.0	0.0	1.89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22.2	33.3	44.4	0.0	0.0	2.22
	적당 (104)	23.1	8.7	63.5	3.8	1.0	2.51
	부족함 (37)	21.6	13.5	51.4	10.8	2.7	2.59

23) 세액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 세액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96.6%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시켰다’가 2.6%로 뒤를 이었고, ‘감소시켰다’는 0.9%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98.1%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76.9%로 가장 높았고, ‘증가시켰다’는 23.1%로 나타났다.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93.3%로 가장 높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97.0%로 가장 높았음.
- 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소한 기업 수는 평균 12개(50.0%), 증가한 기업 수는 평균 9개(90.0%)로 나타남

[부그림 IV-22] 세액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base 전체, n=116, 단위: %)



<부표 IV-27> 세액공제가 투자 대상 기업 수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소시켰다.	증가시켰다.
전 체		(116)	96.6	0.9	2.6
기업규모	중소기업	(49)	100.0	0.0	0.0
	중견기업	(54)	98.1	1.9	0.0
	대기업	(13)	76.9	0.0	23.1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5)	93.3	0.0	6.7
	없음	(101)	97.0	1.0	2.0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63)	100.0	0.0	0.0
	직간접 투자	(16)	87.5	6.3	6.3
	간접투자	(37)	94.6	0.0	5.4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98)	96.9	0.0	3.1
	도움 안됨	(18)	94.4	5.6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7)	100.0	0.0	0.0
	적당	(80)	97.5	1.3	1.3
	부족함	(29)	93.1	0.0	6.9

<부표 IV-28>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_개, 비율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감소		사례수	증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 체	(1)	12	50.00	(3)	9	9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0)	-	-	-	-	
	중견기업	(1)	12	50.00	-	-	
	대기업	(0)	-	-	(3)	9	90.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0)	-	-	(1)	25	100.00
	없음	(1)	12	50.00	(2)	1	85.00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0)	-	-	-	-	
	직간접 투자	(1)	12	50.00	(1)	1	100.00
	간접투자	(0)	-	-	(2)	13	85.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0)	-	-	(3)	9	90.00
	도움 안됨	(1)	12	50.00	-	-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0)	-	-	-	-	
	적당	(1)	12	50.00	(1)	25	100.00
	부족함	(0)	-	-	(2)	1	85.00

24)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96.6%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시켰다’는 3.4%로 나타났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96.3%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84.6%로 나타남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86.7%로 가장 높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98.0%로 가장 높았음.

- 소득공제의 영향으로 투자 기간이 증가한 기간은 평균 5.50개월, 증가한 비율은 평균 55.0%로 나타남.

[부그림 IV-23]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base 전체, n=116, 단위: %)



〈부표 IV-29〉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기업규모	(116)	96.6	3.4	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중소기업	(49)	100.0	0.0	0.0
	중견기업	(54)	96.3	3.7	0.0
	대기업	(13)	84.6	15.4	0.0
최근 출자 방식	있음	(15)	86.7	13.3	0.0
	없음	(101)	98.0	2.0	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직접투자	(63)	100.0	0.0	0.0
	직간접 투자	(16)	81.3	18.8	0.0
	간접투자	(37)	97.3	2.7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도움 됨	(98)	96.9	3.1	0.0
	도움 안됨	(18)	94.4	5.6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7)	100.0	0.0	0.0
	적당	(80)	97.5	2.5	0.0
	부족함	(29)	93.1	6.9	0.0

<부표 IV-30> 소득공제가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_기간, 비율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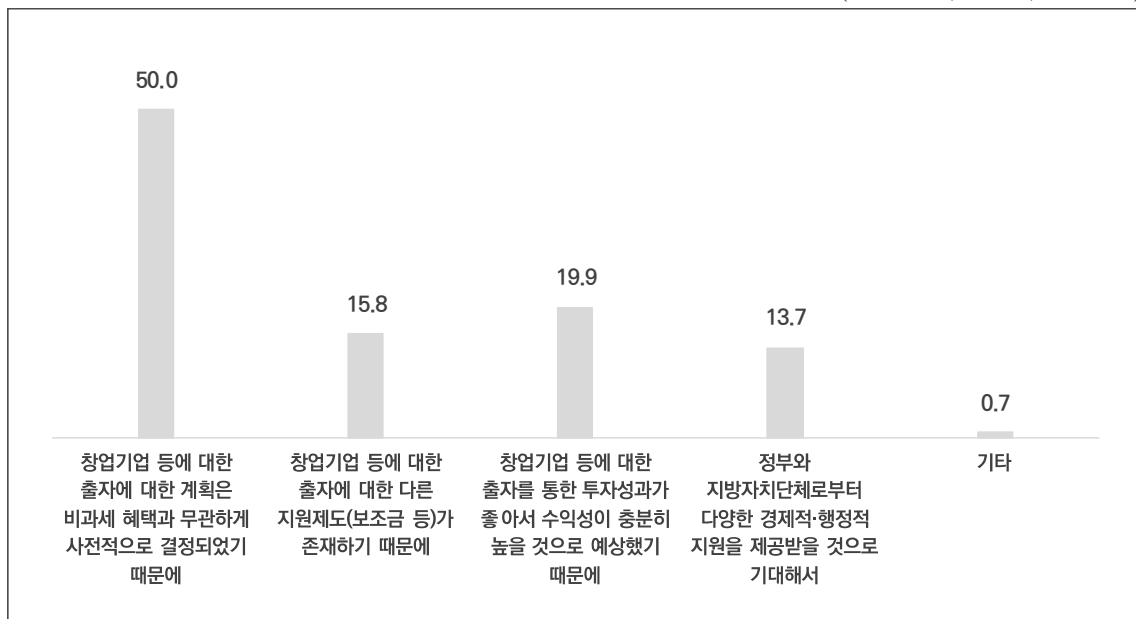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기간		사례수	기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 체	(0)	-	-	(0)	-	-
기업규모	중소기업	(0)	-	(0)	-	-
	중견기업	(0)	-	(2)	3.00	10.00
	대기업	(0)	-	(2)	8.00	100.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0)	-	(2)	4.50	55.00
	없음	(0)	-	(2)	6.50	55.00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0)	-	(0)	-	-
	직간접 투자	(0)	-	(3)	6.00	40.00
	간접투자	(0)	-	(1)	4.00	100.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0)	-	(3)	7.00	70.00
	도움 안됨	(0)	-	(1)	1.00	10.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0)	-	(0)	-	-
	적당	(0)	-	(2)	2.50	55.00
	부족함	(0)	-	(2)	8.50	55.00

25) 세액공제가 당초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 세액공제가 당초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계획은 비과세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50.0%로 가장 높았고,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좋아서 수익성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가 19.9%로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계획은 비과세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56.3%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계획은 비과세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계획은 비과세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50.0%로 나타났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계획은 비과세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50.0%로 가장 높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계획은 비과세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50.0%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24] 세액공제가 당초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base 전체, n=146, 단위: %)



26) 세액공제가 당초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부표 IV-31> 세액공제가 당초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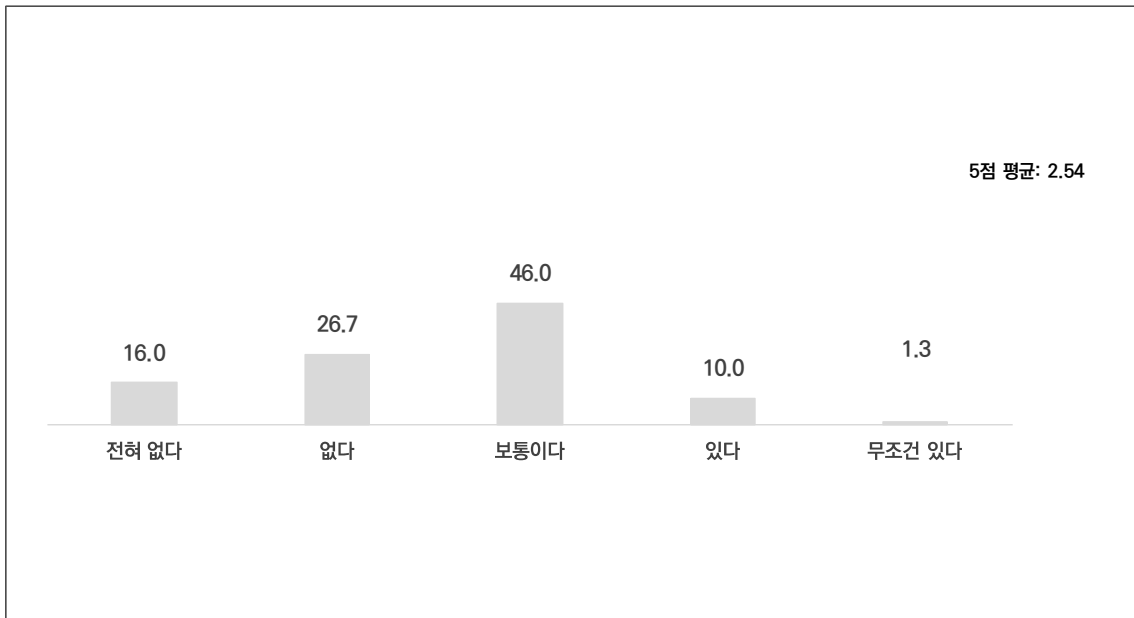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출자에 대한계획은 비과세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출자에 대한다른 지원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출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좋아서 수익성이 충분히높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기타	
전 체	(146)	50.0	15.8	19.9	13.7	0.7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56.3	12.5	18.8	12.5	0.0
	중견기업	(68)	44.1	20.6	19.1	14.7	1.5
	대기업	(14)	50.0	7.1	28.6	14.3	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6)	50.0	12.5	18.8	12.5	6.3
	없음	(130)	50.0	16.2	20.0	13.8	0.0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52.4	16.7	17.9	13.1	0.0
	직간접 투자	(17)	35.3	11.8	29.4	23.5	0.0
	간접투자	(45)	51.1	15.6	20.0	11.1	2.2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1)	46.8	13.5	23.4	16.2	0.0
	도움 안됨	(35)	60.0	22.9	8.6	5.7	2.9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44.4	22.2	11.1	22.2	0.0
	적당	(102)	50.0	15.7	20.6	13.7	0.0
	부족함	(35)	51.4	14.3	20.0	11.4	2.9

27)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투자 의향

- 향후 3년 이내 투자 의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2.54점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전체 평균 2.54점, ‘중견기업’은 2.49점, ‘대기업’은 2.81점으로 나타남.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전체 평균 3.39점, ‘없음’ 응답자는 2.42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IV-25]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투자 의향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32> 소득공제 향후 3년 내 투자 의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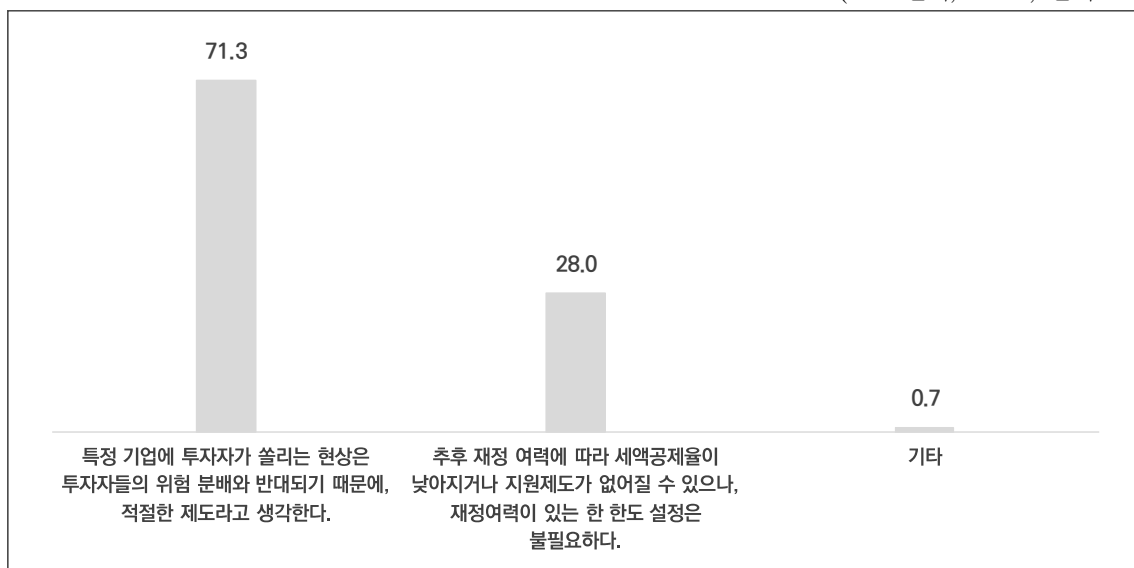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없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무조건 있다	5점 평균
전 체		(150)	16.0	26.7	46.0	10.0	1.3	2.54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15.6	25.0	50.0	9.4	0.0	2.53
	중견기업	(70)	14.3	32.9	42.9	10.0	0.0	2.49
	대기업	(16)	25.0	6.3	43.8	12.5	12.5	2.81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5.6	11.1	33.3	38.9	11.1	3.39
	없음	(132)	17.4	28.8	47.7	6.1	0.0	2.42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15.5	32.1	46.4	6.0	0.0	2.43
	직간접 투자	(20)	20.0	30.0	45.0	5.0	0.0	2.35
	간접투자	(46)	15.2	15.2	45.7	19.6	4.3	2.83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11.4	26.3	50.0	10.5	1.8	2.65
	도움 안됨	(36)	30.6	27.8	33.3	8.3	0.0	2.19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44.4	22.2	11.1	22.2	0.0	2.11
	적당	(104)	12.5	26.9	51.9	6.7	1.9	2.59
	부족함	(37)	18.9	27.0	37.8	16.2	0.0	2.51

28)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알아본 결과,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71.3%로 가장 높았고, ‘추후 재정 여력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지원제도가 없어질 수 있으나, 재정여력이 있는 한 한도 설정은 불필요하다.’가 28.0%로 그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75.0%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71.4%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은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56.3%로 가장 높았음.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에서는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61.1%로 가장 높았고, ‘없음’ 응답자에서는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가 72.7%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V-26]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33> 조세·재정 지원금액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특정 기업에 투자자가쏠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위험 분배와 반대되기때문에, 적절한제도 라고생각한다.	추후 재정 여력에 따라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지원제도가 없어질수있으나, 재정여력이있는한 한도 설정은 불필요하다.	기타	
전체	(150)	71.3	28.0	0.7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75.0	25.0	0.0
	중견기업	(70)	71.4	28.6	0.0
	대기업	(16)	56.3	37.5	6.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61.1	33.3	5.6
	없음	(132)	72.7	27.3	0.0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73.8	26.2	0.0
	직간접 투자	(20)	75.0	25.0	0.0
	간접투자	(46)	65.2	32.6	2.2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68.4	30.7	0.9
	도움 안됨	(36)	80.6	19.4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66.7	33.3	0.0
	적당	(104)	74.0	25.0	1.0
	부족함	(37)	64.9	35.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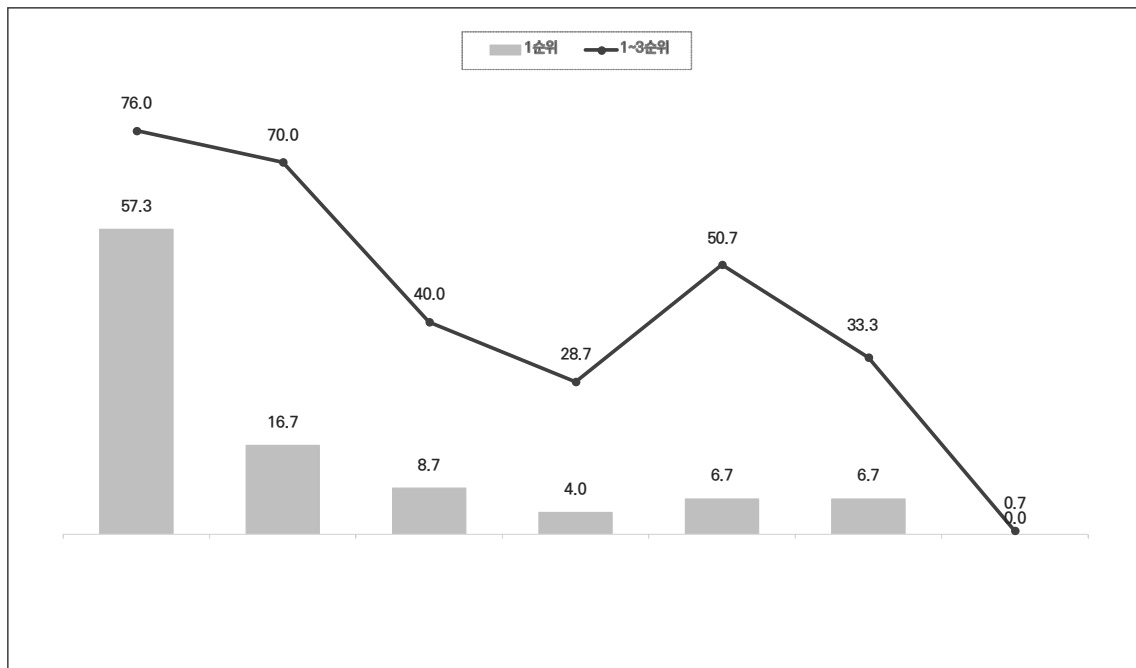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선방향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1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이 57.3%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16.7%로 그 뒤를 이었고,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이 8.7%로 나타났음.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1+2+3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이 76.0%로 가장 높았고,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70.0%로 그 뒤를 이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이 50.7%로 나타났음.

[부그림 IV-27]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34>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방식
전 체		(150)	57.3	16.7	8.7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60.9	15.6	6.3
	중견기업	(70)	57.1	15.7	10.0
	대기업	(16)	43.8	25.0	12.5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33.3	38.9	5.6
	없음	(132)	60.6	13.6	9.1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71.4	7.1	4.8
	직간접 투자	(20)	55.0	20.0	10.0
	간접투자	(46)	32.6	32.6	15.2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57.0	20.2	4.4
	도움 안됨	(36)	58.3	5.6	22.2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55.6	0.0	22.2
	적당	(104)	60.6	14.4	8.7
	부족함	(37)	48.6	27.0	5.4

<부표 IV-34>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직접투자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기타
전 체		(150)	4.0	6.7	6.7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1.6	9.4	6.3	0.0
	중견기업	(70)	4.3	4.3	8.6	0.0
	대기업	(16)	12.5	6.3	0.0	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0.0	5.6	16.7	0.0
	없음	(132)	4.5	6.8	5.3	0.0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1.2	7.1	8.3	0.0
	직간접 투자	(20)	10.0	5.0	0.0	0.0
	간접투자	(46)	6.5	6.5	6.5	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4.4	7.9	6.1	0.0
	도움 안됨	(36)	2.8	2.8	8.3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11.1	0.0	11.1	0.0
	적당	(104)	1.9	8.7	5.8	0.0
	부족함	(37)	8.1	2.7	8.1	0.0

<부표 IV-35>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1+2+3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방식	
전 체	(150)	76.0	70.0	40.0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78.1	73.4	42.2
	중견기업	(70)	78.6	68.6	34.3
	대기업	(16)	56.3	62.5	56.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66.7	72.2	27.8
	없음	(132)	77.3	69.7	41.7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86.9	70.2	39.3
	직간접 투자	(20)	75.0	85.0	30.0
	간접투자	(46)	56.5	63.0	45.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77.2	71.9	37.7
	도움 안됨	(36)	72.2	63.9	47.2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66.7	44.4	55.6
	적당	(104)	76.9	70.2	38.5
	부족함	(37)	75.7	75.7	40.5

<부표 IV-35>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직접투자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	기타
전 체		(150)	28.7	50.7	33.3	0.7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21.9	51.6	31.3	0.0
	중견기업	(70)	32.9	52.9	32.9	0.0
	대기업	(16)	37.5	37.5	43.8	6.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44.4	33.3	55.6	0.0
	없음	(132)	26.5	53.0	30.3	0.8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15.5	56.0	29.8	1.2
	직간접 투자	(20)	35.0	45.0	30.0	0.0
	간접투자	(46)	50.0	43.5	41.3	0.0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27.2	49.1	35.1	0.9
	도움 안됨	(36)	33.3	55.6	27.8	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55.6	55.6	22.2	0.0
	적당	(104)	26.0	53.8	32.7	1.0
	부족함	(37)	29.7	40.5	37.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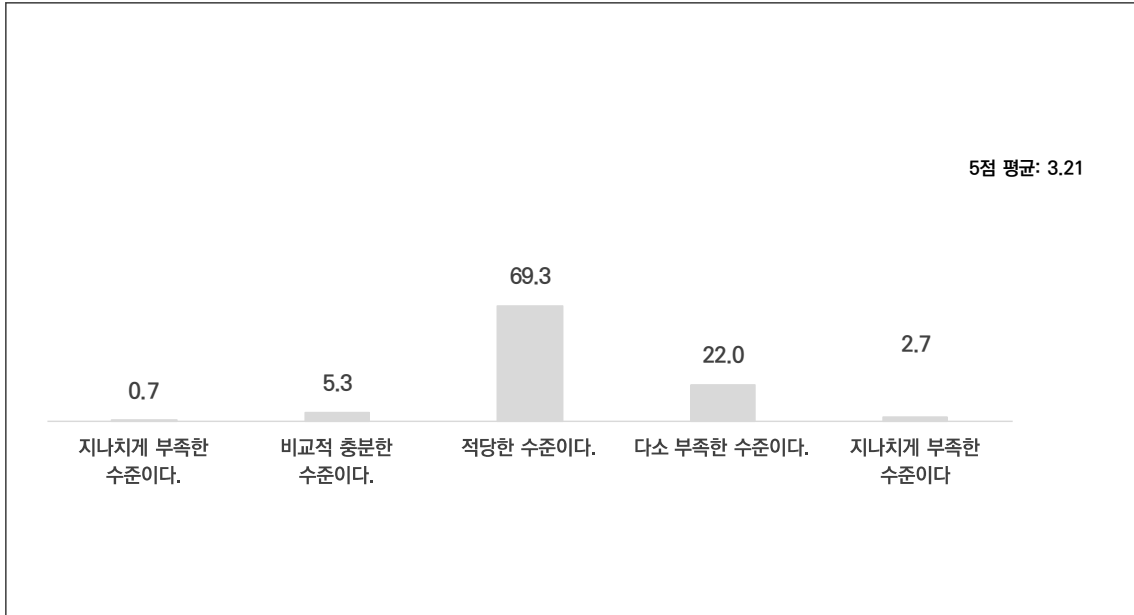
2) 세액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 세액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 ‘중소기업’은 전체 평균 3.17점, ‘중견기업’은 3.24점, ‘대기업’은 3.19점으로 나타남.
-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응답자는 전체 평균 3.11점, ‘없음’ 응답자는 3.22점으로 나타남.

[부그림 IV-28] 세액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base 전체, n=150, 단위: %, 점)



<부표 IV-36> 세액공제 현행 조세지원 수준 평가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5점 평균	
전 체	(150)	0.7	5.3	69.3	22.0	2.7	3.21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0.0	3.1	78.1	17.2	1.6	3.17
	중견기업	(70)	1.4	5.7	64.3	24.3	4.3	3.24
	대기업	(16)	0.0	12.5	56.3	31.3	0.0	3.19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0.0	16.7	55.6	27.8	0.0	3.11
	없음	(132)	0.8	3.8	71.2	21.2	3.0	3.22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1.2	3.6	70.2	23.8	1.2	3.20
	직간접 투자	(20)	0.0	10.0	65.0	20.0	5.0	3.20
	간접투자	(46)	0.0	6.5	69.6	19.6	4.3	3.22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0.0	4.4	69.3	25.4	0.9	3.23
	도움 안됨	(36)	2.8	8.3	69.4	11.1	8.3	3.14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11.1	88.9	0.0	0.0	0.0	1.89
	적당	(104)	0.0	0.0	100.0	0.0	0.0	3.00
	부족함	(37)	0.0	0.0	0.0	89.2	10.8	4.11

3) 세액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확대 규모

□ 세액공제가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확대 규모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축소 규모는 평균 22.22%, 확대 규모는 평균 58.38%로 나타남.

<부표 IV-37> 세액공제 개편 시 조세지원 축소/확대 규모

(단위: %)

구 분	사례수	축소 규모	사례수	확대 규모	
전 체	(9)	22.22	(37)	58.38	
기업규모	중소기업	(2)	0.00	(12)	64.17
	중견기업	(5)	30.00	(20)	54.50
	대기업	(2)	25.00	(5)	60.0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3)	0.00	(5)	70.00
	없음	(6)	33.33	(32)	56.56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4)	25.00	(21)	55.24
	직간접 투자	(2)	25.00	(5)	50.00
	간접투자	(3)	16.67	(11)	68.18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5)	0.00	(30)	58.67
	도움 안됨	(4)	50.00	(7)	57.14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22.22	(0)	-
	적당	(0)	-	(0)	-
	부족함	(0)	-	(37)	5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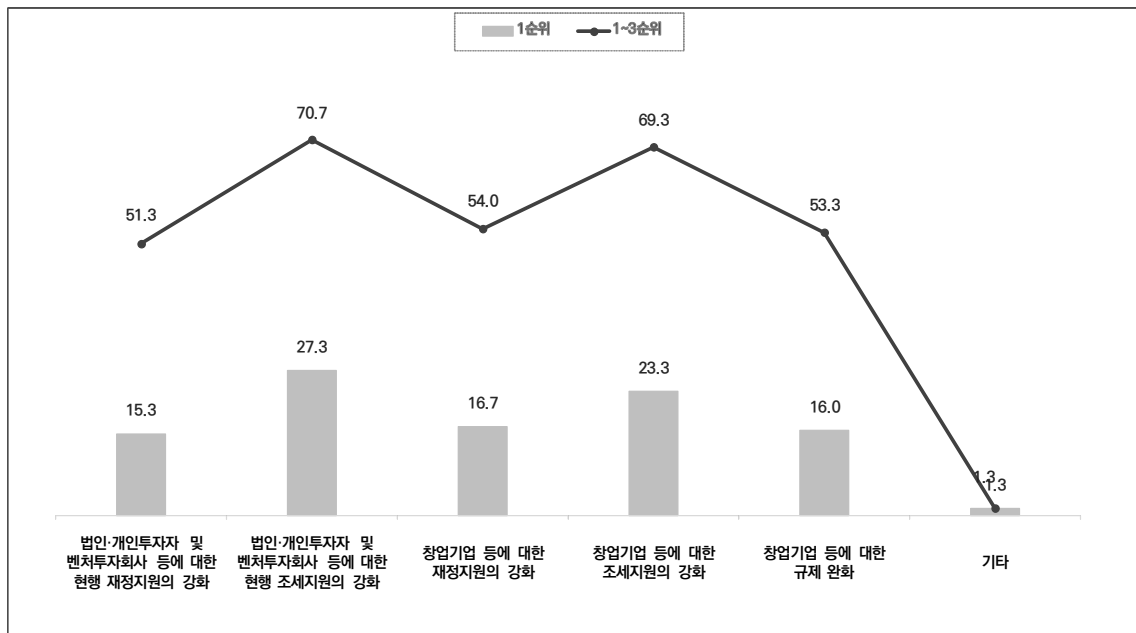
4)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1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가 27.3%로 가장 높았고,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강화’가 23.3%로 그 뒤를 이었음.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1+2+3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가 70.7%로 가장 높았고,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강화’가 69.3%로 그 뒤를 이었음.

[부그림 IV-29]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

(base 전체, n=150, 단위: %)



<부표 IV-38>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대한현행 재정지원의 강화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대한현행 조세지원의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강화
전 체		(150)	15.3	27.3	16.7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14.1	25.0	21.9
	중견기업	(70)	17.1	32.9	14.3
	대기업	(16)	12.5	12.5	6.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16.7	22.2	5.6
	없음	(132)	15.2	28.0	18.2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16.7	29.8	15.5
	직간접 투자	(20)	20.0	30.0	20.0
	간접투자	(46)	10.9	21.7	17.4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14.9	25.4	14.9
	도움 안됨	(36)	16.7	33.3	22.2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11.1	22.2	22.2
	적당	(104)	16.3	28.8	15.4
	부족함	(37)	13.5	24.3	18.9

<부표 IV-38>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규제완화	기타
전 체		(150)	23.3	16.0	1.3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28.1	10.9	0.0
	중견기업	(70)	15.7	18.6	1.4
	대기업	(16)	37.5	25.0	6.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50.0	0.0	5.6
	없음	(132)	19.7	18.2	0.8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23.8	14.3	0.0
	직간접 투자	(20)	10.0	15.0	5.0
	간접투자	(46)	28.3	19.6	2.2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25.4	18.4	0.9
	도움 안됨	(36)	16.7	8.3	2.8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44.4	0.0	0.0
	적당	(104)	20.2	18.3	1.0
	부족함	(37)	27.0	13.5	2.7

<부표 IV-39>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유형(1+2+3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대한현행 재정지원의 강화	법인·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대한현행 조세지원의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강화	
전 체	(150)	51.3	70.7	54.0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48.4	71.9	59.4
	중견기업	(70)	58.6	70.0	47.1
	대기업	(16)	31.3	68.8	62.5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55.6	55.6	50.0
	없음	(132)	50.8	72.7	54.5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54.8	72.6	50.0
	직간접 투자	(20)	50.0	65.0	60.0
	간접투자	(46)	45.7	69.6	58.7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48.2	71.1	55.3
	도움 안됨	(36)	61.1	69.4	50.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77.8	44.4	33.3
	적당	(104)	50.0	72.1	54.8
	부족함	(37)	48.6	73.0	56.8

<부표 IV-39>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규제완화	기타	
전 체	(150)	69.3	53.3	1.3	
기업규모	중소기업	(64)	71.9	48.4	0.0
	중견기업	(70)	68.6	54.3	1.4
	대기업	(16)	62.5	68.8	6.3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8)	83.3	50.0	5.6
	없음	(132)	67.4	53.8	0.8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84)	71.4	51.2	0.0
	직간접 투자	(20)	60.0	60.0	5.0
	간접투자	(46)	69.6	54.3	2.2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114)	71.1	53.5	0.9
	도움 안됨	(36)	63.9	52.8	2.8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9)	88.9	55.6	0.0
	적당	(104)	66.3	55.8	1.0
	부족함	(37)	73.0	45.9	2.7

5) 법인세 신고 내용

<부표 IV-40> 법인세 신고 내용

(단위: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전기이월액	당기발생액	공제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 체		(102)	1673.98	6609.37	696.93	3933261.22
기업규모	중소기업	(44)	1136.36	-1834.16	454.55	831644.16
	중견기업	(48)	2515.54	1966.21	359.04	4422820.04
	대기업	(10)	0.00	66048.10	3385.30	15230493.9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6)	234.38	36383.25	2917.69	5247874.94
	없음	(86)	1941.81	1070.05	283.77	3688681.92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56)	303.50	70.95	72.93	2856041.02
	직간접 투자	(14)	7250.00	500.00	507.14	7436507.43
	간접투자	(32)	1632.81	20724.47	1871.97	4285726.34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79)	96.34	8264.48	640.68	4304169.03
	도움 안됨	(23)	7092.83	924.43	890.13	2659273.52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4)	0.00	775.00	775.00	3465412.00
	적당	(71)	2383.75	9166.94	831.96	4608235.99
	부족함	(27)	55.56	748.26	330.30	2227638.56

<부표 IV-40>의 계속

(단위: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 세액(합계)	총부담세액	
전 체	(102)	1913903.04	794646.53	461628.80	279674.83	
기업규모	중소기업	(44)	508251.41	949651.55	1013367.05	-134551.23
	중견기업	(48)	2775444.44	466609.81	48563.90	366181.75
	대기업	(10)	3963371.50	1687200.70	16692.10	1687036.30
과세특례 수혜여부	있음	(16)	2412790.31	1071853.94	84882.56	984602.75
	없음	(86)	1821086.80	743073.06	531721.13	148525.45
최근 출자 방식	직접투자	(56)	2168488.23	1070146.79	793015.61	116683.13
	직간접 투자	(14)	1545800.00	368320.14	60063.71	324323.93
	간접투자	(32)	1629424.03	499038.88	57386.63	545376.34
과세특례 세액공제가 출자 증가에 도움	도움 됨	(79)	1754992.77	979804.05	590729.80	407595.92
	도움 안됨	(23)	2459725.26	158670.70	18194.96	-159706.30
현행 조세지원 수준 인식	충분함	(4)	3330568.00	750282.50	84953.00	662829.50
	적당	(71)	2072833.58	980750.68	657418.21	264399.59
	부족함	(27)	1286098.30	311834.00	2579.00	263079.41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e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